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6호 2012.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 례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유강하 | 圖像學的 시각에서 본 高句麗 安岳3號墳과 中國 沂南漢墓 무덤 壁畵 7

김일권 | 고구려 5세기 금석문에 나타난 干支曆日 자료와 曆法 연구 53

박은숙 |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 · 영해 인식
– 울릉도 · 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95

민회수 | 조선 開港場 監理署의 성립 과정(1883~1886) 139

손승희 | 채무소송으로 본 華商의 商慣行(1906~1910)
– 移住空間 漢城을 중심으로 187

서평

유장근 | 동아시아국가사를 횡단할 때의 득과 실 241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248

Contents

Articles

Yu Kangha ▮ An Iconographical Study of Anak Tomb No. 3 and Yinan Tomb 7

Kim Ilgwon ▮ The Koguryo Calendar System and Sexagenary CycleCalendar Records in Fifth-Century Epigraphy 53

Park Eunsook ▮ The Activities and Territorial Understanding of Kim Ok Gyun: The Land-Opening Official for the Southeastern Islands 95

Min Hoisoo ▮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intendent Office(Gamriseo) at the Treaty Ports in Korea, 1883~1886 139

Son Seunghee ▮ The Commercial Practices of Chinese Merchants through Debt Suits from 1906 to 1910: Focusing on the Immigrant Area in Hanseong 187

Book Review

Yu Jangkeun ▮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when Traversing the History of the East Asian State 24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圖像學的 시각에서 본 高句麗 安岳3號墳과 中國 沂南漢墓 무덤 壁畵

유강하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머리말

지난 2002년 2월 28일부터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받아 시행된 '東北邊疆歷史與現狀系列研究工程', 즉 '東北工程'(이하 '동북공정')이라는 말로 더 잘 알려진 중국의 대규모 국책 프로젝트는 우리에게도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의 뿌리 찾기와 역사 지키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학계와 대중은 고구려로 그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였다.[1] 고구려에 대한 관심은 수많은 역사드라마와 역사소설의 탄생으로 이어졌고,[2] 과거 학문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던 전문 지식들도 빠른 속도로 대중의

※ 투고일: 2012년 2월 23일, 심사일: 2012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5일

1) '동북공정'이 '우리 역사의 뿌리찾기'를 자극한 이유는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 일부로 편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0년대 이후 고구려사를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 즉 중국사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역사를 왜곡해왔다. …… 이것은 종래와 달리 정부기관이 앞장서서 고구려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최광식, 2009,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살림), 4쪽.

2) 특히 최근 수년 간 텔레비전 사극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광개토대왕〉(2011),

영역 안으로 흡수되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고구려 古墳과 壁畵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고, 이는 적지 않은 연구 성과들을 도출함으로써 고구려 벽화는 대중에게조차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연구의 대부분이 고구려의 고분과 벽화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의 무덤과 벽화가 동아시아 문명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타 문화권의 葬儀文化와의 비교연구는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진행해 온 측면이 있다.

葬儀文化가 발달했던 고대 동아시아의 무덤 가운데서도 고구려 고분의 고유성을 탐색하고자 했을 때, 유사한 문화권역 내 다른 고분과의 비교연구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비교대상이 되는 고분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부각됨으로써 고분 및 벽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은 더욱 용이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고구려 安岳3號墳과 中國 沂南 漢畵像石墓(이하, 沂南漢墓)를 비교사적 차원에서 검토할 것이다. 현재 북한에 위치한 安岳3號墳은 前燕의 장수였던 冬壽의 무덤으로서, 일찍이 安岳을 중심으로 한 재령강 유역이 중국의 삼국 및 위 · 진 시기에 중국 왕조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의 영향 관계를 탐색하는 데 중요 논거로도 제시된 바 있다. 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무덤 주인공에 대한 첨예한 논쟁은 무덤의 정체성마저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安岳3號墳은 중국의 고분인가, 아니면 고구려의 고분인가. 安岳3號墳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인가. 이 논문은 이 궁금증에서 출발한다. 이 고분의 정체성과 역사적 의미를 밝히기 위해, 일찍부터 이 고분과의 관계성이 제기되었던 沂南 漢畵像石墓(이하 沂南漢墓)와의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태왕사신기〉(2007), 〈주몽〉(2006), 〈연개소문〉(2006), 〈대조영〉(2006) 등이 그것이며, 고구려에 관한 전문적 연구 외에도 소설 『고구려』(김진명, 2001, 새움) 등도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두 무덤에 대한 韓 · 中 연구자들의 시각을 비교할 것이다. 연구의 진행방향과 세부 내용의 검토는 安岳3號墳을 대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고구려 고분을 대하는 중국의 시각을 일부 확인하고, 더 나아가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대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의 제3장에서는 무덤 벽화의 도상학적 의의를 고찰하고, 제4장에서는 두 무덤에 대한 본격적인 도상학적 비교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安岳3號墳과 沂南漢墓는 造營 연대의 相差가 크지 않고 비교적 완정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이들에 대한 관련성이 언급된 바 있다.[3] 이러한 일련의 연구가 생산적인 결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어진 도상학적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서 도상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는 드물기 때문에 또 다른 해석의 창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이 연구는 두 고분이 모두 多室墓이고, 기둥이 있으며, 각기 '문방－앞방－널방－측실－回廊'(安岳3號墳)과 '前室－中室－後室(主室)－측실'(沂南漢墓)로 이어지는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墓室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4] 따라서 각 墓室 벽화를 도상학적 입장에서 고찰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도상학적 해석이 중요한 이유는 유사한 모티프가 출현한다 하더라도 각 墓室 벽과 천장에 묘사된 모티프의 출현 방식, 소멸, 재현과 그 배열이 각기 다른 의미 기제로 작동하면서 새로운 의미 부여를 하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安岳3號墳 연구 초기 단계부터 沂南漢墓와의 유사성이 언급된 바 있다. 金貞培, 1978,「安岳3號墳 被葬者 논쟁에 대하여－冬壽墓說과 美川王墓 說을 中心으로」,『古文化』16, 15쪽; 전호태, 2006,「高句麗 安岳三號墳 再論」,『韓國古代史研究』44; 張明皓, 2007,「論安岳三号墓的建筑淵源」,『北方文物』4; 韋正 · 조윤재, 2007,「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의 정체성－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114~121쪽.

4) 물론, 이러한 유사점에도 불구하고 건축학적 입장에서 보자면 이들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沂南 漢畵像石墓는 관실병렬형배치 구조이고 安岳3號墳은 동실합장이라는 점이 그렇고, 회랑의 유무가 그렇다.

漢系 문화권에 있었던 고구려 安岳3號墳과[5] 沂南 漢畵像石墓 벽화의 도상학적 비교연구는 '선택/배제 – 변환 – 수용'을 통한 문화의 흐름, 또는 차이점을 파악하게 함으로써 고구려 벽화의 고유성을 밝히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Ⅱ. 무덤을 바라보는 시선들

중국의 漢 왕조(B.C. 206~A.D. 220)는 高句麗(B.C. 37~A.D. 668)의 역사와 시 ·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다. 이들이 상호 영향권역에 있었을 가능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고구려에 대한 역사와 고구려인의 삶 전반에 대해 무한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寶庫인 고구려 벽화 역시 중국 漢의 葬儀文化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安岳 지역 고구려 고분의 고유성과 특성을 논증하기 전, 沂南漢墓와 安岳3號墳을 문화사적 측면에 맞추어 연구하고 있는 국내 · 외(중국)의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1_ 국내 연구자들의 시선

安岳3號墳의 벽화는 고구려의 여타 지역 고분과의 변별성으로 인해 일찍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6] 먼저 중국 고분과 安岳3號墳의 영향 관계를 고찰한 기존 연구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沂南漢墓와의 직접적 언급이 된 연

5) 전호태는 安岳을 중심으로 한 재령강 유역을 漢系 문화권, 漢系 문화권 안에서도 문화의 변방으로 설명하였다. 전호태, 2006, 앞의 글, 137~139쪽

6) 安岳 지역은 漢四郡의 하나였던 樂浪 지역으로, 漢의 遺民들이 오랫동안 거주하면서 漢의 문화방식을 고집하였는데, 그들이 축조하였던 벽돌무덤은 모두 漢式이 아니었다. 무덤 천장에 高句麗式 관돌 뚜껑을 사용하는 등 漢과 高句麗의 문화가 혼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金貞培, 1978, 앞의 글, 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를 검토하기로 한다.

安岳3號墳이 발굴되고 관련 보고서가 작성된 이후,[7] 이 고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安岳3號墳과 관련되어 국내에서 가장 큰 논쟁이 되었던 것은 被葬者의 신분으로서, 1949년 발굴 직후부터 시작된 이 논쟁의 쟁점은 무덤의 주인공이 고구려로 귀투한 冬壽의 무덤인지, 아니면 고구려 故國原王의 무덤인지, 美川王 무덤인지에 대한 것이었다.[8]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安岳3號墳에 대한 많은 연구 역시 무덤 주인공을 찾아내려는 노력과 직결되어 있었다. 무덤의 건축 양식을 비롯하여 벽화의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기존 중국 벽화와의 비교를 통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려 한 연구 역시 공통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 가운데서도 벽화 속 인물들의 복장과 주변 기물 등 시각적 요소에 대한 연구가 두드러진다. 전혜숙 · 허정희는 무덤의 남녀 주인공의 복식과 관모가 魏晉南北朝 시기의 일반적인 복식과 冠帽, 머리장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이를 王의 복식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북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王陵'이 아닌 漢系 豪族勢力의 무덤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9] 孔錫龜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인공의 冠帽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晉書』의 사료를 검토함으로써 무덤 주인공은 前燕에서 망명한 장수 冬壽라고 밝힌 바 있다.[10] 일찍이 전주농이 남성의 복식에 주목하여 이것이 중국식과 다르며 고구려식과도 다르다는 점을 언급한 이래,[11] 김희정은 安岳3號墳 남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 『안악제3호분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3)), 과학원출판사, 1958

8) 1949년 6월 27일 安岳3號墳이 발굴되고, 무덤에 대한 기초 조사 과정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된 논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덤 주인공에 관한 것이었다. 被葬者의 신분은 크게 ① 前燕 장수 冬壽, ② 고구려 故國原王, ③ 고구려 美川王으로 나뉜다. 무덤 피장자에 대한 논쟁의 내용과 주장은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金貞培, 1978, 위의 글, 12~25쪽

9) 전혜숙 · 허정희, 2002, 「安岳3號墳 主人公 服食에 관한 硏究－中國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韓服文化』 5-3, 47~59쪽

10) 孔錫龜, 1998, 「安岳3號墳 主人公 冠帽에 대하여」, 『高句麗硏究』 5, 192~193쪽

11) 전주농, 1959, 「안악 하무덤에 대하여」, 『문화유산』 5, 17쪽; 김희정, 1997, 「安岳3號墳의 服飾 硏究 1-男子 服飾」, 『服飾』 31, 239쪽에서 재인용.

주인공의 복장과 당시 중국 복장의 차이점에 주목함으로써 이는 당시 安岳 지역의 귀화인과 高句麗人의 융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12] 고구려 땅에 있는 외국 장수의 무덤이 곧 외국 무덤의 재현을 의미하지 않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 만하다.

남녀 주인공의 복장이 아닌, 부속 기물에 주목한 연구도 찾아볼 수 있다. 孔錫龜는 安岳3號墳 벽화에 등장한 幢을 통해 冬壽의 신분, 즉 고구려에 살고 있었던 대표적 중국계 인물이라는 점을 더욱 자세하게 밝힌 바 있다.[13]

이혜구는 安岳3號墳의 奏樂圖를 관찰하여 漢 畵像石의 주악도와의 차이점에 대해 논한 바 있다. 安岳3號墳 前室 벽화에 보이는 큰 북이 화상석과 다르다는 점, 回廊의 대행렬도에 보이는 二重鼓와 鐃가 한 화상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차이점을 언급하는 한편, 漢代의 황문고취와 단소요가를 수용했음을 밝히면서 奏樂圖를 통해 흡수된 요소와 새롭게 추가된 요소를 차례로 언급하였다.[14]

이처럼 기존 연구는 남녀 주인공이 그려진 서쪽 곁방과 회랑 벽면의 세부 제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세밀하고 치밀한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티프의 나열이 어떠한 방식으로 무덤의 성격을 규정짓는지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어진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호태는 漢墓와의 비교연구로 과감하게 시선을 돌림으로써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전호태는 "고분의 구조, 석재가공, 백회를 이용한 마감처리, 화상 장식 등 여러 요소가 안악3호분과 비교된다"[15]며 구조적 측면에서의 유사성을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덤 벽화의 장식무늬, 柱頭의 유사성, 무덤주인초상 등 벽화의 내용에 주목하면서, 山東-遼東-安岳으로 이

12) 김희정, 1997, 위의 글, 237~247쪽
13) "晉代에 이르러 당은 將軍의 신분을 가진 자에게 주로 지급되었으며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孔錫龜, 2005, 「安岳3號墳의 幢에 대하여」, 『高句麗研究』 19, 204쪽
14) 이혜구, 2000, 「安岳 第三號墳 壁畵의 奏樂圖」, 『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 2, 408, 423, 426, 436쪽
15) 전호태, 2006, 앞의 글, 141~14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지는 문화루트의 가능성을 제기하였다.[16] 고분의 축조가 漢代에 유행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리적으로 인접했던 遼東과 평양 일대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임을 밝히고, 특히 그 과정에 집중함으로써 문화의 확산과 흡수, 구축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孔錫龜 역시 安岳3號墳의 정체성을 밝히는 과정에서 沂南漢墓의 行列圖, 百戱舞樂圖, 侍從人物圖의 예를 들어 幢의 출현과 관련하여 벽화 소재의 유사성을 언급하였지만,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17]

安岳3號墳과의 관련성이 제기된 고분이기는 하지만 沂南漢墓에 대한 전문적인 국내의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고, 국내에서의 많은 연구는 피장자의 신분을 밝히는 데 집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까지 밝혀진 도상의 세부적 모티프 분석을 토대로, 이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한다면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하게 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_ 중국 연구자들의 시선

중국에서 진행했던 東北工程이 중국의 東北 三省을 위주로 진행되었던 만큼,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중국의 연구 역시 東北 三省의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특히 吉林省 集安 高句麗古墳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18] 현재 북한 땅에 있는 安岳3號墳에 대한 관심은 그보다

16) "안악3호분이 지니는 고분구조 및 벽화구성상의 특징은 이와 같은 정치적, 사회 · 문화적 변동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후한 말까지 산동 일대에 유행하던 화상석묘 축조 및 화상 제작 전통의 한 줄기가 2세기 말 이후 계속되는 정치 · 사회적 혼란으로 말미암아 동북 변경으로 흘러들어가 4세기 초의 격렬한 전란을 한번 더 겪은 뒤, 옛 대방지역의 중심부 안악일대에서 요양으로부터 전래된 새로운 벽화구성 방식과 만나 상승작용을 일으킨 결과가 안악3호분이 아닐까." 전호태, 2006, 위의 글, 149~150쪽

17) 孔錫龜, 2005, 앞의 글, 205~207, 209~213쪽

18) 吳廣孝, 2006, 『集安高句麗壁畵』(山東畵報出版社) 등. 高句麗 古墳에 대한 연구는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덜한 것이 사실이다.[19] 게다가 安岳3號墳의 墓主가 前燕의 冬壽였다는 전제로 연구하기 때문에 무덤의 정체성에 대한 다른 접근은 시도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중국 연구자들의 경우, 安岳3號墳의 被葬者 문제가 비단 북한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고고미술사 분야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인데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거나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20]

張明皓는 安岳3號墳과 고대 중국의 여러 고분, 가령 棒台子壁畵墓 등의 건축적 구조를 비교하면서 유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安岳3號墳의 경우 沂南漢墓의 천장 양식인 藻井이 건축 구조상 매우 유사하다고 언급하면서, 두 무덤의 건축방식의 특수성을 볼 때 역사적 뿌리를 같이하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21] 그러나 이는 역사적 조건이나 배경, 무덤 벽화 등의 세부내용을 간과하고 건축학적 시각으로 판단한 성급한 결론이라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

孫進己 · 孫泓은 3~7세기 集安과 平壤 지역에 조성된 벽화묘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현재 북한 땅에 있는 安岳3號墳과 德興里 古墳 벽화를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삼아, 1950년대부터 남 · 북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일련의 연구에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연구 결과를 조목조목 분석하였다. 이들은 安岳3號墳을 고구려 왕릉으로 보는 북한 학자들의 학설을 비판하면서, 이 무덤은 고구려인이 아닌 中國系 冬壽의 무덤일 뿐, 고구려 무덤은 아니라고 결론내렸다.[22] 이들은 북한 연구자인 孫永鐘 등이 제기했던 가설, 즉 安岳 지

19) 지난 2001년 북한이 유네스코에 고구려 고분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려 하자, 현지답사 등을 요구하는 북한의 요청을 거부함으로써 북한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보류되었다. 그러나 몇 년 뒤 고구려 고분군은 중국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최광식, 2009, 앞의 책, 7~18쪽. 安岳3號墳은 현재 북한의 영토에 있고, 墓主 또한 망명자라는 점 때문에 중국 연구자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0) 張明皓는 "안악3호묘는 동수묘라고도 한다(安岳三號墓, 又稱冬壽墓)"라는 말로 글을 시작하고 있다. 張明皓, 2007, 앞의 글, 24쪽

21) 張明皓, 2007, 위의 글, 28쪽

22) 孫進己 · 孫泓, 2004, 「公元3-7世紀集安與平壤地區壁畵墓的族屬與分期」, 『北方文物』 2, 37~3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은 과거 小國의 임시 國都였을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는 억측일 뿐만 아니라, 漢字에 무지하거나 고의적으로 왜곡한다며 신랄하게 비판하였다. 심지어 '故國原王'의 '故國原'은 '옛 나라의 하천(故國川)', '옛 나라의 계곡(故國谷)'처럼 '옛 나라의 평원'의 의미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23]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고구려가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였다면 이 같은 반응과 비난은 불필요할 것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중국 연구자들은 고구려를 그들의 소수민족의 하나로 전제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24] 이러한 전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安岳3號墳이 中國系 貴族의 무덤이었으며, 일방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 외에 다른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

고구려 땅에서 造營된 前燕人 冬壽墓의 형성이 곧 중국 무덤문화의 일방적인 전파 또는 재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기존 중국 연구자들의 시각은 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3) "孫永鐘說過去小國所在地或臨時國都, 但不知安岳曾是什么小國之都? 何時曾成爲臨時國都? 這是完全毫无根據的臆想, 同時也表現了他們對漢語的無知或故意歪曲. "故國原"只能是高句麗故國之原, 這與故國壤 · 故國川 · 故國谷是同樣的用法." 孫進己 · 孫泓, 2004, 앞의 글, 39쪽

24) 초기만 하더라도 중국은 지금의 국경을 중심으로 중국 영토 내의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이고, 영토 밖의 고구려만 한국사라고 주장하였으나, 이제는 고구려의 역사 모두를 중국의 역사로 왜곡하고 있다. "고구려를 고대 중국의 일개 지방민족정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 중국 학계에 고구려 정권의 귀속에 대한 부정확하고 착오적인 견해들이 다수 존재하였으나, 이제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다양한 견해를 정리하고 있다. 그동안 고구려의 역사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분분했으나 국가적 프로젝트인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를 중국의 지방정권으로 단정, 공식적인 견해로 확정해 버린 것이다." 최광식, 2009, 앞의 책, 15~16쪽
高句麗 古墳에 관한 연구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전제로 시작하고 있다. "고구려는 중국 동북 지역에 살던 오래된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高句麗是起源于我國東北地區的古老少數民族之一.)" 魏存成, 2005, 『高句麗遺迹』, 文物出版社, 2쪽. 대부분의 연구서 또는 연구물이 동일한 전제로 시작되고 있으며,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고구려 문화 자체가 중국으로부터의 수혜 덕분에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鐵器문화와 漢字, 宗教 등 高句麗의 문화 인자 역시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고구려 문화의 근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李若暹, 1996, 「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略述」, 『通化師院學報』 31, 66~68쪽

판적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객관적이고 타당한 결론 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Ⅲ. 圖像學과 무덤 壁畵

圖像學(iconography)[25]이란 주제나 의미를 형식과 대별하여 다루는 미술사의 한 분야로서, 순수한 형태로 파악되는 것의 의미, 상징, 주제들을 탐구하기 위한 학문이다. 에르빈 파노프스키(Erwin Panofsky)는 눈에 보이는 사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상징성을 갖는지에 대해 연구함으로써 '일차적 또는 자연적 주제', '이차적 또는 관습적 주제', '본래 의미 또는 의미 내용'의 단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일차적 주제란 순수한 형태가 일차적 또는 자연적 의미의 매개체로 파악되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는 순수 모티프를 열거하는 방식이며, 이것이 바로 前도상학적(pre-iconographical) 기술이 된다. 그런데 그 형태가 단순 모티프에 지나지 않고 테마를 표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이미지, 이야기 또는 알레고리가 되고, 이미지나 알레고리를 통해 전달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도상학적 해석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상의 내용을 통해 한 국가나 시대, 계급 그리고 종교 및 철학적 신조를 읽어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도상학적 해석'이 된다는 설명이다. 도상학적 해석은 종합 직관으로서 개인의 심리와 세계관에 따라 좌우되며 이를 통해 문화적 징후 또는 일반적인 '상징'의 역사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26] 가령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나무가 한갓 자연물이 아

25) 圖像學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을 밝힌다. 에르빈 파노프스키, 이한순 옮김, 2003, 『도상해석학 연구』, 시공사, 23~37쪽
26) 에르빈 파노프스키, 이한순 옮김, 2003, 위의 책, 3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니라 좀 더 심후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현재와 시 · 공간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동일한 모티프라 하더라도 漢代 무덤 벽화 속의 것과 고구려 고분 속의 그것 역시 다른 의미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의 여지를 둘 수 있는 것은 도상학적 접근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결론이다.

에르빈 파노프스키는 과거의 도상을 해석할 때 쉽게 범하는 문헌과의 대조를 통한 해석에도 비판을 가한다. 물론 문헌이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문헌을 무비판적으로 적용했을 경우 올바른 분석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덤 벽화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히 무덤은 상징적 공간인 만큼 표현된 소재가 표면에 드러난 것만으로 무덤 벽화의 의미를 논하기 어렵다. 벽화에 표현된 개별 주제가 다른 시대와 국가 등을 배경으로 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어떠한 기제와 방식으로 조합되어 의미망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무덤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누락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27] 특히 중국의 경우 무덤 벽화는 역사학, 고고학, 고고미술학 등 실증주의적 학문 분과의 대상이 됨에 따라 많은 문물자료가 문헌의 방증자료로 활용되어 왔고,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조건을 고려한다면 도상학적 접근은 더욱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의례적 장소인 무덤에서 개인성과 상징성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고, 이는 도상학적 해석을 통해 확인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安岳3號墳과 沂南漢墓 벽화에 나타난 개별 모티프의 배합과 배열 방식에 초점을 두어 논지를 진행하고자 한다. 도상학적 관점에서 보았

27) "'본래적 의미 또는 숨은 내용(Eigentliche Bedeutung oder Gehalt)'. 작품의 본래적 의미를 파악하려면 작품의 발생 환경을 이루는 한 국가, 시대, 계급, 종교적 교리와 철학적 확신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이런 요소들이 한 개인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그리고 어떤 주제가 작품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드러내는 다양한 관점 뒤에 숨은 기본 원칙들을 밝혀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들은 '구성방법들(Kompositionsmethoden)'을 통해, 또는 '도상의 의미(ikonographische Bedeutung)'를 통해서 투영되거나 드러난다." 에르빈 파노프스키, 이한순 외 옮김, 2005,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14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때 모티프의 소멸, 동일 모티프의 재현, 새로운 모티프의 출현과 배열 순서, 배열 방식은 심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고구려 땅에 있는 前燕 출신 장수라는 이색적인 조합은 곧 중국계 문화와 고구려 문화의 접합, 흡수 과정을 보여주게 될 것이고, 이 흐름 속에서 '선택/배제－변환－수용'의 과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논문은 多室墓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墓室 벽화의 개별적 모티프와 이들의 유기적 배열 방식을 도상학적으로 분석하여 두 무덤의 문화적 정체성과 고유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두 무덤의 透視圖와 平面圖를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沂南漢墓를 살펴보자(그림 1). 이 무덤은 葬儀文化가 성대하게 꽃피웠던 漢代의 종교문화사적 흐름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고분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중국 고유의 토착종교인 道敎, 외래종교인 佛敎的 요소가 녹아든 고분이기도 하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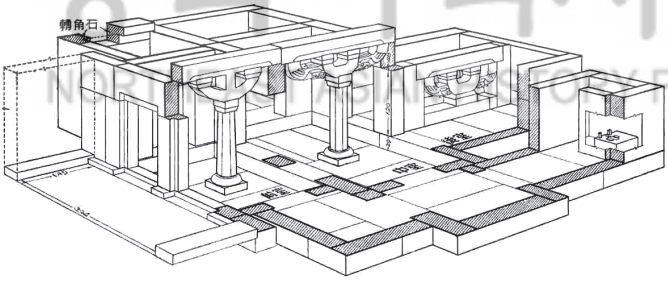

〈그림 1〉 沂南漢墓 透視圖

다음은 주요한 연구 대상인 安岳3號墳의 투시도이다(그림 2). 무덤 속에 있는 묵서명에 永和 13(357년)이라는 정확한 시기가 제시됨에 따라 고구려 고분의 조영 연대 등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무덤이며, 多室墓의 전형인 品字形 또는 T자형 무덤으로 손꼽히기도 한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두 무덤의 투시도이다(그림 3 · 4). 두 무덤은 모두 길게 이어진 세 칸의 무덤방, 가운데 방과 연결된 양쪽 側室(곁방)로 연결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무덤 속 묘실 배치는 평면도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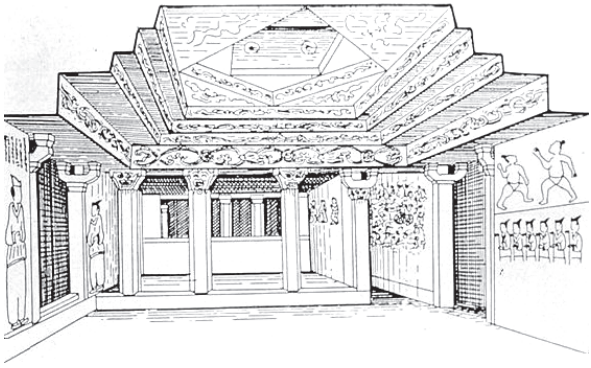

〈그림 2〉 安岳3號墳 透視圖

다.[28] 沂南漢墓는 前室, 中室, 後室, 側室로 구성되어 있고,[29] 安岳三號墳은 문방, 앞방, 널방이 일직선으로 연결되어 있고 앞방의 양쪽으로 곁방이 연결되어 있으며, 앞방에서 시작된 회랑이 널방을 감싸고 있는 모습이다.

두 무덤을 비교했을 때 드러나는 공통점이자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무덤 속 팔각기둥이다.[30] 沂南漢墓에는 前室과 中室 한가운데에 기둥을 세웠지만, 安岳3號墳의 무덤에는 앞방과 널방의 연결지점과 널방 뒤쪽에 여러 개의 기둥을 세웠다.[31] 무덤의 기둥은 중국 漢墓와 고구려 고분에서 보편적이지 않은 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8) 그림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南京博物院 · 山東省文物管理處, 1956, 『沂南古畵像石墓發掘報告』, 新華書店; 〈그림 4〉－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125쪽

29) 墓室은 墓門, 前室, 中室, 後室과 동쪽 세 개의 側室, 서쪽 두 개의 側室로, 즉 모두 8개의 무덤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山東沂南漢墓畵像石』, 濟魯書社, 1쪽

30) 두 무덤이 비교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둥'의 존재이다. 알려진 것처럼 중국계 古墳이든 고구려 古墳이든 기둥은 흔하지 않은 것이다. 沂南漢墓에서는 前室과 中室 가운데 기둥을 세웠고, 安岳3號墳은 기둥을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공간을 나누고 있다.

31) "전실(앞방)의 동, 서 양쪽에 측실이 있다. 전실과 현실(널방) 사이에는 기둥을 세워 구획하였다. 기둥은 네 개를 세웠는데, 서쪽에서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3개는 팔각 기둥이고, 후실이 끝나는 곳에는 4각 기둥을 하나를 세웠다. …… 후벽 즉 북벽은 60cm 정도 벽을 쌓고 그 위에 4각 기둥 3개를 세웠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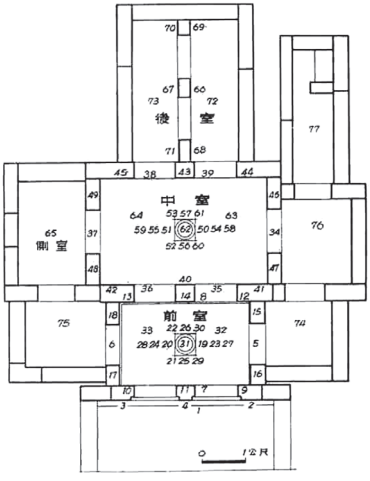

〈그림 3〉 沂南漢墓 平面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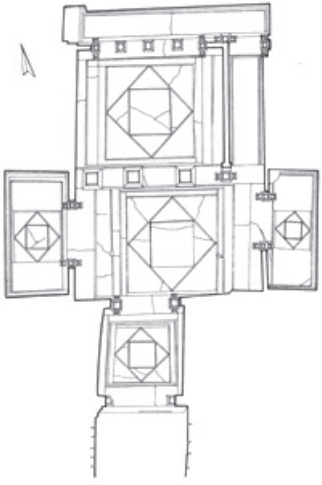

〈그림 4〉 安岳3號墳 平面圖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큼, 이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논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조영 연대는 다르지만, 沂南漢墓와 安岳3號墳은 유사한 지점이 많다. 건축적인 면을 보았을 때 일직선으로 연결된 세 개의 방, 동쪽과 서쪽의 측실로 이루어진 多室墓라는 점이 닮았고,[32] 기둥의 사용도 유사하다. 그러나 무덤 속 벽화의 내용을 보았을 때, 유사하면서도 분명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논문에서는 벽화를 구성하는 개별적 모티프에 대한 구체적 비교가 아니라, 벽화의 소재가 무덤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구현되는지를 궁구하여 무덤의 의미, 상징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007, 앞의 책, 30~31쪽

32) 건축구조와 유형을 살펴보았을 때, 이들의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安岳3號墳과 유사한 시기에 조영된 다른 고분들, 가령 만보정 1368호분, 요동성총, 평양역전 벽화분, 태성리2호분 등을 살펴보았을 때, 무덤방을 일렬로 정리하고 측실을 둔 형태의 무덤은 찾아보기 어렵다.

Ⅳ. 圖像學的 시각으로 본 沂南漢墓와 安岳3號墳

1_ 沂南漢墓 前室과 安岳3號墳 문방

먼저 沂南漢墓의 墓室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沂南漢墓의 墓門에는 크게 두 개의 출입구가 있다(그림 5). 묘문 상단부의 횡액에는 胡漢交戰圖가, 서쪽과 동쪽 기둥에는 각각 西王母와 東王公이, 가운데 기둥에는 활을 팽팽히 당긴 力士와 異獸가 淺浮彫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33]

門楣에는 胡漢交戰圖가 보인다.[34] 다리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대치한 두 종족의 싸움은 '서로 다른 세계'로의 진입, 이동을 상징하는 알레고리이다. 힘겹게 보이는 싸움은 곧 다른 세계의 진입을 위해 꼭 거쳐야 할 통과의례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통과의례를 거쳐야 비로소 神異한 세계로 진입할 수 있는데, 이 세계는 묘문의 도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門楣의 아래쪽, 입구의 양 옆에는 不死藥을 선사하는 女神 西王母와 配偶神 東王公이 나란히 자리잡고 있고, 가운데는 상상계 속의 神과 神獸가 배치되어 있다. 무덤은 죽음이라는 통과의례를 넘어선 불멸과 영생을 누릴 묘주의 공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33)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앞의 책, 7쪽

34) 이것이 서로 다른 두 민족의 싸움을 보여준다는 증거는 다리를 중심으로 대치한 두 종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복장과 모자를 쓰고 있다. 信立祥은 많은 漢軍과 胡軍이 싸움을 하고 있고 도상 가운데 다리 위에서는 이미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것은 胡 · 漢 전쟁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車馬出行의 한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 信立祥, 2000, 『漢代畵像石綜合研究』, 文物出版社, 257~258쪽. 信立祥은 胡漢交戰圖에서 중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다리와 그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어 信立祥은 이 싸움이 다리[橋]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다리 아래로 흐르는 물을 강조한 것이고 이 물은 고대 중국의 우주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 장면에서 漢軍은 묘주의 군대이고 胡軍은 冥界의 군대라고 설명하였다. 信立祥, 2000, 앞의 책, 328~2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5〉 沂南漢墓 墓門

前室의 네 면은 출입구를 제외한 벽면과 橫額에 내용이 석각되어 있다. 前室 橫額에는 현실과 비현실적 소재가 뒤섞여 있는데, 벽면에는 마치 하늘로 향하는 듯한 모습의 神靈異獸들이 표현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뚜렷한 의도를 드러내는 듯 네 방향의 橫額에 각기 다른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墓門을 들어서자마자 마주하게 되는 前室 北壁부터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6〉 沂南漢墓 前室 北壁

前室 北壁 橫額에는 호랑이 얼굴에 날개 달린 물고기(그림 7), 多頭獸(그림 8), 獨角獸를 비롯한 다양한 神靈異獸가 있으며, 테두리에는 작은 포수함환과 연꽃 문양이 빼곡하게 장식되어 있다. 中室로 들어가는 입구인 前室 北

〈그림 7〉 前室 北壁

〈그림 8〉 多頭獸

壁의 기둥의 양쪽에는 龍과 虎가, 가운데에는 玄武와 神鳥(朱雀으로 추정되는), 무기를 든 상상계 속의 力士 또는 怪獸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35](그림 9). 중국 고대 문헌인 『山海經』에 등장하는 각종 神獸와 神人 등을 망라한 듯 온갖 기이한 존재들이 다채롭게 등장하고 있다(그림 9).

〈그림 9〉

前室의 西壁 횡액에는 祭祀圖가 묘사되어 있다(그림 10). 오른쪽 끝에는 반쯤 열린 문이 있고, 사람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의관을 정제한 사람들이 엄숙한 자세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벽면의 한쪽에는 용, 호랑이, 神獸, 神鳥가, 또 다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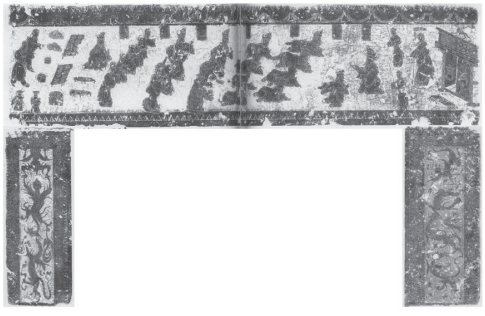

〈그림 10〉 沂南漢墓 前室 西壁

35)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앞의 책, 78~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에는 날개 달린 용, 호랑이, 神鳥와 羽人이 묘사되어 있다.[36]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 상상적 존재의 출현은 공간의 성격을 잘 말해 준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구축된 것이다.

前室 南壁의 橫額 역시 祭祀圖이다[37](그림 11). 가운데에는 문이 살짝 열린 사당이 있고, 문 양옆으로는 人首蛇身이 시립하고 있으며, 각기 마차를 타고 온 사람들은 사당을 향해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 예를 취하고 있다. 횡액의 祭祀圖에 각종 瑞草, 人首蛇身, 神鳥 등이 표현된 것으로 보아 이는 사후 세계에서 제사를 받는 墓主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西壁 횡액에서 보이던 엄숙한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농후하며 현실과 비현실적 소재가 뒤섞여 묘사되어 있다. 橫額 아래쪽 벽면에는 두 쌍의 시립인이 서 있고, 神鳥와 瑞草로 장식된 커다란 북과 그것을 두드리는 사람이 생동감 넘치게 표현되어 있다. 山東 지역 畵像石에서 자주 발견되는 북을 치는 모습, 즉 建鼓는 辟邪와 더불어 善神을 부르고, 昇仙을 돕는 상징성으로 사용되었다. 前室의 建鼓 모티프 역시 辟邪와 祥瑞의 招致, 결과적으로 昇仙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 선택된 것이다.[38]

前室 東壁의 橫額은 弔文圖이다[39](그림 12). 뒤집어진 기역(ㄱ)자 모양의 집 앞에 한 사람이 시립하고 있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 허리를 숙이고 있다. 아래쪽에는 날개 달린 용과 호랑이, 험악한 표정의 神人이 묘사되어 있다. 꿈틀

36)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위의 책, 78~79쪽. 『山東沂南漢墓畵像石』에서는 前室 西壁에 보이는 새를 朱雀이라고 하였으나, 크기나 세부 묘사를 보았을 때 朱雀임을 확인하기 어려워 이 논문에서는 神鳥라고 표현하였다.

37)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위의 책, 78쪽

38) 북을 치는 '建鼓' 소재는 산동 藤州에서 가장 많은 수가 출토되었는데, 建鼓는 대체로 '昇仙'과 직 · 간접적 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漢書』 등의 문헌 기록에 따르면 북은 악귀를 쫓아내고 善神을 부르는 역할도 하고 있다. 柳江夏, 2010, 『圖像 문명의 이동을 말하다 – 한대 서왕모 화상석의 종교문화사적 해부』, 심포지움, 150~153쪽. 朱存明은 畵像石의 建鼓 모티프는 신을 즐겁게 하고 조상의 영혼을 승선하게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하였다. 朱存明, 2005, 『漢畵像的象徵世界』, 人民文學出版社, 184쪽

39)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앞의 책, 7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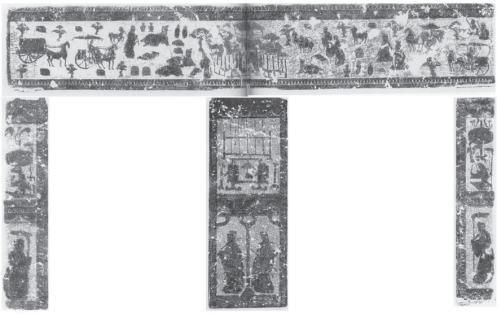

〈그림 11〉 沂南漢墓 前室 南壁

거리는 것처럼 생동감 넘치게 표현된 神龍과 神虎는 祥瑞의 표현을 뛰어넘어 雜鬼를 차단하고, 또한 墓門에 표현된 사후 세계와의 왕래를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4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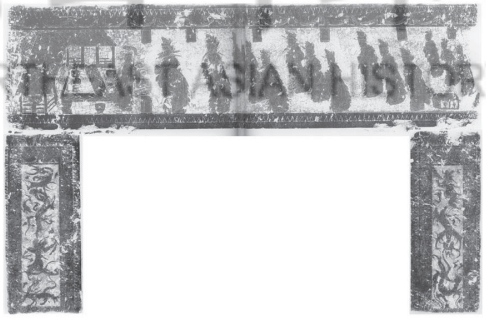

〈그림 12〉 沂南漢墓 前室 東壁

前室의 네 벽면 畵像石은 뚜렷한 주제가 없는 듯 보이지만, 이는 현실과 사후 세계에서 여전히 계속될 墓主에 대한 공경[祭祀]을 표현한 동시에, 철저

40) "왼쪽에는 창룡이 꿈틀거리며, 오른쪽에는 백호가 달린다. 해와 달로 덮개를 삼고, 옥녀를 뒷수레에 태웠다. 캄캄한 속으로 힘차게 달려 곤륜산에서 쉰다(蒼龍蚴虯于左驂, 白虎騁而爲右騑. 建日月以爲蓋兮, 載玉女於後車. 馳.於杳冥之中兮, 休息乎崑崙之墟)."(『楚辭』「惜誓」)

한 辟邪를 표현한 공간임을 알 수 있다. 前室의 동 · 서쪽에는 현실 속의 제사와 조문을 표현하고, 후실까지 이어지는 일직선 위의 공간인 남벽과 북벽에는 각각 상상계 속의 비현실적인 요소를 취함으로써, 辟邪와 祥瑞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의 천장에는 강력한 辟邪의 상징인 穿壁과 불교적 요소인 연꽃문양을 조각해 넣음으로써 공간의 성격을 더욱 분명하게 구축하였다.

무덤의 입구이자 외부와의 경계선에 있는 무덤방인 前室은 통과의례의 공간인 동시에 강력한 辟邪가 필요한 공간이다. 남겨진 후손에게 亡者에 대한 보호 및 충고와 바람도 잊지 않고 있다. 沂南漢墓의 前室은 당시 유행하던 사후 세계로의 순수한 열망이 뒤섞인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安岳3號墳의 문방에는 벽화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 安岳3號墳의 문방은 神道의 기능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방을 중심으로 회랑과 곁방, 널방이 연결되어 있어, 앞방으로부터 본격적인 무덤방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인다. 安岳3號墳의 문방은 神道의 역할로, 무덤 입구까지의 안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벽화는 남아 있지 않지만, 무덤방의 구획, 방의 크기 등으로 보아 입구에 중요한 비중을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_ 沂南漢墓 中室과 安岳3號墳 앞방

沂南漢墓의 中室은 前室과 墓主가 잠든 後室(主室)을 이어주는 공간이다(그림 13 · 14 · 15 · 16). 中室 벽면에는 문자를 발명한 蒼頡과 沮誦, 荊軻刺秦王, 周公輔成王, 衛姬諫齊桓公, 聶政刺俠累 등의 역사고사로 가득한데, 이러한 고사는 유교적 관점에서 본보기가 될 만한 고사가 대부분이다.[41] 信立祥은 묘주 개인과 무관한 역사고사를 주요한 소재로 채택한 것은 도덕적으로 평가 가능한 인물들을 나열함으로써 "악함을 보여 세상에 경계하고, 선함을 후세에 보

41) 信立祥, 2000, 앞의 책, 253~255쪽

이려는(惡以誡世, 善以示後)" 의도라고 설명하였다.[42] 무덤은 개인만을 위한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정치적이거나 도덕적 개념을 제시하는 공적 공간으로서의 기능도 일부 담당하는 셈이다.[43]

中室의 北壁은 묘주가 잠들어 있는 後室로 연결되는 입구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데, 北壁 前室에서 中室로 들어서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면인 北壁의 橫額에는 화상석의 보편적 주제인 車馬出行圖가 보인다(그림 13). 車馬를 끄는 말들은 갈기가 날리고 있어 정지한 것이 아니라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이 생생하다. 길고도 중요한 여정임을 강조하듯 車馬出行圖는 西壁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다. 아래쪽에는 왼쪽부터 차례로 긴 칼을 빼든 무시무시한 호위무사와 神獸, 周公輔成王 故事, 完璧歸趙 故事가 나란히 묘사되어 있다.[44] 完璧歸趙 故事의 선택이 눈길을 끈다.[45] 藺相如가 천하의 보물인 和氏璧을 완벽하게 보존하여 가지고 돌아왔다는 故事는 '忠'이라는 유교적 도덕 관념의 구체적 표현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보물 和氏璧의 상징적 표현이다. 여러 개의 璧을 묘사한 것보다 천하의 보물인 和氏璧을 통해 後室(主室) 입구의 辟邪를 더욱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는 셈이다.

中室 西壁의 橫額은 북벽에서 이어진 車馬出行圖가 이어지고 있다(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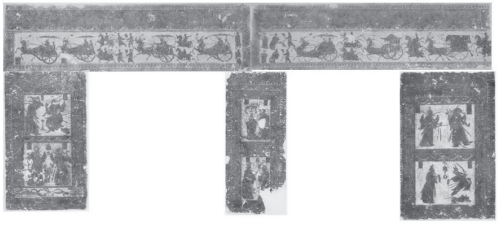

〈그림 13〉 沂南漢墓 中室 北壁

42) 信立祥, 2000, 앞의 책, 119쪽
43) 巫鴻, 김병준 옮김, 2003, 『순간과 영원－중국 고대의 미술과 건축』, 아카넷, 560쪽
44)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앞의 책, 79~80쪽
45) 『史記』「廉頗藺相如列傳」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4). 북쪽에서 시작하여 서쪽까지 이어진 거대한 행렬, 서쪽을 향한 車馬行列은 매우 뚜렷한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서쪽 끝 崑崙山에 살고 있다는 불사의 여신인 西王母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46] 墓門에서 이미 확인한 것처럼 墓主의 가장 큰 목표는 西王母가 다스리는 세계로의 진입이다(그림 5). 아래쪽 벽에는 의관을 정제한 네 쌍의 사람과 神人이 각기 손에 무기를 들고 서 있어, 墓主를 굳건히 지킨다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덟 명은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을 듯한 인간과 비현실적 神人이 뒤섞여 있다. 이는 사후 세계와 현실, 聖과 俗을 아우르는 공간에서의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보호 조치라 할 수 있다.

〈그림 14〉 沂南漢墓 中室 西壁

中室 南壁의 橫額에는 迎賓圖와 廚房圖가 나란히 묘사되어 있다(그림

46) 巫鴻은 沂南漢墓의 거마행렬의 목표지점이 묘지의 입구라는 唐琪(Lydia Thompson)의 견해에 동조하였고(巫鴻, 鄭岩 · 王睿 編, 鄭岩 等 譯, 2005,『禮儀中的美術』, 三聯書店, 264쪽) 信立祥 역시 車馬出行의 목적지는 祠廟라고 설명하였다(信立祥, 2000, 앞의 책, 253쪽). 그러나 상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인 墓門과 中室 기둥에 석각된 西王母 · 東王公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西王母와 東王公은 관습적 표현일 뿐일까? 山東 지역의 다른 車馬行列과 마찬가지로 西王母를 중심으로 구현된 仙界라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어 보인다. 특히 前室과 中室 기둥 상단부에 자리잡은 西王母와 東王公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유강하, 2010, 앞의 책, 166~167쪽

15). 횡액은 다시 둘로 나뉘는데, 오른쪽 도상을 먼저 살펴보면 '日'字 모양의 집이 있고, 바깥쪽에는 雙闕이 보이며, 侍從과 말, 車馬가 서 있다. 사람들은 일제히 손님이 온 방향인 동쪽을 향해 무릎을 꿇거나 허리를 숙여 공손함과 환영을 표현하고 있다. 집 옆으로는 연회를 준비하는 분주한 주방이 묘사되어 있다. 음식을 실어 나를 수레와 연회에 쓸 고기를 도살하는 장면, 크고 작은 그릇이 어지럽게 널려 있어 성대한 연회를 실감나게 표현해 준다. 畵像石에서 天界의 입구를 상징하는 알레고리로 종종 표현되는 雙闕과 神靈異獸의 표현을 보아 현실 속에서의 연회라기보다는 사후 세계의 삶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5〉 沂南漢墓 中室 南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는 中室 東壁 橫額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그림 16). 中室 東壁 횡액은 百戱圖로서, 기묘한 재주를 뽐내는 藝人들과 樂師들로 가득하다.[47]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도상 오른편의 車馬에는 커다란 북이 세워져 있고 뿔과 날개가 달린 용이 거마를 끌고 있으며, 그 앞쪽으로는 사람의 키를 훌쩍 넘는 神鳥가 묘사되어 있다. 이는 지상을 떠나 안착한 墓主를 맞이하는 환영식 장

47) 물론, 藝人들이 神鳥나 異獸들의 가면을 쓰고 百戱를 연출하는 장면이라는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安岳3號墳에 이르면 이처럼 떠들썩한 연회는 보이지 않는데, 沂南-遼陽-安岳 루트에 있는 遼陽 北園 6호분과 遼陽 棒台子 벽화분(1호분) 등에서도 沂南漢墓와 매우 유사한 百戱圖가 발견되었다. 강현숙, 앞의 책, 147~153쪽 참조. 그러나 이 百戱圖는 安岳3號墳에 이르면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면 또는 신을 즐겁게 하는 演戱로 이해되곤 한다. 이처럼 前室을 지나 中室에 이르면 昇天에 대한 갈망과 욕구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沂南과 安岳 사이의 遼陽 지역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百戱圖가 安岳3號墳에서는 그 흔적을 발견하기 어려운데, 이는 뒤쪽에서 따로 언급하도록 한다.

〈그림 16〉 沂南漢墓 中室 東壁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中室 벽에 보이는 神靈異獸는 이 무덤이 현실에서 이어진 사후 세계로의 이동, 또는 사후 세계를 구현하려 했음을 보여준다. 현실적 소재와 비현실적 세계가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잘 섞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安岳3號墳의 앞방 네 벽은 다음과 같은 모습이다(그림 17 · 18 · 19 · 20). 安岳3號墳의 앞방은 일종의 연결 공간이자 완충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墓主의 공간인 널방으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두 칸뿐인 곁방의 입구가 연결된 곳이며 회랑도 바로 앞방에서 시작된다. 본격적인 무덤방이라고 할 수 있는 앞방 입구의 경계면에는 상단부에 위압적인 鬼面이 조각된 네 개의 기둥이 보인다(그림 17). 鬼面은 漢畵像石의 주요한 소재였던 鋪首銜環을 연상시키는 것으로,[48] 墓主의 관이 있는 널방의 보호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된다.

沂南漢墓의 側室은 기물을 보관하는 장소로, 벽에 별다른 장식을 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安岳3號墳의 서쪽 곁방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그림

48) 특히 漢墓의 鋪首銜環은 묘문 입구에 주로 배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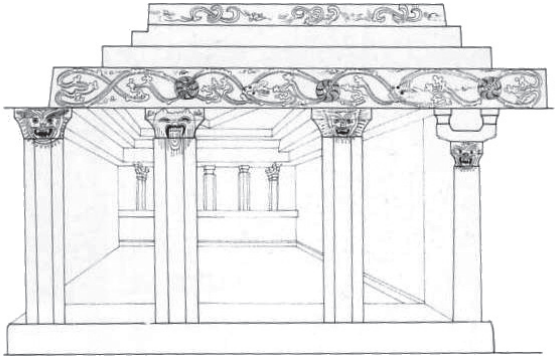

〈그림 17〉 安岳3號墳 앞방 북쪽(安岳3號墳 널방 입구)

18). 이 무덤의 정체성을 가늠하게 하는 墓主 초상이 있는 서쪽 곁방 입구의 양쪽 벽면에는 두 명의 시종무관 혹은 수문장에 해당하는 帳下督이 시립하여 墓主를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무덤의 紀年과 墓主를 알 수 있는 墨書銘 또한 서쪽 곁방 입구에 기록되어 있다.[49] 帳下督은 무덤 주인의 초상이 있는 측실의 안내자이자 측실 입구에서 측실 공간을 보호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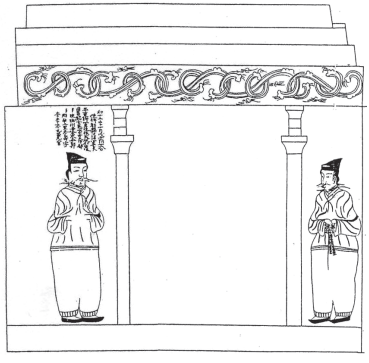

〈그림 18〉 安岳3號墳 앞방 서벽(安岳3號墳 서쪽 곁방 입구)

49) 왼쪽 帳下督의 머리 위에 "永和十三年十月戊子朔 廿六日 癸[丑]使持節都督諸軍事 平東將軍護撫夷校尉樂浪 [相]昌黎玄 帶方太守都 鄉侯幽州遼東平郭 都鄉敬上里冬壽字 □安年六十九薨官"이라는 묵서명이 보인다.

입구이자 출구인 문방으로 이어지는 南壁의 오른쪽 상단부에는 입구를 향해 사람들이 측면 자세로 서 있고, 아래쪽은 대부분 흔적이 남아 있지 않다(그림 19). 이 벽화 내용은 舞樂儀仗圖로, 상단부에는 大角을 불며 나아가는 인물도와 더불어, 하단에는 큰 북을 치거나 簫를 부는 광경이 희미하게 남아 있다. 이는 貴人의 행차에 따르는 鼓吹樂手를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南壁의 왼쪽에는 戰吏라는 朱書가 있고 일렬로 늘어선 일곱 명의 사람은 손에 旗처럼 보이는 의장물을 들고 있으며, 그 아래쪽에는 斧鉞手, 帳下督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다.[50] 철저히 현실적인 인물들과 구성, 배치를 보이고 있으며 상상계의 존재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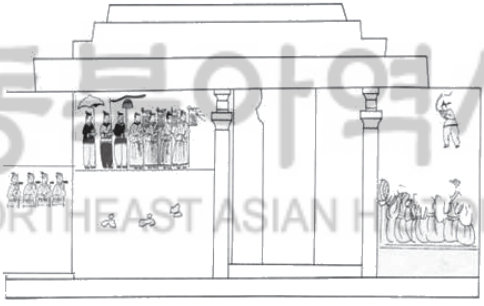

〈그림 19〉 安岳3號墳 앞방 남벽

앞방의 동벽은 동쪽 곁방의 입구이기도 하다(그림 20). 입구의 오른쪽 상단에는 보통 사람들보다 두 배 이상 큰 반라의 두 力士가 겨루고 있다. 도상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이는 매우 상징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 벽화 속의 한 사람은 커다란 눈과 높은 코의 이국적 외모를 가진 異宗族이다. 手搏圖라고 명명되는 이 벽화는 '異宗族과의 싸움'이라는 점에서 沂南漢墓의 胡漢交戰圖의 상징성과 중첩된다. 또한 胡漢交戰圖와 手搏圖가 표현된 곳은 모두 '입구'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는 것도 한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중심으로 나뉘는 두 세계

50) 『안악제3호분발굴보고』, 1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서로 다른 종족과의 대면으로 표현되고,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위한 힘겨운 과정은 싸움의 형식으로 표현되는 셈이다. 입구는 이질적인 두 공간의 중재 공간이자 통과의례를 위한 상징적인 장소로서, 위치와 표현은 다르지만 '통과의례'를 위한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싸움이라는 모티프는 동일하지만 두 무덤에 표현된 내용을 살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胡漢交戰圖라고 명명될 만큼 대규모 전투는 두 거인의 싸움으로 바뀌었는데, 흔히 手搏圖라고 불리는 이 싸움은 生死를 결정짓는 싸움이 아닌 놀이나 스포츠에 가깝다는 점이 그렇다. 또한 위치를 고려해 보면, 입구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묘문 입구 門楣 전체를 차지하던 싸움은 외양간 · 푸줏간으로 들어가는 남벽 입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싸움 모티프의 표현 방식과 배치는 동일 모티프에 대한 의미 축소로 독해된다. 이러한 변화의 밑바탕에는 '昇天의 힘겨운 과정'이라는 생각에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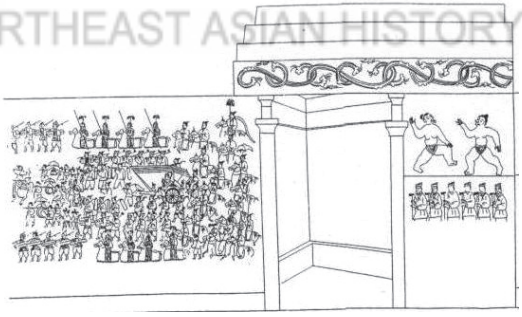

〈그림 20〉 安岳3號墳 앞방 동벽(安岳3號墳 동쪽 곁방 입구)

무덤의 구조를 보면, 앞방의 북쪽은 墓主의 棺槨이고, 앞방의 양쪽 곁방은 墓主의 사적인 공간이다. 安岳3號墳의 앞방은 무덤의 상징성이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공간으로서, 무덤의 주요한 기능인 辟邪와 祥瑞 가운데 辟邪에 기능에 역점을 두었다. 무덤에 들어서자마자 네 개의 기둥에 새겨진 鬼面紋과 마주하게 되고, 양쪽에는 문지기와 '싸움'을 의미하는 手搏圖를 배치함으로써 공간

에 대한 보호조치를 고려하였다. 이는 墓主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북 · 동 · 서쪽 벽의 門楣에 모두 穿壁을 연상하게 하는 怪雲紋[51]을 묘사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앞방의 천장에는 日月像이 보인다. 日月像은 漢代부터 지속적으로 내려오던 주제 가운데 하나로, 천상 세계를 표현하거나 이들에 대한 숭배를 표현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중요성이 있었던 만큼, 漢墓에는 日像과 月像 안에는 이들을 상징하는 두꺼비, 玉兔 등의 상징물을 표현하거나 伏羲 · 女媧를 함께 묘사하기도 하였으나, 安岳3號墳의 日月像은 비교적 단조로워 보인다.[52] 沂南-遼陽-安岳 루트에서 출토된 많은 무덤에서 璧 등 辟邪와 관련된 모티프와 神獸들이 발견되었으나 安岳3號墳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무덤인 만큼 辟邪에 대한 조치를 게을리 하지 않고 있지만, 安岳3號墳의 벽사 의식은 결코 요란하거나 웅장하지 않다.

상술한 것처럼 주목해야 할 변화 가운데 하나는 '소멸'된 百戲圖에 관한 부분이다. 百戲圖는 沂南과 安岳 사이의 遼陽 지역에서 흔히 발견되는 소재지만 安岳3號墳에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 墓主를 위한 연회일 뿐만 아니라 神을 기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표현되었던 百戲의 사라짐은, 평소 연회를 즐기지 않았던 묘주 개인의 취향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과 더불어 사후 세계에 대한 묘주들의 관념 변화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53]

51) 唐草文으로 보는 견해(안휘준, 2007, 『고구려 회화』, 효형출판, 46쪽; 『안악제3호분발굴보고서』, 1958, 24쪽)도 있으나, (南北共同遺蹟調查報告書)『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의 설명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怪雲紋으로 정리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앞의 책, 32쪽)

52) 장페이페이[蔣非非] 등은 "중원지역의 민간 종교신앙도 이주민과 함께 한반도로 흘러 들어갔다. 한나라 묘지에서 자주 출토되는 도가의 음양오행사상은 고구려에서도 신앙의 일부로 되었다"(장페이페이, 김승일 옮김, 2005, 『한중관계사』, 범우, 85쪽)고 설명하고 있다.

53) 무덤이 무엇보다 墓主 개인의 취향이 농후하게 반영된 공간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_ 沂南漢墓 後室과 安岳3號墳 널방

沂南漢墓의 後室과 安岳3號墳의 널방은 기본적으로 용도가 같다. 墓主가 거주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벽화의 내용을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沂南漢墓의 後室은 主室이다. 이는 남녀 墓主의 棺槨이 놓인 방으로서, 墓主가 거주하는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이다. 後室은 좌우 두 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왼쪽 방에 남자 墓主가, 오른쪽 방에 여자 墓主가 거주한다. 前室과 中室에 비해 높이는 낮은 편이고,[54] 남녀 墓主의 각 무덤방은 서로 통할 수 있도록 위쪽을 뚫어 놓았다. 남자 묘주의 방에는 무기걸이를 비롯한 남성 용품이, 여자 묘주의 방에는 걸상과 화장도구를 비롯한 여성 용품이 있다. 또한 개인 용품과 侍從을 제외한 공간에는 위압감이 돋보이는 神人을 묘사함으로써 辟邪를 통한 보호와 안전의 조치를 잊지 않고 있다(그림 21).

漢代에 유행했던 陰陽思想에 따르면 男右女左의 구도가 되어야 하지만, 沂南漢墓는 이와는 반대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면적도 女墓主의 墓室이 조금 더 넓고, 심지어 시중드는 侍從의 숫자도 女墓主 쪽이 더 많다.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배치는 남녀 墓主의 신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55]

後室의 천장에는 마름모를 겹친 기하학적 모양의 천장, 즉 抹角藻井 천장에 연꽃을 연상시키는 문양이 淺浮彫의 형태로 조각되어 있다. 이는 兩漢 시기 유행하던 기하학 문양과 불교의 영향에서 비롯된 연꽃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둘은 모두 辟邪와 祥瑞의 의미를 담고 있다. 무엇보다 墓主가 누운 棺槨이 놓일 장소인 後室에는 墓主 부부가 생전의 삶과 변함없는 삶을 살

54) 前室의 높이가 2.45m, 中室의 높이가 2.38m인 것과는 달리 後室 무덤방의 높이는 1.48m에 불과하다.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앞의 책, 7쪽

55) 李浴亭 · 李偉은 沂南漢墓의 墓主가 後漢 시기의 陽都侯 劉邈라고 밝혔다. 李浴亭 · 李偉, 2007, 「沂南北寨畵像石墓墓主考辨」, 『沂南北寨漢墓畵像石藝術論文集』, 60쪽. 한편 여묘주에 대한 자세한 고증은 없으나, 男墓主인 劉邈보다 신분이 높은 공주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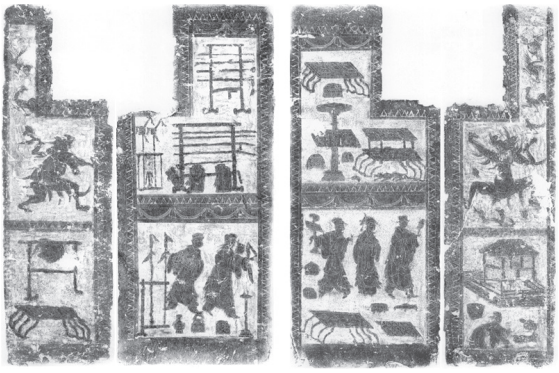

〈그림 21〉 沂南漢墓 後室

기를 바라는 마음과, 이들의 無事昇天을 바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安岳3號墳의 널방의 앞 · 뒤쪽으로는 기둥이 세워져 있다. 앞쪽 기둥 위에는 辟邪를 상징하는 鬼面이 그려져 있고, 후실은 한 단 높게 만들어졌다. 墓主의 棺槨이 놓였던 사적인 장소로서,[56] 서벽과 북벽, 동벽에 각각 벽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발굴 당시 흔적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동벽에 네 명의 인물상이 흐릿하게 남아 있다[57](그림 22). 이 가운데 세 명은 악기를 들고 있고, 한 명은 다리를 '×'자로 꼬아 어떤 행동을 보여주는 듯 보인다. 세 명이 든 악기는 왼쪽부터 차례로 거문고, 月琴과 같은 현악기, 긴 퉁소이며, 악기에 손을 올려놓은 모양을 보아, 이들은 '연주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복식과 외모를 통해 이국 출신의 무용수임을 알 수 있다.[58] 墓主의 사적인 공간에서야 비로소 묘주는 긴장을 풀고 음악을 듣거나 춤을 감상하면서 오락의 시간을 갖는 것인지도 모른다.

56) 후실은 전실보다 바닥이 높고, 발굴 당시 관판 셋이 東西 방향의 '川'字 모양으로 누워 있었다. 그러나 수차례의 도굴로, 후실 내부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안악제3호분발굴보고』, 4쪽

57) 『안악제3호분발굴보고』, 23~24쪽

58) 『안악제3호분발굴보고』, 2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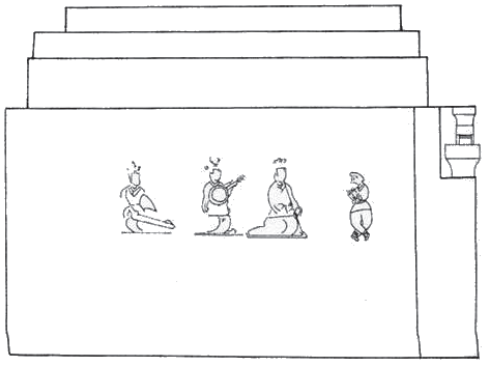

〈그림 22〉 安岳3號墳 널방 동벽

漢代 무덤 벽화에서 宴會는 산 자들이 죽은 자를 위해 베풀어 주는 것이거나,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는 것이었지만, 安岳3號墳의 배치는 이와 다르다. 앞방과 측실을 비롯하여 시종일관 진지하고 엄숙하게 묘사되었던 분위기는 이곳에 이르러 다소 자유스러워졌다. 공무를 마친 墓主가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처럼 보이기도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_ 沂南漢墓 側室과 安岳3號墳 곁방

側室은 무덤의 측면에 따로 마련된 무덤방으로 耳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무덤 속의 側室은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漢代 造營되었던 모든 무덤에 墓室이 있던 것은 아니다.

沂南漢墓의 側室은 모두 다섯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쪽에 두 칸, 서쪽에 세 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실은 그릇 등의 실물 유물들을 두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일종의 창고인 셈이다. 따라서, 이 공간은 미적인 관념이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 칸으로 조밀하게 구성된 측실에는 어떤 그림도 발견되지 않았다. 後室과 가까운 곳에 있는 오른쪽 북쪽 측실에는 화장실을 두어 後室의 공간 성격, 즉 墓主의 일상적 공간을 보여준다는 점이 흥미롭다.

반면, 安岳3號墳의 곁방은 沂南漢墓와 달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

다.[59] 먼저 서쪽 곁방을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23). 상술한 것처럼 서쪽 곁방 입구에는 두 명의 수문장인 帳下督이 지키고 있고, 입구로 들어서면 바로 마주치게 되는 정벽에는 이 무덤의 주인공인 冬壽의 초상이, 왼쪽 벽에는 男墓主인 冬壽를 향해 약간 몸을 튼 女墓主의 초상이 그려져 있다.[60] 오른쪽에도 그림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 남아 있는 그림이 없어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벽면의 상단부는 앞방의 세 면과 마찬가지로 穿壁을 연상하게 하는 무늬가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으며 위풍당당해 보이는 묘주 양쪽으로는 시종들이 시립하고 있다. 남자 묘주는 손에 깃털로 만든 부채를 들고 있는데, 이 부채에는 앞방 팔각기둥 상단에 새겨진 鬼面 모습이 보인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입을 크게 벌린 鬼面은 辟邪의 상징이기도 한데, 남자 묘주가 든 귀면 문양 깃털 부채 역시 삼국 및 위·진 시대 중국 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주술의 힘, 辟邪와 招福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61]

安岳3號墳이 눈길을 끄는 것은 현실적인 소재의 과감한 선택과 묘사의 핍진성이라 할 수 있다. 무덤 조영은 사후 세계의 인정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되는데, 이 무덤에서는 辟邪를 상징하는 귀면문과 穿壁 문양을 제외하면, 비현실적 소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墓主가 좌정한 탑개 장식이 연꽃으로 장식된 것

59) 곁방에 墓主圖를 그린 것이 安岳3號墳 고유의 것만은 아니다. 당시 墓主圖는 현실 세계를 표현하는 한 요소로, 주로 전실의 서측실이나 후실의 북벽에 위치하였다. 강현숙, 2007, 『고구려와 비교해본 중국 한, 위·진의 벽화분』, 지식산업사, 218쪽. 묘주 부부의 초상은 기남한묘-안악삼호분을 잇는 루트에서 발견되는 요양 출토 무덤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들 무덤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60) 墓主 부부의 초상은 遼陽의 많은 무덤에서도 고르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라는 의미 부여는 어렵다. 遼陽 三道壕 요업2현장 벽화분(영지령장군묘), 遼陽 上王家村 壁畵墳, 朝陽 袁臺子 壁畵墳, 朝陽 북묘촌 1호분에서도 모두 묘주의 초상, 또는 묘주 부부의 초상이 발견되었다. 강현숙, 2007, 위의 책, 144~170쪽 참조.
墓主圖 가운데서도 부부가 단독으로 표현된 예로는 朝陽 袁臺子 벽화분과 고구려의 安岳3號墳을 들 수 있다. 강현숙, 2007, 위의 책, 223쪽

61) 전호태, 2008, 『고구려 고분벽화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46~47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시 불교의 숭배라기보다는 불교적 요소의 유입으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62] 다시 말해, 安岳3號墳의 불교는 종교적 숭배의 대상보다 문화적 요소로서 채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漢畵像石의 경우, 전체 화면에 현실적 · 비현실적 소재를 고르게 사용하여 辟邪에 중점을 두어 표현했다면 安岳3號墳에는 필요한 것 외의 표현을 자제함으로써 엄숙하고 현실적인 분위기를 강조하고 있다.

서쪽 곁방 남벽에는 여자 주인공이 있으며, 맞은편 북벽의 모습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남녀 주인공의 불균등한 위치를 통해 이들의 당시 남녀의 지위에 대한 관념을 엿볼 수 있다. 서쪽 곁방 동벽 입구에는 문지기 한 사람이 두 손을 공손히 겹친 채 입구를 향해 서 있다. 벽 바로 위의 들보는 怪雲紋으로 장식되어 있고, 천장에는 연꽃이 묘사되어 있다.[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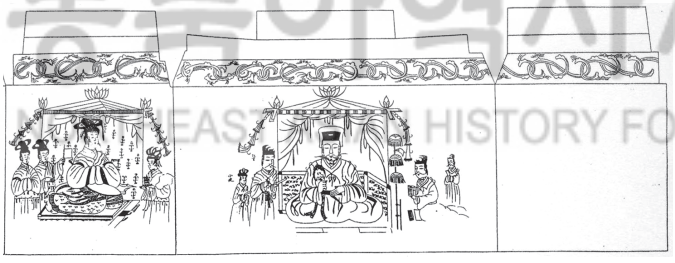

〈그림 23〉 安岳3號墳 西側室 내부

계속해서 동쪽 곁방의 벽화를 살펴보기로 한다(그림 24). 安岳3號墳 동쪽 곁방 내부 벽화에는 우물과 푸줏간, 외양간 등이 묘사되어 있다. 외양간에는 털빛이 서로 다른 소 세 마리가 묘사되어 있다. 각기 다른 형태로 그려져 있는데, 이들은 쟁기를 끌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덤 주인 부부가 나누어 타는 두 대

62) 안휘준, 2007, 앞의 책, 36쪽. 안휘준은 "불교적 영향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63)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평양일대 고구려유적』, 33쪽

의 수레를 끄는 소로 보인다. 안악3호분이 만들어진 4세기 중엽의 동아시아에서는 귀족들이 나들이를 할 때 마차 대신 우차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64] 외양간과 푸줏간의 묘사는 귀족들의 화려한 일상을 보여주는 것인 동시에, 핍진함을 더함으로써 현실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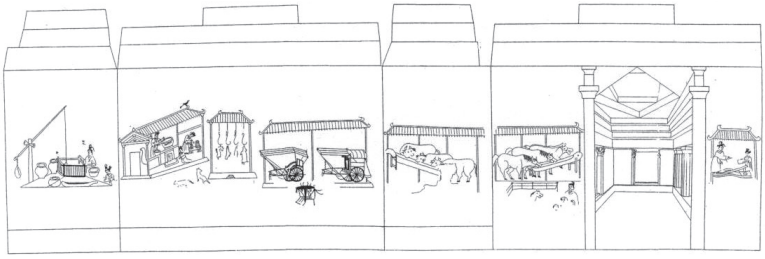

〈그림 24〉 安岳3號墳 東側室 내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또 하나 주목할 것은, 푸줏간과 외양간, 주방의 묘사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일하는 사람을 제외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중국의 벽화에서 많은 사람이 함께 즐기던 연회의 모습이 아니라, 맞은편 방의 墓主 부부만을 위한 공간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66]

무덤은 聖과 俗, 현실계와 상상계가 조우하는 공간인데도 安岳3號墳 벽화에서는 비현실적 존재나 공간을 상징하는 표현은 드물다. 漢 畵像石의 주요한 소재였던 瑞草, 神人, 異獸 등은 완벽하게 배제되어 있고, 숱한 상징성으로

64) 전호태, 2008, 앞의 책, 24쪽

65) 전호태는 외양간의 주인공인 세 마리 소에 대해 "얼룩이와 누렁이는 고개를 숙인 채 구유 속의 여물을 먹기에 여념이 없고 검둥이는 여물을 씹으며 옆의 친구들을 돌아보는 여유 있는 표정을 짓고 있다. …… 여물 먹는 소들은 덕흥리 벽화에도 보이지만 안악3호분 벽화에서처럼 개성적인 자세와 표정은 보여주지 않는다"며 다른 벽화와의 차이점을 지적한 바 있다. 전호태, 2008, 위의 책, 22~24쪽

66) 百戲圖의 소멸을 이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생전에 연회를 즐기지 않았던 墓主 개인의 취향 또는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살아 움직이는 무덤에는 오히려 마치 살아 있는 듯한 표정을 가진 동물들과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우물, 푸줏간의 모습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현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이러한 표현은 사후관과 그 구현 방식을 잘 보여준다.

沂南漢墓가 죽음이라는 통과의례를 거친 이후 신이한 사후 세계의 삶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면 安岳3號墳은 죽음의 회피나 초월적인 욕망의 분출을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현실 세계로부터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삶을 기대하는 공간인 셈이다.[67]

5_ 安岳3號墳 回廊

安岳3號墳의 회랑은 沂南漢墓와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다(그림 25). 곧은 일직선 구도로 이루어진 沂南漢墓에는 부재한 공간이기 때문이다.[68] 安岳3號墳의 회랑에는 높이 2m, 길이 6m 되는 판석에 가득 차게 그린 대규모 行列圖가 묘사되어 있다. 화면의 크기로 이 무덤 벽화에서 으뜸일 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다채로운 것도 다른 벽화와 비할 수 없을 정도이며, 등장하는 인물만도 250명 이상에 달한다.[69] 행렬도의 주인공은 冬壽로서, 동쪽 곁방

67) "고대 중국 진 · 한 시기의 숱한 제왕들이 그들의 절대권력을 영원토록 거머쥐기 위해 신선사상을 믿으며 방사를 육성하고 불로장생과 장생불사를 위하여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 고구려의 고분벽화에는 이런 術들이 자리잡고 있지 않다. …… 죽음은 인간의 작위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이다. 그래서 고구려인들은 죽음을 회피하거나 욕망의 분출에 의해 작위적인 꾀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선향으로의 귀향을, 그리고 거기 본향에서 주민으로 사는 것을 고분의 벽화에 드러낸 것이다." 윤병렬, 2008, 『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한국의 고대철학』, 철학과 현실사, 155쪽

68) 물론 沂南漢墓에도 回廊이 있다고 보는 연구자들도 있지만, 각 무덤방을 감싸는 형식의 回廊이 아니라, 측실에서 뻗어나간 형태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이를 回廊이 아닌, 側室의 연장으로 보았다. 중국 연구자들도 回廊이 아닌 側室로 보고 있다. "墓室은 墓門 · 前室 · 中室 · 後室과 동쪽 세 개의 側室, 서쪽 두 개의 측실로 이루어져 있다."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 앞의 책, 1쪽

69) 『안악제3호분발굴보고』, 2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벽화에 나타난 曲倚子를 타고 前陪, 側陪, 後陪의 호위를 받으며 행렬을 하는 광경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曲柄傘騎手, 旌節騎手를 비롯한 儀仗兵과 樂隊, 騎馬文秩官人, 侍女와 舞女, 馬夫, 劍舞人 등이 빼곡하게 묘사되어 있다. 또한 그 배치도 매우 정교하여 주인공의 수레를 중심으로 하여, 관원과 마부들이 적재적소에 있으며, 주인공 전방 및 좌우로는 燈籠手, 斧鉞手, 弓箭手 등 길을 트고 호위하는 자들이 두르고 있다.[70] 이를 토대로 당시 의장행렬을 재구할 만큼 인물과 동작, 소품들에 현실감이 넘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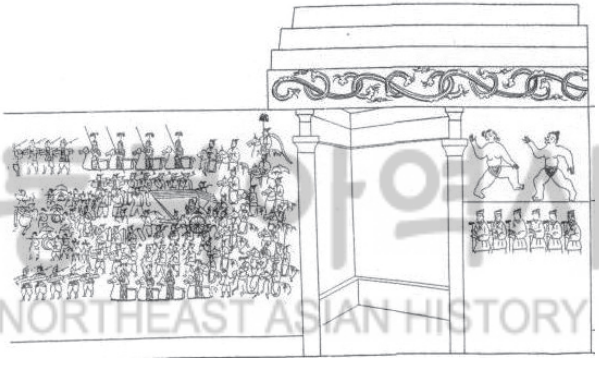

〈그림 25〉 安岳3號墳 東側室 입구와 回廊

沂南漢墓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화려한 行列圖는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沂南漢墓의 거마출행도가 서쪽의 사후 세계를 향하는 것이었던 것에 반해, 이 행렬의 목적지가 사후 세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다. 行列圖는 沂南漢墓를 비롯한 漢墓, 魏晉 시기 벽화의 주요한 제재였으며, 사후 세계로의 여정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車馬行列圖에는 각종 안전장치가 동원되었다. 반면 安岳3號墳의 행렬도는 지상에서의 웅장한 행렬도를 핍진하게 묘사하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무덤이 사후 세계라는 상상적 공간을 염두에 둔

70) 『안악제3호분발굴보고』, 20~23쪽

것이기 때문에, 상징성과 비현실적 묘사가 얼마든지 가능한 공간이지만, 안악 3호분에는 흔한 神鳥, 神獸조차 전혀 묘사되지 않았다.[71] 기둥 위의 鬼面紋과 怪雲紋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화면은 현실적인 소재로 가득하다.

沂南漢墓와의 중요한 차이점 가운데 하나는 歷史故事의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교적 도덕관념과 교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歷史故事의 소멸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지만, 무덤 자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沂南漢墓에는 墓主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고사들을 대거 채택함으로써 유교적 가치에 대한 선양과 후세에 대한 교훈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물론, 당시의 유행을 그대로 답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으로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가진 역사고사의 배제는 당시 이러한 유행이 없었거나, 굳이 묘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역사고사의 채택에 의미부여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반면 수백 명이 등장하는 행렬도에 상당한 공을 들였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安岳3號墳은 공적이고 정치적 성격에서 벗어난 개인적이고 사적인 성격이 농후하게 드러나는 무덤이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가능해 보인다.

行列, 싸움, 연회 등 동일한 소재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지만 표현하는 방식과 상징성은 상당히 달라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다름은 묘주 개인의 인생관, 가치관뿐만 아니라 시대적 배경과 분위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71) 孔錫龜는 幢의 사용을 통해,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冬壽의 현실적 욕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고대 중국에서 당은 천자가 수여하는 물품이었다. 그렇지만 ‘八王의 亂’ 이후 晉이 급격히 쇠퇴하면서 변방으로부터 이주해 온 이민족이 발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各地에서 정권을 잡은 세력가들이 천자의 이름을 빌려 당을 수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고구려에 의하여 낙랑 · 대방군고지로 移置된 동수는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의 대표적인 세력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동수는 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중국계인물의 대표자로서 자신의 세력을 주변에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당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孔錫龜, 2005, 앞의 글, 222~22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_ 그들이 바라본 서로 다른 세상

沂南漢墓와 安岳3號墳 두 무덤은 화려한 축조물이기 전, 墓主의 인생관과 사후관으로 구축된 상징적 공간이다. 건축학적으로 보았을 때 유사하지만, 도상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적지 않은 차이점이 발견된다.

沂南漢墓의 경우, 墓門 門楣의 胡漢交戰圖, 즉 '싸움'으로 표현된 힘겨운 통과의례의 과정을 거쳐 진입한 첫번째 공간인 前室에는 남겨진 자들, 즉 후손과 親友들에 대한 충고와 더불어 강력한 辟邪와 보호 조치를 취해 놓았고, 中室에서는 사후 공간으로의 안착과 새로운 공간에서의 안락한 삶을 표현하였으며, 後室에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될 사적인 삶을 위한 조치가 돋보이는 공간이었다.

安岳3號墳의 묘주인 前燕의 장수였던 冬壽는 고구려 安岳 지역에서 王陵을 능가할 만큼의 거대한 墳墓를 조성하였다. 무덤의 건축 양식과 표현들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세부표현에서는 오히려 적지 않은 차이점이 보였다. 安岳3號墳이 기존 중국의 무덤과 대별되는 차이점은 소재의 취사선택에서도 보였지만, 공간의 배치와 모티프의 배열 방식에서 더욱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호화롭게 생활하던 4세기 중엽 고구려 귀족의 생활 풍습을 여러 측면으로 잘 묘사하기에 노력한 것"[72]이라는 평가처럼, 安岳3號墳은 현실의 핍진한 묘사, 연속될 현실의 갈망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후손에 대한 경계나 공적인 의무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공간, 개인성이 더욱 발현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중국 고대 문헌인 『산해경』에 등장하는 神靈異獸와 瑞草, 神人 등이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던 沂南漢墓와는 달리(그림 26 · 27 · 28), 安岳3號墳의 벽면에는 비현실적 소재들이 극도로 자제되어 있다. 무덤을 축조한 것으로 보아 이들에게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漢代人과 고구려 땅의 冬壽가 꿈꾸고 있었던 사후 세계는 분명 달랐다.

72) 『안악제3호분발굴보고』, 1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림 26〉 怪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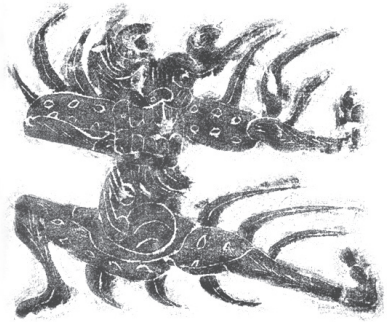

〈그림 27〉 怪獸

崑崙山과 西王母, 『산해경』 속의 숱한 존재들이 이루어낸 漢代人들의 사후 세계는 문화루트를 통해 그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중국 魏晉南北朝 시기의 벽화에도 西王母를 비롯한 각종 祥瑞의 표현이 두드러지지만, 安岳3號墳에서는 이 같은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다. 사후 세계는 있지만 그곳은 西王母라는 특정한 神을 중심으로 구현되는 세계는 아니었다. 沂南漢墓의 공간은 통과의례를 거쳐 다른 세계로의 이동을 희구하고 머무르는 공간이지만, 安岳3號墳은 삶이 자연스럽게 연장, 연속되는 불멸의 공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沂南漢墓의 墓主는 가장 안전한 昇天의 공간으로서의 무덤을 축조했지만, 安岳3號墳 墓主는 현실과 잇닿아 있는 세계를 구축하였다. 沂南漢墓는 승천을 염두에 둔 조치가 두드러지지만 安岳3號墳은 종착지이자 귀결되는 공간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림 28〉 異獸

과거 安岳 지역이 漢을 비롯한 중국 왕조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지역이 아닌 것은 확실하지만, 고구려라는 시 · 공간 속에서 축조된 安岳3號墳은 漢墓와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오히려 중국적인 것의 선택적 수용, 더 나아가 새로운 고구려라는 문화공간에서 흡수한 크고 작은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 아쉬운 점은 두 무덤 사이의 문화 루트에 위치한 다른 무덤을 검토하지 못한 점이다. 遼陽 上王家村 벽화분, 朝陽 袁臺子 벽화분 등 遼陽 일대 무덤벽화에 대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된다면 두 무덤 사이의 배제–선택–흡수 등을 통한 영향관계는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Ⅴ. 맺음말

무덤은 한 시대를 반영해 주는 역사적 · 문화적 산물인 동시에, 묘주 개인의 사후관, 취향, 종교관 등을 표현할 수 있는 개인적 공간이기도 하다.[73] 이 논문에서는 지리적 · 문화적 대표성을 띠는 3세기의 沂南漢墓와 4세기의 安岳3號墳 벽화의 도상학적 비교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구려라는 시공간에서 출토된 古墳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최근까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고구려 고분의 기원에 대한 여러 학설과 달리, 중국 연구자들의 입장은 매우 획일적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연구의 주제가 될 安岳3號墳은 漢系 문화권에 있었던 고분이라는 점 때문에 일방적 흡수를 거친 무덤으로 이해되거나 漢의 고분과 동일선상에서 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두 무덤의 비교 연구를 통해 漢으로부터의 영향력이 곧 漢 文化의 일방적인 흡수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다.

73) "후한 시대 장례 구조물의 장식이 항상 죽은 자의 후손들 혹은 예전 친구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몇몇 사람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죽기 전에 직접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장면이나 모티프를 자신의 [미래의] 장례 기념비에 그려 넣도록 지시하였을 것이다. 이럴 경우 그들은 장식을 '설계하는 사람'이었던 셈이다." 巫鴻, 김병준 옮김, 2003, 앞의 책, 526쪽. 무덤의 구조, 벽면에 그려질 내용 등은 墓主나 가족, 親友들이 결정하였다. 따라서 무덤은 시대적 산물이자, 개인적 취향이 반영된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둘째, 沂南漢墓의 경우, 西王母와 東王公을 전면에 세움으로써 무덤 공간과 그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동쪽으로부터 서쪽'이라는 일관된 방향성은 사후 세계로의 이동이라는 기존 '車馬行列'의 의미를 명징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다. 沂南漢墓는 사후 세계를 대하는 산 자와 죽은 자의 生死觀, 죽은 자의 昇仙에 대한 희구와 갈망을 잘 표현하고 있는 공간으로서, 죽은 자는 昇仙함으로써 西王母로 상징되는 仙界(또는 神界)로 이동하고, 산 자는 죽은 자를 위해 제사를 지낸다. 뿐만 아니라 (神)異한 동식물을 무덤 곳곳에 배치함으로써 강력한 辟邪의 조치를 취하고, 祥瑞의 분위기를 더하고자 하였다. 沂南漢墓는 죽은 자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무사히 昇天하도록 돕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일상의 거소라는 복합적 성격을 갖는다. 개인성이 강조되었으나 여전히 공적 의무라는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이다.

셋째, 安岳3號墳은 聖과 俗, 현실계와 비현실이 조우하는 공간인데도 安岳3號墳 벽화에서는 상상의 존재나 공간을 상징하는 표현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 중국 고대 문헌인『산해경』속의 존재는 찾아보기 어렵다. 漢 畵像石의 주요한 소재였던 瑞草, 神人, 異獸 등은 배제되어 있고, 숱한 상징성으로 살아 움직이는 무덤에는 오히려 마치 살아 있는 듯한 표정을 가진 동물들과 현실에서 볼 수 있을 법한 우물, 푸줏간의 모습이 핍진하게 묘사되어 있다. 이는 죽음 이후의 삶의 준비가 아닌, 현실과 연속선상에 있는 현실적 삶의 표현에 다름 아닐 것이다. 묘주와 무관한 역사고사의 배제는 공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사적 공간으로서의 무덤을 강조해 준다. 무덤이라는 공간이 죽음을 전제로 한 것이기는 하지만, 安岳3號墳에서는 죽음이 커다란 사건으로 이해되지 않고, 현실과 맞닿아 있는 일종의 또 다른 현실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沂南漢墓와 安岳3號墳은 모두 무덤방이 일직선으로 놓이고, 측실이 딸린 多室墓이다. 시간적인 차이는 있지만, 묘실의 배치와 공간을 고려했을 때 영향관계를 논할 수 있는 있는 여지가 충분한 무덤이다. 무덤의 구조는 유사하지만 벽면을 구성하고 벽화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대하는 태도, 사후 세계에 대한 인식은 무덤 벽화의 모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 선택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유사하면서도 다른 두 무덤으로 완성된 데는 墓主의 고민과 내세관이 중요한 기제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이 논문에서는 圖像學的 각도에서 바라보았을 때, 冬壽의 무덤인 安岳3號墳과 沂南漢墓 사이에는 단순한 모티프의 차이뿐만 아니라, 배열과 소재의 취사선택, 변용 방식에서도 크고 작은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는 당시 墓主를 비롯한 무덤 造營者들이 갖고 있던 내세관, 인생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冬壽의 무덤 造營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면면은 알 수 없으나, 安岳3號墳이라는 상징적 · 우주적 공간에 구축된 새로운 세계는 漢 및 魏晉 문화의 재현에서 벗어난 것만큼은 분명하다.

이 외에도 고구려 고분의 정체성을 밝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기존 연구 위에 새로운 관점과 고증, 더 나아가 창의성과 상상력이 더해진다면 역사적 진실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강현숙, 2005,『고구려와 비교해 본 중국 한, 위 · 진의 벽화분』, 지식산업사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7, (南北共同遺蹟調査報告書)『평양 일대 고구려 유적』, 동북아역사재단

巫鴻, 김병준 옮김, 2003,『순간과 영원』, 아카넷

박대재 외, 2007,『고대 동아시아 세계론과 고구려의 정체성』, 동북아역사재단

안휘준, 2007,『고구려회화』, 효형출판

에르빈 파노프스키, 이한순 옮김, 2003,『도상해석학 연구』, 시공사

에케하르트 캐멀링 편, 이한순 외 역, 1997,『도상학과 도상해석학』, 사계절

유강하, 2010,『도상, 문명의 이동을 말하다 – 한대 서왕모 화상석의 종교문화사적 해부』, 심포지움

윤병렬, 2008,『고구려의 고분벽화에 그려진 한국의 고대철학』, 철학과 현실사

장페이페이[蔣非非] 외, 김승일 역, 2005,『한중관계사』, 범우

전호태, 2000,『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전호태, 2005,『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 고구려연구재단

전호태, 2006,『고구려 고분벽화의 세계』, 서울대학교출판부

전호태, 2008,『고구려 고분벽화 읽기』, 서울대학교출판부

최광식, 2009,『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살림

『안악제3호분발굴보고』(『유적발굴보고』(3)), 과학원출판사, 1958

孔錫龜, 1998,「安岳3號墳 主人公 冠帽에 대하여」,『高句麗研究』5

孔錫龜, 2005,「安岳3號墳의 幢에 대하여」,『高句麗研究』19

金貞培, 1978,「安岳3號墳 被葬者 논쟁에 대하여–冬壽墓說과 美川王陵 說을 中心으로」,『古文化』16

김희정, 1997,「安岳3號墳의 服飾 研究 1–男子 服飾」,『服飾』31

金希燦, 2001,「北韓의 高句麗 遺跡 發掘과 그 成果」,『고구려발해연구』12

변미혜, 2000, 「安岳 第三號墳의 奏樂圖가 갖는 문화사적 의의에 관한 고찰」,『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2

이혜구, 2000,「安岳 第三號墳 壁畵의 奏樂圖」,『한국공연예술연구논문선집』2

전혜숙 · 허정희, 2002,「安岳3號墳 主人公 服食에 관한 研究 – 中國과의 관계를 중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으로」,『韓服文化』5-3
전호태, 2006,「高句麗 安岳3號墳 再論」,『韓國古代史研究』44
정호섭, 2009,「高句麗 古墳의 造營과 祭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南京博物院 · 山東省文物管理處, 1956,『沂南古畵像石墓發掘報告』, 新華書店
巫鴻, 鄭岩 · 王睿 編, 鄭岩 等 譯, 2005,『禮儀中的美術』, 三聯書店
山東省沂南漢墓博物館 編, 2001,『山東沂南漢墓畵像石』, 濟魯書社
信立祥, 2000,『漢代畵像石綜合研究』, 文物出版社
吳廣孝, 2006,『集安高句麗壁畵』, 山東畵報出版社
王建中, 2001,『漢代畵像石通論』, 紫禁城出版社
袁封山 · 王培永 主編, 2007,『沂南北寨村漢墓畵像石藝術論文集』, 詩聯文化出版社
魏存成, 2005,『高句麗遺迹』, 文物出版社
朱存明, 2005,『漢畵像的象徵世界』, 人民文學出版社
中國畵像石全集編輯委員會, 蔣英炬 主編, 2000,『中國畵像石全集⑴』, 山東美術出版社

孫進己 · 孫泓, 2004,「公元3-7世紀集安與平壤地區壁畵墓的族屬與分期」,『北方文物』2
李若遷, 1996,「高句麗文化與中原文化淵源關係略述」,『通化師院學報』31
張明皓, 2007,「論安岳三号墓的建筑淵源」,『北方文物』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An Iconographical Study of Anak Tomb No.3 and Yinan Tomb

Yu Kangha

A tomb is a historical and cultural fruit which reflects the age as well as being a personal space that represents thoughts of death, taste, and faith. Yinan Tomb(沂南漢墓) is a place which realizes all popular ideas, such as Xiwangmu(西王母), Buddhist thought, the world after death, and the Yin Yang and the Five Elements theories evenly. Through the contents of iconography, we can see that Yinan Tomb was organized from the reality for the unrealistic world.

The first room, which was germane to the reality, was placed with advice from descendants, relatives, and friends, as well as with a strong charm against evil influences and countermeasures. The middle room represented safe arrival to the world after death and an easy life in the new world. The personal life which would be continued after death was placed in the second room. Dongsu(冬壽), who was a general in Qianyan(前燕), created a huge tomb that was as large as a royal tomb in Koguryo. The tomb's construction style was influenced by China. However, the result of the influence was not one-sided, but rather a recreation through choice and acceptance in a new culture. Anak Tomb No.3 was quite different from other tombs in China, for example, in the choice of material, the arrangement of space, and the motif arrangement.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In general, as Anak Tomb No.3(安岳三號墳) is thought to describe the luxurious life and ways of the royal family of Koguryo, it could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and the extension of the present life. While Yinan Tomb was filled with mysterious beasts and a mysterious plant, there were few paintings that are unrealistic in Anak Tomb No 3. This also shows that people believed in the existence of the world after death.

However, the paintings that they drew about the life after death differed. The description of life after death from Kunlun Mountain(崑崙山), Xiwangmu, and *Shanhaijing*(山海經) was not from the culture route. While it is essential to find frequent uses of good omens, such as mysterious plants, from the paintings in the Wei, Jin, and Nanbei dynasties(魏晉南北朝), it is difficult to see those in Anak Tomb No. 3. This is because of the cultural influence from the Han Dynasty that Dongsu had brought.

Although the Anak area was not free from the influence of Chinese dynasties, Anak Tomb No. 3, which was built in the space and the time of Koguryo, differed from those in China. It originated from the selective acceptance and recreation of Sinicism in the cultural space of Koguryo.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eywords

Yinan Tomb, mural painting, death, Anak Tomb No.3, Koguryo tomb, the world after death, understanding of space, iconographic understanding, Koguryo culture, immortality, culture of Han

고구려 5세기 금석문에 나타난 干支曆日 자료와 曆法 연구

김일권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머리말

고구려를 비롯하여 한국 고대사 연구의 난제 중 하나는 역법학에 관한 것이다. 고구려가 어떤 曆法을 사용하였고, 어떤 시간 인식 속에서 살아갔으며, 어떤 역법의 관점에서 기록을 남겼는가 하는 여러 문제가 해명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주지하다시피 일천한 자료로 말미암은 탓이 크다. 이런 때문인지 고대 역법을 다룬 천문학계의 개설서류인 『역법의 원리분석』(이은성, 1985), 『한국과학기술사』(전상운, 1988), 『한국천문학사연구』(유경로, 1999), 『한국천문학사』(나일성, 2000) 등은 모두 백제의 원가력과 고구려의 무인력, 통일신라의 인덕력, 대연력, 오기력, 선명력 등을 몇 단락 분량으로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1] 이런 정도의 서술은 홍이섭의 『조선과학사』(정음사, 1946)에

※ 투고일: 2012년 2월 21일, 심사일: 2012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5일

1) 이은성, 1985, 『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전상운, 1988, 『한국과학기술사』, 정음사, 98쪽; 유경로, 1999, 『한국천문학사연구』, 녹두, 9쪽; 나일성, 2000, 『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7쪽

서 이미 개진되었던 바이기도 하다.

고구려의 경우는, 대개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영류왕 7년(624) 2월 기사에서 "당나라에 曆書의 頒給을 청한 일"[2]을 근거로 당나라 초기 傅仁均의 戊寅曆이 도입되었을 것이라 말하는 정도가 고구려 역법사의 전부이다. 이 기록에 따라 624년부터 668년 멸망하기까지 45년간 무인력이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만으로 700년간을 존속하였던 고구려의 역법사 전체 면모를 짐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다행히 논의를 더 진전시킨 연구가 한국고대사 연구자들에 의해 개진된 바 있으며, 특히 광개토태왕대 덕흥리고분의 묵서명 曆日 문제나 장수왕대 중원고려비의 干支曆日 해석에 관해 다수의 논문이 나왔다.[3] 주로 5세기 금석문과 묵서명을 중심으로 접근된 것이었다. 문제는 이들 간지역일자료가 1차 사료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 당시의 고구려 현행력이 적용되었을 터인데, 그 역법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 성격은 어떠한지 여전히 조망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이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들 5세기 금석문과 묵서명 사료를 재검토하면서 좀 더 진전된 曆日法 관점이라든가, 그 역법의 성격을 중국력과 비교하여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더불어 문헌기록인 『삼국사기』「고구려본기」와도 함께 분석하여 麗末 戊寅曆 이전에 행해졌을 역법학의 존재를 좀 더 가까이 실체화하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시도가 고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삼국사기』「高句麗本紀」 제8 榮留王 7년조: "七年, 春二月, 王遣使如唐, 請班曆. 遣刑部尙書沈叔安, 策王爲上柱國遼東郡公高句麗國王. 命道士, 以天尊像及道法, 往爲之講老子, 王及國人聽之. 冬十二月, 遣使入唐朝貢."

3) 대표적인 논문 몇 개를 보면 다음과 같다.
田中俊明, 1980, 「德興里古墳の墨書銘について」, 『朝鮮史硏究會會報』 59; 邊太燮, 1979, 「中原高句麗碑의 내용과 年代에 대한 검토」, 『史學志』 13(『한국사의 성찰』, 1980); 木下禮仁, 1982, 「日付干支と年次: 中原高句麗碑の日付干支をめぐって」, 『考古學と古代史』, 同志社大學考古學シリーズ; 金英夏 · 韓相俊, 1983, 「中原高句麗碑의 建立年代」, 『敎育硏究誌』 25,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木下禮仁 · 宮島一彦, 1984, 「高句麗の曆: 中原高句麗碑をめぐって」, 『韓國文化』 6-1; 木村誠, 2000, 「中原高句麗碑の立碑年について」, 『중원고구려비연구』, 고구려연구 10집

려시대 전반에 변천되었을 역법학 혹은 시간학[4]의 관점을 심화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예컨대, 덕흥리고분의 경우 중국력과 차이가 나고 『삼국사기』의 경우 장수왕대 역일법이 중국력과 다른 점 등은 고구려 자체의 역법을 상정케 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를 永樂曆이라 잠정적으로 이름붙여 좀 더 적극적으로 5세기 고구려의 역법 인식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아직 많은 한계가 있지만 고구려 역법의 시기별 이름을 명시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표로 삼는다.

Ⅱ. 『삼국사기』「고구려본기」의 干支曆日 기록 고찰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구려의 역법 문제를 살펴보기 위하여 干支名이 붙은 曆日 자료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간지명 자료는 크게 연도명에 붙은 年附干支類와 모월의 朔干支가 붙은 月朔干支類 및 日字에 간지가 붙은 日附干支類가 있다.[5]

4) 역법학이 체계적인 역일법을 이른다면, 이 글에서 사용하는 시간학은 시간인식의 기준이라든가 관습적 시간과 같이 좀 더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시간 문제를 일컫고자 하되, 때로는 혼용되이 쓰일 것이다.

5) 연월일시 각각의 역일표기법을 紀年, 紀月, 紀日, 紀時라 일컫는다. 간단하지가 않는 것이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60간지를 사용하는 간지법이지만, 역사적으로는 여러 방식들이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기년법 중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것은 모왕 몇 년 식으로 표기하는 帝王紀年法으로, 『春秋』에서 魯侯 재위년수로 기년하였고, 『國語』 중 『周語』, 『晋語』 등에서 幽王三年, 惠王二年 등이라 한 것들이다. 다음 漢武帝 元鼎 원년(BC 116)에 연호를 건립한 이래 청나라까지 장구하게 사용한 年號紀年法이다. 천체력 관점에서 제출된 歲星紀年法은 목성의 천구상 위치를 갖고 매긴 것이며, 이를 지상의 시간 흐름으로 환원시킨 太歲紀年法이 널리 쓰였다. 이 둘은 춘추시기에 개발되어 진한시대까지 주로 활용되었다. 후한부터는 간지명으로 연도를 매기는 干支紀年法이 사용되었고 지금까지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승되었다. 마지막으로 1896년(고종 33) 1월 1일부터 서양력 도입 이후로는 西曆紀年法을 사용하고 있다. 張聞玉, 『古代天文曆法講座』(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8. 1) 〈紀時系統〉 참조.

고대에 연도표기가 대개 年號를 쓰거나 干支年으로 매기나 이것만을 갖고는 역법을 해석할 수가 없고 월삭이나 일간지가 함께 있어야 한다.[6]

다음 월삭간지는 그달의 초하루 日干支를 말하는 것으로, 달의 위치나 大小를 알려주는 정보인데, 위진남북조시기 북조와 남조가 서로 다른 역법을 사용함에 따라 이 月朔干支를 갖고 어떤 역법인지를 판별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곧 이 시기에 역법이 다르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체계를 적용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기본적 역산법은 같지만 合朔일자를 다르게 계산하거나 윤달의 위치를 달리 추산함에 따라 月朔이 이동하고 월의 대소가 달라지고 때로 윤달의 위치가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윤달의 위치는 역법의 同異문제를 판별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다음 일부간지는 자료가 부족한 고대의 역법체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다. 역사적으로 『二十史朔閏表』 내지 萬歲曆과 같은 역일사전이 누적적으로 개발되어 있어 여기에 일부간지를 대입하면 해당 유물의 성립시기를 알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삼국사기』「고구려본기」의 연대기를 검토하다 보면 曆日法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처럼 상당히 소략한 것을 알 수 있다.

〈역일자료 1〉

1. 太祖大王 72년(124), 「秋九月庚申晦, 日有食之.」 →124년 9월 30일
2. 次大王 4년(149), 「夏四月丁卯晦, 日有食之. 五月, 五星聚於東方.」 →149년 4월 30일
3. 次大王 13년(158), 「春二月, 星孛于北斗. 夏五月甲戌晦, 日有食之.」 →158년 5월 29일
4. 新大王 14년(178), 「冬十月丙子晦, 日有食之.」 →178년 10월 30일

6) 드물게 曹魏의 景初曆처럼 地正(=殷正, 丑正)을 내세워 歲首를 12월 丑月로 옮긴 경우, 기존 夏正(=天正, 寅正)의 "春三月"이 "孟夏四月"로, "十二月"이 "正月"로 개변된 적이 있다.(『三國志』「魏書」 紀第3 明帝紀, 108쪽 참조) 경초 원년(237)부터 몇 년간의 연대기에 보이는 달은 모두 한 달씩 앞당겨야 한다. 경초 3년(239) 12월에 다시 寅正으로 복귀하였다. 이런 때는 월삭간지를 보고 판단하게 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故國川王 4년(182), 「春三月甲寅夜,[7] 赤氣貫於太微, 如蛇. 秋七月, 星孛于太微.」→182년 2월 27일(?)
6. 故國川王 8년(186), 「夏四月乙卯, 熒惑守心. 五月壬辰晦, 日有食之.」→186년 4월 22일, 5월 29일
7. 山上王 23년(219), 「春二月壬子晦, 日有食之.」→219년 2월 30일
8. 西川王 4년(273), 「秋七月丁酉朔, 日有食之. 民饑, 發倉賑之.」→273년 7월 1일
9. 長壽王 76年(488), 「春二月, 遣使入魏朝貢.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秋閏八月, 遣使入魏朝貢.」→488년 윤9월 을축일 19일 (『위서』「고조기」 제7하 의거)
10. 文咨明王 19年(510), 「夏閏六月, 遣使入魏朝貢. 冬十一月[8], 遣使入魏朝貢.」→510년 윤6월 기해일 29일 (『위서』「세종기」 제8 의거)
11. 寶藏王 2年(643), 「閏六月, 唐太宗曰: "蓋蘇文弑其君, 而專國政, 誠不可忍. 以今日兵力, 取之不難, 但不欲勞百姓, 吾欲使契丹·靺鞨擾之, 何如?"」
12. 寶藏王 27年(668)條附, 「(唐高宗 咸亨) 四年 癸酉歲(673), 夏閏五月, 燕山道摠管大將軍李謹行, 破我人於瓠瀘河, 俘獲數千人. 餘衆皆奔新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실상 이상의 12건 역일자료 중에서 간지가 붙은 것은 더욱 적어서 겨우 8건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8건 일부간지역일이 2~3세기에만 몰려 있고, 모두 日食을 기록한 것에 한정한다. 「고구려본기」의 일식기사 자체가 11건이며,[9]

7) 이 故國川王 4년(182)조, 春三月甲寅夜 역일은 당시 역법이랄 수 있는 후한의 四分曆과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182년 3월 역일에 갑인일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전후로 갑인일을 찾아보면, 2월 27일 갑인일, 4월 28일 갑인일이 있다. 이 기록을 誤記로 보려 하자면, 春三月이라 하였기에 春二月 정도가 적당하며, 4월은 夏四月이라 좀 어렵다. 아니면 이 역일을 고구려 자체의 역산법이 적용된 사례로 보아야 하는데 이 관점은 이를 입증할 또 다른 방증사료를 기다려야 한다. 아무튼 일식기록이 아닌 것에서 역일법이 다른 점은 주목할 만하다.

8) 趙炳舜, 『三國史節要』에는 十二月.

9) 위의 일부간지 일식기록 7건에다 「大祖大王 62년(114), 春三月, 日有食之.」와 「大祖大王 64년(116), 春三月, 日有食之.」 및 「次大王 20년(165), 春正月晦(1.30 병신일), 日有食之.」와 「陽原王 10년(554), 十二月晦(12.29 신사일), 日有食之. 無氷.」

이들 역시 陽原王 10년(554) 12월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114년부터 273년 사이의 160년 동안에만 몰려 있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편년기간인 시조 동명성왕 원년(BC 37년)에서 보장왕 27년(668)까지 기나긴 705년 동안에 어떻게 2~3세기에만 일식이 기록되고 그것도 이 시기에만 日干支가 매겨졌다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것이다. 이런 때문에 「고구려본기」의 초기 일식기록이 중국 측 기록을 옮긴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10] 반면에 일식사건에 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고구려의 독자적 관측성을 강조한 반론도 개진되었으나 사료비평을 통한 역사천문학적 해석은 아니다.[11]

역법학 관점에서 볼 때도 간지역일 기록이 태조대왕대 124년에서 서천왕대 273년 사이 150년 동안에만 수록된 현상을 잘 설명하기 힘들다. 금석문 자료상 적어도 5세기에는 고구려 자체의 역법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고구려 연대기를 초중말기로 가를 때 중기 이후보다 초기에 역일법이 더 발달하였다는 것은 논리적 설득성과 사료적 균형성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역사해석이 추이적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할 때는 이를 견강부회하기보다 논외로 함이 가설적 타당성을 얻는 대목이 아닐까 한다. 자료의 미비를 탓할 수 없는 것이 고대사 연구이고 보면, 소구할 더 이상의 자료가 없기에 주어진 자료를 더욱 정합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실용적일 것이다.

「고구려본기」에 따른 고구려 연대기의 두 번째 특성은 그 긴 705년간의 연력 동안 윤달 기록이 長壽王 76년(488)조 이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장수왕 76년(488) 윤8월로 처음 기록된 이후, 文咨明王 19년(510) 윤6월과 寶藏王 2년(643) 윤6월 기록이 이어서 나타난다. 보장왕 27년(668)조에 붙여진 唐高宗 咸亨 4년 癸酉歲(673) 윤5월 기록도 포함할 수는 있되 고구려

의 4건을 합하여 11건이다.

10) 飯島忠夫, 1926, 「三國史記の日食記事について」, 『東洋學報』 15집; 齊藤國治, 1985, 「新羅 · 高句麗 · 百濟の天文記錄」, 『星の手帖』 27

11) 박창범 · 라대일, 1994, 「삼국시대 천문현상기록의 독자 관측사실 검증」, 『한국과학사학회지』 16권 2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멸망 이후라서 논외로 함이 낫다.

윤달이 쓰였다는 것은 동양 역법의 특성이기도 한 태음태양력의 역산법이 적용되었다는 뜻이어서 고대 역법사 고찰에 매우 주목되는 지점이 된다. 물론 장수왕 76년조 이전에 하필이면 윤달에 기록할 만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아서 수록되지 않았던 것이라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장수왕 연간에 와서야 본격적인 역법이 발달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편이 더 정합적이라 생각된다.

고대 역법사는 역산법이 다름에 따라 윤달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초하루의 간지가 차이나기도 한다. 또 개력하면서 한 달의 누락이나 월명의 변동이 발생하기도 한다. 예컨대, 위나라가 경초력을 쓰면서 3월을 4월로 삼은 탓에 한 달이 사라진 경우가 있다. 최근 국내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공동사업으로 발간한 『삼국시대연력표』(2002)를 보면, 삼국통일 이전의 연대기를 죄다 신라만을 기준으로 표시하였다. 고구려와 백제는 왕의 재위년도만 병기하는 정도에 그치었다.

또한 삼국의 역법은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중국의 연력표를 그대로 수록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표기법은 삼국의 역법이 서로 동일하고 또 중국의 것을 그대로 따랐다는 가정 아래 작성된 것이므로, 이 연력표를 한국고대사 해석에 직접 사용할 수 없음을 시사한다. 단적으로 408년 12월의 삭간지가 庚申朔으로 표기되어 있다. 덕흥리 묵서명이 12월 辛酉朔이라 한 고구려의 史實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삼국사기』에서 장수왕 76년(488)에 윤달이 8월에 있음을 기록하였는데, 이 연력표에는 윤10월로 잘못 표기되어 있다. 비고란에 언급도 없어 이 연력표의 활용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 고대사의 역법을 연구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로 인해 난해하다. 지금껏 고구려의 역법을 체계적으로 논한 연구가 나오지 않은 탓이기도 하지만, 학제 간의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연유에도 기인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국내 연구 상황을 감안하여 이런 문제를 처음으로 접근하는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가능한 대로 당시의 역사적 역법 상황에 맞는 논점을 찾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론을 마련하려는 것이 본 연구의 최대 목표이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 하다.

셋째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윤달의 정보를 통해 미약하나마 고구려 당시의 역법을 짐작케 한다. 장수왕 15년(427)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인 장수왕 76년(488, 북위 효문제 太和 12년, 남제 무제 永明 6년)조에서, "秋閏八月에 사신을 파견하여 위나라에 들어가 조공하였다."고 하였다. 이 윤달의 기록은 당시 어떤 역법의 적용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남길 수가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국내 기존 개설서가 언급하던 고구려 말기 영류왕대 戊寅曆보다 훨씬 이전에 적어도 장수왕대에는 체계적인 역법을 사용한 흔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 고구려 중기 역법은 당시 북위와의 외교가 빈번한 것을 감안하면 북위의 현행력인 玄始曆일 가능성이 크다.[12]

그런데 대조하면 현시력에서는 윤8월이 아니라 윤9월이어서 고구려와 1개월 오차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구려는 현시력 이전에 사용되었던 북위의 景初曆을 그대로 썼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문제는 또 있다. 『二十史朔閏表』(陳垣, 中華書局, 1962)에 따르면, 이 시기 南齊(479~502)는 劉宋을 이어 元嘉曆(445~509)을 쓰던 중이었고, 이에 따르면 488년은 "윤10월" 정축삭이다. 결국 북위 玄始曆으로는 "윤9월" 정미삭이고, 고구려 장수왕력으로는 "윤8월" 무인삭이어서, 세 역법이 모두 다른 것이다.(표 1)

장수왕대 기록에 간지명이 없이 "秋閏8月"로만 되어 있어 정교한 曆月 대조는 어려운 형편이나, 만약 誤記하였다면 "가을"[13]이라 하였으므로 남제의

12) 北魏(386~534)는 개국 초에는 曹魏의 景初曆(237~451)을 사용하였고, 439년 華北을 통일하여 北涼(397~439)을 평정한 뒤로는 북량의 玄始曆(412~522)을 사용하였으며, 다시 자신들의 반포력인 正光曆(523~565)을 사용하였다. 東魏(534~550)는 처음에 북위의 정광력을 그대로 쓰다가 흥화 2년(540) 興和曆(540~550)으로 개력하였고, 동위를 이은 北齊(550~577)는 동위의 흥화력을 天保曆(551~577)으로 개력하여 사용하였다. 北周(556~581)는 북위의 정광력을 天和曆(566~578)으로 개력하였다가 다시 大象曆(579~583)으로 고쳐 사용하였다. 隋나라가 남북조 역법을 통일하면서 開皇曆(584~596)과 大業曆(597~618)으로 통합되었고, 唐나라는 戊寅曆(619~664)과 麟德曆(665~728), 大衍曆(729~761), 宣明曆(822~892) 등으로 개력되었다. 진준규, 2006, 『중국천문학사』 중편, 상해인민출판사, 1035~1038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북위 太和 12년(488) 남북조 역일대조표

	488년 戊辰年 / 고구려 장수왕 76년 /北魏 孝文帝 太和 12년 / 南齊 武帝 永明 6년												
북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윤9월**	10월	11월	12월
현시력	신사삭	신해삭	경진삭	경술삭	경진삭	기유삭	기묘삭	무신삭	무인삭	**정미삭**	정축삭	병오삭	병자삭
月大小	30	29	30	30	29	30	29	30	29	30	29	30	29
남제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윤10월**	11월	12월
원가력	신사삭	신해삭	경진삭	경술삭	경진삭	기유삭	기묘삭	무신삭	무인삭	정미삭	**정축삭**	병오삭	병자삭
장수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윤8월**	9월	10월	11월	12월
력가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윤8월**	9월	10월	11월

"冬10月"은 아니라 생각되고 북위의 "秋閏9月"이 의심된다. 다만 고구려가 같은 해에 춘2월과 하4월에도 遣使 朝貢하였다[14]고 하고 있어, 하필이면 이곳만 誤記하였다고 보아야 할지는 어렵다.

이에 『위서』를 통해 이 장수왕 동년의 조공기록을 검증하면, 고구려가 춘2월과 하4월, 추윤8월로 기록하였고, 북위는 아래와 같이 488년 2월과 4월 및 윤9월로 말하여 앞의 둘은 같고 마지막 하나가 다르다.

> 『魏書』「高祖紀」 제7하 太和 12년조(163쪽) 연대기에서,
> ① 「2월 임술일(12일), 高麗國에서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였다.
> ② 하4월, 高麗와 吐谷渾 나라들이 아울러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였다.
> ③ 윤9월 을축일(19일), 高麗國이 사신을 보내와 조공하였다.」[15]고 기록하였다.

13) 『삼국사기』는 연대기 曆月을 표기함에 있어 春正月, 春二月, 春三月 등 모든 달에 다 춘하추동을 붙였으나, 『위서』는 春正月, 夏四月, 秋七月, 冬十月에만 춘하추동을 붙였으므로, 『삼국사기』 장수왕대 연대기에서 "秋閏八月"이라 한 것은 이 달이 가을에 속한 달임을 검토하고 인식한 뒤의 표기라 할 것이다.

14) 長壽王 76年, "春二月, 遣使入魏朝貢. 夏四月, 遣使入魏朝貢. 秋閏八月, 遣使入魏朝貢." (『삼국사기』「고구려본기」 제6)

15) 「十有二年 春正月辛巳朔, 初建五牛旌旗.
二月壬戌, 高麗國遣使朝貢. 三月丁亥, 宕昌國遣使朝獻.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려위간에 488년 한 해 동안 세 건의 조공을 하였다는 기록이 일치한다. 4월을 제외하고는 날짜도 명기되어 있으며, 2월은 12일 임술일에, 마지막 조공은 윤9월 19일 을축일로 기록하였다. 만약 『삼국사기』 찬자가 『위서』 「고조기」를 참조하여 기록한 것이라면 동일하게 윤9월로 조정하여 기록하였어야 할 것이고, 만약 교차검증하였음에도 윤8월로 말하였다면 이는 고구려 자신들의 역산법에 따른 윤달 처리방식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 경우는 북위의 윤9월을 고구려가 윤8월로 인식한 것이므로 동년 曆月이 한 달씩 모두 미루어지는 역일법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남조와 북조 역법의 차이를 볼 때 曆月만 차이난다고 보는 것이 이 시기 역법의 특성이어서, 만약 동일한 날짜의 조공 사건을 북위가 윤9월로, 고구려가 윤8월로 기록한 것이라 한다면, 고구려가 날짜까지 다른 역법을 썼다고 보거나, 아니면 나머지 2월과 4월은 일치하므로 북위가 9월의 사건을 윤9월로 잘못 기록한 것이라 보게 된다. 전자의 날짜까지 다르다 보는 것은 〈표 1〉 남북조 역일대조표에서 보듯이 매우 맞추기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후자의 관점은 다른 해의 기록은 모두 일치하고 있어 북위가 이 사건만 잘못 기록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16]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이 둘 다 높지 않다고 여겨져 본고에서는 더 이상의 개진을 하지 않는다.

정리하여 전체적으로 볼 때, 유력한 가능성은 이 시기 고구려 역법에 무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夏四月, 高麗 · 吐谷渾國並遣使朝貢. 六月甲寅, 宕昌國遣使朝貢.
八月甲子, 勿吉國貢楛矢 · 石砮. 九月, 吐谷渾,宕昌國遣使朝貢.
閏月甲子, 帝觀築圓丘於南郊. 乙丑, 高麗國遣使朝貢.
十有一月, 詔以二雍 · 豫三州民飢, 開倉賑恤.」
(『魏書』「高祖紀」 제7하 太和 12年條, 163쪽)

16) 다음 해인 장수왕 77년(太和 13)에 『삼국사기』는 춘2월과 하6월, 동10월에 遣使朝貢하였다고 기록하였는데, 『위서』 「고조기」 太和十三年條(164쪽) 역시 3건을 기록하였고, 6월 외에 2월은 임오일(8일), 동10월은 갑신일(14일)로 날짜를 밝히고 있다. 『삼국사기』의 조공 曆月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十有三年 春正月辛亥(7日), 車駕有事於圓丘. 二月壬午, 高麗 國遣使朝獻. 六月, 汝陰王天賜 · 南安王楨並坐贓賄免爲庶人. 高麗國遣使朝貢. 冬十月甲申, 高麗國遣使朝貢.」(『魏書』「高祖紀」 제7하 太和 13年條, 164쪽)

가 북위 현행력과 다른 윤달 방식이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그게 아니면 『삼국사기』의 윤8월 기사가 誤記이며 북위의 윤9월로 고쳐 적어야 한다. 이 검증 문제를 떠나, 장수왕 76년조에서 비로소 윤달 역일이 처음 등장하고, 22년 뒤 문자명왕 19년(510)조에서 다시 윤6월 기록[17]이 등장하므로, 적어도 고구려의 5세기 후반부터는 체계적인 태음태양력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역법의 이름은 북위의 玄始曆일 것이라 추정된다.[18]

17) 이 510년(文咨明王 19년, 북위 宣武帝 永平 3년, 梁武帝 天監 9년) 윤6월 기록은 『위서』「世宗紀」 第八에도 동일하게 윤6월 계해일(29일)로 기록하였고, 역법측면에서 남조 양나라의 大明曆으로도 윤6월이고, 북위의 현시력으로도 윤6월이어서 논쟁점이 없다.

18) 漢唐代 동안 역법의 변천사 개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漢武帝 太初 원년(BC 104) 11월 중국 최초의 반포력인 太初曆(BC 104–AD 84)이 반포된 이래 후한 章帝 元和 원년(84)까지 188년간 사용되었고, 章帝 원화 2년(85)부터는 四分曆(85–263)으로 개력되어 179년간 사용되었다. 후한말 삼국 중 蜀나라(221~263)는 後漢(25–220)의 四分曆을 습용하였고, 吳나라(222~280)는 乾象曆(223~280)으로 개력하여 사용하였으며, 魏나라(220~265)는 처음에 사분력을 습용하다가 景初曆(237~451)으로 개력하였는데, 이 경초력은 이후로 북조의 대표적인 역법이 되었다. 16국 중 後秦(384~417)은 三紀曆(384~517)을 사용하였고, 北涼(397~439)은 玄始曆(412~522)을 사용하였다.

曹魏를 이은 西晋(265~316)은 위나라의 경초력을 단지 泰始曆(265~420)으로 개칭하여 東晋(317~420)까지 습용하였다. 劉宋(420~479)은 永初 원년(420)에 晋泰始曆을 永初曆(420~444)으로 개칭하였으니 이름은 다르지만 실제는 모두 조위의 경초력을 쓴 것이었다. 그러다 宋文帝 元嘉 22년(445)에 何承天(370~447)의 元嘉曆(445~509)이 나오면서 비로소 남조 자신의 역법을 갖기 시작하였다. 이후 梁(502~557) 武帝가 天監 9년(510) 역시 우수한 大明曆(510~589)으로 개력 반포하면서 陳나라(557~589)까지 습용되었다. 따라서 3~5세기 고구려 중기에 대응되는 중국력은 실제 역법으로 보자면 조위의 경초력 뿐이다.

北魏(386~534)는 개국 초에는 曹魏의 景初曆(237~451)을 사용하였고, 439년 華北을 통일하여 北涼(397~439)을 평정한 뒤로는 북량의 玄始曆(412~522)을 사용하였으며, 다시 자신들의 반포력인 正光曆(523~565)을 사용하였다. 東魏(534~550)는 처음에 북위의 정광력을 그대로 쓰다가 흥화 2년(540) 興和曆(540~550)으로 개력하였고, 동위를 이은 北齊(550~577)는 동위의 흥화력을 天保曆(551~577)으로 개력하여 사용하였다. 北周(556~581)는 북위의 정광력을 天和曆(566~578)으로 개력하였다가 다시 大象曆(579~583)으로 고쳐 사용하였다. 隋나라가 남북조 역법을 통일하면서 開皇曆(584~596)과 大業曆(597~618)으로 통합되었고, 唐나라는 戊寅曆(619~664)과 麟德曆(665~728), 大衍曆(729~761), 宣明曆(822~892) 등으로 개력되었다. 陳遵嬀, 2006, 『中國天文學史』 中篇, 上海人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Ⅲ. 고구려 금석문의 간지역일 자료 검토

다음으로 간지가 붙은 고구려 금석문의 역일자료를 검토한다. 紀年銘이 알려진 자료는 많으나 역일법에 직접 관계하지는 않으므로, 간지가 붙은 紀日銘 자료를 찾아야 한다. 『역주한국고대금석문』 고구려편에 수록된 금석문 중 간지 역일 자료를 연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19]

1_ 국내성 태녕4년명(325) 막새기와

고구려 국내성 집안시 대중목욕탕에서 다음 太寧四年銘 와당이 출토되었다.(139쪽)

「太寧四年太歲□□閏月之日己巳造吉保子官孫」
"태녕 4년이자 태세가 □□인 해의 윤달 기사일 길일에 만들었으니, 자손의 관직이 길이 보존되리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61년 집안문물관리소가 우산하 제3319호묘에서 발굴한 丁巳紀年(357년) 와당과 거의 같은 시기 작품으로 추정하는데, "太寧四年"은 東晋 明帝의 연호로 326년(병술년, 미천왕 27년)에 해당한다. 그런데 326년은 윤달이 없는 해이다. 그래서 전후로 찾아보면 1년 전인 太寧 3년(325년, 미천왕 26년)에 윤8월이 있으며, 이달 기사일은 윤8월 6일이 된다. 그러나 晋明帝는 晋元帝 永昌 원년(322) 윤11월에 즉위하여 이듬해 영창 2년(323) 3월 1일에 太寧으로 改元하였고, 2년 뒤인 태녕 3년(325) 8월에 몰하였다. 晋成帝가 동년 윤8월에 즉위하고서도 개원하지 않았다가 역시 이듬해인 태녕 4년(326) 2월에 咸和로

出版社, 1035~1038쪽

19) 본고의 금석문 석문과 해석은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한국고대금석문』 1권(고구려 · 백제 · 낙랑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다.

개원하였다. 따라서 태녕 4년은 진성제 함화 원년이기도 하다.

이처럼 연호와 윤월이 다 맞지 않아서, 윤달을 기준으로 하면 태녕 4년은 태녕 3년(325)의 誤記가 되어 이 와당은 미천왕 26년(325) 乙酉年 제작이 된다. 만일 태녕 4년도 가능하므로 이를 맞다고 보면 미천왕 27년(326) 丙戌年 제작이 되고, 閏月은 잘못된 역월이거나 置閏이 다른 역법일 수가 있다. 현재로서는 太歲 다음 두 글자가 미상이어서 어느 쪽으로 확정할 수는 없고, 단지 閏月과 己巳日을 근거로 太寧 3년의 오기로 보고 역일을 진명제 태녕 3년(325, 을유년, 미천왕 26년) 윤8월 갑자삭 6일 기사일 제작으로 추산한다.

이 사례는 금석문 자료 자체가 당시에 제작된 것이긴 하나 정확한 역법 정보의 유통과 반영이 생각보다 어려운 사회 조건을 잘 보여준다. 금석문 정보가 1차 사료라 하더라도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_ 안악3호분 영화13년(357) 묵서명

축조년이 밝혀진 가장 이른 무덤인 고구려 안악3호 벽화고분은 1949년 황해도 安岳郡 俞雪里(유설리)에서 발굴조사되었고, 전실 서벽 좌측 帳下督 인물도 위에 晋代의 寫經體로 씌어진 7행 68자의 墨書銘이 발견되었다.(54쪽)

> 「永和十三年十月戊子朔廿六日」癸[丑], 使持節 都督諸軍事」平東將軍 護撫夷校尉 樂浪」[相], 昌黎 · 玄菟 · 帶方太守 都」鄉侯, 幽州 遼東 平郭」都鄉 敬上里, 冬壽, 字」□安, 年六十九薨官.」
> "永和 13년 10월 무자삭월 26일 계축일에, 使持節 都督諸軍事 平東將軍 護撫夷校尉이자, 樂浪相이며, 昌黎 · 玄菟 · 帶方太守이자 都鄉侯이며, 幽州 遼東郡 平郭縣 都鄉 敬上里 출신인 冬壽는 字가 □安으로, 나이 69세에 관직에 있다가 사망하였다."

여기 나오는 冬壽는 『진서』 권109 載記 제9 「慕容皝載記」에서 前燕 慕容皝의 司馬로 있다가 郭充과 함께 고구려로 망명한 佟壽(289~357)와 동일인

으로 보고 있다.[20] 이 장하독 위의 동수 묵서명으로 인하여 한중일 학자들은 대체로 안악3호분을 전연의 망명객인 동수를 묘주로 간주하여 동수묘로 보고 있으나, 북한 학자들은 최대 500명으로 추정되는 회랑의 대행렬도 중에 聖上幡이란 글자의 깃발이 묘주 앞에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고구려 왕릉으로 비정하되, 미천왕릉설과 고국원왕설의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천왕릉설은 고국원왕 12년(342) 前燕에 의해 탈취된 부왕 미천왕(300. 9-331. 2)의 유해를 이듬해 2월 반환받고 동년 7월 平壤東黃城으로 천도한 뒤 미천왕이 개척한 안악지역에 再葬하면서 화려하고 웅대한 규모로 미천왕릉을 축조하였다는 것이며, 고국원왕설은 그가 전사한 곳이 황해도 신원군 下星으로 비정되는 남평양인 만큼, 고국원왕(331. 2-371. 10. 23)이 재위 중에 자신의 무덤을 미리 만들었다는 것이다.

묘주에 대한 양쪽 견해가 팽팽하나 전실 서벽 좌측 帳下督 위의 묵서명 자체는 동수의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보면, 都鄕侯 동수가 죽은 일시가 "永和 13년(357) 10월 무자삭 26일 계축일"로 기록되었다. 永和는 東晋 穆帝의 연호이며, 진목제는 建元 2년(344) 9월에 康帝가 재위 2년만에 죽자 동 9월에 나이 2세로 즉위하여 황태후가 섭정하였고, 이듬해 345년 정월 1일(갑술삭)에 永和로 개원한 뒤 永和 12년(356) 12월 30일까지 사용하였다. 357년 정월 1일(임술삭)부터는 升平으로 개원하였고, 승평 5년(361) 5월 22일에 나이 19세로 죽었다.[21] 이렇게 永和 연호가 345. 1. 1~356. 12. 30까지 만 12년간 사용되었는데, 안악3호분 묵서명은 동수가 永和 13년 10월 26일에 죽었다 하였으므로, 升平으로 개원한 사실 자체를 10개월간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역법측면에서 당시는 동진 泰始曆이 쓰이던 때이며, 영화 13년(357) 10월은 무자삭이고, 이달 26일에 계축일이 들어 있어 당시 통용 역일과 부합한다. 따라서 안악3호분 간지역일 묵서명이 시사하는 바는 비록 동진의 승평 개원 사실 자체를 10개월이나 모르고 있었지만 동진의 태시력을 현행력으로 쓰고

20) 서영대, 「안악3호분 묵서명」, 『역주한국고대금석문』 제1권, 59쪽
21) 『진서』 帝紀 제8 「孝宗穆帝紀」, 191~205쪽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있었다는 흔적이 된다. 더구나 이 무덤이 미천왕릉 내지 고국원왕릉으로 비정되는 등 국가적 관심의 벽화고분이고 보면, 4세기 당시 고구려가 이미 중국력을 도입한 역산법을 갖고 있었고, 그것이 다름 아닌 동진의 태시력에 의한 역일법을 사용한 시기라 이를 수 있다. 또한 10개월이나 모른 채 역일법을 개진한 것은 오히려 고구려가 매년 중국으로부터 曆書를 반급받아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의 역산법을 지속하고 추산하였다는 말이 된다.

3_ 덕흥리벽화고분 영락18년 무신년(408) 묵서명

다음 고구려 덕흥리벽화고분(408)은 1976년 남포시 강서구역 덕흥리 舞鶴山 서쪽 산록에서 관개공사를 하던 중 발견된 벽화고분인데, 다채로운 생활상과 신화 별자리 그림과 함께 56개소에 걸쳐 600여 자의 묵서가 적혀 있어,[22] 고구려 5세기 초반의 역사 정황을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금석문 사료로 평가되어 왔다. 그중 판독 가능한 것이 560여 자이며, 日附干支가 있는 묵서는 다음의 두 군데에서 확인되었다.(78쪽)

첫째는 짧은 것으로 묘도 서벽에 씌어진 세로 1행 19자이다.

> 덕흥리 B (묘도서벽):
> 「太歲在己酉二月二日辛酉成, 關此塚戶, 大吉吏.」
> "太歲 己酉年(409) 2월 2일 辛酉日에 완성하여 이 무덤의 문을 닫았으니 크게 길하리라."

둘째는 앞칸에서 안칸(玄室)으로 들어가는 이음길 입구의 앞칸 북벽 천장부에 씌어진 14행 154자의 묵서명이며, 묘주의 고향, 성명, 역임관직, 향년, 안장일, 상지택일, 자손 기원문 등이 담겨 있어 이 무덤의 성격을 결정적으로 알려주는 묘지명이다.

22) 덕흥리고분의 별자리와 신화에 대해서는 김일권, 『고구려 별자리와 신화』(사계절, 2008)에 자세히 드러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덕흥리 A (전실북벽천장부):
「密雲郡 信都縣 都鄉 中甘里」
釋加文佛弟子 □□氏鎭, 仕」位
建威將軍 國小大兄 左將軍」 龍驤將軍
遼東太守 使持」節 東夷校尉 幽州刺史.
鎭」, 年七十七薨焉, 永樂十八年」 太歲在戊申 十二月辛酉朔 卄五日」
乙酉,
成遷移玉柩, 周公相地」 孔子擇日 武王選時. 歲使一」良 葬送之後,
富及七世 子孫」番昌, 仕宦日遷 位至侯王」.
造臧萬功 日煞牛羊, 酒宍米粲」 不可盡掃,
旦食鹽豉食一椋, 記」之後世, 寓寄無疆.」

6, 7, 8행에 걸쳐 묘주 유주자사 鎭은 77세의 나이로 薨去하였고, 그때가 "永樂 18년 太歲 戊申年(408) 12월 辛酉朔, 25일 乙酉日"이라 기록하였다. 그런데 뒤이어지는 문장이 "成遷移玉柩"이어서, 이 날짜가 홍거일이 아니라 玉柩를 옮긴 安葬日로 보기도 한다.

그렇지만 묘도 서벽에 또다시 "太歲在己酉二月二日辛酉成, 關此墎戶, 大吉吏"라는 묵서명을 새겨, 이 무덤을 완성하여 墓門을 닫은 날짜가 "기유년(409) 2월 2일 신유일"임을 명시하고 있다. 시신을 무덤에 안치한 날은 아무래도 이 날짜 혹은 그 직전으로 보아야 하며, 만약 묘지명의 홍거일을 안장일로 본다면 시신을 안치하고서 한 달 남짓 벽화를 계속 그렸다는 말이 되므로 정황상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이상 두 기록을 합하면, 영락 18년 무신년 12월 25일부터 이듬해인 기유년 2월 2일까지 총 37일간 벽화무덤을 완공하였으며, 달수로는 12월, 1월, 2월의 석 달간에 걸치므로 3개월장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23]

23) 아니면 2차장을 하였다고 보고, 周公相地하고 孔子擇日하고 武王選時한 자신들의 擇地 擇日法에 따라 무신년 12월 25일에 1차장으로 안장을 하였다가, 이듬해 2월 2일 벽화무덤을 완공하기 직전에 본장으로 안치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여기에 나타난 상장례 기간이 『周書』「異域傳」 고구려조가 고구려 예속을 서술하면서, 부모와 남편의 喪事에는 복제가 중국과 같았고,(3년상) 형제의 경우에는 3개

두 기록에서 역일 부분을 추리면 다음과 같다.

> 간지역일 A (薨去日): “永樂 18년 戊申年(408) 12월 辛酉朔 25일 乙酉日”
> 간지역일 B (安葬日): “永樂 19년 己酉年(409) 2월 2일 辛酉日” (→2월 경신삭)

그런데 문제는 묘지명의 홍거일에 나타난 干支曆日이 당시 통용되었으리라 여겨지는 晉曆과 1일 늦는 역일차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차이를 단순한 誤記이거나 아니면 晋曆과 다른 고구려 자체의 역법이 사용되었을 측면을 제기한 바 있다.[24] 전자의 誤記로 보면 편하긴 하지만 해결되는 것은 여전히 없어 논외로 함이 나아 보이며, 후자의 관점을 주목할 만하다 생각된다.[2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월로 한하였다고 한 것과는 차이가 난다. 벽화무덤을 축조하고 유주자사와 같이 고위 관직을 역임한 인물이 형제에 준하는 3개월장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추후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역일 문제에 치중하는 관계로 복잡한 상장일 문제는 차기에 재론하고자 한다.

24)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 『역주한국고대금석문』 1권, 23, 79쪽; 공석구, 1990, 「덕흥리 벽화고분의 주인공과 그 성격」, 『백제논총』 21집, 358쪽; 田中俊明, 1980, 「德興里古墳の墨書銘について」, 『朝鮮史研究會會報』 59; 田中俊明, 1981, 「高句麗の金石文」, 『朝鮮史研究會論文集』 18

25) 고구려시기에 대응되는 한당대 동안 실제 역일법 비교를 위해서 일별하면, 魏吳蜀의 삼국시대 기간(220~280)은 위나라가 景初曆(237~451), 오나라가 乾象曆(223~280), 촉나라가 四分曆(85-263)을 썼으므로 서로 같지가 않으며, 西晋시기(265~316)는 조위의 경초력을 단지 개칭한 泰始曆으로 역산한다. 동진십육국시기(317~439)는 東晋(317~420)의 경우는 서진과 같은 泰始曆으로 역산하고, 16국의 경우는 경초력 계통이되 後秦(384~417)의 三紀曆(384~517)과 北涼(397~439)의 玄始曆(412~522)으로 역산한다. 북위의 화북통일로 비롯된 남북조시대(439~589)는 초기에 경초력을 쓰던 北魏(439~534)가 통일이후는 북량의 것을 습용한 玄始曆(439~522)과 이를 개력한 正光曆(523~565)으로 역산하고, 이후로는 東魏(534~550)의 興和曆(540~550)과 北齊(550~577)의 天保曆(551~577) 및 北周(556~581)의 天和曆(566~578)과 大象曆(579~583)으로 역산한다. 이에 비해 남조는 간단하여 서진에서 유송 초기까지 줄곧 경초력을 개칭한 태시력(265~444)을 쓰다가, 이후 145년간은 유송의 元嘉曆(445~509)과 양나라의 大明曆(510~589)으로 역산한다. 이상을 개략적으로 볼려 할 때는, 조위 경초 원년(237)에서 유송 원

5세기 초 408년 당시를 기준으로 참용할 만한 역법으로는 위나라의 역법을 습용한 北魏의 景初曆(237~451)과 이를 개칭하여 습용한 동진의 泰始曆(265~420)이 있고, 역시 경초력 계통인 後秦의 三紀曆(384~517)이 있다. 후한의 四分曆(85-263)과 오나라의 乾象曆(223~280)은 퇴역하였고, 남조의 가장 우수한 역법이라 하는 劉宋의 元嘉曆(445~509)이나 북위가 孝明帝 正光 3년(522)에 개력한 正光曆(523~565) 등은 아직 나오지 않은 때이다. 이렇게 보면 3세기 중엽에서 5세기 중엽까지 근 200년간의 역법은 모두 조위명제 때 반포된 楊偉의 景初曆 기반 위에 일정부분 가감보충하는 형편이었다.[26]

이에 따라 『中國古代萬年曆』(林道心主編, 하북인민출판사, 2003. 11)을 보면, 東晋이나 北魏의 역일법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여 수록하고 있다.[27] 여기에 수록된 408년 전후 東晋/北魏의 역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 2)

덕흥리고분 묵서명 A(흥거일)는 "戊申年(408) 12월 辛酉朔"이라 하였는데, 동진 태시력은 12월이 庚申朔이어서 같지가 않다. 역월의 月朔이 다르다는 것은 역법이 동일하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고구려 자체의 역산법에 의한 역법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때가 광개토태왕의 永樂 연호를 쓰는 시기이므로 가설적으로 이 고구려 자체의 역법을 "永樂曆"이라 이름짓자면 다음과 같은 역법이 추정된다.

태시력과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석하는 첫째 방법으로 2개월치의 역월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 21년(444)까지 208년간은 북조와 남조를 막론하고 모두 景初曆 한 가지로 사용된 시기로 볼 수가 있다. 수나라(581~618) 동안은 開皇曆(584~596)과 大業曆(597~618)으로 역산하고, 당나라(618~907) 초기는 戊寅曆(619~664)과 麟德曆(665~728) 및 大衍曆(729~761)으로 역산한다.

26) 곧 魏明帝 景初 원년(237) 사분력을 개력한 景初曆(237~265)은 위나라 멸망 이후에도 西晋이 泰始曆으로 개명하여 그대로 사용하였고, 渡江한 뒤의 東晋은 이를 습용하되 乾象曆의 五星法으로 보충하였으며, 北魏 역시 경초력을 습용하였다가 화북을 통일한 太武帝 太延 5년(439)부터 北涼의 玄始曆(439~522)을 사용하였다. 『진서』「율력지」 중(503쪽)과 하(564쪽) 및 『위서』「율력지」 상(2659쪽) 참조.

27) 元嘉曆이 반포된 445년(劉宋文帝 元嘉 22년, 北魏 太武帝 太平眞君 6년)부터는 역일법에 차이나는 부분이 발생한다. 이 역일 차이점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본고의 말미에 수록하였다.

〈표 2〉 東晋 泰始曆(景初曆 연속)에 의한 朔干支

	407년 丁未年 /고구려 永樂 17년 /北魏 道武帝 天賜 4년 /東晋 安帝 義熙 3년												
月	1월	2월	윤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月朔	임신삭	신축삭	신미삭	경자삭	경오삭	기해삭	기사삭	무술삭	무진삭	무술삭	정묘삭	정유삭	병인삭
大小	29	30	29	30	29	30	29	30	30	29	30	29	30
	408년 戊申年 /고구려 永樂 18년 /北魏 道武帝 天賜 5년 /東晋 安帝 義熙 4년												
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月朔	병신삭	을축삭	을미삭	갑자삭	갑오삭	계해삭	계사삭	임술삭	임진삭	신유삭	신묘삭	경신삭	
大小	29	30	29	30	29	30	29	30	29	30	29	30	
	409년 己酉年 /고구려 永樂 19년 /北魏 明元帝 永興 원년 /東晋 安帝 義熙 5년												
月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윤10월	11월	12월
月朔	경인삭	경신삭	기축삭	기미삭	무자삭	무오삭	정해삭	정사삭	병술삭	병진삭	을유삭	을묘삭	갑신삭
大小	30	29	30	29	30	29	30	29	30	29	30	29	3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3〉 고구려 永樂曆 가설 A

고구려 永樂曆	408년 무신년 영락 18년				409년 기유년 영락 19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계사삭	임술삭	임진삭	신유삭	신묘삭	경신삭	경인삭	경신삭	기축삭
동진 泰始曆	408년 무신년 동진 안제 의희 4년						409년 기유년 의희 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계사삭	임술삭	임진삭	신유삭	신묘삭	경신삭	경인삭	경신삭	기축삭

조정하는 것이다.(영락력 가설 A, 표 3) 이는 두 달 앞의 태시력 408년 10월이 辛酉朔이어서 고구려가 2개월 달리 가는 역법의 가능성이 예상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 가설은 두 달 뒤의 묵서명 B가 태시력과 같은 관계로 쉽지가 않다. 묵서명 B(안장일)의 "己酉年(409) 2월 2일 辛酉日"을 환산하면, 2월 1일은 庚申日이어서 "409년 2월은 庚申朔月"이 되고 이는 태시력과 같은 것이다. 곧 불과 몇 달 뒤는 다시 같아지기 때문에 동진의 10월 신유삭을 고구려가 12월로 대응하였다고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2개월차를 적용하여 태시력 408년의 7월을 고구려 9월로 대응시키더라도 12월은 신유삭이 되고, 이듬해 2월은 경신삭이 되어 덕흥리고분의 묵서명 A와 B의 역일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간지일을 조정하지 않고서도 가능한 방법이다. 앞서 2장에서 장수왕 76년(488) 윤8월이 북위의 윤9월과는 1개월차이지만, 남제의 윤10월과는 2개월차가 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혹여 덕흥리의 2개월차와 관련성이 있는지 고심할 필요는 있다 생각한다.

다음 둘째 가능한 해석은 기존연구에서 말한 바 있듯이 간지일을 하루 조정하여 맞추는 방식이다.(영락력 가설 B, 표 4) 태시력에서 408년 12월 1일이 경신삭일이고, 12월 2일이 신유일이다. 이를 신유삭으로 환원하기 위해서는 408년 12월의 앞달인 11월로 하루씩 이동시켜야 한다. 마침 앞달인 11월이 29일(기미일)로 끝나는 小月이어서, 여기로 12월 1일을 옮겨 大月로 삼으면 11월 30일은 경신일이 되고, 마침내 12월 1일을 신유삭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묵서명 A의 12월 신유삭과 B의 2월 경신삭이 동시에 충족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4〉 고구려 永樂曆 가설 B

	408년 무신년 영락 18년				409년 기유년 영락 19년				
고구려 永樂曆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임진삭	신유삭	신묘삭 (대월)	**辛酉朔 (소월)**	경인삭 (대월)	**庚申朔 (소월)**	기축삭	기미삭	무자삭
東晋 泰始曆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임진삭	신유삭	신묘삭 (소월)	**庚申朔 (대월)**	경인삭 (대월)	**庚申朔 (소월)**	기축삭	기미삭	무자삭

그런데 이 해석은 구체적인 역일 배정 문제까지 고려할 때는 다시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식의 역일법이 가능하다. 1일차 조정을 통해 11월이 30일 경신일까지 있어 大月이 된 관계로, 하루를 뺏긴 12월은 小月이 되는데, 이 12월을 그대로 小月로 두는 역일법이 한 가지 방법이고,(가설 B1) 다른 하나는 이 12월을 그 다음 달에서 하루를 가져와서 다시 大月로 만드는 방법이다.(가설 B2)

전자의 경우는 11월 신묘삭, 12월 신유삭, 정월 경인삭, 2월 경신삭이 되며, 후자의 경우는 11월 신묘삭, 12월 신유삭, 정월 신묘삭, 2월 경신삭이 된다. 결국 408년 12월을 小月로 하여 정월을 경인삭으로 삼는 것과 大月로 하여 정월을 신묘삭으로 삼는 두 역일법이 가능한 것이다.(표 5)

〈표 5〉 고구려 永樂曆 가설 B1 · B2

고구려 永樂曆 B1				고구려 永樂曆 B2				동진 泰始曆			
408.11	12월	409.1	2월	408.11	12월	409.1	2월	408.11	12월	409.1	2월
신묘삭	신유삭	경인삭	경신삭	신묘삭	신유삭	신묘삭	경신삭	신묘삭	경신삭	경인삭	경신삭
30(대)	29(소)	30(대)	29(소)	30(대)	30(대)	29(소)	29(소)	29(소)	30(대)	30(대)	29(소)

이렇게 복잡한 역일 방식을 검토하는 이유는 덕흥리 묵서명의 역일간지만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이며, 분명한 것은 당시 남북조의 현행력인 태시력(경초력)과는 다른 역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그 역일법을 자세히 본 것이 다음 〈표 6〉 역일법 B1과 〈표 7〉 역일법 B2이다. 본고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6〉 고구려 永樂曆에 의한 역일법 B1 (1일차만 조정, 정월삭은 태시력과 동일)

永樂 18 408년 11월	1 신묘	2 임진	3 계사	4 갑오	5 을미	6 병신	7 정유	8 무술	9 기해	10 경자
	11 신축	12 임인	13 계묘	14 갑진	15 을사	16 병오	17 정미	18 무신	19 기유	20 경술
	21 신해	22 임자	23 계축	24 갑인	25 을묘	26 병진	27 정사	28 무오	29 기미	30 경신
永樂 18 408년 12월	1 신유	2 임술	3 계해	4 갑자	5 을축	6 병인	7 정묘	8 무진	9 기사	10 경오
	11 신미	12 임신	13 계유	14 갑술	15 을해	16 병자	17 정축	18 무인	19 기묘	20 경진
	21 신사	22 임오	23 계미	24 갑신	25 을유	26 병술	27 정해	28 무자	29 기축	
永樂 19 409년 1월	1 경인	2 신묘	3 임진	4 계사	5 갑오	6 을미	7 병신	8 정유	9 무술	10 기해
	11 경자	12 신축	13 임인	14 계묘	15 갑진	16 을사	17 병오	18 정미	19 무신	20 기유
	21 경술	22 신해	23 임자	24 계축	25 갑인	26 을묘	27 병진	28 정사	29 무오	30 기미
409년 2월	1 경신	2 신유	3 임술	4 계해	5 갑자	6 을축	7 병인	8 정묘	9 무진	10 기사
	11 경오	12 신미	13 임신	14 계유	15 갑술	16 을해	17 병자	18 정축	19 무인	20 기묘
	21 경진	22 신사	23 임오	24 계미	25 갑신	26 을유	27 병술	28 정해	29 무자	

〈표 7〉 고구려 永樂曆에 의한 역일법 B2 (1일차 조정, 정월삭 조정)

永樂 18 408년 11월	1 신묘	2 임진	3 계사	4 갑오	5 을미	6 병신	7 정유	8 무술	9 기해	10 경자
	11 신축	12 임인	13 계묘	14 갑진	15 을사	16 병오	17 정미	18 무신	19 기유	20 경술
	21 신해	22 임자	23 계축	24 갑인	25 을묘	26 병진	27 정사	28 무오	29 기미	30 경신
永樂 18 408년 12월	1 신유	2 임술	3 계해	4 갑자	5 을축	6 병인	7 정묘	8 무진	9 기사	10 경오
	11 신미	12 임신	13 계유	14 갑술	15 을해	16 병자	17 정축	18 무인	19 기묘	20 경진
	21 신사	22 임오	23 계미	24 갑신	25 을유	26 병술	27 정해	28 무자	29 기축	30 경인
永樂 19 409년 1월	1 신묘	2 임진	3 계사	4 갑오	5 을미	6 병신	7 정유	8 무술	9 기해	10 경자
	11 신축	12 임인	13 계묘	14 갑진	15 을사	16 병오	17 정미	18 무신	19 기유	20 경술
	21 신해	22 임자	23 계축	24 갑인	25 을묘	26 병진	27 정사	28 무오	29 기미	
409년 2월	1 경신	2 신유	3 임술	4 계해	5 갑자	6 을축	7 병인	8 정묘	9 무진	10 기사
	11 경오	12 신미	13 임신	14 계유	15 갑술	16 을해	17 병자	18 정축	19 무인	20 기묘
	21 경진	22 신사	23 임오	24 계미	25 갑신	26 을유	27 병술	28 정해	29 무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부록 〈표 9〉 남북조 역일대조표를 보면 이러한 月朔의 차이와 월의 대소 변동이 충분히 가능한 방식임을 이해할 수가 있다.

이상 덕흥리고분 묵서명은 고구려 永樂曆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역법사적 의의가 적지 않으며, 그 실체를 짐작하기 위해 가설 A와 B로 제시하여 살펴보았고, 또 역일법 B1과 B2의 가능성도 추정하여 보았다. 앞으로 좀 더 다른 단서가 나오면 수정되거나 더 심화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4_ 갑인년(414) 광개토호태왕비문

고구려 국내성 太王鄕 山陵에 6.39m 높이의 好太王碑가 장수왕 2년(414)에 우뚝 세워졌고, 총 4면 44행에 1775자의 隸書體 碑文이 刻石되었다.(동남 1면 11행 449자, 서남 2면 10행 387자, 서북 3면 14행 574자, 동북 4면 9행 365자)

주지하다시피 호태왕비에는 干支名 太歲와 年號에 따른 연수가 동시에 적혀 있어 당시 고구려 기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알게 되었는데, 『삼국사기』는 이것보다 기년을 1년씩 늦추어 기록하였던 것이다.(17쪽) 곧 태왕비 永樂 5년 乙

未年(395)을 『삼국사기』는 광개토왕 4년 을미년이라 달리 수록하였다. 대개 이를 『삼국사기』가 踰年칭원법으로 처리하였던 때문으로 보고 있으나, 다시 검토하면 고국양왕 말년과 광개토왕 초년 기록에 무언가 기년이 착란되어 있다.

비문에서 간지기년명을 찾아보면, 신묘년(391, 영락 원년)을 비롯하여 "영락 5년 을미년(395), 영락 6년 병신년(396), 영락 8년 무술년(398), 영락 9년 기해년(399), 10년 경자년(400), 14년 갑진년(404), 17년 정미년(407), 20년 경술년(410)"이 수록되어 있고, 또한 39세에 승하한 태왕의 안장일이 "갑인년(414) 9월 29일 을유일"임을 명기하고 있어,[28] 당시 역일법 연구에 중요한 1차 사료가 된다.

호태왕의 연대기를 『삼국사기』와 참고하여 정리하면, 소수림왕 4년(374)에 탄생하였고, 고국양왕 3년(386) 정월에 왕자 談德을 太子로 삼았고, 고국양왕이 8년(391) 5월에 붕어하자 18세로 즉위하여 永樂太王이 되었다. 이 신묘년(391)이 영락 원년이 되고, 영락 22년 임자년(412) 10월에 승하하였고, 갑인년(414) 9월 29일 을유일에 산릉에 안장하였다.

그런데 『삼국사기』는 광개토태왕이 22년 10월에 훙하고, 장수왕이 즉위하였는데 그해를 413년(계축년)으로 보고 있으나, 1년 오차가 있는 기록이므로 이를 1년씩 앞당겨 비문과 맞추면, 39세 되던 임자년(412) 10월에 돌아가신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해가 장수왕 즉위 원년이 된다. 이렇게 되면 비문에서 안장한 해인 갑인년(414)은 "즉위기년법"으로 장수왕 3년이 된다. 이를 따라 한 해씩 모두 밀면 예컨대 평양 천도한 해는 장수왕 16년이 되어야 한다.(표 8)

28) (호태왕비문 1면 4, 5, 6행) "17世孫에 이르러 國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께서 18세에 登祚하시니 연호를 永樂이라 하였다. 太王의 恩澤이 皇天에까지 洽足케 하였고 威武는 四海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그 생업에 힘쓰고 편안히 살게 되었다. 나라는 부강하고 백성은 유족해졌으며, 오곡이 풍성하게 익었다. 그런데 昊天이 어여삐 여기지 아니하여, 나이 39세에 나라를 버리고 떠나시니, 甲寅年 9월 29일 乙酉日에 山陵으로 모시었다. 이에 그 功勳과 業績을 立碑銘記하여 後世에 보인다." (「遝至十七世孫國罡上廣開土境平安好太王」二九登祚, 號爲永樂. 太王恩澤洽于皇天, 威武振被四海. 掃除不□, 庶寧其業. 國富民殷, 五穀豊熟. 昊天不」弔, 卅有九, 寔駕棄國, 以甲寅年九月廿九日乙酉遷就山陵. 於是立碑, 銘記勳績, 以示後世焉.」)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러지 않고 만약 장수왕의 연대기 전체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삼국사기』가 "유년기년법"을 쓴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현재 보통 쓰고 있는 연표[29]에서 갑인년을 장수왕 2년으로 말한 것은 이런 측면이다. 그렇지만 미천왕, 고국원왕, 소수림왕, 고국양왕, 광개토왕이 모두 즉위년 기년법을 쓴 것과 달라져 용인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30]

요컨대, 다른 왕대와 동일하게 즉위기년법을 적용하면, 갑인년은 장수왕 3년이 되며, 이에 따라 광개토태왕의 상장 기간은 장수왕 원년(412, 임자년) 10월부터 만 2년 되는 장수왕 3년(414, 갑인년) 9월까지 3년상을 치른 뒤에 태왕릉에 안장한 것이라 정리된다. 비문이 왕의 薨去日을 밝히지 않고 안장일을 자세히 밝힌 점은 특이하다.

덧붙여 『삼국사기』 장수왕의 연대기를 검증하는 일환으로 北魏에 遣使朝貢한 사건을 대조하면, 『삼국사기』에서 장수왕 23년(435) 6월 遣使入魏朝貢하고 國諱를 청하여 都督遼海－高句麗王을 받았고, 장수왕 24년(436) 5월 魏主(태무제)가 散騎常侍 封撥을 고구려에 보내어 燕王을 압송토록 하였다 하였는데, 『위서』「世祖紀」 제4상을 보면, 太武帝 太延 원년(435) 6월 병오일에 고려가 遣使朝獻하였고, 태연 2년(436) 4월 무오일에 散騎常侍 封撥을 고려

29) 이현종 편저, 1971, 『동양연표』, 탐구당

30) 문자명왕의 경우도 즉위기년법으로 보는 편이 합당해 보인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장수왕이 재위 79년(태왕비문으로는 80년) 되던 491년(신미년) 12월 98세로 훙거한 때문인데, 엄밀한 즉위년법으로 보면 이 해가 문자왕 원년이 되어야 하나 얼마 지나면 새해가 되므로 492년(임신년) 정월을 즉위 원년으로 삼은 것이라 볼 수가 있다. 자세한 붕어 날짜를 알아보기 위해 『위서』「고조기」 태화 15년조를 보면, 북위 효문제가 "12월 계사일, 고려왕 璉擧를 위해 성 동쪽 행궁에서 애도를 표시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록의 491년 12월 계사일은 음력 12월 6일(양력 492년 1월 20일)이다. 『삼국사기』「고구려본기」 권19 문자왕 즉위년조에서, "원년(492년) 정월에 위 효문제가 사신을 보내 고구려왕으로 책봉하였다"고 기록한 것은 이런 사정을 시사한다. 『위서』「고조기」 태화 16년조를 보면, "춘정월 신사일, 고려왕 璉의 손자 羅雲을 그 국왕으로 삼았다"(辛巳, 以高麗王璉孫雲爲其國王. 蕭賾遣使朝貢. 是月, 高麗 · 鄧至國並遣使朝貢.)고 하였다. 이 책봉 날짜인 정월 신사일은 음력 1월 24일(양력 492년 3월 8일)이다. 문자왕의 실제 즉위일은 이보다는 앞설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에 사신을 보내 馮文通을 徵送토록 하였다[31]고 하는 등 서로 사건이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은 『삼국사기』 장수왕대의 연대기가 모두 유년칭년법으로 1년씩 늦추어졌다고 볼 것이 아니라, 즉위년 전후 몇 년 정도에서만 착란이 빚어진 것이고 나머지 연대기는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삼국사기』 고국양왕의 말년이 비문과 부합하지 않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고국양왕 8년에는 기록이 없고, 9년조에 3월에 佛法崇信을 下敎하고 國社 설립을 하였고, 5월에 홍하였다 하였으나, 이 기록을 8년조로 옮겨야 광개토왕이 신묘년(391)에 즉위한 것과 부합하게 된다. 역시 즉위년 기년법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한편 광개토태왕의 안장일인 "갑인년(414) 9월 29일 을유일"은 동진과 북위의 현행력일과 부합하며, 갑인년은 동진 安帝 義熙 10년, 북위 明元帝 神瑞 원년에 해당하고, 9월은 丁巳朔이 되며, 大月로 되어 있다. 이해는 윤달이 없고, 다음 해인 을묘년(415)에 갑신삭 윤3월이 들어 있다. 앞서 덕흥리고분 묵서명이 무신년(408) 12월 신유삭으로서, 태시력 12월의 경신삭과 차이를 보였는데, 불과 6년 뒤에는 다시 역일차이가 보이지 않고 있다. 또 달리 考究할 만한 역일 자료가 없어 이것만으로 태왕비문의 역일 특성을 결정하기 어려우나, 역시 고구려 현행력이 중국의 태시력과 기본적으로 역산법이 공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물론 서로 공유한다고 하여 덕흥리 묵서명의 역일차이가 지닌 역법적 의미가 축소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된다. 본고 고찰이 지닌 의의 중 하나가 고구려 역일 자료가 지닌 역법적 논점을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도 하다.

31) 이 기록을 다시 대조하면, 魏主(태무제)가 散騎常侍 封撥을 고구려에 보내 燕王을 압송케 한 사건이 북위는 436년(병자년) 4월 무오일 기사로, 고구려는 436년 5월 기사로 기록하고 있어 한 달의 차이를 보인다. 이해는 윤달이 있는 해이다. 그래서 윤달의 영향인가를 살펴보면, 북위는 현시력으로 윤12월이 들어 있고, 유송의 원가력으로도 윤12월이다. 연말에 든 윤달이어서 한 달의 오차를 설명하는 데 참조가 되지 않는다. 만약 고구려가 윤3월처럼 자신들의 윤달이 있어 다른 것이었다면 고구려의 5월은 북위의 6월에 대응하는 관계여서 오차가 더욱 벌어진다. 따라서 고구려의 5월 기록이 오기이거나 무언가 한 달 늦춰서 기록된 정도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8〉 광개토태왕 전후 연대기 검토

	간지년	태왕 나이	『호태왕비』 永樂 연호	『삼국사기』 연대기	비 고
384	갑신년			故國壤王 원년	소수림왕 14년 11월 승하, 아우 伊連 즉위(『삼국사기』)
385	을유년			2년	6월 군사 4만 명으로 요동 공략(『삼국사기』)
386	병술년			3년	정월 왕자 談德 太子 책립(『삼국사기』)
387	정해년			4년	
388	무자년			5년	
389	기축년			6년	
390	경인년			7년	9월 백제 達率 眞嘉謨가 都押城 습격(『삼국사기』)
391	신묘년	18세	원년	8년	
392	임진년	19세	2년	9년 /광개토왕 원년	신라 내물왕 37년 정월 조카 實聖을 볼모로 보내옴 /3월 佛法 崇信 求福 下敎, 國社 세우고 宗廟 수리 /5월 고국양왕 薨(『삼국사기』)
393	계사년	20세	3년	2년	
394	갑오년	21세	4년	3	
395	을미년	22세	5년	4	
396	병신년	23세	6년	5	
397	정유년	24세	7년	6	
398	무술년	25세	8년	7	
399	기해년	26세	9년	8	
400	경자년	27세	10년	9	
401	신축년	28세	11년	10	
402	임인년	29세	12년	11	
403	계묘년	30세	13년	12	
404	갑진년	31세	14년	13	
405	을사년	32세	15년	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06	병오년	33세	16년	15	
407	정미년	34세	17년	16	
408	무신년	35세	18년	17	
409	기유년	36세	19년	18	
410	경술년	37세	20년	19	
411	신해년	38세	21년	20	
412	임자년	39세	22년 /장수왕 원년	21	영락 22년 10월 39세로 승하(『비문』) /즉위기년법 장수왕 원년. 19세로 즉위
413	계축년		2년	22 /장수왕 원년	10월 광개토왕 훙, 장수왕 즉위(『삼국사기』) /유년기년법 장수왕 원년
414	갑인년		3년	2년	갑인년 9월 29일 을유일에 광개토호태왕을 산릉에 안장(『호태왕비문』)
415	을묘년		4년	3년	
427	정묘년		16년	15년	평양 천도
435	을해년			23년	위태무제 太延 원년. 6월 입위조공
436	병자년			24년	위태무제 태연 2년. 5월 燕王 압송
488	무진년			76년	秋閏八月 入魏朝貢
489	기사년			77년	
490	경오년		79년	78년	
491	신미년		80년	79년	12월 98세로 훙거, 長壽王이라 시호
492	임신년			문자왕 원년	정월 문자왕 즉위

5_ 동아대 소장 태화 13년명(489) 석불상 명문

다음으로 역일간지가 있는 기년 불상으로 동아대학교에 소장되어 있는 삼존불상(높이 39.5cm, 폭 44.5cm)이 있으며 뒷면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12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大和十三年歲在」己巳九月[壬][寅]朔十九」日庚申, □□□□□□」□□功德三寶□□□」除成凡己□□成行御」古□心□忍北不□□」□□□□功德逮及七」世父母□□□□□□」衆生咸同□□□□壽」昔惡途□□之願□□」結地□□感慕□因」緣少佛□□□□□□」□文□佛像一□□□」□□□□三寶出入□」

『역주한국고대금석문』의 서영대 주석에서 설명되어 있듯이, 불상의 제작 연대를 알려주는 大和 13년은 북위 孝文帝 太和 13년(489, 기사년)으로 볼 수 있다. 불상의 "太和 13년 기사년 9월 壬寅朔 19일 庚申日"이라는 제작 연월일을 북위의 역일과 대조하면 부합한다. 이에 이 불상의 제작 연도는 장수왕 77년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때는 북위가 玄始曆(412~522)을 쓰던 중이며, 南齊로는 武帝 永明 7년에 해당하고 劉宋의 元嘉曆(445~509)을 사용하던 중이다. 따라서 남북조의 두 역법으로 모두 대조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송문제 원가 22년(445)에 元嘉曆이 쓰이면서는 남북조의 朔閏法이 같지 않아 서로 역일이 달라지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었다.(말미 도표 참조)

태화 13년 전후로 볼 때는 488년(장수왕 76년, 태화 12년)에 북위는 윤9월 정미삭, 10월 정축삭이었으나, 남제는 10월 정미삭, 윤10월 정축삭이었다. 491년(장수왕 79년, 태화 15년)은 북위가 윤5월 임술삭, 6월 신묘삭, 7월 신유삭이었으나, 남제는 6월 임술삭, 7월 신묘삭, 윤7월 신유삭이었다.[32] 하지만 489년(태화 13년, 영명 7년)은 공교롭게 북위와 남제가 동일한 역일을 쓰고 있어 차이점이 없다. 고구려도 이 역일법에 그대로 들어맞는 까닭에 이 역일자료

32) 윤달이 있는 해여서 어떤가 대조하여 보면, 장수왕 79년(태화 15)에 『삼국사기』는 5월과 9월에 견사조공하였다고 하였고, 『위서』 역시 5월 을묘일과 9월 임오일에 遣使朝獻하였다고 하였으며, 장수왕이 12월 붕어함에 효문제가 12월 계사일 城東行宮에서 애도를 표시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서로 역월이 부합한다.
「太和15年(장수왕 79년) 5月 乙卯日 高麗國遣使朝獻. 9月 壬午日, 吐谷渾 · 高麗 · 宕昌 · 鄧至諸國並遣使朝獻. 12月 癸巳日, 帝爲高麗王璉擧哀於城東行宮.」(『魏書』「高祖紀」 제7하 太和 15年條, 168~1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갖고는 어떤 특이점을 찾기가 어렵다. 다만 태화13년명 명문에서 壬寅朔의 壬寅 글자가 판독할 수 없다는 보고가 있고, 『역주한국고대금석문』의 "임인삭"은 그 뒤 일간지인 "19일 庚申"에 근거하여 推讀한 것이어서 재론의 여지는 있다고는 할 수 있다. 추후 정밀한 釋文을 요한다.

앞서 고구려가 『삼국사기』에서 장수왕 76년(488)을 윤8월로 기록하여 북위와 다른 문제를 살펴보았는데, 불과 1년 뒤인 장수왕 77년 역일은 북위와 부합하고 있어 이 시기 역법의 해석을 어떻게 할지 매우 어렵다. 가능한 해석은 둘인데, 하나는 『삼국사기』의 장수왕 76년조 윤8월이 북위의 윤9월을 誤記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북위와 남제가 윤달이 든 해는 역일법이 같지가 않고, 평년은 동일하게 가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역시 장수왕 77년 銘文처럼 평년은 북위와 남제와도 동일하게 가되 윤달은 달라지는 것으로 볼 수는 있다. 아무튼 이 태화13년명 불상의 역일자료도 『삼국사기』의 역일 문제를 해석하는데 적절한 기초자료 역할을 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_ 신포시 오매리 절골터 금동판 금석문

끝으로 함경남도 신포시 오매리 절골터 유적 건물지에서 1988년 6월 일부가 깨졌으나 銘文이 있는 귀중한 金銅版(가로 41.5cm, 세로 18.5cm) 금석문 자료가 출토되었다. 12줄 중에서 26자는 미상이고 113자가 판독되고 있다. (144쪽)

□□□□□□□□三輪垂世耳」
□所階 是故如來唱圓敎於金河」
□神之妙宅 現闍維□□□□」
[迎][於]後代 是以□□慧郎奉爲圓覺」
大王 謹造玆塔 表刻五層 相輪相副」
願王神昇兜率 查勤彌勒 天孫俱會」
四生蒙慶 於是頌曰」
聖智契眞　妙應群生　形言暉世」

□育道成　迷□□□　稟生死形」
□神會性　則登聖明」
□和三年 歲次丙寅 二月 卄六日」
□戌朔 記首」

이 중에서 "□和三年 歲次丙寅 二月 卄六日 □戌朔 記首"라는 역일간지명이 주목된다. 보통 월명 다음에 삭일이 적히는데 여기서는 일자 뒤에 쓰고 있다. 이때 □和와 □戌 글자는 금동판 위 끝부분에 새겨져 있고 자획의 일부가 떨어진 까닭에 명확한 판독이 어렵다 하며, 太和와 甲戌로 추정하여 고구려 陽原王 2년(546)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제출된 상태이다.

편의상 명문을 갈라서, "□和 3년"은 제1 조건, "歲次丙寅"은 제2 조건, "2월 □戌朔"을 제3 조건으로 놓는다. 이 금동판을 고구려 때의 것으로 보고서, 기존 연구에서 병인년인 해를 찾아 장수왕 14년(426) 2월 경술삭, 장수왕 74년(486) 2월 임술삭, 양원왕 2년(546) 2월 갑술삭, 영양왕 17년(606) 2월 병술삭, 보장왕 25년(666) 2월 무술삭 등이 고려된다고 보았는데, 공교롭게도 60년 간격으로 모두 병인년이고 □戌朔이 되어 제2 조건과 제3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문제는 제1 조건인데, 연호가 □和이면서 병인년이 든 것을 찾으면, 東晋 廢帝奕 太和 연호(1-6년, 366~371)와 북위 효문제의 太和 연호(1-23, 477~499)와 발해 彝震王 咸和 연호(1-28, 830~857)가 검토대상이 될 만하다. 그 외 東魏 孝靜帝 興和 연호(1-4, 539~542) 등도 많이 있으나 병인년이 들지 않는다. 이에 □和 연호와 병인년을 찾으면, 東晋 廢帝奕 太和 원년(366)과 북위 효문제 太和 10년(486), 발해 彝震王 咸和 17년(846)이 해당한다. 여기에 다시 제3 조건을 붙이면, 366년은 2월이 기사삭이고, 486년은 2월이 임술삭이고, 846년은 2월이 임신삭이다.

따라서 제1, 제2, 제3 조건을 가장 가깝게 만족시키는 것은 북위 효문제 太和 10년(486, 장수왕 74년) 2월 임술삭이 된다. 가장 유력한 후보라 생각되나 제1 조건이 "□和 3년"이라서 太和 10년과는 거리가 있다. 만일 3년에 주목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면 □和를 고구려 자체의 연호로 보고 양원왕 2년(546)이 가깝게 여겨지나, 이 경우는 1년의 차이가 있고 연호의 존재 문제 등 더 많은 가정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하여, 오매리 금동판은 장수왕 74년(486) 2월 임술삭 26일 정해일이거나 양원왕 2년 병인년(546) 2월 갑술삭 26일 기해일이 될 여지를 일단 상정하는 정도이다. 역일이 고정이 되지 않아 역법적 접근을 더 이상 하기는 어렵지만, 고구려 역법사 관점에서 이 시기에 간지로 歲次에다 曆月과 曆日을 쓰는 방식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Ⅳ. 맺음말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지금까지 고구려의 문헌과 금석문 기록에 나타난 간지역일기록을 재검토하면서 고구려 당시의 역법 문제를 좀 더 세밀히 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통해 고구려 시기의 역법학 흐름과 시간학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고구려의 시기를 삼분하여 역법적 흐름을 구분한다면, 첫째 고구려 초기는 관습적 시간학의 역법 시기로 볼 수가 있고, 둘째 고구려 중기는 중국 역법의 도입시기로, 셋째 고구려 말기는 체계적 중국 역법의 활용 시기로 갈라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때 시기구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초기는 추모왕이 건국한 기원전 37년부터 제14대 봉상왕(292~300)까지 340년간으로, 중기는 요동의 서안평을 공취하고 낙랑군 · 대방군으로 영토를 확장한 제15대 미천왕(300~331)부터 평양 천도를 단행한 제20대 장수왕(412~491)까지 190년간으로, 말기는 평양시대를 구가한 제21대 문자왕(491~519)부터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하는 제28대 보장왕(642~668)까지 180년간으로 나눌 수가 있다.[33]

33)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한 장수왕 15년(427)부터 보장왕 27년(668)까지 241년간

역법학의 발달 측면에서 본다면, 처음으로 윤달이 기록된 장수왕 76년(488) 무렵과 뒤이은 문자왕 19년(510) 즈음에는 본격적인 중국식 태음태양력이 수립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 이때의 역법은 북위(386~534)가 받아들여 습용한 북량의 玄始曆(412~522)으로 조망되며, 다만 윤달의 위치가 윤8월(장수왕)과 윤9월(북위 효문제)로 다른 점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삼국사기』의 오기가 아니라면 현시력을 변용한 고구려식 역산법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만약 있었다면 北朝의 대표적인 우량한 역법이고 기간도 오래 지속된 조위의 景初曆(237~451)과 연관지어 접근할 만하다고 생각되었다.

남겨진 묵서명과 금석문을 통해 분석하면, 안악3호분의 永和 13년(357) 10월 무자삭월 계축일 묵서는 永和가 동진 穆帝의 연호이고, 또 升平으로 개원한 사실 자체를 10개월간이나 모르고서 추산한 기록이란 점에서 당시 西晋·東晋의 泰始曆(265~420)을 수용한 측면을 읽을 수가 있다. 이 태시력은 경초력과 동일한 역법이되 이름만 개칭한 것이다.

덕흥리고분의 묵서명은 묘주의 흥거일인 "永樂 18년 戊申年(408) 12월 辛酉朔 25일 乙酉日"이 당시의 북위 경초력(=동진 태시력)과 하루 늦게 가는 역일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단순한 1일차의 오기로 보기보다는 고구려식의 역산법 존재를 상정할 만하다고 보아 본고는 광개토태왕대의 永樂曆을 가설로 제시하였다. 이 가설은 역산표의 삭간지를 대조할 때 고구려가 중국의 태시력과 2개월 차이를 보이는 것에 근거한다. 408년 고구려 영락력은 12월 신유삭이고, 동진 태시력은 10월 신유삭이어서 2개월씩 밀려 대응된다. 그렇지 않고 삭간지는 동일하되 역일에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진력의 11월-小月, 12월-大月이 영락력은 11월-大月, 12월-小月로 다른 대소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게 된다. 또한 덕흥리 묘주 안장일인 409년 2월 경신삭 조건을 기준으로 대조하면, 영락력이 12월－신유삭-大月, 1월－신묘삭-小月의 조합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5세기 초 광개토태왕대에 영락력의 존재를 설정하였는데 추후 다

을 후기로 본다면, 위오촉의 분립으로 중국과 접변이 잦아지는 제11대 동천왕(227~248)부터의 200년간을 중기로 볼 수도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각적인 재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한편 광개토태왕비문은 간지명 태세와 연호에 따른 연수를 동시에 기록한 까닭에 『삼국사기』의 기록이 1년씩 늦춰진 오류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보여주었다. 특히 "갑인년(414) 9월 29일 을유일"의 안장일 기록은 즉위기년법으로 장수왕 3년이 되는 해이어서, 태왕의 상장기간이 장수왕 원년(412, 임자년) 10월에서 만 2년이 되는 장수왕 3년(414, 갑인년) 9월까지 3년상을 치른 뒤에 태왕릉에 안장한 것임을 보여준다. 연대기가 혼란스러운 고국양왕부터 광개토태왕, 장수왕, 문자왕까지의 역년과 세년 차이 문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삼국사기』 연대기와 태왕비의 금석문을 대조하여 도표로 제시하였다.

이렇게 4세기 중반에서 5세기의 자료는 영류왕 7년(624) 2월에 당나라 傅仁均의 戊寅曆書를 청하였다는 공식 기록 이전에 중국적 태음태양력법이 고구려에 도입되었을 것임을 충분히 시사하고 있다. 다만 당시 중국력인 현시력 · 태시력과 무언가 편차를 보인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는 영락력이라 가정한 고구려식 역법의 존재를 상정할 만하고, 소극적으로는 중국력이 아직 체계적으로 수용된 단계는 아니었을 것으로 보게 한다. 이후 문자왕대의 6세기부터는 보다 안정적인 중국력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 시간학의 시기구분 문제는 본고의 주된 분석대상이 아니었고 아직 초보적 가설의 단계라서 미흡한 부분이 많으며 보완할 점들이 적지 않다. 추후에 기회를 보아가면서 더욱 정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9〉 부록 : 위진남북조시대 북조와 남조 계통의 역일법 차이 대조표

연도	연호	魏나라 景初曆	吳나라 乾象曆
220	曹魏 黃初 원년		
223	魏文帝 黃初 4년		吳가 乾象曆 사용하면서, 四分曆 습용한 魏 · 蜀과 朔閏이 달라지기 시작함.
225	魏文帝 黃初 6년	曹魏 윤3월 무신삭	吳 윤4월
230	魏明帝 太和 4년	魏 윤9월 병자삭	吳 윤8월
236	위명제 靑龍 4년	魏 윤정월 을사삭	吳 윤2월
237	위명제 景初 원년	魏 정월 기해삭, 2월 기사삭, 4월 무진삭 (魏 3월에 景初로 改元하고 景初曆 사용 →3월이 4월, 12월이 정월이 됨.)	吳 정월 무술삭, 2월 무진삭, 4월 정묘삭
238	경초 2년	위 6월 경신삭, 윤10월 무자삭, 11월 무오삭	오 6월 신유삭, 11월 기축삭
239	경초 3년	위 10월 임오삭 /위 12월에 寅正으로 복귀	오 10월 계미삭
241	魏齊王 正始 2년	魏 3월 갑진삭 /윤6월 계묘삭	吳 3월 을사삭 /蜀 윤7월
242	正始 3년	魏 5월 정묘삭	吳 5월 무진삭
243	정시 4년	위 10월 기축삭	오 10월 경인삭
244	정시 5년	위 12월 임자삭	오 12월 계축삭
245	정시 6년	위 2월 신해삭	오 2월 임자삭
246	정시 7년	위 5월 갑술삭 /윤12월 신미삭	오 5월 을해삭 /촉 윤11월
249	嘉平 원년	위 2월 무오삭, 9월 을유삭, 윤9월 을묘삭	오 2월 기미삭, 윤8월 을유삭, 9월 을묘삭 /촉 윤8월
250	嘉平 2년	위 4월 신사삭, 6월 경진삭	오 4월 임오삭, 6월 신사삭
252	가평 4년	위 5월 경자삭, 윤5월 기사삭	오 윤4월 경자삭, 5월 기사삭
253	가평 5년	위 정월 을축삭	오 정월 병인삭
255	高貴鄕公 正元2년	위 8월 경술삭	오 8월 신해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도	연호	魏나라 景初曆	吳나라 乾象曆
257	甘露 2년	위 정월 임신삭, 윤10월 무진삭	오 정월 계유삭 /촉 윤9월
258	감로 3년	위 5월 갑오삭	오 5월 을미삭 (촉은 거의 다름)
259	감로 4년	위 8월 정사삭	오 8월 무오삭
260	감로 5년	위 12월 기묘삭	오 12월 경진삭
262	魏元帝 景元 3년	위 5월 신축삭	오 5월 임인삭
263	경원 4년	위 7월 갑자삭, 윤3월 병인삭	오 7월 을축삭 /촉 윤4월
264	경원 5년	위 12월 병술삭	오 12월 정해삭
266	晋武帝 泰始 2년	진 4월 무신삭	오 4월 기유삭
267	태시 3년	진 7월 신미삭	오 7월 임신삭
268	태시 4년	진 11월 계사삭	오 11월 갑오삭
270	태시 6년	진 4월 을묘삭	오 4월 병진삭
271	태시 7년	진 6월 무인삭	오 6월 기묘삭
272	태시 8년	진 11월 경자삭	오 11월 신축삭
274	태시 10년	진 3월 임술삭	오 3월 계해삭
276	咸寧 2년	진 윤9월 무인삭, 10월 정미삭	오 10월 무인삭, 윤10월 무신삭
280	함녕 6년		오 3월 멸망
445	宋文帝 元嘉22년		송문제 원가 22년 정월부터 원가력 始用. 北魏 景初曆 계속
445	北魏 太武帝 太平眞君 6년 (元嘉 22년)	北魏 윤정월 신유삭, 2월 경인삭, 3월 경신삭, 4월 기축삭, 5월 기미삭	宋 2월 신유삭, 3월 경인삭, 4월 경신삭, 5월 기축삭, 윤5월 기미삭
447	태평진군 8년 (원가 24년)	북위 윤10월 을사삭, 11월 을해삭, 12월 갑진삭	宋 10월 을해삭, 11월 을사삭, 12월 갑술삭 (윤달 없음)
448	태평진군 9년 (원가 25년)	북위 정월 계유삭, 2월 계묘삭 (윤달 없음)	宋 정월 갑진삭, 2월 계유삭, 윤2월 계묘삭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도	연호	魏나라 景初曆	吳나라 乾象曆
450	태평진군 11년 (원가 27년)	북위 윤7월 기축삭, 8월 무오삭, 9월 무자삭, 10월 정사삭	송 8월 기축삭, 9월 무오삭, 10월 무자삭, 윤10월 정사삭
455	북위 文成帝 興光 2년 /송 효무제 孝建 2년	북위 4월 신유삭	송 4월 임술삭
456	문성제 太安 2년 /송 효건 3년	북위 윤2월 병술삭, 3월 병진삭	송 3월 병술삭, 윤3월 병진삭
458	문성제 태안 4년 /송 효무제 大明 2년	북위 윤10월 신축삭, 11월 경오삭, 12월 경자삭(汪氏說) /(劉氏說 윤11월)	송 11월 신축삭, 12월 경오삭, 윤12월 경자삭
461	문성제 和平 2년 /송 효무제 대명 5년	북위 윤7월 을유삭, 8월 갑인삭, 9월 갑신삭(汪氏說) /(劉氏說 윤8월)	송 8월 을유삭, 9월 갑인삭, 윤9월 갑신삭
464	문성제 화평 5년 /송 효무제 대명 8년	북위 윤4월 기사삭, 5월 무술삭	송 5월 기사삭, 윤5월 무술삭
469	북위 獻文帝 皇興 3년 /송 명제 泰始 5년	북위 윤9월 정묘삭, 10월 정유삭, 11월 정묘삭	송 10월 정묘삭, 11월 정유삭, 윤11월 정묘삭
472	북위 孝文帝 延興 2년 /송 명제 泰豫 원년	북위 윤6월 임자삭, 7월 신사삭	송 7월 임자삭, 윤7월 신사삭
477	북위 효문제 太和 원년 / 송 後廢帝 元徽 5년	북위 윤11월 경술삭, 12월 경진삭	송 12월 경술삭, 윤12월 경진삭
480	북위 효문제 태화 4년 /南齊高帝 建元 2년	북위 윤7월 을축삭, 8월 갑오삭, 9월 갑자삭	남제 8월 을축삭, 9월 갑오삭, 윤9월 갑자삭
483	북위 효문제 태화 7년 /남제무제 永明 원년	북위 윤4월 기유삭, 5월 무인삭	남제 5월 기유삭, 윤5월 무인삭
488	북위 효무제 太和 12년 / 남제 武帝 永明 6년	북위 윤9월 정미삭, 10월 정축삭 /고구려 장수왕 76년 秋閏8月	남제 10월 정미삭, 윤10월 정축삭
491	북위 효문제 태화 15년 / 남제 무제 영명 9년	북위 윤5월 임술삭, 6월 신묘삭, 7월 신유삭(汪氏說) /劉氏說 윤6월	남제 6월 임술삭, 7월 신묘삭, 윤7월 신유삭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도	연호	魏나라 景初曆	吳나라 乾象曆
494	북위 효문제 태화 18년 / 남제 명제 建武 원년	북위 윤2월 병오삭, 3월 을해삭, 4월 을사삭	남제 3월 병오삭, 4월 을해삭, 윤4월 을사삭
496	북위 효문제 태화 20년 / 남제 명제 건무 3년	북위 윤11월 경인삭, 12월 기미삭	남제 12월 경인삭, 윤12월 기미삭
502	북위 宣武帝 景明 3년 /남제 和帝 中興 2년 /梁武帝 天監 원년	북위 윤4월 무자삭 (劉氏說 윤6월, 汪氏說 윤5월 /帝紀 및 南史에 근거하면 윤4월, 북위는 劉氏說로 윤5월, 汪氏說로 윤4월.)	남제 윤4월 무자삭
504	북위 선무제 正始 원년 / 양무제 천감 3년	북위 12월 계유삭, 윤12월 계묘삭	양 12월 계유삭, 윤달 없음.
505	북위 선무제 正始 2년 /양 무제 천감 4년	북위 504년 윤12월 계묘삭, 505년 정월 임신삭, 2월 임인삭	양 정월 계묘삭, 2월 임신삭, 윤2월 임인삭
507	북위 선무제 정시 4년 /양 무제 천감 6년	북위 윤9월 정해삭, 10월 병진삭	양 10월 정해삭, 윤10월 병진삭
510	북위 선무제 永平 3년 /양 무제 天監 9년		양무제 천감 9년 정월부터 祖冲之의 大明曆 사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김일권, 2008,『고구려 별자리와 신화』, 사계절
김일권, 2007,『동양천문사상 하늘의 역사』, 예문서원
김일권, 2008,『우리 역사의 하늘과 별자리』, 고즈윈
나일성, 2000,『한국천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안영숙 외, 2002,『삼국시대연력표』, 한국천문연구원
유경로, 1999,『한국천문학사연구』, 녹두
이은성, 1985,『역법의 원리분석』, 정음사
이현종 편저, 1971,『동양연표』, 탐구당
전상운, 1988,『한국과학기술사』, 정음사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1992,『역주한국고대금석문』,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허흥식, 1984,『한국금석문』고대편, 아세아문화사

金英夏 · 韓相俊, 1983,「中原高句麗碑의 建立年代」,『教育研究誌』25,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김일권, 2007,「백제의 曆法制度와 干支曆日 문제 고찰」,『백제문화사대계』11권-백제의 사회경제와 과학기술, 충남역사문화연구원
김일권, 2002,「한국 고대인의 천문우주관」,『강좌 한국고대사』8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박진석, 2000,「중원고구려비의 건립연대 고증」,『중원고구려비연구』, 고구려연구 10집, 고구려연구회
박창범 · 라대일, 1994,「삼국시대 천문현상기록의 독자 관측사실 검증」,『한국과학사학회지』16권 2호
邊太燮, 1979,「中原高句麗碑의 내용과 年代에 대한 검토」,『史學志』13;『한국사의 성찰』, 1980
徐永大, 1992,「中原高句麗碑」,『譯註韓國古代金石文』, 韓國古代社會研究所
손영종, 1985,「중원고구려비에 대하여」,『력사과학』85-2,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엄윤수, 1983,「中原高句麗碑 小考:碑의 建立年代와 高句麗의 南下政策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은성, 1984,「武寧王陵의 誌石과 元嘉曆法」,『東方學志』43집, 연세대학교 국학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원
李昊榮, 1979,「中原高句麗碑 題額의 新讀」,『史學志』13, 단국대학교 사학과
任昌淳, 1979,「中原高句麗碑 고비 소고」,『史學志』13, 단국대학교 사학과
정운용, 1986,「5-6世紀 高句麗.新羅의 勢力變遷 過程에 대한 一考察:中原高句麗碑와 丹陽新羅赤城碑의 連繫的 考察」,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南朝鮮發現「高句麗拓境碑」,『朝鮮史研究動態』, 1979-3
大谷光男, 1977. 12,「武寧王と日本の文化」,『백제연구』8집,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大谷光男, 1973. 9,「百濟 武寧王 · 同王妃의 묘지에 보이는 曆法에 대하여」,『고고미술』119호, 한국미술사학회
木村誠, 2000,「中原高句麗碑の立碑年について」,『중원고구려비연구』, 고구려연구 10집, 고구려연구회
木村誠, 1997,「中原高句麗碑立碑年次の再檢討」,『朝鮮社會の史的展開と東アジア』, 山川出版社
木下禮仁, 1982,「日付干支と年次－中原高句麗碑の日付干支をめぐって」,『考古學と古代史』, 同志社大學考古學シリーズ
木下禮仁, 1984,「中原高句麗碑:建立年代를 中心으로」,『南都泳博士華甲記念史學論叢』, 太學社
木下禮仁 · 宮島一彦, 1994,「高句麗の曆－中原高句麗碑をめぐって」,『韓國文化』6-1
武田幸男, 1984,「序說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 高句麗中原碑から新羅赤城碑へ ー」, 井上光貞 外 編,『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飯島忠夫, 1926,「三國史記の日食記事について」,『東洋學報』15집
田中俊明, 1981,「高句麗の金石文」,『朝鮮史研究會論文集』18
田中俊明, 1980,「德興里古墳の墨書銘について」,『朝鮮史研究會會報』59
齊藤國治, 1985,「新羅 · 高句麗 · 百濟の天文記錄」,『星の手帖』27

徐光輝, 1990,「中原高句麗碑」,『東北亞歷史與文化』, 遼瀋書社
劉永智, 1986,「高句麗碑出土記芻議」,『學術研究叢刊』, 1986-4
劉永智, 1981,「最新發現的高句麗碑」,『學術研究叢刊』, 1981-1
李殿福, 1991,「高句麗金銅 · 石雕佛造像及中原郡碑－謙談高句麗易名高麗之時」,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博物館研究』 1991-1
林道心主編, 2003. 11,『中國古代萬年曆』, 河北人民出版社
張聞玉, 2008. 1,『古代天文曆法講座』, 桂林: 廣西師範大學出版社
陳遵嬀, 2006,『中國天文學史』(上中下), 上海人民出版社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Koguryo Calendar System and the Sexagenary Cycle Calendar Records in Fifth-Century Epigraphy

Kim Ilgwon

This article treats the Koguryo calendar system. It is difficult to find detailed information of that calendar due to the limited historic data. Further, only a few sexagenary cycle records from Koguryo are handed down through *Samguksagi*, the oldest Korean history.

I examined not only Koguryo records, but also fifth century epigraphic data from Koguryo. In particular, I found that an intercalary month record first appeared during the reign of King Jangsu(412~491) in the Koguryo Annals in *Samguksagi*. That occurred in 488, during the reign of King Jangsu. This record of an intercalary month means that Koguryo used the lunar-solar calendar system at least around the fifth century. That calendar may be the Xuanshi Calendar(412~522), which the Northern Wei dynasty used for a long period of time.

Koguryo's position for the intercalary month differs from that in Chinese documents from the same period. Koguryo used an eighth month intercalary month, but Northern Wei used the ninth month intercalary month. Owing to this difference, I believe Koguryo established a calendar system that differed from the Chinese calendar.

To analyze several fifth century epigraphic data, including the Deukheung-ri mural tomb, I knew that it was possible for Koguryo to use its own calendar, which differed from the Chinese Taeshi Calendar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used from 265 to 420 in Eastern Jin. As a result, I raise a new hypothesis of the existence of a Koguryo calendar. I have named this the Yongnak calendar of the Koguryo style.

Keywords

Koguryo calendar system, Xuanshi Calendar, Taishi Calendar, Yongnak Calendar, Muin Calendar, fifth century epigraphy, leap month record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영토 · 영해 인식

– 울릉도 · 독도 인식을 중심으로 –

박은숙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머리말

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1883년 3월, 조선 정부는 역사상 처음으로 東南諸島開拓使라는 낯선 관직을 신설하고, 그 자리에 개화파의 首長 김옥균을 임명했다. 조선 정부는 왜 이 시기에 동남제도개척사를 신설하고 그 직무를 김옥균에게 맡긴 것일까? 서세동점의 압력으로 동북아지역의 위기감이 고조되던 이 시기에 동남제도개척사를 신설한 것은 만국공법 체제에 편입된 조선 정부의 영토 · 영해에 대한 인식과 정책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를 맡게 된 것 또한 그의 국토개척 및 영토 · 영해 인식, 개화정책의 노선과 현실적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남제도개척사는 한국사의 영토 · 영해 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개척사 김옥균의 영토 · 영해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실마리를 던

※ 투고일: 2011년 11월 19일, 심사일: 2012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5일

져주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동남제도개척사로서 김옥균에 관한 연구는 몇 편에 불과하며,[1] 본격적 연구는 이광린의 논문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그것도 김옥균의 활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그의 영토 · 영해 인식에 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동남제도개척사의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자료적 제한에 기인하고 있다.

본 논문은 원산항 개항을 앞둔 1879년부터 울릉도 일대 '關防'의 방책을 도모했던 조선 정부의 邊境에 대한 인식과 영토정책의 전환을 살펴보고, 동남제도개척사의 설치 목적과 외국 자본을 끌어들인 개척사 김옥균의 활동 및 현실적 입장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당시 울릉도와 독도를 '通稱'하여 울릉도라고 불렀던 점, 울릉도 개척 사업이 대내적으로 주민입거와 개척사업, 대외적으로 자본조달이라는 이원적 체제로 추진되었던 점에 주목할 것이다. 또한 동남제도개척사 부임 무렵 김옥균이 주관하여 제작한 지도를 그대로 '縮寫'한 朝鮮輿地圖를 통해 그의 영토 · 영해 인식의 일단을 더듬어 보고,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구역으로 분명하게 표기한 의도를 밝혀 보려 한다. 대개 지도에는 제작자의 영토의식과 가치관, 사회문화적 관심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조선여지도를 분석함으로써 김옥균의 영토 · 영해 인식과 관심분야를 읽어내는 것 또한 새롭고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본다.[2]

이를 통해 개항 후 외세 침략에 맞선 조선 정부의 영토인식 변화와 변경정

1) 이광린, 1990, 「김옥균의 '동남제도개척사 겸 管捕鯨事' 임명에 대하여」,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김광옥, 2000, 「근대 일본의 協同商會와 조선무역」, 『동아시아역사연구』 제7 · 8집, 동아시아역사연구회; 엄찬호, 2007, 「개화기 독도의 연구 성과와 쟁점」,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수산업협동조합, 1987, 『韓國捕鯨史』,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송병기, 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등

2) 조선여지도가 일본인이 축소하여 베낀 '縮寫'본이라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도의 서문에서 김옥균이 '국력으로 조사하여 만든 지도'를 모본으로 한 것임을 밝히고 있고, 울릉도 개척 사업을 협의했던 동지 박영효가 지도 위에 題字를 쓴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김옥균 지도를 방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책 전환이 갖는 역사적 의미를 이해하고,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과 외국자본을 동원했던 개척사업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의 울릉도 · 독도를 비롯한 근대적 영토 · 영해 인식의 일단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로써 개항 후 만국공법 체제 아래 海島의 개척과 실효지배를 강화하려 했던 조선 사회와 김옥균의 대응방식과 노력을 이해하고자 한다.

Ⅱ. 개항 후 영토인식 강화와 邊境정책 전환

1_ 원산 개항 후 울릉도 일대 '關防' 강화와 海島정책 전환

울릉도와 독도는 6세기 초 于山國이 신라에 복속된 이래 우리나라 영토로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해 왔다. 조선시대 태종이 왜구의 울릉도 침탈로 인한 인적 · 물적 손실을 피하기 위해 1417년 居人刷出정책을 실시하였지만, 이후에도 여전히 조선 정부는 강원도 蔚珍縣에 소속시키고 통치권을 행사해 왔다.[3] 조선 인민들 또한 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수시로 울릉도에 드나들었으며, 왜구들도 출입했다. 숙종 때 安龍福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 · 독도의 조선영토권을 주장하면서 일본 어부들의 울릉도 · 독도 출어금지를 요청하여 약속을 받아냈다. 이후 조선 정부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순시 · 조사하게 하는 搜討制를 실시함으로써 일본인의 울릉도 侵魚문제는 크게 줄어들었다.

개항은 조선 정부가 울릉도 · 독도를 재인식하고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중요한 轉機가 되었다. 일본은 1876년의 朝日修好條規와 무역규칙 · 조일통상장정 등 근대적 조약을 근거로 조선 연해와 섬의 어업권을 공략하기 시작했다.

3) 신용하, 1996, 앞의 책, 143쪽; 『태종실록』 태종 17년(1417) 2월 8일; 『세종실록』 지리지, 강원도 삼척도호부 울진현 조;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45, 울진현 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특히 1880년의 원산 개항은 일본인의 울릉도 침투의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

조선 정부는 1879년 7월 13일 일본과 元山鎭開港豫約을 체결하고, 1880년 3월부터 '일본 人民의 무역을 위해 함경도 원산진을 개항'하기로 결정했다.[4] 원산 개항을 앞둔 1879년 10월 고종은 林翰洙를 울릉도 · 독도를 관할하는 강원도관찰사에 임명하고, 특별히 불러들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 상이 이르기를 "강원도는 다 산골짜기이고 넓이는 작지만 동으로 울릉도[鬱島]에 잇닿아 있고 남으로 쓰시마섬[對馬島]에 가까우니, 마음을 다해 對揚해야 한다" 하니, 임한수가 "신은 변변치 못한데 이런 重任을 맡아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했다. 상이 "嶺西도 다 산골짜기이므로 백성의 생업이 조잔한데, 근래에 또 저들에게 北關을 開港하였으므로 소중함이 특별하고 關防의 방책을 반드시 잘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5]

고종은 北關, 곧 함경도 원산 개항에 대비하여 쓰시마섬에서 원산에 이르는 해로와 그 주변에 있는 울릉도의 국경방어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특히 '關防의 방책'을 강조한 것은 영토수호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배가 울릉도와 대마도에 통하니 어찌 外憂가 없겠는가?"[6]라고 하면서 일본의 울릉도 침탈을 예상하고 있었다.

고종의 특별 명령을 받은 임한수는 搜討官을 파견하여 울릉도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그 결과를 1881년 5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통리기무아문에서 아뢰기를, 강원 감사 임한수의 장계를 보니, 울릉도 搜討官의 보고를 일일이 들어 말하기를 "看審할 때 어떤 사람이 나무

4) 『고종실록』, 고종 16년(1879) 7월 13일(양 8. 30). 본 논문의 연대는 음력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 ) 안에 양력을 표시하였다. 논문의 대상 시기가 공식적으로 양력을 사용하게 된 1896년 이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5) 『고종실록』, 고종 16년(1879) 8월 4일(양 9. 19); 『승정원일기』, 고종 16년(1879) 10월 24일(양 12. 7)
6) 『승정원일기』, 고종 16년(1879) 10월 24일(양 12. 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를 베어 해안에 쌓아 두었는데,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은 사람 7명이 그 곁에 앉아 있었으므로 글을 써서 물어보니, 대답하기를 '일본인으로 나무를 베어 원산과 부산으로 보내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들의 배가 근래 무상하게 오가면서 이 섬을 지목하고 있으니, 그 폐단이 없지 않습니다. 통리기무아문으로 하여금 아뢰도록 하소서"라고 했습니다.[7]

임한수는 일본인의 울릉도 침투와 벌목하는 폐단, 일본 선박이 "무상하게 오가면서 이 섬을 지목하고" 있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임한수의 보고를 접한 정부는 신속하게 일본인의 울릉도 침투에 대한 대내외적 방책을 강구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울릉도檢察使에 이규원을 임명하고 현지 조사를 명하였으며, 일본 정부에 알리도록 했다. 당시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은 1880년 원산 개항 이후 본격화했는데, 그것은 이규원이 1882년 울릉도에서 만난 일본인이 "2년 전부터 벌목을 시작했다"[8]고 진술한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곧이어 1881년 6월 조선 정부는 일본 외무성에 書契를 보내어 일본인의 울릉도 入境 漁採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일본 정부는 7월에 사실 조사를 약속하고 10월에 다시 자국민을 撤歸시키고 엄금하겠다는 답변문서를 보내왔으며,[9] 이로써 일본인의 울릉도 벌목과 어채의 불법성을 자인했다. 1882년 수신사로 파견된 박영효가 일본인의 울릉도 목재 斫伐에 대해 항의하자, 일본 외무경이 해당 일본인의 '懲治'를 약속한 것에도 잘 드러나 있다.[10]

고종은 1881년 5월 이규원을 울릉도검찰사로 임명하고, 1882년 4월 울릉도 현지에 파견했다. 이때 고종은 이규원을 불러들여 특별 당부를 잊지 않았다.

---

7) 『일성록』, 『승정원일기』, 고종 18년 신사(1881) 5월 22일(양 6. 18), 5월 23일
8) 이규원, 『鬱陵島檢察日記』, 1882년 5월 10일
9) 『舊韓國外交文書』 제1권 일안 1, 문서번호 74(1881. 7. 26), 75번(1881. 10. 24)
10) 박영효, 『使和記略』, 임오(1882) 9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울릉도는 근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무시로 왕래하며 제멋대로 편리한 곳을 차지하는 폐단이 있다. 그리고 松竹島와 芋山島는 울릉도 곁에 있는데, 서로의 거리와 원근이 어떠한지, 또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그대가 가는 것은 특별히 선택하여 보내는 것이니, 각별히 檢察하도록 하시오. 그리고 장차 邑을 설치할 계획이니, 반드시 圖形과 別單으로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도록 하시오.…… 또한 송도·죽도와 우산도는 3개의 섬[三島]으로 울릉도라고 통칭한다. 그곳 형편을 전부 검찰하도록 하시오.[11]

고종은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장차 邑을 설치하여 실효 지배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또한 "울릉도 곁에" '松竹島'와 '芋山島'(독도)가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들 섬에 대한 조사도 부탁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고종이 울릉도 곁에 있는 "송도·죽도와 우산도는 3개의 섬[三島]으로 울릉도라고 통칭한다"고 말한 점이다. 이는 곧 '울릉도'라는 명칭에는 울릉도와 그 주변의 송죽도 및 독도가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또한 고종을 비롯한 당대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도'로 통칭하고, 조선의 영토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종의 특별 명령에 따라 이규원은 1882년 4월 30일 울릉도 작은 황토구미에 도착했으며, 5월 9일 떠날 때까지 10여 일간 섬 안을 조사하였다. 이규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울릉도에는 141명의 조선인과 일본인 78명이 산재해 있었으며,[12] 이들은 울릉도에서 벌목·造船을 하고, 미역 등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약초를 캐기도 하였다. 이들 대부분은 포구 가까운 곳에 움막을 짓고 계절에 따라 왕래하였지만, 全錫圭 같은 경우에는 안쪽 분지인 羅里洞에 초막을 짓고 10여 년 이상 거주하기도 했다. 이규원은 울릉도에 파견되어 조사한 내용을 書契와 별단을 보내고 별도로 지도를 작성하여 보고했으며, 두 달 후

11)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4월 7일(양 5. 23)
12) 송병기, 2010, 앞의 책, 150~151쪽. 조선인 141명 가운데 전라도 사람이 115명(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강원도 14명(10%), 경상도 11명(7.8%), 경기도 1명의 순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울에 올라와 고종에게 직접 보고하였다.

> 고종: 書契와 별단을 이미 보았다. 그곳으로 가는 물길이 비록 어려우나 계속해서 空閑地로 두는 것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 이규원: 과연 그렇습니다.
> 고종: 地圖를 보았는데 산 위의 羅里洞이 과연 넓기는 넓었다. …… 만약 읍을 설치한다면 서너 곳 중에 나리동이 적당할 것이다.
> 이규원: 鎭과 읍을 만약 설치한다면 나리동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 고종: 그 골짜기 안에 3 · 4백 호를 수용할 만한 곳이 왕왕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 이규원: 골짜기 안에 1 · 2백 호를 수용할 만한 곳이 예닐곱 곳이나 되었습니다. ……
> 고종: 그 땅을 만약 개척한다면 백성들이 즐거이 따르겠는가?
> 이규원: 뱃놈과 약재 상인들에게 한번 물어보니, 대부분 즐거이 따를 뜻이 있었습니다. ……
> 고종: 왜인들이 푯말을 세워 놓고 松島라고 한다는데, 저들에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 이규원: 저 교활한 무리들이 심지어 송도라고 써서 푯말을 세우기까지 하였는데, 송도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부터 서로 힐난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차례 하나부사[花房義質]에게 공문을 보내지 않을 수 없고 일본 외무성에도 서한을 전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고종: 이런 뜻으로 총리대신과 시임 재상들에게 말하겠다. 지금으로 보면 한시라도 폐기해서는 안 되며 한 조각의 땅이라도 폐기할 수 없다.
> 이규원: 이 전교를 일일이 총리대신 및 시임 대신들에게 전유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한 치의 땅이라도 祖宗의 강토인데 어찌 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 고종: 저들에게 통지할 뿐만 아니라 개척하는 일도 속히 하는 것이 좋겠다.[13]

두 사람의 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울릉도를 '공한지'로 둘 수 없다는 점에

13)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6월 5일(양 7. 1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공감하고, 邑鎭을 설치하고 백성들을 入居시켜 울릉도를 개척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울릉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고히 함으로써 조선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려 한 것으로, 영토 · 영해에 대한 강력한 수호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특히 고종은 "한 조각의 땅이라도 폐기할 수 없다"고 하여 아무리 작은 땅이라도 폐기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통해 독도에 이르는 거리와 자원에 관심을 기울였던 고종의 독도에 대한 영토수호 의지 또한 충분히 엿볼 수 있다. 이어 고종은 일본인의 울릉도 난입에 대한 부당성을 일본 정부에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보면 당시 울릉도에 대한 조선 정부의 관심과 정책은 영토수호가 핵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규원의 보고가 있은 후, 1882년 8월 정부는 백성의 입거와 울릉도 개척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백성을 모집하여 섬을 개척하고 5년간 면세 혜택을 주고, 울릉도 목재를 이용하여 영 · 호남 세곡을 운반하는 漕船을 만들고, 鬱陵島長을 두었다가 이후 鎭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14] 이후 정부는 울릉도장에 全錫圭를 임명하고, 동남제도개척사를 신설하여 본격적으로 울릉도 개척사업을 추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_ 울릉도민의 入居와 개척사업의 추진

원산 개항에 대비하여 국토를 수호하고 일본인의 울릉도 침투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은 두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하나는 강원도관찰사 등을 통해 鬱陵島民을 입거시키고 농지를 개간함으로써 실효지배를 확실히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제도개척사를 신설하여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개척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었다. 울릉도 개척사업은 대내적으로 주민입거와 개간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대외적으로 외국 자본을 유치하여 산물을 판매하고 자본을 조달하는 방식이 병행되고 있었다. 이는 조선의 실효지배를 확고히 함으로써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었고,

14)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8월 20일(양 10. 1)

외세의 이권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이었다.

1883년 4월 정부는 울릉도에 30여 명의 주민들을 入居시켰다.[15] 이로써 태종 이래의 居人刷出정책이 폐기되었고, 울릉도는 466년만에 공식적으로 有人島로서 위상을 되찾게 되었다. 이때 울릉도민의 입거는 강원도관찰사 南廷順이 주관하였으며, 島民들이 먹고 살아갈 식료품과 개간 장비 등을 마련해 주었다. 우선 입거하는 30여 명이 9월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백미 60석과 소금 · 장 각 5석, 생활용품으로 수저 30개, 솥 2좌, 짚신 · 미투리 각 5죽, 백목 · 마포 각 5필, 개간 장비로 소와 철물 · 화약 · 화승, 방어용으로 총과 칼 등을 제공했다.

정부는 제2차로 20여 명을 입거시켰다. 그 결과 1883년 7월 울릉도에는 모두 16호 54명이 정착하여 살고 있었다.[16] 당시 울릉도에 입거한 사람들의 출신지는 강원도 39명(72%), 경상도 11명(20%), 충청도 3명, 경기도 1명이었으며, 남자 36명, 여자 18명이었다. 주목되는 것은 1년 전 이규원이 조사했을 때 전라도 사람이 141명 중 115명으로 82%를 차지했으나, 이때 입거한 사람 중에는 전라도 출신이 1명도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전의 전라도 사람은 거문도 등지에서 봄철에 해류를 타고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가을에 편서풍을 타고 돌아오는 계절 이동자들이었고,[17] 입거정책을 주관한 강원도관찰사는 주로 강원도와 이웃한 지역 백성들을 데려갔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입거민들의 연령은 1세부터 82세에 이르기까지 고루 섞여 있으나, 3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10대와 50대도 적지 않았다.[18] 이와 같이 연령대가 다양한 것은 가족 단위로 입거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며, 남자 혼자 들어간 경우도 적지 않고, 과부 모녀가 입거한 경우도 있었다.

15) 「光緒九年四月日鬱陵島開拓時船格粮米雜物容入假量成册」(1883), 규장각도서 17041번; 송병기, 2010, 앞의 책, 179쪽
16) 「光緒九年七月日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爻成册」(1883), 규장각도서 17117번
17) 동아일보사, 2008, 「거문도와 울릉도 100년 넘은 인연 아시나요」, 『주간동아』 625호(2008. 3. 4), 62~63쪽
18) 入居民의 연령과 성별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각주 16)과 같은 자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들 입거민은 大黃土浦 · 谷浦 · 錐峰 등지에 흩어져 농사지을 땅을 개간했는데, 입거 3개월 후인 1883년 7월 현재 15석 가량의 땅을 개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간사업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되었으나, 농기구의 부족과 야생 짐승들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겨울로 접어들면서 식량부족과 추위로 곤경에 처하였다.[19] 이에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은 1883년 10월에 일본의 協同商會社와 계약을 맺고 울릉도에 100석의 식량을 공급했다.[20]

1884년 3월 정부의 통리군국사무아문에서는 울릉도의 토지 개척과 백성 모집을 담당할 관리를 배치할 것을 건의했다.[21] 고종은 통리군국사무아문의 주장을 받아들여 1884년 4월 12일 울릉도 관리를 '울릉도鎭 수군첨절제사 겸 삼척진右營將討捕使'로 정하고, 그날 申相珪를 임명하였다. 이는 울릉도에 군사거점인 鎭을 설치하고 주변의 諸鎭을 통솔하는 수군첨절제사(종3품)를 두는 것으로, 울릉도에 대한 파격적 관심의 산물이며, 외세의 침략에 대비한 확실한 조치라 하겠다. 두어 달 후에는 평해군수가 울릉도첨사를 겸하도록 조치하였다.[22]

이후에도 고종의 울릉도 개척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였으며, 울릉도에 입거한 주민들의 육지 왕래와 선박 제작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1884년 7월 울릉도에는 60여 호가 이주하여 살고 있었다.[23]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구분	0~9세	10~19세	20~29세	30~9세	40~9세	50~9세	60~9세	70~9세	80~9세	알수없음	총계
남	6	4	3	12	2	4	2	2	1	–	36
녀	1	2	1	4	1	2	–	–	–	7	18
총계	7	6	4	16	3	6	2	2	1	7	54

19) 《自由新聞》, 1883년 10월 28일(음 9. 28). 이광린, 1990, 앞의 글 23쪽에서 재인용
20) 김용구 편, 1995, 『한일외교극비사료총서』 제29권, 아세아문화사, 1~24쪽; 김광옥, 2000, 앞의 글
21) 『고종실록』, 고종 21년(1884) 3월 15일(양 4. 10)
22) 『승정원일기』, 고종 21년(1884) 4월 12일(양 5. 6), 6월 30일(양 8.20), 7월 13일(양 9. 2)
23) 『승정원일기』, 1884년 7월 13일(양 9. 2). 이때 60여 호의 인구는 200여 명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1년여 전에 16호 54명이었던 비율을 적용하면 대략 2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울릉도 개척 문제는 조야의 호평을 받으면서 진행되었다.[24]

이처럼 조선 정부는 개항 후 외세침략에 맞서 1883년 4월 강원도 등지의 백성을 울릉도에 입거시키고 토지개간을 추진함으로써 태종 이래의 居人刷出 정책을 폐기하고 울릉도에 대한 실효지배를 대내외에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외세의 자원침탈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파격적으로 巨鎭에 두는 鬱陵島鎭水軍僉節制使를 설치함으로써 세계체제 아래 영토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Ⅲ. 동남제도개척사 김옥균의 활동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_ 동남제도개척사 설치와 東南諸島의 범주

조선 정부는 원산 개항을 앞둔 1879년부터 '外憂'를 우려하여 울릉도 · 독도 등 邊境의 海島에 대한 '關防'의 방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울릉도를 實査하고 독도에 이르는 거리와 자원을 조사하도록 했으며, '한 조각의 땅'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영토수호 의지를 다졌다. 이어 울릉도에 대한 그간의 居人刷出정책 폐기하고 주민 入居와 개간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울릉도와 일대 섬들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고히 하고, 외세의 이권침탈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아가 정부는 동남제도개척사를 설치하여 울릉도와 주변 섬들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원산에 이르는 海島의 방어와 개척을 추진하려 했다.

고종은 1883년 3월 16일, 김옥균을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하고, 양반 관료로서는 파격적인 고래잡이까지 겸하게 하였다.

24) 『승정원일기』, 1884년 8월 26일(양 10.14)

> 참의교섭통상사무 김옥균을 東南諸島開拓使로 삼아서 捕鯨 등의 일을 겸하게 하고, 하직하지 말고 편리한 대로 왕래하게 하라.[25]

예로부터 영토 개척의 역사는 있어 왔으며, 세종 때에도 4군 6진을 개척하고 徙民정책을 실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섬을 개척하기 위해 개척사란 관직을 공식적으로 설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더구나 개척사로 하여금 고래잡이 등의 일을 겸하게 하라니, 참으로 놀라운 발상이다.

그러면 조선 정부는 왜 이 시기에 동남제도개척사를 신설하고, 그 자리에 김옥균을 임명한 것일까? 우선 동남제도개척사란 그 명칭을 통해 東南諸島를 개척하는 직책임을 짐작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된 고종의 말을 들어 보자.

> 전교하기를, "개척사 김옥균은 開拓과 捕鯨 외에 沿邊의 列邑을 일체 살펴보도록 하여라. 또한 백성구제와 興利, 그리고 폐단을 바로잡고 처리하는 것 등의 일은 수시로 장계로 계문하라"고 하였다.[2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남제도개척사로서 김옥균의 주된 임무는 '개척'과 '捕鯨'으로, 이는 개척을 통해 영토의 실효지배를 확고히 하고 고래잡이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그 외에 '沿邊의 列邑'을 살펴보고 백성구제와 興利 등의 일까지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동남제도개척사의 업무를 울릉도 개척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다만 울릉도 개척이 현실적으로 시급한 과제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東南諸島'란 어떤 섬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동남제도개척사로서 김옥균의 활동을 보면 일단 울릉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울릉도만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전의 울릉도검찰사 · 울릉도장 등과 같이 울릉도개척사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동남제도'에는 울릉도 이외에 다른 동남쪽 섬들까지 염두에 둔 용어임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25)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 3월 16일(양 4. 22)
26)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 4월 20일(양 5.26)

이와 관련하여 고종이 1879년 원산 개항을 앞두고 울릉도를 관할하는 강원도관찰사에게 "강원도는…… 동으로 울릉도에 잇닿아 있고 남으로 쓰시마섬[對馬島]에 가깝다"[27]고 하면서 北關, 곧 원산 개항을 환기시키고 '關防의 방책'을 당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고종은 원산 개항 당시부터 원산~쓰시마섬 사이에 있는 섬들, 즉 울릉도 · 독도를 비롯한 東南諸島에 대한 방어책을 구상하고, 조선의 '강토'를 확고히 함으로써 일본의 침투에 대비하려 했다. 또한 1881년 5월 울릉도 搜討官의 보고에, 일본인들이 울릉도 목재를 "원산과 부산으로 보내려 한다"[28]는 내용이 있었으므로 부산 · 원산 개항장과 연결된 섬들을 고려했을 가능성도 높다. 이러한 인식과 대응은 만국공법 체제 아래서 조선의 영토 · 영해권과 이권을 확실히 해두려는 의지의 산물이라 하겠다.

동남제도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거문도 · 제주도 등까지 포함하고 있느냐의 여부다. 먼저 거문도는 울릉도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예로부터 거문도 사람들은 봄이 되면 동남풍과 해류를 이용하여 울릉도에 들어가 나무를 베어 배를 만들거나 목재를 벌채하고 미역과 생선 등을 잡아 말렸다가, 가을철 북서풍이 불면 배에 목재와 해조류 · 건어물 등을 싣고 돌아오곤 했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검찰사 이규원의 일기에도 나와 있고, 거문도에 구전되는 민요에도 담겨 있다.[29] 또한 거문도는 일본 남부지역과 연결되는 海路에 위치해 있고,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용이했기 때문에 외세의 침투가 예상되는 섬이었으며, 따라서 거문도 또한 동남제도의 범주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27) 『고종실록』, 고종 16년(1879) 8월 4일(양 9. 19); 『승정원일기』, 고종 16년(1879) 10월 24일(양 12. 7)
28) 『일성록』, 고종 18년(1881) 5월 22일(양 6. 18), 5월 23일; 『승정원일기』 동일자
29)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1882년 5월 10일; 동아일보사, 2008, 앞의 글 62~63쪽. 이규원의 기록에 따르면, 1882년 5월 울릉도에는 거문도와 초도 등지에서 온 전라도 사람이 전체 115명으로 8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거문도 구전민요 술비소리에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울릉도로 나는 간다/…돛을 달고 노 저으며 울릉도로 향해보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주도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1883년 6월 22일에 체결된 朝日通商章程이며, 장정 제41관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제41관. 일본국 어선은 조선국의 전라 · 경상 · 강원 · 함경의 4도의 海濱에서,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의 히젠[肥前] · 지쿠젠[筑前] · 이시미[石見] · 나가도[長門](조선 海面에 對한 곳), 이즈모[出雲] · 쓰시마[對馬]의 해빈에 왕래하며 고기 잡는 것[捕漁]을 허가한다. 단, 사사로이 貨物을 무역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며, 위반한 자는 본 화물을 관에서 몰수한다. 그곳에서 잡은 魚類의 매매는 이 규정에 구애받지 않는다.[30]

이처럼 통상장정 체결로 일본 어선은 조선의 동해안 · 남해안 전체, 그리고 전라도에 접한 서해안에서 마음껏 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일본 어선은 이들 육지에 접한 연해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울릉도 · 독도 일대에 대거 출몰하여 고기를 잡아갔으며, 어로로 생계를 이어가는 백성들의 생업을 위협하였다.

통상장정 체결 이전인 1881년경부터 일본 나가사키[長崎] · 야마구치[山口]의 어부들은 潛水器船을 동원하여 제주도 해안에서 전복 · 해삼 등을 채취해 갔으며, 반나절 동안에 배를 다 채울 정도로 성황을 누렸다고 한다. 이후 出漁者들이 점점 늘어나 1890년경에는 최고조에 달했다.[31]

일본인들이 잠수기선을 동원하여 제주도 근처의 해산물을 채취해 가자, 제주도민들은 생계의 위협을 느꼈다. 이에 제주도민들은 일본인의 제주도 출몰을 막아줄 것을 정부에 호소했으며, 1884년 5월 외아문 독판 金炳始는 일본공사에게 공문을 보내, 제주도 · 울릉도 두 섬에 대한 일본인의 魚採를 금지하여

30) 『고종실록』, 고종 20년(1883) 6월 22일(양 7. 25)
31) 葛生修吉, 1903, 『韓海通漁指針』, 東京: 內田活版所, 96쪽; 강민생, 1986, 「한말 일본의 제주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 3, 제주학회, 105~106쪽; 박찬식, 2008, 「개항 이후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154~155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줄 것을 요청하였다.[32]

이때 김병시는 울릉도와 제주도 두 섬이 통상장정에서 허용한 4道의 '海外'에 있다는 점과 장정 42관의 '增加해야 할 건이 있을 경우 피차 모두 편리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토의하여 增訂한다'는 조항을 들어 일본인의 어채 금지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후 1899년 체결된 朝日通漁章程에서는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어선은 4도 연안에서 어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오히려 일본어선이 자유롭게 울릉도 연안을 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33]

이처럼 조일통상장정 체결 전후에 이미 제주도 해안에 대한 일본인의 어업권 침탈이 진행되고 있었고, 통상장정은 1883년 6월에 체결되었지만 이전부터 그 내용을 조율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3개월 전 동남제도개척사 임명에는 통상장정 체결로 대두될 수 있는 양국 간 영해문제 또한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즉, 동남제도개척사 신설은 일본인의 침투가 예상되는 울릉도 · 제주도 등지를 비롯한 동 · 남해안 전체와 전라도에 접한 섬까지 고려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동남제도개척사는 울릉도 · 독도를 중심으로 일본에서 부산 · 원산으로 이어지는 해로 주변의 동남쪽 섬을 대상으로 삼고, 제주도까지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개척사'란 관직명은 생소하고 낯선 이름이었다. 1876년 1월 강화도조약을 체결할 때, 일본의 특명전권대신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의 직명을 '陸軍中將 겸 參議開拓長官'으로 소개하면서 개척장관의 이름이 등장한다.[34] 당시 조선 측에서 개척장관의 직무를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는 의문스럽다. 그러다가 1881년 조사시찰단 일원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던 姜文馨이 보고서 「日本聞見事件」에서 홋카이도 개척과 류큐 병합 등 일본의 영토 관련 정보를 보고했으며, 어윤중 또한 복명할 때 '개척사'를 언급했다.[35] 이러한 보고를 통해 고종

32) 『구한국외교문서』, 고종 21년(1884) 5월 26일(양 6.19), 문서번호 253
33) 『고종실록』, 고종 26년(1889) 10월 20일(양 11.12)
34) 『고종실록』, 고종 13년(1876) 1월 2일
35) 姜文馨, 「日本聞見事件」(규장각, 규15250); 허동현, 2000, 『근대한일관계사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은 개척사의 존재와 일본의 영토 개척 및 정복 야욕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직후인 1869년에 아이누족의 터전인 에조치[蝦夷地]를 홋카이도[北海島]로 개칭하고 開拓使를 설치하였으며, 農商民을 이주시키고 미국의 개척기술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개척에 돌입했다. 홋카이도의 개척사업은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1882년 개척사를 폐지하고 縣을 설치하였다.

1883년 동남제도개척사를 설치한 것 또한 일본의 홋카이도 개척사를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내륙의 주민을 이주시켜 실효지배를 확고히 하고, 개척과 포경사업을 통해 산업을 장려함으로써 일본의 영토 침략과 이권 침탈에 대비한 장치로 볼 수 있다.

동남제도개척사는 원산 개항을 계기로 일본에서 조선에 이르는 동남 海路에 위치한 울릉도 · 거제도 등지의 섬들을 개척하고 '沿邊의 列邑'을 살피며 興利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이는 만국공법 체제 아래 조선의 영토 · 영해권을 확실하게 다지고, 외세의 이권침탈로부터 산물을 보호하고 경제적 이익을 꾀하는 방안이었다. 나아가 조일통상장정 체결로 예견되는 일본의 어장 침탈로부터 울릉도 · 제주도 등 東南諸島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_ 외국인 자본을 이용한 개척사 김옥균의 활동

1883년 3월 고종은 동남제도개척사를 신설하고 김옥균을 임명했다. 고종은 왜 그 자리에 외교통 개화파 수장인 김옥균을 임명한 것일까? 일각에서는 김옥균이 수구파의 압력으로 중앙정계에서 밀려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차관을 얻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기도 한다.[36]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되었던 1883년 3월 김옥균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

구』, 국학자료원, 71쪽; 어윤중, 『종정연표』, 1881년 12월 14일(양 1882. 2. 2)

36) 이선근, 1965, 「근세 울릉도문제와 검찰사 이규원의 탐험성과-그의 검찰일기를 중심한 약간의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이광린, 1990, 앞의 글

문(외아문) 참의, 승정원 동부승지의 직임을 겸하고 있었다.[37] 4월에 고종은 동남제도개척사로서 김옥균의 활동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조 참의를 겸직하도록 하였다.[38] 이러한 정황을 보면, 김옥균의 개척사 발령은 정계에서 밀려난 것이라기보다는 고종의 의중을 대변할 적임자로서 선택된 것이라 하겠다. 특히 1883년 4월의 울릉도민 入居와 6월의 조일통상장정 체결, 일본 차관 도입과의 연관성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임오군란 후 1882년 9월 修信大使로서 김옥균과 함께 일본에 갔던 박영효가 外務卿과의 대화에서 울릉도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 내가 또 외무경에게 말하기를 "우리나라 松島의 材木은 禁養하여 수호한 지가 수백 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귀국 백성들이 몰래 와서 斫伐하는 까닭으로 조정에서 관리를 보내 巡檢했습니다. 이웃한 국경을 糾察하는 도리가 있는 것인데, 만약 중지하여 금지하지 않는다면 사단을 일으킬까 염려되니, 몰래 작벌하는 것을 엄금하도록 청합니다" 했다. 외무경이 말하기를 "이 일로 일찍이 귀국 조정의 통보가 있었으므로, 이미 禁令을 엄중히 내렸는데, 만약 또 전처럼 몰래 작벌한다면 귀국에서 붙잡아 부근의 일본 영사관으로 보내어 懲治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했다. 내가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장차 이 섬을 起墾하려고 백성을 모집하고 있으니, 몰래 작벌하는 안건은 마땅히 말한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했다.[39]

이처럼 박영효는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에게 "우리나라 松島의 材木"에 대한 일본인의 작벌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노우에 또한 이미 禁令을 내렸음을 밝히고 위반하는 일본인은 조선 정부에서 체포하여 일본 영사관으로 보내 懲治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때 松島는 개간과

37)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 1월 17일(양 2. 24), 2월 16일(양 3. 24)
38)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 4월 5일(양 5. 11), 4월 13일(양 5. 19). 4월 5일부터 이조 참의에 임명된 김옥균은 사직상소를 올리고 4월 13일자로 그만두었다.
39) 박영효, 『사화기략』, 임오(1882) 9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백성 모집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울릉도를 가리킨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이미 1882년 9월 단계에서 "이웃한 국경을 糾察하는 도리"를 강조하고, 울릉도를 '起墾'하기 위해 백성을 모집하고 있음을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주지시킴으로써 조선 영토임을 확실하게 한 점이다. 이를 보면 박영효와 김옥균 등 개화파들은 동남제도개척사가 설치되기 이전부터 국경문제와 울릉도 개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수신사 박영효와 김옥균은 특별히 일본의 홋카이도 개척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구로다 기요타카를 찾아갔다가 다음날 만났는데,[40] 대화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영토개척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구로다는 1870년 開拓次官이 되어 10년 동안 불모지였던 홋카이도를 개척하고 주민을 이주시켜 큰 성공을 거둔 인물이며, 일본의 전권대신으로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장본인이며, 당시에는 內閣顧問을 맡고 있었다.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를 자원해서 맡은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영토문제의 중요성과 울릉도 개척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본과 국제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개척사의 임무를 맡게 된 것으로 보인다.

김옥균은 자신에게 부여된 개척과 고래잡이, 백성구제와 興利 등 광범위한 개척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관에 白春培, 수행원으로 卓挺埴 · 李誼杲를 임명하고, 실무를 추진하도록 했다. 1883년 6월 김옥균은 차관교섭과 개척사 관련 일을 도모하기 위해 일본에 건너갔으며, 1884년 4월에 귀국할 때까지 일본에서 활동했다. 개척사로서 김옥균의 활동무대가 주로 일본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김옥균이 일본에 도착하자, 일본 언론들은 '개척과 포경의 업'을 담당한 동남제도개척사라는 직임에 주목한 기사를 실었다.[41] 특히 일본인들은 지금까지 고래잡이에 관심이 없었던 조선 정부에서 포경사라는 관직을 설치한 것에 주목했다.

40) 박영효, 『사화기략』, 임오(1882) 9월 9일, 10일
41) 『新聞集成明治編年史』 5권, 320쪽. 이광린, 1990, 앞의 글에서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옥균은 먼저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를 만나 차관 도입과 개척사 관련 일을 협의했다. 이때 이노우에는 김옥균의 300만 엔 차관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으며, 개척사에 대해서도 "귀하가 이번에 개척사에 임명된 것도 저는 결코 축하할 수 없습니다. 귀하는 어떤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국사에 진력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외직을 맡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당시 김옥균은 차관도입을 위해 諸島의 개척과 開鑛 및 關稅를 저당물로 생각하고 이를 제시했으나, 이노우에는 "개척 · 개광에 착수하여 장래 어떠한 이익을 거둘지에 대해 정밀하게 계산하여 세워 두고 있습니까?"라고 하면서 정확한 근거를 요구했다. 그러나 김옥균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42] 결국 일본 정부의 조선 정책 변화와 김옥균의 준비 소홀로 차관도입은 실패했다. 이후 김옥균은 모스(James R. Morse)를 통해 미국의 起債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를 보면 김옥균은 동남제도 개척의 이권을 차관도입과 연계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고종은 김옥균의 일본 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에서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1883년 10월 고종은 김옥균을 호조참판에 임명하고, 동시에 외아문 협판으로 승진 발령하였다.[43] 특히 재정을 관할하는 호조 참판 임명과 외교를 관장하는 외아문 협판은 차관교섭과 개척사 활동에 유리한 고지를 마련해 주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일본 정부로부터 차관도입이 어려워지자 김옥균은 일본의 민간인 자본을 끌어들여 울릉도 개척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당시 울릉도는 島長 全錫圭 관할 아래 수십 명의 入居民들이 농사와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지만, 식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전석규는 개척사 김옥균을 만나기 위해 일본에

42) 유바다, 2008, 「1883년 김옥균의 차관교섭과 청 · 일의 조선보호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3~73쪽(일본 『外務省記錄』(1-7-1-2) '韓國借款關係雜纂卿')

43) 『승정원일기』, 고종 20년(1883) 10월 7일(양 11. 6), 10월 28일(음 9.28); 『구한국외교문서』 통서일기 1884년 10월분. 호조 참판 직은 보름 후인 10월 22일(양 11. 21)에 민응식으로 교체되었지만, 외아문 협판의 직임은 갑신정변 때까지 계속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가려 했으나 실행하지 못했다.[44]

김옥균은 수행원 백춘배 · 탁정식 · 이의고를 거느리고, 일본인 가이군지[甲斐軍治]를 고용하여 본격적으로 개척사로서의 활동에 돌입하였다.[45] 김옥균은 울릉도 개척사업 추진의 파트너로 일본의 協同商會를 선택하고, 1883년 10월에 계약을 체결했다.[46]

> 첫째, 울릉도 목재의 벌채와 해산물 채취, 그리고 이들 산물의 운송과 판매는 협동상회에 의뢰한다. 울릉도에서 조선 개척사 수행원이 지휘한다.
> 둘째, 고용인과 운송선박의 임대비용 등은 우선 협동상회가 지불한다. 그리고 울릉도 주민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미곡 100석도 협동상회가 매입하여 운송한다. 개척사 수행원 3명의 여비 등도 모두 협동상회가 먼저 지불한다.
> 셋째, 협동상회가 지불한 이들 모든 경비는 울릉도 물산의 판매대금으로 상환한다. 판매대금이 부족할 경우 5개월 이내에 이자를 쳐서 갚는다.
> 넷째, 울릉도 산물은 개척사 수행원이 가격을 정해 반출한다. 목재 등을 일본에서 판매하기 어려울 경우 조선의 각 항구에 운송하여 판매할 수 있다.
> 다섯째, 본 개척사 수행원이 울릉도 현지를 순시한 후 다시 계약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

계약에 드러난 사업의 핵심은 울릉도 목재와 해산물을 채취 · 판매하는 권한을 주고, 협동상회는 울릉도에 미곡 100석을 공급하는 것이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울릉도 개척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협동상회를 통해 조달하려 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개척사 수행원의 여비 등도 협동상회가 선지불하도록 했다.

44) 《자유신문》, 1883년 10월 28일(음 9. 28). 이광린,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45) 개척사 수행원 중 탁정식이 1884년 3월 8일에 고베[神戶]에서 급성폐렴으로 사망했다(『구한국외교문서』 日案 1, 문서번호 224 · 225번, 고종 21년(1884) 3월 8일(양 4. 3).
46) 『한일외교극비사료총서』 제29권 1~34쪽; 김광옥, 2000, 앞의 글, 28~3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그것은 재정난이 극심한 조선 정부로부터 울릉도 개척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받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당시 협동상회는 울릉도 개척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선지불하고, 목재와 해산물의 판매대금으로 상환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아, 갑신정변 후 조선 정부에 미수금 보상을 요구하여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하였다.

그런데 울릉도는 통상항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섬의 산물을 채취 · 판매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되었다. 이에 김옥균은 정부의 위임장을 제시하고 계약을 체결했지만, 일본 정부는 위임장 여부와 불통상항구인 울릉도의 목재 운송 · 판매 가능성을 문의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김옥균이 정부의 위임을 받들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울릉도 개척에 관한 모든 사안은 개척사가 辦理하므로 선박고용 등은 통상장정에 구애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47]

김옥균은 울릉도 목재 판매와 관련하여 협동상회 외에도 미국인 타운센트와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48] 그 밖에 가이군지 · 와타나베[渡邊末吉] · 우치다[內田德次郎] 등의 일본인과 손을 잡고 울릉도 개척사업을 추진했다. 가이군지는 1883년 7월 개척사에게 고용되었으며, 1884년 1월부터 1885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울릉도를 내왕하면서 선박 임대와 노동자 고용 등 울릉도 개척에 관한 일을 전담해 왔다.[49] 萬里丸 선장인 와타나베는 울릉도 목재를 운송하였고, 우치다는 노동자를 고용하여 울릉도 목재를 벌채하였다. 그러나 이후 개척사업이 약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으며, 이들은 갑신정변 이후 그동안 받지 못한 사업비를 조선 정부에 청구하여 외교문제로 비화하였다.

또한 김옥균은 1884년 1월 탁정식과 가이군지 등을 시모노세키[赤馬關]에 보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운반해 오는 배를 발견하고 압류하도록 했다. 당시 울릉도에서 오는 일본 배들은 대개 시모노세키에 정박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울릉도 도장 전석규가 벌목을 허락하는 증명서[票憑]를 일본인에

47)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일안 202번, 고종 20년(1883) 12월 11일(양 84. 1. 8), 같은 자료, 문서번호 203번, 12월 13일(양 84. 1. 10)
48)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일안 742번, 고종 23년(1886) 8월 24일(9.21)
49) 『구한국외교문서』 일안 1, 문서번호 936번, 고종 24년(1887) 5월 19일(양 7.9)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발급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김옥균은 1884년 동남제도개척사로서 울릉도 목재 남벌의 폐해를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 울릉도의 목재를 일본인들이 몰래 많이 베어 실어간다고 하여 목재를 실어가는 배들을 잡아두고 이유를 힐문했더니, 島長의 票憑을 갖고 있으며, 돈과 쌀로서 교환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본섬은 통상하는 항구가 아니므로 越境하여 몰래 작벌하는 것은 公例에 위배됩니다. 해당 도장 全錫圭로 말하면, 능히 금지시키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이익을 탐내어 법을 위반한 자이니, 응당 중한 형벌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죄상을 廟堂으로 하여금 아뢰어 처분하도록 하소서.[50]

의정부는 전석규를 형조에 압송하여 올려 보내고, 후임으로 '근면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일에 해박한 사람'을 즉시 선발하여 보내도록 조치하였다. 일본 정부에도 공문을 보내어 앞으로 울릉도에 침투하는 일본인을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일본 재판소에서 재판하여 처단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51]

김옥균은 일본에서 차관교섭과 울릉도 개척사업을 추진했으며, 차관교섭은 실패했으나 울릉도 개척사업은 계속 진행되었다. 1884년 4월(양 5월) 일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내무성 경무국에 근무하는 히가키[檜垣權大] 서기가 앞서 조선국 울릉도에서 일하던 本邦人을 데리고 돌아올 때까지 벌목하여 同島에 버리고 온 良材가 거의 6~7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금번 조선인 김옥균이 그 정부에 건의하여 이것을 우리 동경의 상인 가와이[川井增藏]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맺어 來月 중순까지 그 목재를 수송해 온다고 한다. 그런데 그 매상금 중 2만 원을 본방인으로 앞서 그곳에 가 벌채하였던 자들에게 주고, 1만 원은 築地에 세우려는 그 나라 공사관 건축비

50) 『일성록』, 고종 21년(1884) 1월 11일(양 2. 7); 『고종실록』 동일자. 이때 전석규는 비록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았지만, 울릉도의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울릉도의 목재와 식량을 맞바꾸는 방식으로 일본인과 거래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51) 『구한국외교문서』 일안 1, 문서번호 204, 277 · 178호[1884년 6월 7일(양 7.28)], 같은 자료, 문서번호 316호[1884. 9. 4(양 10.2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 에 충당하고, 잔금은 동씨가 관리하여 日韓 양국 간의 산업자본으로 충당하려는 모양으로 앞서 그곳에 가서 일하던 사람들의 인명 등을 이번에 관계기관에 조회했다 한다.[52]

김옥균은 울릉도 목재를 판매하여 상당한 자본을 확보하여 1만 원을 도쿄 쓰키지[築地]의 조선 공사관 건립비용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자본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일본에서 차관교섭과 개척사 업무를 추진했던 김옥균은 1884년 4월에 귀국했다. 개척사 관련 업무는 백춘배 · 이의고 등에게 맡겨 일본에서 계속 추진하도록 했다. 귀국 직후 그는 한성부 좌윤과 우윤에 임명되었으며, 외아문 협판으로서 외교와 정치 활동에 몰두하였다.[53]

그렇다면 동남제도개척사의 직임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개척사 수행원 백춘배가 1884년 10월까지도 목재 운반 건으로 울릉도에 들어가려 했으며, 정변 후에도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1885년 4월에 고베로 돌아온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54] 또한 갑신정변 후 정부에서 일본에 보낸 문서에 "본국 개척사 김옥균은 이미 罪罷하여 이규원이 差代하고 있으니, 모든 개척사무는 모두 이규원 관할로 돌린다"[55]고 하였다. 따라서 김옥균의 개척사 직임은 갑신정변으로 파직될 때까지 겸직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당시 조야에서는 개척사 김옥균의 활동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김윤식은 일본 商民으로부터 빚을 얻기 위한 공작의 하나로 이해하고 있었고, 황현은 '김옥균은 들어앉아서 입으로만 고래잡이의 이익을 떠들었다'고

52) 일본《自由新聞》, 1884년 5월 21일(음 4. 27). 이광린, 1990, 앞의 글에서 재인용
53) 『구한국외교문서』 부록문서 통서일기 1, 1884년 4월 8일(양 5.2); 윤치호, 『윤치호일기』, 1884년 4월 9일(양 5. 3); 『승정원일기』, 고종 21년(1884) 4월 10일(양 5. 4)
54) 『구한국외교문서』 일안 1권, 문서번호 621, 고종 22년(1885) 11월 19일(양 12.24); 같은 자료, 문서번호 621, 고종 22년(1885) 11월 19일(양 12.24); 『순종실록』 순종 3년(1910) 7월 18일. 이때 백춘배는 張殷奎의 계략과 김옥균의 권유로 조선에 들어왔다가 체포되어 처형되었고, 1910년 서재창 등 갑신정변 때 사망한 자들에 대한 벼슬을 추증할 때 그도 정3품 규장각 부제학에 추증되었기 때문이다.
55) 『구한국외교문서』 일안 1권, 문서번호 438, 고종 22년(1885) 2월 5일(양 3. 2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비웃고, “김옥균이 울릉도를 일본에게 팔았다는 말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56]

이처럼 동남제도개척사로서 김옥균의 활동무대는 주로 일본이었으며, 개척사업은 일본 차관과 연계하여 추진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일본인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울릉도 개척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보면 울릉도 개척은 대내적으로 강원도관찰사 · 울릉도장 등을 통해 주민 입거와 개간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외자를 유치하여 개척에 소요되는 물자를 제공하는 이원적 체계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남제도개척사의 임무는 울릉도 개척뿐만이 아니라, 차관도입과 연계한 東南諸島 개척과 백성구제 · 興利 등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것이었다. 비록 성공적으로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동남제도개척사의 구상은 단순히 諸島의 개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효지배를 확고히 하여 근대적 영토 · 영해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이며, 외세의 이권침탈을 방지하고 자본주의적 이익을 꾀하는 방안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_ 갑신정변 후 동남제도개척사 관련 부채 문제

김옥균은 자신이 주도한 갑신정변 실패로 모든 관직에서 파직되었으며, 동남제도개척사로서의 직임 또한 ‘罪罷’되었다. 이후 그는 역적의 몸으로 망명객이 되어 일본을 떠돌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간 울릉도 개척과 관련하여 김옥균과 수행원에게 채권관계가 있는 일본인들이 조선 정부에 부채 상환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 정부는 김옥균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부채상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김옥균이 조선 정부의 위임을 받은 관리의 자격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인들에 대한 부채 상환을 요구했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김옥균의 동남제도개척사 관련 부채문제는 수년 간 미해결상태

56) 김윤식, 『속음청사』 부록 ‘追補陰晴史’; 황현, 『梅泉野錄』 상권; 일본 《朝野新聞》, 1885년 3월 14일(음 1.28)

로 남아 있었다.

1885년 8월 일본 정부는 1883년 10월에 개척사 김옥균이 울릉도 목재 벌채를 위해 오사카 協同商會社로부터 빌려 쓴 선박비와 수행원 여비 등 2,771원 81錢 3厘를 갚아 줄 것을 조선 정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김옥균에 관련되어 폐지되었으므로 협의 ·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57] 양국 정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1886년 10월에 조선 정부는 협동상회사가 요구한 2,410원 96전 9리 가운데 500원은 즉시 갚고, 그 나머지 1,910원 96전 9리는 1886년 3월 10일(양력)을 기하여 청산하기로 立約書를 썼다.[58] 이로써 협동상회사 건은 해결된 셈이다.

이어 1886년 8월에 일본 정부는 萬里丸 선장 와타나베가 갑신정변 직전 백춘배와 立約하고 울릉도 목재를 고베[神戶]에 운반할 때 든 비용 일체를 조선 정부에 청구했다. 그리고 관련된 문서 제1~7호를 첨부했다. 이에 조선 정부는 김옥균이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상 상환을 거부했다.[59] 계속하여 1887년 3월 일본 정부는 1884년 4월 일본인 우치다가 백춘배에게 고용되어 70여 명의 역부를 고용한 비용 등 3,622원 87전 7리 5모와 백춘배 등이 기거했던 숙박비 등을 별도로 청구했다.[60] 또한 1887년 5월에는 가이군지가 요구한 선박 임대 비용과 일꾼 고용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5,058원 77전 5리를 조선 정부에 청구했다.[61]

이처럼 일본 정부는 자국인의 이익을 대변하여 세 건의 부채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62]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러한 안건을 허락

57)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일안, 문번 545, 고종 22(1885). 8. 2(양 9.10), 문번 546, 고종 22(1885). 8. 3(양 9.11), 문번 547, 고종 22(1885). 8. 4(양 9.12)
58)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일안 1, 문번 742, 1886. 8. 24(양 9. 21), 같은 자료, 문번 763, 1886. 10. 2(양 10. 28); 김광옥, 2000, 「근대 일본의 협동상회와 조선무역」, 『동아시아역사연구』 제7 · 8집, 동아시아역사연구회, 30~31쪽
59)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일안, 문번 728, 고종 23(1886). 8. 6(양 9. 3), 문번 729, 고종 23(1886). 8. 6(양 9. 3)
60)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일안, 문번 864 · 865, 고종 24(1887). 3.28(양 4.21)
61)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일안, 문번 936, 고종 24(1887). 5. 19(양 7. 9)
62) 『구한국외교문서』 제1권 일안, 문번 1206, 고종 25(1888). 5. 27(양 7. 6)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하지 않았다는 점과 김옥균이 도장을 위조했다는 점 등을 들어 지불을 거부했다. 또한 관련자 김옥균이 일본에 있으니 그에게 추궁할 것과 조사를 위해 김옥균을 체포 · 송환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63]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개척사 관련 부채는 私債가 아니라 조선 관원의 자격으로 수행한 공적 부채임을 강조하고 거듭 보상을 촉구했다.[64]

개척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문제가 양국 간 외교 마찰로 이어지자, 조선 정부는 1889년 10월에 관련 부채를 청산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공문을 살펴보면, 귀국 長崎縣 평민 甲斐軍治의 지난날 우리나라 개척사 白春培 관련 보상 1건 …… 그가 응당 영수할 금액 4,499원 54전 3리와 본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이자 및 逗遛日費 559원 23전 2리, 합계 5,058원 77전 5리를 이전부터 청구하고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안건을 재조사하였으나 타협이 어려워 여러 해가 되도록 오랫동안 타결되지 못하여 양국의 交誼에 누가 되었다. 이에 본 독판이 깊이 고려하여 특별히 本署의 참의 鄭秉夏에게 위임하여 상의 · 타협하도록 하였으며, 5,058원 77전 5리 가운데 이자와 체류비 1,380원 31전 5모를 제하고 장차 3,678원 46전 4리 5모로 타협 계산하여 보낼 것이다. 청컨대 귀 공사는 甲斐軍治에게 전해 주고 領存票를 본서에 보내 주고, 前後 債券과 准憑 문건을 회수하여 보내 주기 바란다.[65]
>
> ② 귀국 兵庫縣 평민 內田德次郎과 田中喜左衛門 등이 지난날 우리나라 개척사 백춘배 관련 숙박비와 代墊금액 보상 1건 …… 內田德次郎이 상환 요구한 3,622원 87전 7리 5모, 田中喜左衛門이 상환 요구한 429원 96전 5리를 모두 보내니, 해당 두 사람이 받도록 전달하여 현안을 타결하도록 하기 바란다.[66]

63) 『구한국외교문서』 제2권 일안 2, 문번 1495, 고종 26(1889). 9. 2(양 9.26)
64) 『구한국외교문서』 제2권 일안 2, 문번 1502, 고종 26(1889). 9. 4(양 9.28)
65) 『구한국외교문서』 제2권 일안 2, 문번 1532, 고종 26(1889). 10. 3(양 10.26)
66) 『구한국외교문서』 제2권 일안 2, 문번 1533, 고종 26(1889). 10. 3(양 10.2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와 같이 양국의 '交誼'에 누가 되었던 김옥균의 개척사 관련 부채문제는 외교적 부담을 느낀 조선 정부가 1889년 10월에 관련 금액을 지불함으로써 마무리되었다.[67]

Ⅳ. 朝鮮輿地圖를 통해 본 김옥균의 영토 · 영해 인식

1_ 김옥균의 지도를 '縮寫'한 조선여지도

김옥균의 영토 · 영해 인식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그가 근대적 자주 독립국가를 지향하고 있었고, 영국의 거문도점령사건을 영토침략쟁탈전으로 간주하고 영토수호 의지를 분명히 한 점에서 그의 영토인식의 일단을 짐작해 볼 뿐이다.

개항 후 만국공법 체제에 편입된 초기 단계에서 동남제도개척사를 역임한 김옥균의 영토 · 영해 인식은 한국사의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자료적 제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문도점령사건에 대한 그의 단호한 의지와, 그가 주관하여 제작하고 죽기 직전까지 곁에 두었던 朝鮮輿地圖를 통해 그의 영토 · 영해 인식을 분석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 생각된다. 지도란 단순히 지구표면을 줄여 그린 그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제작자의 가치관 및 영토 · 영해관은 물론 지도제작의 목적, 사회문화적 흐름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김옥균의 지도를 일본인 시미즈[清水光憲]가 그대로 '縮寫'하여 만든 조선

67) 『구한국외교문서』 제2권 일안 2, 문번 1555, 고종 26(1889). 10. 16(양 11. 8); 같은 자료, 문번 1586, 고종 26(1889). 12. 3(양 12. 2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여지도의 서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이 지도는 前年에 김옥균씨가 본국을 떠날 때 휴대하고 왔다. 저 나라[조선]에서는 둘도 없는 明細分間 大繪圖이다. 김옥균씨는 生前에 잠시라도 座右를 떠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난번 上海로 건너감에 이르러서 무슨 생각인지 當地의 貴顯 편에 남겨둔 것을, 時事에 느낀 바 있어 이 지도를 **縮寫**하였다. 지도 중 八道, 여러 州府郡縣, 兵營 · 水營, 여러 鎭 · 名勝 · 名邑 · 山川 · 岬角 · 港灣 · 島嶼의 위치는 한번 보면 손바닥을 가리키듯이 하였다. 그가 일찍이 국력을 써서 조사하여 만든 것으로, 이에 더하여 便覽을 위해 경성 · 원산 · 부산 · 인천 · 한강 등 부근 지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누어 특별히 切圖를 만들었다. 경성으로부터 여러 지역에 이르는 이정표를 더하였으며, 아울러 지도의 가에 坊間을 부기하였다. 왕왕 朝鮮圖에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것은 있지 않으니, 실로 천하에 비교할 바 없는 明細圖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를 보면, 시미즈의 조선여지도는 김옥균이 1884년 조선을 떠날 때 휴대했던 지도를 '縮寫'한 것으로, 바로 김옥균이 "일찍이 국력을 써서 조사하여 만든 것"을 모본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김옥균이 조선에서 제작하여 휴대했던 지도를 축사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縮寫란 일본어사전에 따르면 '원형을 축소하여 찍음. 또는 그렇게 찍은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따라서 시미즈의 조선여지도는 김옥균의 지도를 그대로 줄인 것으로, 곧 축소된 김옥균 지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제목 바로 옆, 왼쪽 상단에 박영효의 題字가 커다랗게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박영효는 왜 일본인이 발행하는 이 지도에 題字를 썼을까? 이는 분명 조선여지도와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지도 서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김옥균이 주관하여 조선에서 제작한 지도이고, 이국 땅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둘도 없는' 동지 김옥균과의 특별한 관계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박영효의 글씨는 '韓客 朴泳孝'라고 하여 망명객의 신분을 암시하고 있어 1894년 지도를 축사할 때 추가한 것이라 하겠다.

김옥균의 원래 지도 제목 또한 '朝鮮輿地圖'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로부

터 우리나라 지도에는 '~輿地圖'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었고,[68] 이 지도가 김옥균의 지도를 그대로 베껴 제작했기 때문이다.

이 지도의 모본이 된 김옥균의 지도는 그가 '국력을 써서 조사하여 만든 것'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김옥균이 주관하여 만든 지도임을 알 수 있다. 김옥균의 지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제작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69]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파의 영토 · 영해 인식과 인문지리적 관점이 반영되어 있고, 여백에 배치된 삽도에는 한반도에 대한 그의 관심과 정책방향이 담겨 있다 하겠다. 그가 애지중지하여 항상 자신의 곁에 두었던 것 또한 그런 까닭으로 여겨진다.

사실 김옥균과 박영효는 1882년 수신사로 함께 일본을 방문했을 때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울릉도 개척 문제를 언급한 바 있고, 김옥균은 일본에서 개척사로 활동할 때도 박영효와 울릉도 문제를 협의하곤 했다.[70] 그런 점에서 지도 제작에도 박영효를 비롯한 개화파들이 동참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김옥균의 조선여지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일단 김옥균이 "본국을 떠날 때 휴대" 하였다는 점으로 보아, 그가 마지막으로 조선을 떠난 1884년 10월 이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개항장인 부산 · 원산 · 인천항 일대를 삽도로 배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개항 이후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아마도 세 항구가 모두 개항되고, 김옥균이 동남제도개척사에 임명된 1883년경 제작된 것으로 짐작된다.

김옥균은 언제 조선여지도를 일본에 갖고 갔을까? 그가 망명 후 항상 지니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망명길에 그 지도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68) 우리나라 옛 지도에는 '輿地圖'라는 이름이 많다. 김정호의 大東輿地圖를 비롯하여 坤輿全圖, 輿地全圖, 東國八道輿地圖, 大東輿地全圖, 輿地圖 등 많은 지도에 輿地圖라는 제목이 들어가 있다.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문화재청, 2008, 『한국의 옛 지도』

69) 조선여지도는 개화파가 갑신정변 무렵 '민간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기도 하나(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영남대학교 소장 한국의 옛 지도』 자료편, 192쪽), 이 지도의 서문에 '국력을 써서' 만들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개화파가 주관하기는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편집 · 제작한 지도로 생각된다.

70)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金玉均書簡'(등록번호 사자2167)

그러나 정변 마지막 날 청군의 공격에 맞서 싸우다가 퇴각했던 점을 고려하면,[71] 김옥균이 따로 지도를 챙길 겨를은 없었다. 따라서 그 지도는 김옥균이 정변 이전부터 항상 몸에 지니고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시즈미 미쓰노리[清水光憲]의 조선여지도는 언제 제작된 것일까? 영남대학교 박물관에서 발간한 『한국의 옛 지도』 해설을 보면, 1884년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다.[72] 그러나 지도의 서문에 "김옥균씨는 生前에 잠시라도 座右를 떠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난번 上海로 건너감에 이르러서 무슨 생각인지 當地의 貴顯 편에 남겨둔 것을" 縮寫했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生前'이라고 한 것은 김옥균이 죽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이고, 김옥균이 중국 상하이로 건너갔다가 살해된 것이 1894년임을 감안하면, 이 지도는 적어도 김옥균이 상하이로 건너가 죽은 1894년 이후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韓客 朴泳孝'의 題字가 지도 좌측 상단에 배치된 것으로 보아, 박영효가 망명객의 신분으로 일본에 있었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지도는 김옥균이 사망한 1894년 2월에서 박영효가 귀국했던 같은 해 8월 사이에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도의 경계선 밖 왼쪽 하단에 작은 글씨로 "明治二十七年六月二十七日印刷 明治二十七年七月一日發行"이라는 날짜가 기록되어 있어 1894년 6월 27일 인쇄, 7월 1일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시미즈는 왜 김옥균의 지도를 모사하여 발행한 것일까? 그는 서문에서 "日淸韓 三國의 관계는 지금 동양의 대문제"라는 전제 아래 "時事에 느낀 바 있어 이 지도를 축사하였다"고 하였다. 이어 淸 · 韓 양국의 "天然 人文 國體 地理"를 상술한 지도를 만들어 '軍務'에 관계된 자는 물론 그 외 많은 사람에게 일독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를 보면 시미즈의 지도 제작이 단순히 조선의 지도를 소개하는 차원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동아시아 패권 구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미즈는 "천하에 비교할 바 없는 明細圖"를 소개함으

71) 박은숙, 2005, 『갑신정변 연구』, 역사비평사
72)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앞의 글, 19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써 일본의 조선 침략에 일조하려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축사본에는 제작 시점의 상황과 제작자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영역으로 분명하게 표기되어 있는 것은 김옥균이 제작한 원래 지도에 충실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당시는 독도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이었으므로 일본의 조선 영토 · 영해에 대한 왜곡의 여지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여지도는 이전의 지도와 달리 근대적 製圖기법이 적용되어 있고, 현재 지도와 거의 흡사할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여지도가 강화도조약 체결 직전 일본 參謀局에서 만든 朝鮮全圖와 흡사하다는 견해가 있다.[73] 실제로 제작기법과 지도의 구성, 여백의 삽도 배치 등을 보면, 두 지도는 유사한 외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참모국의 지도가 만주 진출을 염두에 두고 만주지역의 산세와 지형을 상세히 표현한 것에 반해, 조선여지도는 만주지역을 소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조선전도에는 동해를 '日本海'로 표기하고 있으나, 조선여지도는 일본해를 빼고 경성에서 각 지방에 이르는 이정표를 삽입하였다. 전반적으로 외양은 상당히 유사하나, 조선 침략을 위해 제작된 조선전도와 외세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조선여지도는 그 내용과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

조선여지도는 조선의 전통적 지도를 토대로 일본의 조선전도와 서구열강의 조선지도 등을 참작하여 김옥균이 주관하여 편집 · 제작한 것으로 짐작된다.

시즈미가 제작한 조선여지도는 현재 영남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크기는 105.1×77.1cm이다. 이 지도는 縮寫된 것이기 때문에 본래 김옥균의 조선여지도는 이보다 컸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도 서문에 '(조선에서는) 둘도 없는 明細分間大繪圖'라고 소개하듯이, 실로 조선에서는 보기 드문 매우 상세하고 정확한 지도였으며, 그만큼 제작자의 관점이 깊이 개입되어 있는 지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여지도는 '縮寫'의 주체가 일본인이라는 점에서 그 실체에 대한 의문이

73)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위의 글, 19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옥균의 지도를 축사한 조선여지도(영남대학교 박물관 소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없지 않지만, 서문에서 김옥균이 주관하여 만든 지도를 모본으로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특별히 동지 박영효가 지도 위에 별도의 칸을 마련하여 題字를 쓴 점, 울릉도 · 독도를 비롯한 조선 영토에 대한 표현이 확실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김옥균 지도의 원본을 충실하게 축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_ 조선여지도에 나타난 김옥균의 영토 · 영해 인식과 울릉도 · 독도

조선여지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북서쪽으로 국경을 마주한 만주 일부, 남동쪽으로 일본 일부를 포함하고 있다. 서북쪽으로 중국 · 러시아와의 국경선 경계가 뚜렷하게 표시되어 있고, 동남쪽으로 대마도를 포함한 일본 영토는 색깔을 달리하여 확연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동쪽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의 구역으로 표시함으로써 조선 영토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여백에는 5개의 삽도와 1개의 이정표를 채워 넣어 제작자의 관심과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먼저 조선여지도는 북서쪽으로 실선과 색상을 이용하여 국경선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조선 지도에서 국경선, 특히 중국 ·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북서쪽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18세기 이후다. 그 이전 지도들은 대부분 백두산은 강조하여 표시했지만, 북서쪽 일대를 뭉뚱그려 간략하고 불분명하게 표현했다.

조선여지도는 백두산 일대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으며, '大池'와 '定界碑'를 별도로 그려 넣었다. 김옥균은 개항 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한 간도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74] 간도 일대를 조선의 영토로 편입하여 표시하지는 않았다. 백두산 천지와 정계비를 특별히 강조하여 표현한

74) 조선과 중국 사이에 간도문제가 표면화된 것은 1882년이었다. 중국은 1877년부터 간도지역을 개간하기 시작했으며, 1882년에는 간도의 조선인을 중국에 편입하겠다는 의도를 공식화함으로써 양국 간 국경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조선은 1884년 5월에 중국과 吉林朝鮮商民隨時貿易章程을 체결하여 "양국 변경은 土門江으로서 경계를 삼는다"고 규정한 바 있었다[『고종실록』 고종 19년(1882) 8월 11일, 고종 21년(1884) 5월 26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것은, 조선후기 이래 우리나라 지도에 나타나는 특성의 하나이다. 조선후기에 북방지역과 도서지역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백두산의 표현이 한층 신성시되고 강조되었기 때문이다.[75] 18세기 이후 지도에는 백두산정계비가 '定界碑' 또는 '立碑'라는 표현으로 등장하고 있다.

조선여지도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김옥균의 인식 문제이다. 이 지도에서 울릉도는 竹島, 독도는 松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모두 강원도와 같은 색을 써서 강원도 구역임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다.

그런데 왜 울릉도와 독도를 죽도와 송도로 기재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조선시대 지도에는 대부분 울릉도와 우산도로 기입되어 있었다. 물론 울릉도에는 예로부터 대나무와 소나무가 많아 竹島 · 松島라는 이름이 있었으며, 고종도 울릉도를 이야기할 때 죽도와 송도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한 1882년 수신대사로서 김옥균과 함께 일본에 갔던 박영효가 일본 외무경 이노우에 가오루에게 울릉도를 "우리나라 松島"로 표현한 것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76]

이를 보면, 박영효와 김옥균 등 당시 사람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송도나 혹은 죽도로 혼용하여 불렀던 것으로 보인다. 울릉도와 독도가 통칭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혼용이 특별히 놀랄 만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처럼 김옥균의 조선여지도는 울릉도와 독도를 강원도 영역으로 확실하게 표시하였다. 이는 김옥균이 부산 · 원산 개항과 일본의 침략적 진출에 대비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토 · 영해권을 확실히 해 두려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남제도개척사로서 울릉도 개척사업을 추진했던 김옥균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영토 · 영해인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옥균의 울릉도 ·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인식은 그만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조선과 일본 두 나라 모두 공유하고 있었던 보편적 인식이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조선 사회는 예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세트개념으로 이해하여

75) 양보경, 1996, 「옛 지도에 나타난 북방인식과 백두산」, 『역사비평』 35, 역사비평사
76) 『승정원일기』, 고종 19년(1882) 4월 7일(양 5. 23); 박영효, 『사화기략』, 임오(1882) 9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울릉도와 독도를 나란히 배치해 왔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였다. 그런 점에서 김옥균이 울릉도 · 독도를 조선 영토로 인식하고 강원도 영역으로 표기한 것은 당대의 일반적 정서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김옥균 지도는 새로운 만국공법 체제 아래 외세의 침탈에 대응하기 위한 근대적 영토 · 영해 인식과 개념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선여지도에서 주목되는 것은 제목 바로 옆에 자리한 박영효의 題字다. 박영효는 지도 위에 '紹隆三寶'라는 네 글자를 크게 쓰고, "國 · 民 · 君이 三大權이다"는 주석을 곁들였다. 이는 '3寶', 곧 國權 · 民權 · 君權을 계승하여 융성하게 한다는 뜻으로, 박영효를 비롯한 개화파들의 지향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주목되는 것은 '三寶'의 순서가 국권–민권–군권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으로, 왕권보다는 국권과 민권을 더욱 중시하는 개화파의 가치관과 개혁관을 보여준다.

조선여지도의 여백에는 5개의 삽도 및 1개의 이정표가 들어가 있다. 이를 통해 국토와 관련된 김옥균의 주요 관심사와 인식을 들여다볼 수 있다. 여백에 배치된 6개의 삽도와 이정표 가운데 4개가 서울과 관련된 것이고, 5개의 삽도 중 3개가 서울과 한강에 대한 것으로,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사고와 중앙집권적 구상을 엿볼 수 있다.

삽도는 모두 5개인데, 오른쪽 상단에는 '京城'과 '京城接近之地'를, 왼쪽 하단에는 '釜山浦及近海', '元山港及近海諸島', '漢江口及仁川港'을 배치하고 있다.

'京城'圖는 도성 안을 상세하게 그린 지도로, 內四山(남산 · 인왕산 · 북악산 · 낙산)과 그것을 이은 성곽을 선명하게 표시하고, 도성 내 궁궐과 주요 관청 · 시설 및 간선도로 등을 상세하게 그려 넣었다. 그 아래 '京城接近之地'는 도성 밖을 중점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한강을 거쳐 외곽에서 서울로 접근하는 도로망을 자세히 그리고 있다. 특히 외곽에서 도성의 4대문과 4소문에 이르는 길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역으로 도성에서 외곽으로 나가는 노선이기도 하다.

김옥균은 특별히 개항장에 주목하여 지도의 왼쪽 하단에 부산 · 원산 · 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천항 일대에 대한 상세한 지리를 그려 넣었다. 세계체제 아래 외국인의 왕래와 대외무역의 통로인 개항장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특히 인천항은 앞바다 섬들은 물론 한강과의 연결 水路를 강조하여 표기하고 있는데, 이는 인천항이 서울의 관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도의 오른쪽 하단에는 서울에서 각 지방에 이르는 里數를 표시한 이정표를 배치하였다. 조선후기 지도에도 서울에서 지방에 이르는 이수를 표기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표로 정리하여 일목요연하게 배치한 것은 처음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 참모국의 조선전도에는 이정표 자리에 '日本海'를 표기하고 있는데 반해, 조선여지도는 그 자리에 서울에서 각 지방에 이르는 이정표를 기입하였다. 이는 '일본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과 동해가 조선의 영해라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왼쪽 하단에 표시된 지도의 기호는 "州, 府, 郡, 縣, 名邑, 名勝, 陸海兵營 및 鎭, 道路, 國界, 八道區域, 池沼, 山川"으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 특히 國界를 별도로 표시하고, 군사시설과 도로망을 강조한 것은 그의 국경 의식과 부국강병을 추구한 그의 현실적 입장이 드러나 있다 하겠다.

김옥균의 영토 · 영해 인식은 영국의 거문도점령사건(1885)에 대한 다음과 같은 소견에도 드러나 있다.

> 今에 천하의 형세가 日로 變하고 日로 換하여 瞬時라도 안심키 불가하오니, 전라도 三島 , 즉 거문도는 이미 영국의 奪한 바 되어 前事의 覆轍이 玆에 在하니, 폐하는 如何타 하나이까? …… 신이 聞한 바에 의하면, 청국은 일찍이 我國에 고하여 왈 영국은 屬邦領地가 甚多하여 별로 아국을 경영할 여가가 없을 뿐 아니라 장차 露國과 교전코자 하는 勢가 있으므로 부득이 일시 거문도를 領한 자인즉, 小毫도 조선국을 위하여 가히 憂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하나이다. 당시에 신이 此를 聞하고 心中에 그윽히 忿懣을 堪치 못하였나이다. 이제 영국이 노국과 교전할 事, 有함을 恐하여 一港을 점령하면 노국도 또한 영국과 교전할 事, 有함을 恐하여 一港을 점령할 것은 火를 觀함보다 明하오이다.[7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옥균은 영국의 거문도점령사건을 단순히 러시아를 경계하기 위한 일시적 현상으로 생각하려는 조선정계와 청국의 시각을 질타했으며, 그러한 안일한 시각에 분개하였다. 그는 영국의 거문도점령사건을 열강의 영토침략 쟁탈전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이 러시아의 다른 항구 점령을 불러올 것이라는 점을 들어 깊이 우려하였다. 이처럼 김옥균은 외세의 영토침략이 불러올 화근을 걱정하고 영토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이러한 확고한 영토인식이 동남제도개척사 활동과 조선여지도의 울릉도 · 독도 표기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본다.

이처럼 김옥균은 열강의 거문도점령사건을 영토침략 쟁탈전으로 규정하고 영토수호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했으며, 조선여지도에서는 북서쪽 국경선과 울릉도 · 독도를 조선 영역으로 확실하게 표시했다. 이러한 확고한 영토 · 영해 인식은 만국공법 체제 아래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려는 의지의 표현이고, 장차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Ⅴ. 맺음말

개항은 조선 사회가 만국공법 체제 아래 영토주권을 새롭게 인식하고, 열강의 침략에 맞서 실효지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邊境정책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원산 개항을 앞둔 1879년부터 일본에서 원산에 이르는 海路의 섬들에 대한 '關防'의 방책을 강구하기 시작했다. 고종은 1881년 이규원을 울릉도 검찰사에 임명하고 현지조사를 명했으며, 독도에 이르는 거리와 자원을 조사

77) 김옥균, 1886, 「池運永事件糾彈上疏文」, 『김옥균전집』(아세아문화사, 1979), 143~144쪽

하도록 하고 '한 조각의 땅'도 폐기할 수 없다는 단호한 영토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당시 고종은 울릉도와 독도를 '울릉도'로 '通稱'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울릉도'라는 호칭에는 독도가 함께 포함되어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주목된다.

1880년 원산 개항 후 일본인의 울릉도 침투가 심화되자, 조선 정부는 태종 이래 지속되어 왔던 居人刷出정책을 폐기하고, 1883년 4월부터 강원도 등지의 주민을 入居시킴으로써 실효지배를 강화하고 개척사업을 본격화했다. 이로써 울릉도와 일대 섬들에 대한 실효지배를 확고히 하고, 외세의 이권침탈을 방지하고자 했다. 나아가 동남제도개척사를 설치하여 울릉도와 일대 섬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조선에 이르는 동남海島의 방위와 개척사업을 추진하려 했다.

고종은 1883년 3월 역사상 처음으로 東南諸島開拓使를 신설했다. 그리고 首長에 김옥균을 임명하고, 울릉도를 비롯한 동남쪽 섬들의 개척과 관리, 捕鯨·興利 등 폭넓은 임무를 맡겼다. 개척사 김옥균은 그해 6월 일본에 건너갔다. 그는 일본 정부에 東南諸島 개척권 등을 제시하고 차관을 얻어 개척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이에 김옥균은 일본의 민간회사 協同商會社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울릉도 산물에 대한 채취·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울릉도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개척자금을 충당했다. 그의 개척사 활동은 주로 일본을 무대로 진행되었으며, 1884년 4월 귀국한 후에는 수행원 백춘배 등이 일본에 남아 관련 업무를 추진했다. 이처럼 울릉도 개척사업은 안으로 강원도 관찰사·울릉도장을 통해 입거와 개간을 진행하고, 밖으로 동남제도개척사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여 소요 물자와 자금을 조달하는 이원적 체제로 추진되었다.

본래 동남제도개척사의 임무는 개항 후 예상되는 외세의 영토 및 이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쪽 섬들의 개척과 포경 및 백성구제·興利 등으로 광범위했지만, 차관도입이 실패하면서 울릉도 개척에 그쳤다. 그러나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여 개척사업을 추진한 것은 개화파의 부국강병책의 방향과 자본주의적 성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동남제도개척사로 활동했던 김옥균은 영국의 거문도점령사건(1885)을 열강의 영토침략으로 간주하고 확고한 영토수호 의지를 피력했다. 김옥균 지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를 縮寫한 朝鮮輿地圖에는 서북 국경선과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로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다. 특히 울릉도 · 독도에 대한 인식과 표시는 울릉도와 독도를 세트로 울릉도로 通稱해 왔던 조선 사회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김옥균의 명료한 영토인식은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며, 장차 영유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는 포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김옥균의 확고한 영토 · 영해 인식은 강화도조약에서 이어지는 부산 · 원산 개항과 열강의 침략적 진출에 대한 위기의식의 반영이며, 동남제도개척사로서의 직임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만국공법 체제에 대비한 김옥균의 영토 · 영해 인식은 고종의 적극적 '疆土'수호의지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근대적 독립국가를 이루고자 했던 그의 민족주의적 입장이 반영된 산물이라 하겠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고종실록』, 『구한국외교문서』, 『승정원일기』, 『신증동국여지승람』, 『일성록』
김윤식, 『속음청사』
박영효, 『사화기략』
어윤중, 『종정연표』
윤치호, 『윤치호일기』
이규원, 『울릉도검찰일기』
황현, 『梅泉野錄』 상권
姜文馨, 「日本聞見事件」(규장각, 규 15250)
김옥균, 「池運永事件糾彈上疏文」, 『김옥균전집』(아세아문화사, 1979)
「光緒九年四月日鬱陵島開拓時船格粮米雜物容入假量成册」(1883), 규장각도서 17041번
「光緒九年七月日江原道鬱陵島新入民戶人口姓名年歲及田土起墾數爻成册」(1883), 규장각도서 17117번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金玉均書簡'(등록번호 사자2167),
김용구 편, 1995, 『한일외교극비사료총서』

문화재청, 2008, 『한국의 옛 지도』
박은숙, 2005, 『갑신정변 연구』, 역사비평사
송병기, 2007, 『울릉도와 독도』, 단국대학교출판부
송병기, 2010, 『울릉도와 독도, 그 역사적 검증』, 역사공간
수산업협동조합, 1987, 『韓國捕鯨史』,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하, 1996, 『독도의 민족영토사연구』, 지식산업사
신용하, 2006, 『한국의 독도영유권 연구』, 경인문화사
영남대학교 박물관, 1998, 『영남대학교 소장 한국의 옛 지도』 자료편
이찬, 1991, 『한국의 고지도』, 범우사
허동현, 2000, 『근대한일관계사연구』, 국학자료원,
葛生修吉, 1903, 『韓海通漁指針』, 東京: 內田活版所

강민생, 1986, 「한말 일본의 제주어업 침탈과 도민의 대응」, 『제주도연구』 3, 제주학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김광옥, 2000, 「근대 일본의 協同商會와 조선무역」, 『동아시아역사연구』 제7 · 8집, 동아시아역사연구회

동아일보사, 2008, 「거문도와 울릉도 100년 넘은 인연 아시나요」, 『주간동아』 625호 (2008년 3월 4일)

박찬식, 2008, 「개항 이후 일본 어업의 제주도 진출」, 『역사와 경계』 68, 부산경남사학회

양보경, 1996, 「옛 지도에 나타난 북방인식과 백두산」, 『역사비평』 35, 역사비평사

엄찬호, 2007, 「개화기 독도의 연구 성과와 쟁점」, 『한국사학보』 28, 고려사학회

유바다, 2008, 「1883년 김옥균의 차관교섭과 청 · 일의 조선보호론」,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광린, 1990, 「김옥균의 '동남제도개척사 겸 管捕鯨事' 임명에 대하여」, 『한국개화사의 제문제』, 일조각

이선근, 1965, 「근세 울릉도문제와 검찰사 이규원의 탐험성과 – 그의 검찰일기를 중심한 약간의 고찰」, 『대동문화연구』 제1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Activities and Territorial Understanding of Kim Ok Gyun: The Land-Opening Official for the Southeastern Islands

Park Eunsook

The Joseon dynasty began recognizing territorial sovereignty after opening its first port in 1876. The Joseon dynasty established the "Land-Opening Official for the Southeastern Islands"(東南諸島開拓使), and appointed Kim Ok Gyun(金玉均) as a director in the third month of 1883.

Kim took an active mainly in Japan. He made contracts with Japanese coordinated companies(協同商會) and other entities. He sold the products of Ulleungdo(울릉도) to Japanese companies, and he provided rice to the Ulleungdo islanders. He invited foreign capital and propelled the pioneering work there. This method showed Kim's policy of modernization and enrichment.

According to the map of Joseon which he compiled, Kim depicted the northwestern international border clearly, including Ulleung-do and Dokdo(獨島) in the territory of Korea. Depicting Dokdo in the East Sea ensured the territorial right of Korea within international public law(萬國公法). He desired a modern independent state, and this was reflected his nationalism.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Keywords

Kim Ok Gyun(金玉均), Land-Opening Official for the Southeastern Islands(東南諸島開拓使), whaling official(捕鯨使), Ulleung-do(鬱陵島), Dokdo(獨島), map of Joseon(朝鮮輿地圖)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조선 開港場 監理署의 성립 과정 (1883~1886)

민회수 ‖ 서울대학교 역사연구소 연구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머리말

조선왕조는 19세기 말의 이른바 '서세동점'의 시기에 일본과의 修好條規 체결(1876)을 필두로 미국(1882), 영국 · 독일(1883)과 잇달아 條約을 체결하면서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인 사대질서에서 서유럽적 국제질서인 만국공법 체제로 이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대외관계의 질적 변화는 내용적으로는 '開港'을 통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로의 편입으로, 형식적으로는 '條約(treaty)'이라는 새로운 대외관계의 규정 형태로 실현되었는데, 이러한 개항 · 조약을 매개로 한 조선과 일본 및 서구 열강들과의 새로운 대외관계의 전개에 대해서는 당시의 외교문서집이 많이 발간되어 있는 것은 물론,[1]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당국들 역시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기에 어느 정도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

※ 투고일: 2012년 2월 8일, 심사일: 2012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5일

1)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한반도 관련 열강들의 이 시기에 해당하는 旣刊 · 未刊 외교문서들의 현황은 김용구, 2002, 『외교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원, 40~71쪽 참조.

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외관계의 구체적 실상과 전개 과정의 문제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등한시되어 온 분야가 바로 '시스템'의 문제이다. 사대질서와 만국공법질서라는 두 세계체제가 근본적으로 상이한 시스템인 만큼, 만국공법체제로의 편입 과정에서 조선의 대외교섭 시스템 역시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전통시대에 대외관계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외교부서는 禮曹였는데, 1880년 개화정책의 일환으로 統理機務衙門이라는 근대적 기구가 신설되면서 대외관계의 상당 부분을 떠맡게 되었다. 이후 대외관계 부분만이 특화되어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이하 '統署'로 약칭)으로 독립했으며, 동시에 統理軍國事務衙門(후에 內務府로 개칭) 역시 대외관계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등, 전환기 조선의 외교 시스템은 1894~1895년 갑오개혁기 이후 外部가 전담하기까지 상당히 복잡한 변화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개항기 외교 시스템의 실상 및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진했던 느낌이 있는데, 그나마 중앙외교관서에 관해서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중앙의 官署를 '좁은 의미'의 대외관계 담당 부서라고 한다면, '넓은 의미'의 외교관서와 관련하여 개항을 계기로 형성된 '開港場'의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개항 이후 상업 활동 등을 위해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을 비롯한 여러 외국인들이 거주 ·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된 곳이 개항장으로, 특히 그중 외국인들의 거주지로 규정된 곳이 租界였다. 그리고 이러한 개항장 · 조계의 외국인 활동을 관리하는 부서가 바로 監理를 총책임자로 하는 監理署였다. 감리서는 개항장에 설치된 海關을 관리 · 감독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이면서, 동시에 개항장 외국인들의 상업 및 기타 활동을 관리하는 '넓은 의미의 지방외교관서'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해관에 관하여 그 창설의 경위 및 운영과 추이 등에 대하여 몇몇 업적들이 있었으며,[2] 그 연구 과정에서 감리서와 관련된 내용들

2) 대표적인 업적으로 이하의 것들을 들 수 있다.
高柄翊, 1965a, 「朝鮮 海關과 淸國 海關과의 關係 – '메릴'과 '하트'를 中心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 일부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막상 감리서 자체에 대한 성과는 현재까지 별로 축적되어 있지 않다. 가장 대표적인 업적은 李鉉淙의 그것으로, 주로 『官報』나 『韓末近代法令資料集』 및 연대기류(『高宗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등)를 이용하여 감리서의 제도적 추이를 밝힌, 이 분야에서는 선구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다.[3] 하지만 감리서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못한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지적할 수 있는 한계라면, 연구 대상 시기가 감리서가 제도적으로 큰 변화를 겪은 시기인 1895~1896년 이후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으며, 자료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 시기의 실상은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 밖에 추가적인 업적들이 있지만,[4] 대부분 사례 연구 수준을 크게 넘지 못하고 있는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東亞文化』 4; 金敬泰, 1972, 「開港直後의 關稅權 回復問題－'釜山海關 租稅事件'을 中心으로」, 『韓國史研究』 8; 夫貞愛, 1973, 「朝鮮海關의 創設經緯」, 『韓國史論』 1; 崔泰鎬, 1976, 『開港前期의 韓國關稅制度: 1880年代를 中心으로』, 韓國研究院; 崔泰鎬, 1991, 『近代韓國經濟史 研究序說: 開港期의 韓國關稅制度와 民族經濟』, 國民大學校出版部; 金順德, 1986, 「1876~1905년 關稅政策과 關稅의 운용」, 『韓國史論』 15

한편, 역사학이 아닌 경제학 분야에서도 주로 부산해관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 사례 연구들이 눈에 띈다.

김재승, 2003, 「부산해관 개청과 초대해관장 W. N. Lovatt」, 『國際貿易研究』 Vol. 9, No. 2; 尹光云·金在勝, 2004, 「舊韓末 開港期 朝鮮海關에 관한 研究－雇聘 外國人 海關員의 任免과 勤務狀況을 中心으로」, 『國際貿易研究』 Vol. 10, No. 2; 尹光云·金在勝, 2006, 「부산해관(1883~1905)에 관한 무역사적 연구」, 『貿易學會誌(Korea trade review)』 Vol. 31, No. 1; 尹光云·金在勝, 2007, 『近代朝鮮海關研究』, 부경대학교출판부; 윤광운 등, 2006, 「1883~1905년 조선해관의 고빙 해관원에 관한 연구」, 『國際商學』 Vol. 21, No. 2; 尹光云, 2006, 「근대 부산해관 운영에 관한 사적 고찰」, 『國際地域研究』 Vol. 10, No. 1

3) 李鉉淙, 1968, 「監理署 研究」, 『亞細亞研究』 11-3; 李鉉淙, 1975, 『韓國開港場研究』, 一潮閣

4) 金容旭, 1962, 「釜山租界考－特히 日本租界의 性格 및 土地所有關係를 中心으로」, 『韓日文化』 1집 1권; 金鍾先, 1982, 「暗使日商民 務安監理署 攔入 占據에 關한 考察」, 『木浦大學 論文集』 4; 裵鍾茂, 1994, 『木浦開港史 研究』, 느티나무; 박철우, 1996, 「群山港의 開港에 關한 研究: 1897~1910年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현석, 2004, 「인천항 감리서에 대한 기초적 연구」, 『인천역사』 1

한편, 1894~1896년 지방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감리서 제도의 추이를 살핀 것으로 다음의 연구가 있다.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통해, 제도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창설 초기 감리서의 체제와 운영 및 官署로서의 독립 과정에 대하여 해관의 창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淸의 간섭이라는 변수를 염두에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1_ 海關 창설기 開港場 監理制의 실상

1) '監理通商事務設置事目'의 제정과 감리 · 海關 관계의 설정

감리 · 감리서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 설치 및 존립근거인 해관을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기 어렵다. 개항기의 해관은 오늘날의 稅關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근대 자본주의 무역 시스템 하에서 수출 · 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임무를 담당한 기구이다. 조선에 해관이 설치된 것은 1883년으로,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뒤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5] 1883년에 일본과의 통상장정을 개정하고 협정관세체제[6]로 전환하게 되면서 부산, 인천, 원산의 세 곳에 창설되었다.[7] 그런데 당시는 임오군란 이후 淸의 간섭이 시작된 상황이었기에, 해관 창설 역시 그 영향을 깊숙이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해관 설치 과정이 청의 영향력에 의해 統署 協辦으로 재직 중이던 독일인 묄렌도로프(P.G.

鄭光燮, 1998,「開港期における地方制度－監理署を中心に」,『上智法學論集』42－2

5) 1878년에 부산에 해관을 설치하여 관세 징수를 시도했다가 좌절된 사건에 대해서는 金敬泰, 1972, 앞의 글 참조.

6) 協定關稅體制와 國定關稅體制의 개념 및 비교에 대해서는 金順德, 1986, 앞의 글 참조.

7) 세 곳의 해관에서 실제로 수세업무를 개시한 날짜를 보면, 우선 인천의 경우 1883년 6월 16일(이하 본 주 내의 날짜는 양력)이었고(『統署日記』, 高宗 21년 5월 초4일), 원산은 10월 31일(앞의 책, 高宗 20년 10월 10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산이 同年 11월 3일이었다(崔泰鎬, 1991, 앞의 책, 84쪽). 그런데 알렌의 일기나 묄렌도르프의 수기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은 6월 17일, 부산은 7월 3일을 해관 개청 일자로 봐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von Möllendorf, 穆麟德)에 의해 주도되었고, 결국 그가 해관의 총책임자격인 總稅務司로 부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한다.

그렇다면 조선 해관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 청의 해관은 어떠한 시스템 하에서 움직이고 있었을까? 海關은 원래 淸朝가 대외무역과 조공무역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으로,[8] 1840년 아편전쟁의 패배 이후로 본격화된 영·미·불의 제국주의 침략과 맞물려서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행정 관리권이 점차 외국인 출신의 稅務司(Comissioner of Customs)에게 귀속되게 되었으며,[9] 궁극적으로는 점차 서로 다른 두 계통, 즉 원래 전통적 업무였던 중국 상인의 民船 무역과 徵稅 사무를 관리하고 중국인 海關 監督 혹은 각 지방관리가 관할하던 常關(鈔關, 大關, 工關, 戶關, 老關)과, 대외무역 관세징수를 관리하는 海關(洋關, 新關)으로 갈라지게 되었다.[10] 요는 이중적인 계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 해관의 구조상 가장 큰 특질인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 해관 제도에 관한 선구적인 연구를 수행한 다카야나기 마쓰이치로[高柳松一郎]는 〈그림 1〉과 같은 유명한 도식으로 중국 해관의 체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 구조는 중국에서 세무행정을 총괄 하는 부처인 稅務處(Revenue Council)가 창설된 1906년 이후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으로서,[11] 세무행정의 총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재승, 2003, 앞의 글, 17~20쪽). 참고로 이하 본고에서 인용한 『統署日記』의 내용은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硏究所 編, 1972,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3(統署日記 1) 수록본을 이용.

8) 중국 고대 왕조들이 연해지역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세운 기구인 市舶司가 청의 건국 이후 海禁 해제를 계기로 海關으로 전환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岡本隆司, 1999, 『近代中國と海關』, 名古屋大學出版會, 제1장 참조. 그리고 청이 시박사를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해관으로 변경시킨 배경에 대해서는 李允熙, 2011, 「淸 前期 海關 設置와 그 意味」, 慶北大學校 敎育學碩士學位論文 참조.

9) 중국 해관의 외국인 세무사 체제 도입의 배경 및 그 과정에 대해서는 岡本隆司, 1999, 위의 책, 제4장 참조.

10) 보다 구체적인 과정은 박기수, 2010 「근대 중국의 해관과 중국구해관사료(中國舊海關史料)(1859~1948)」, 『成大史林』 37, 53~62쪽 참조. 중국 해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이고 개설적인 연구로는 陳時啓, 2002, 『中國近代海關史』, 人民出版社가 있으며, 기타 중국 및 일본의 연구성과에 대해서는 박기수, 2010, 위의 글, 53~62쪽, 한국의 그것에 대해서는 49~53쪽 참조.

11) 1906년 이후의 체제를 나타내는 도식으로 1880년대 이전의 그것을 설명하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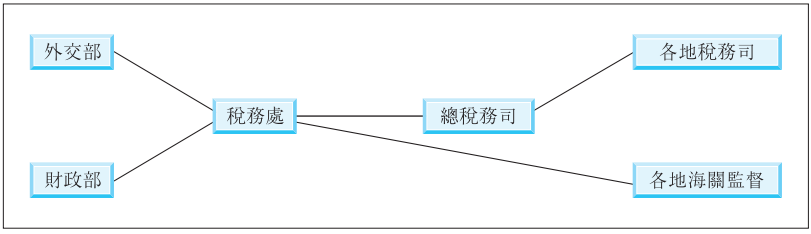

〈그림 1〉 중국 해관과 타 관서들과의 계통관계도[12]

책임자인 總稅務司(Inspector General of Customs)가 각 해관의 세무사를 지휘하는 반면, 각지 세무사를 감독하는 해관 감독(Superintendent of Customs)은 중앙 부처인 세무처의 지시를 받고 있는 형태이다. 다카야나기에 따르면 주로 서양인인 세무사는 역시 서양인인 총세무사의 명령에만 따르고, 주로 중국인이었던 해관 감독은 세무처의 명령에만 따르는 이중구조가 그 특질이었다고 한다.[13] 해관 감독은 명목상으로는 해관의 제1책임자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세무사와 해관 감독의 관계는 종적이라기보다는 수평적이고 상호 견제하는 시스템이었다는 것이다.

다카야나기의 상기 도식은 이후 해관의 계통 구조를 설명하는 데 자주 인용되었으며, 조선의 해관을 설명하는 경우에도 연구자들에 의해 많이 원용되었다. 위의 도식을 조선에 적용할 경우, 해관 창설 초기에는 아직 세무전담 중앙기구가 없었으므로, 〈그림 2〉와 같이 표현될 수 있다.

그런데 다카야나기의 도식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그것이 1906년 이후의

얼핏 생각하면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도식이 본 논문에서 가지는 가장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이중적인 해관 지배구조라는 점인데,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1861년 總理各國事務衙門(總署) 설립 당시에 이미 어느 정도 확립되어 있었다. 따라서 稅務處라는 기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물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중적 구조라는 점에서 이 도식은 1880년대 이전의 해관 구조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러한 이유로 이하 서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여러 연구논저들에서 자주 인용되고 때로는 변형을 거쳐 사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12) 高柳松一郎, 1920, 『支那關稅制度論』, 內外出版株式會社, 166쪽에서 인용
13) 高柳松一郎, 1920, 위의 책, 168~16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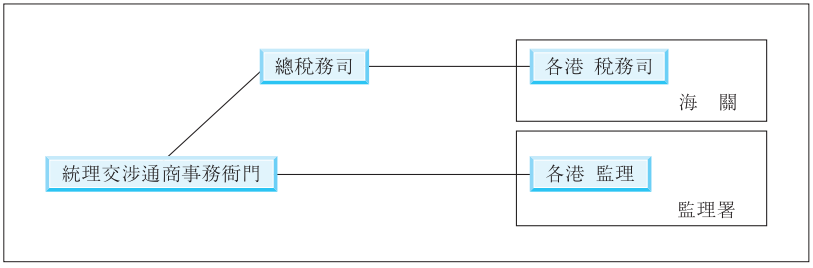

〈그림 2〉 조선 해관과 타 관서들과의 계통관계도[14]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것을 조선에 대입했을 경우, 어느 정도 해관 및 감리서 체제가 정착된 뒤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과연 창설 초기에도 이러한 시스템이 유효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논증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조선의 초창기 감리서 체제의 실상은 어떠했을까? 해관이 창설된 해인 1883년 8월 19일자(이하 음력)로 趙秉稷과 李鎬永이 각각 監理(仁川 · 釜山)港通商事務에 임명되었고, 德源府使 鄭顯奭이 監理元山港通商事務를 겸임하게 되었으며,[15] 22일에는 감리제도 관련 규정인 '監理通商事務設置事目'이 제정되어 명문화되었다. 이 사목은 연대기류에는 구체적 내용이 기재되지 않아[16] 현재까지 감리서 관련 선행 연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는데, 통서의 草記 기록인 『三港設置事目』(奎18013)[17] 및 『釜署集略』(한古朝51-나

14) 崔泰鎬, 1991, 앞의 책, 116쪽 및 김순덕, 1986, 앞의 글, 287쪽의 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함.

15) 『承政院日記』, 高宗 20년 8월 19일; 『日省錄』 · 『高宗實錄』 같은 날.

16) 事目의 제정 및 수정 사실만 『承政院日記』 · 『日省錄』 · 『高宗實錄』, 高宗 20년 8월 22일자 기사에 보이며, 그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17) 『三港設置事目』(奎18013)은 통서와 부산 · 인천 · 원산 3개 항구의 왕복 공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일지의 草記로,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대상 기간은 1883년 1월 20일~1884년 4월 11일 사이이고 매달 10일분 내외의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이 책을 淨書한 것이 『外衙門草記』(奎19487) 1권에 해당되는 「別本草記」이다. 제목에서 보이는 '3개 항구의 설치 事目'이라는 것이 바로 監理通商事務設置事目을 지칭한 것으로 보이며, 1883년 8월 22일자에 기재되어 있다.

3),[18] 『海隱日錄』[19] 등 개인 기록에서 이하의 항목별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監理通商事務設置事目[20]

1. 관직의 직함은 '監理○○港通商事務'로 칭한다.
1. 감리 1員은 정3품 당상관으로 임명하여 吏曹에서 下批하되, 元山港은 사무가 아직 간단하므로 우선 德源府使가 겸임하여 감독 · 신칙하게 한다.
1. 3항의 감리는 차례대로 자리를 옮기되, 순서는 원산에서 부산, 그리고 인천으로 한다.
1. 月俸은 銅錢 500兩을 한도로 하여 해관의 세금 수입에서 劃給한다.
1. 公署는 인천은 花島鎭舍를, 부산의 경우 草梁鎭舍를 우선 그대로 사용하되, 원산은 부사가 겸직하므로 거론할 필요 없음.
1. 關防은 '監理○○港通商事務關防'으로 鑄造한다.
1. 文牒의 왕래는 監司, 留守, 兵 · 水使의 경우 상호 동등한 지위 간의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 『釜署集略』은 종친 관료 李鎬永(1837~1908, 호는 敬窩)이 초대 부산 감리로 재직시에 남긴 기록으로,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관직이나 外任을 맡을 때마다 기록한 문서와 일기, 詩文 등을 "○○集略"으로 명명하여 정리했는데, 2009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이들을 모아서 표점 · 활자화 과정을 거친 뒤 필자의 호를 딴 『敬窩集略』이라는 이름으로 上 · 中 · 下 총 3권으로 기획하여 『한국사료총서』 제53집으로 간행 중이다. 『釜署集略』은 이 중 중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감리 재직시의 일지로서, 재직기간(1883. 8~1884. 윤5) 동안 매일의 업무 및 서신 왕복 등의 현황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후반부는 해관 세무사나 日本 領事 등 업무상 상대와의 왕복서신 및 조회문, 그리고 백성들에게 포고한 告示文 등 각종 문서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는 연대기류에서 창설 초기 감리서 관련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문제점을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9) 『海隱日錄』은 1883년 초창기부터 부산 감리서의 서기관으로 근무했던 閔建鎬(1843~?)의 일기이다. 그는 1881년 조사시찰단 파견시 이헌영을 수행했고 그 인연으로 이헌영이 부산감리로 부임하면서 서기관으로 발탁되었다. 이후 1890년에는 부산감리서의 幇辦으로 승진하였고, 이듬해에는 多大浦僉使에 임명되었으며, 대한제국기에는 中樞院 議官을 역임하였다. 그는 『東行日錄』이라는 표제로 1881년 조사시찰단 수행 활동시의 일기를, 『海隱日錄』이라는 제하로 1883년 감리 서기관 임명 직후부터 1914년까지의 일기를 기록하였는데, 부산근대역사관에서 이들을 탈초 · 국역하여 '부산근대역사관사료총서'로서 간행하고 있다.

20) '監理通商事務設置事目'
一 官啣 以監理某港通商事務爲稱事

文移로, 각 읍에는 關文으로 행하며, 오직 정부 및 內·外衙門에 대해서만 牒報한다.

1. 賬房 한 곳을 해관에 설치하고 掌簿 2인을 1인은 본국인으로, 나머지 1인은 외국인으로 하여 (감리) 스스로 임명한다.
1. 書記와 胥史 등도 모두 (감리) 스스로 임명하며, 직원의 수는 사무의 다소에 따라 적절한 수준만큼 차출한다.
1. 賬房의 掌簿 및 書記, 胥史 등의 봉급은 세금 수입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여 지급한다.

상기 事目의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선 감리의 차출이 조정의 정3품 당상관 중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으로, 당시 정부에서 개항장의 해관 업무를 매우 비중 있게 생각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감리의 위상을 監司와 留守,

一 監理一員 以堂上正三品差出 自銓曹下批 元山港 事務尙簡 姑以德源府使兼帶監飭事
一 三港監理 以次移遷 而由元山 移釜山 移仁川事
一 月俸 銅錢五百兩爲率 以海關稅入中劃給事
一 公署 仁川則以花島鎭舍 釜山則以草梁鎭舍 姑爲仍用 元山則府使兼帶 故勿論事
一 關防 以監理某港通商事務關防鑄造事
一 文牒往來 監司留守兵水使 用平等文移 各邑則行關 惟於政府及內外衙門牒報事
一 賬房一所 設置於海關 掌簿二人 一用本國人 一用外國人 自辟事
一 書記胥史等 並自擇 而員數隨事務繁簡 量宜差出事
一 賬房掌簿及書記胥史等俸金 稅入中量宜定給事

[『三港設置事目』(奎18013), 癸未八月二十二日/『釜署集略』(上), 「日記」, 癸未八月十九日/부산근대역사관, 2008, 『海隱日錄』 I(부산근대역사관사료총서 3), 5~6쪽]

3개 사료에 기록된 사목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나, 『釜署集略』과 『海隱日錄』이 완전히 일치하는 반면, 『三港設置事目』은 이들과는 약간 차이를 보이는데, 본고에서는 『三港設置事目』을 기준으로 하였다. 왜냐하면 8월 22일자 연대기류 기록들에서 사목이 '수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는바, 날짜 기준으로 볼 때 19일자인 『釜署集略』, 20일자인 『海隱日錄』과는 달리 22일자인 『三港設置事目』은 수정된 이후의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목의 명칭은 개인 기록류(『釜署集略』·『海隱日錄』)에는 '海關監理設置事目', 연대기류에는 '監理事務設置事目'으로 나오는데, 역시 본고에서 기준으로 삼은 『三港設置事目』에 기재된 '監理通商事務設置事目'으로 통일하였다.

兵 · 水使와 동급으로 놓았다는 점, 소속 직원에 대한 직권 임명 권한의 부여는 이러한 추측을 뒷받침하며, 3항구의 감리에 대해 상호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 사실 역시 해관 및 통상 사무의 전문성을 살리도록 한 조치라는 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21]

아울러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감리가 해관 조직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아마도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賬房을 해관 내에 설치하고, 거기서 근무하는 掌簿에 대해 임면권을 갖고 있으며 그 대상에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중심으로 구성된 해관에서 창설 당시 감리가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사목의 내용이 감리의 직위와 월급 및 위상 등 여러 부분에 대하여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면서 정작 감리가 하는 일, 곧 직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는데, 이는 감리의 업무가 해관에 대한 관리 · 감독이라는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런데 사목의 조항 중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감리가 근무하는 '公署'에 대한 언급이다. 문제는 이것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監理署', 곧 정식 직제를 갖춘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公署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언급만 있을 뿐 다른 내용들, 이를테면 관할 업무나 직원 편제 및 정부기관과의 관계 등과 같이, 만약 그 '公署'가 일정한 직제를 갖춘 관서일 경우 응당 있어야 할 내용들이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관 및 감리 등과 관련된 연대기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한 가지 눈에 띄는 사항이 있으니, 흔히 알려진 '監理署'라는 기구의 명칭이 창설 초기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22] 비단 『承政院日記』 · 『日省錄』 · 『高宗

21) 이러한 순환근무 원칙은 1895년 감리서 폐지 이전에는 지켜진 예가 없으나, 1896년 감리서 復設 이후로는 어느 한 곳에서 감리를 역임한 뒤 다른 곳의 감리로 임명받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22) 단, 『釜署集略』 · 『海隱日錄』에는 수시로 '本署'라는 표현이 등장함은 물론, '監理署'라는 표현도 나타난다[『釜署集略』(上), 「日記」, 癸未 十二月十一日 丁巳]. 그러나 여타의 연대기류 및 統署의 일지 등에 전혀 없는 표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감리가 거주하는 일종의 공관 형태의 근무 공간을 지칭하는 의미로 이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實錄』 등의 연대기류뿐 아니라 『統署日記』를 봐도 초기에는 감리라는 말은 자주 등장하지만 감리서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개항장에 파견된 감리와 해관의 관계는 대체 어떠했을까? 다음의 내용에서 일정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선 당시 官報 역할을 했던 『漢城旬報』에 해관 · 감리서 설치시 관직 명단이 전해지고 있는데, '海關' 항목에 3인의 감리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은 정식 관서로 제정된 것은 해관뿐이고 감리서라는 직제는 없었음을 시사한다.[23] 또 1881년 선진 문물 시찰의 밀명을 받아 朝士視察團 일행이 일본에 갔다온 뒤 올린 보고서 중 이헌영이 담당한 세관 관련 항목을 보면, "稅關에는 關長이 있어 일반 사무와 모든 임무를 총괄하여 관장, 검사하고 감정하며, 세금을 받는 것은 각각 그 課가 있어서 직무를 分掌한다"라고 하여,[24] 당시 일본 시찰을 통해 조선이 이해했던 세관의 구조는 중국식의 2중 명령 구조와는 달리 본국인 海關長을 중심으로 하는 일원적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설치사목의 규정에서 보이는 감리의 해관에의 영향력과 연계하여 생각해 본다면,[25] 처음 해관을 창설하고 감리를 임명할 당시의 시스템은, '감리서'라는 관제는 없었고 감리가 형식상 해관의 총책임자였으며, 그 지휘를 각항 세무사가 받는 형태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추정해 볼 수 있다.[26] 또한 당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감리가 상주하는 公署'의 줄임말일 뿐으로, 아직 정식 관제로서 해관과 양립관계를 이루는 공공 기관이라는 위상의 의미를 지닌 호칭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23) 《漢城旬報》, 1883년 12월 29일, 〈國內官報〉. 해관 세무사 및 직원의 경우 '國內 各稅務司'라는 별도의 항목 내에 각 개항장별로 기재되어 있다.

24) 『日槎集畧』 天, 「海關總論」, "日本國海關 卽商稅之攸關 是曰稅關 而一稱海關者 以其設關於海港也 **關有關長 管庶務總諸任 而檢查焉 鑑定焉 收稅焉 各有其課 分掌厥職矣** ……"(민족문화추진회, 1977, 『(國譯)海行摠載』 속편 11권)

25) 『釜署集略』과 『海隱日錄』에 사목의 제목이 '**海關監理**設置事目'으로 표기되어 있는 사실도 일정한 시사를 줄 수 있으며, 감리 조병직과 이헌영이 통서에 와서 '海關事宜'를 논의했다는 기록도 있다(『統署日記』, 高宗 20년 9월 초7일 및 11월 초9일자 참조).

26) 『仁川府史』(仁川府廳 編, 1933)에 따르면 감리가 근무하는 기관을 監理衙門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1883년 감리 임명 직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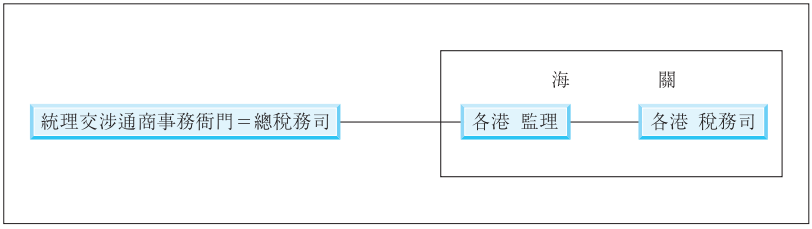

〈그림 3〉 창설 초기 조선 해관과 타 관서와의 계통관계도(추정)

해관의 상급기관도 이중구조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당시 조선 해관의 총세무사 묄렌도르프는 해관 창설 이전에 이미 외교관서인 통서 협판으로 임명된 상태였는데,[27] 협판이 督辦 아래의 지위지만 당시 임오군란 이후 청의 내정간섭이 시작되었고 그의 임명이 李鴻章의 권유에 따른 것이었다는 사실에서,[28] 사실상 통서의 1인자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따라서 세무사와 감리 각각의 상급자인 총세무사와 통서의 책임자가 동일인이었던 것이다. 이상의 사실들을 통해 조선의 초기 해관에서 실제 명령체계를 추론해 본다면 〈그림 3〉과 같이 보다 단순화된 도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형식과 실상이 실제로 일치했는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釜署集略』 등 현존하는 초기 감리서의 일지가 모두 부산에 해당되는 관계로 부산의 경우에 대해서만 그 단서를 추적할 수 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부산 초대 감리의 부임 과정 및 해관과의 관계 등을 재구성해 보자. 1883년 8월 19일자로 부산감리로 임명받은 이헌영은 통서에 나가 11월까지 부임에 필요한 여러 실무적인 문제들을 협의하면서, 公州에 사

지는 명확하지 않다. 더구나 이후에 이어지는 서술에서 감리의 휘하에 書記官 · 警務官 각 1명, 主事 5명 및 경찰 업무와 관련하여 總巡 5명, 巡撫 60명이 있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警務官'이라는 명칭은 1894년 이후에 등장한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이 부분의 서술은 아마도 감리서가 폐지된 후 復設된 1896년 이후의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앞의 책, 146~147쪽).

27) 『承政院日記』, 高宗 19년 12월 5일; 『日省錄』 · 『高宗實錄』, 같은 날.

28) 묄렌도르프의 고용 경위에 대해서는 高柄翊, 1964, 「穆麟德의 雇聘과 그 背景」, 『震檀學報』 25 · 26 · 27 합집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副司果 韓百永을 해관의 掌簿로, 海南의 司果 閔建鎬와 昌寧의 幼學 徐相元, 그리고 서울에 거주하는 幼學 權在衡을 書記로 내정하였다.[29] 韓百永은 해관 사무의 파악 및 장부 정리 등을 위하여 나머지 일행보다 먼저 부산항에 파견되었으며,[30] 이헌영은 나머지 일행과 함께 11월 23일에 서울을 출발해서 12월 12일에 부산의 감리 公署에 도착하였다.[31] 당시 부산 해관은 이미 영국인 세무사 로바트(William Nelson Lovatt, 魯富, 1838~1904)[32]가 부임하여 업무를 개시한 상태였는데, 그와는 다음 날인 13일 처음으로 만났다.[33] 이후 이듬해 1월 2일에는 '監理通商事務公署'라고 外門에 현판을 게시하고[34]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중 해관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헌영이 가장 먼저 처리한 해관 관련 문제는, 당시 일본인에게 대여한 상태였던 부산 해관의 창고 일부를 다시 돌려받는 일로서, 이를 위해 해관의 別將에게 여러 차례 엄히 분부를 내리면서[35] 관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그리고 해관에서 분실한 물품들의 소재 및 행방과 관련하여 증인을 불러다가 조사하면서 혐의가 있는 이를 잡아다 구속하기도 하고, 그에 대한 벌충 비용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9) 『釜署集略』(上), 「日記」, 癸未 八月~十一月 참조.
30) 『海隱日錄』 I(부산근대역사관사료총서 3), 7쪽
31) 『釜署集略』(上), 「日記」, 癸未 十一月二十三日 庚子 · 十二月十二日 戊午. 이 '公署'는 앞서의 事目에 규정된 草梁鎭舍를 지칭한다.
32) 로바트는 영국 사우스햄프턴 출신으로, 일찍이 15세에 영국 육군에 입대, 포병대 하사관까지 진급하면서 인도에서 세포이 전쟁, 중국 북경에서 제2차 아편전쟁과 태평천국의 난 등에 참전하였다. 세무행정을 시작한 것은 1863년부터로, 漢口 · 天津海關 등에서 근무하였으며, 1869년 미국으로 건너가 결혼 후 1870년에 다시 가족을 대동하고 중국으로 와서 1874년까지 九江海關에서 근무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1883년 4월에 九江海關에서 친분을 쌓은 묄렌도르프로부터 부산 해관을 맡아달라는 권유를 받고 조선에 들어와 1886년 5월까지 부산해관의 초대 세무사로 근무한 뒤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이후 1888년에 다시 청국 福州海關으로 복직한 뒤, 여러 해관의 근무를 거쳐 1904년 마지막으로 漢口海關에서 조류 조사원(Tide Surveyor) 및 港長(Harbour Master)으로 근무 중 66세로 병사하였다(김재승, 2003, 앞의 글, 8~13쪽).
33) 『釜署集略』(上), 「日記」, 癸未 十二月十三日 己未
34)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正月初二日 戊寅
35) 『釜署集略』(上), 「日記」, 癸未 十二月十三日 己未 · 十七日 癸亥 · 十九日 乙丑 · 二月初二日 戊申

징수하여 해관에 돌려주는 후속 조치를 취하는 역할도 감리가 주도하였다.[36]

기타 해관의 외국인들이 부근에 심어 놓은 영국산 뽕나무를 조선인들이 베어가는 건과 관련하여 해관 別將에게 조사하여 징계하도록 지시한다던가,[37] 해관 부근의 토지 매입을 위탁받아 토지 소유주 및 가격 등에 대한 조사 시행[38] 및 사망한 외국인 해관원의 장지 선정 문제[39] 등 여러 소소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감리가 개입하고 있다.

감리가 해관의 한국인 소속원들에 대해서 유효한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앞서 해관 別將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내용이 언급된 바 있는데, 그 이외에도 해관의 使喚軍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 즉 도망친 使喚軍 관련 및 分徵錢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감리가 분명히 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40] 그 외에도 단오일을 맞아 해관 전체의 휴무를 지시한다던가,[41] 동래부사가 서울에 납부하는 塡補錢을 부산항으로 수송하여 보관하고 수행원이 檢飭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즉시 해관에 연락해서 일본 선주에게 맡겨 두도록 조치한 예[42]에서 보듯이 해관 전체의 차원에서도 일정한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상기의 이헌영이 처리한 해관 관련 사무의 내용들을 보면, 대부분 해관의 업무상 편의를 위한 조치들이며, 정작 해관의 핵심인 관세 징수 관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6)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正月十二日 戊子 · 二十日 丙申 · 三月二十八日 癸卯; (下), 「書札錄」, 書海關稅務司魯富(三月二十八日) · 海關稅務司魯富答書(三月二十八日). 참고로 해관의 물품 분실이 일본인과 관련 있는 부분이 있었기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헌영은 일본 영사와 조회를 왕복하기도 하였다[『釜署集略』(下), 「照會」, 照會日本領事(甲申正月二十日) · 日本署理領事宮本羆答照會(明治十七年二月二十六日/我曆甲申正月晦日) 참조].
37)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正月十三日 己丑
38)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二月二十九日 乙亥
39) 『釜署集略』(下), 「書札錄」, 海關稅務司魯富書(三月三十日) · 答(三月三十日)
40)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正月十四日 庚寅 · 十九日 乙未 · 二十九日 乙巳 · 二月初一日 丁未 · 初五日辛亥 · 初六日壬子
41) 『釜署集略』(下), 「書札錄」, 書海關稅務司魯富(五月初三日) · 海關稅務司魯富答書(五月初三日)
42)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二月五日

내용은 해관의 수입에 대한 단순보고[43] 이외에는 전혀 없다. 이는 관세행정의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었던 당시 조선으로서는 필연적인 일이었는데, 이 때문에 형식상 상급자인 감리는 정작 가장 핵심 업무인 세무행정에 대하여 설치사목에서도 그 임무를 부여받지 못했고 실질적으로도 관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당시 해관 세무사들이 실세였던 묄렌도르프의 부름을 받아 임명되었다는 사실은 감리와 세무사의 관계가 그 외연적 형식과 실제 내용이 달라지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로바트가 이헌영에게 보낸 다음의 서신이 있다.

> 監理大人 閣下께 삼가 아룁니다. 봄날 해가 맑고 상쾌하니 일상이 아름답습니다. 기쁘게 생각하고 송축합니다.
> 어제 서울 衙門(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 필자 주)의 穆參判(묄렌도르프)에게서 온 서한을 보니, 그 봉피가 모두 뜯어져 있었고 官印은 다 해져 있었으며, 또한 봉투 안의 서한은 모두 개봉되어 읽혀진 상태였습니다. 각하께 청컨대, 이 일을 상세히 조사하고 살펴서, 서한을 열어본 까닭 및 서울의 아문에서 어느 관원에게 공문을 교부하여 이렇게 되었는지를 탐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좋은 소식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날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44]

로바트는 형식적으로 이헌영을 '監理大人 閣下'로 호칭하며 정중하고 깍듯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45] 그러나 내용을 보면, 묄렌도르프와 관련된 문제에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조사를 요청하는 대목에서 하급자로서의 모습

43)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正月二十一日 丁酉 등 참조.
44) 『釜署集略』(下), 「書札錄」, 海關稅務司魯富書(正月十九日) "監理大人閣下 敬啓者 春日淸爽 料必起居佳吉 爲慰爲頌 去日得接京衙門穆參辦來公文一札 但其封皮皆劈開 其官印破爛 并札內信書皆開讀 今請閣下 將此事細查察探 問其人開信之故 并查問京衙門 交何官員帶公文致此 祈速賜佳音爲荷 卽請日安 正月十九日." 이에 대해 이헌영은 해당 서한이 水營을 경유해 왔다고 밝히면서 조사를 약속하였다[『釜署集略』(下), 「書札錄」, 答; 海關稅務司魯富書(甲申正月十九日)].
45) 『釜署集略』의 일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 세무사 · 해관원들과 감리 간에 여러 차례 선물이 오가는 등 분위기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찾기는 쉽지 않다.[46]

결국 초기 개항장의 감리와 해관의 관계는 형식상으로는 '감리서'라는 관제 없이 감리가 해관의 총책임자로서 세무사의 상급자로 위치한 〈그림 3〉에 가까울지 모르나, 실질적으로는 감리는 해관의 편의를 봐주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해관에 대해 제한된 통제력을 갖긴 했지만 핵심적인 세무행정에는 관여하지 못했으며, 동시에 세무사들과 당대 실세인 묄렌도르프와의 개인적 인연을 바탕으로 한 긴밀한 관계로 인하여, 감리가 세무사에 대하여 실제적인 지휘통솔관계에 놓이지는 못했던 상황, 곧 〈그림 2〉에 보다 가까운 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시 말해 형식과 실질이 괴리된 이중적인 상태였다고 볼 수 있으며, 부산 이외의 여타의 개항장들도 상황은 비슷했을 것으로 보인다.[47]

2) 감리의 복합적 위상과 관할 업무의 내용

이상에서 3개 항구의 해관 창설 및 감리 임명 이후 초창기의 감리와 해관의 관계를 상대적으로 사료가 풍부한 부산항의 예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감리의 실제 업무 수행의 실태는 어떠했을까? 이에 대해 감리가 보유하고 있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46) 開拓使 김옥균이 보낸 물품을 잘 보관해 달라는 부탁에 대하여 난색을 표시한 예에서처럼 로바트가 이헌영의 지시에 항상 따랐던 것도 아니었다[『釜署集略』(下), 「書札錄」, 海關稅務司魯富書(二月初八日)]. 이에 대해 이헌영은 이전에 부산항에 정박했던 선박의 물품을 보관했던 창고가 있음을 상기시키며[『釜署集略』(下), 「書札錄」, 答; 海關稅務司魯富書(甲申二月初八日)], 韓 장부를 해관에 보내서 海關 雇軍에게 잘 지키라고 신칙하였다[『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二月初九日 乙卯].

47) 인천항의 경우 1884년 5월 초9일자 『統署日記』의 "…… 仁川監理牒報 …… 又牒報 卽奉本衙門關文 日本船千歲丸所載洋鎗 係我政府公貿軍器 特爲免稅事 卽行飭知于稅務司事 ……"라는 대목에서처럼 감리가 세무사를 申飭한다는 표현이 간혹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원산의 경우도 세무사의 신상에 대한 사항, 이를테면 휴가를 가게 되어 누구를 대리로 앉힌다던가(『統署日記』, 高宗 21년 5월 6일 등), 아니면 해관의 세무사 관련 필요 물품의 조달 문제(『統署日記』, 高宗 20년 12월 초9일 등) 등의 사항들이 대체로 감리를 경유하여 통서에 보고 · 조치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감리의 세무업무 관할 관련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여러 종류의 위상에 따라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지금까지 살펴본 감리와 해관의 관계 문제에서 감리가 가지는 위상은 해관 감독관으로서의 그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술했다시피 조선의 세관 경험이 일천한 관계로 실질적인 세무행정에 관여하기는 어려웠지만, 제한적이나마 감리도 관세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 우선 각 해관에서 거두어들이는 수출입 관세의 收稅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임무를 맡았는데, 1884년 2월 3일(음력)에 부산 감리 이헌영이 1883년 10~12월분의 수출입 세금 내역을 보고한 것을 시작으로,[48] 이후 각항 감리들은 정기적으로 1개월~몇 개월 정도에 해당하는 관세 내역을 統署에 보고하고 있다. 비단 관세 내역이 아니더라도 해관의 무역과 관련하여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처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한 면세조치 역시 감리의 몫이었다. 주로 정부의 공공재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면제 건이 대부분이었는데,[49] 이 경우에 세무사와 관련된 언급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부분은 감리가 세무사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업무 영역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앞서 이헌영의 경우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해관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한 각종 지원 조치 역시 감리 및 소속 관원들이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감리의 중요한 위상 중 하나가 바로 지방관으로서의 그것이다. 앞의 '설치사목' 중 "監司, 留守, 兵·水使와 동등한 자격으로 文牒을 왕래한다"는 조항에서 이미 감리가 지방관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부분이 감리와 지방관의 관계 문제인데, 감리 설치사목의 내용 중 초안과 비교하여 수정된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8월 19일에 제정된 사목의 원안에는 두 번째 항목에서 감리의 정3품 당상관 임명 및 吏曹의 下批와 원산항의 부사 겸직 내용 사이에 '爲實爲兼', 즉 實職으로 겸직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22일에 사목이 수정되면서 이 부분이 삭제된 것이

48) 『統署日記』, 高宗 21년 2월 초3일, "…… 釜山監理牒報 自癸未十月至十二月三朔出入口稅金實數 成冊六件上送事 ……"

49) 예를 들면 일본에서 수입한 총에 대한 면세조치와 같은 경우가 있다(『統署日記』, 高宗 21년 5월 7일·9일 및 윤5월 17일 등).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50] 『大典會通』에 기재된 조선후기 지방관의 임명 규정을 보면, 정2품 이상인 觀察使는 중앙관직을 겸직으로 임명하되, 府尹 또는 牧使를 겸임한 관찰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51] 이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은, 우선 애초 초안에 실직 겸직 조항을 만든 것 자체가 당시 정부에서 감사(관찰사)와 동일한 위상을 부여한 취지에 맞추어 감리를 지방관으로 간주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수정 과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된 것은 『續大典』의 관련 조항에 따라 향후 감리에게 부윤 등 지방관을 겸직시킬 의도가 있었다는 말이 된다. 실제로 1895년 감리서 폐지 이전까지 3개 항구 감리 및 해당 지방관 임면 상황을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감리서 폐지 이전 각 개항장별 감리 및 해당 지방관 임면 현황[52]

	釜山		仁川		元山	
	감리명 / 재임기간	해당 시기 東萊府使	감리명 / 재임기간	해당 시기 仁川府使	감리명 / 재임기간	해당 시기 德源府使
1	李鎬榮 1883. 8 ~1884. 6	趙秉弼	趙秉稷 1883. 8 ~1884. 3	朴齊眩	鄭顯奭 1883. 8 ~1886. 3	겸임
2	? 1884. 6 ~1885. 1		洪淳學 1884. 4 ~1885. 8	朴齊眩 1884. 4 ~1885. 5 겸임 1885. 5 ~1885. 8	李重夏 1886. 3 ~1888. 12	

50) 사목의 기재 날짜를 근거로 수정 이전의 사목 내용은 『釜署集略』과 『海隱日錄』, 수정 이후는 『三港設置事目』의 것으로 판단하였다.

51) 『大典會通』, 권1, 「吏典」, 外官職 중 "〈續〉正二品以上觀察使 京職兼差 兼府兼牧處則否."

52) 이 표는 『高宗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등 연대기 기록과 더불어, 『統署

3	趙秉弼 1885. 1 ~1885. 4	겸임	嚴世永 1885. 9 ~1888. 5	겸임	李暐 1888. 12 ~1890. 윤2	겸임
4	金鶴鎭 1885. 4 ~1887. 3		朴齊純 1888. 5 ~1890. 9		金文濟 1890. 윤2 ~1892. 1	
5	李容稙 1887. 3 ~1889. 6		成岐運 1890. 9 ~1893. 7		李承載 1892. 1 ~1894. 7	
6	金永憙 1889. 6 ~1891. 5		金商憙 1893. 7 ~1894. 8		尹忠求 1894. 7~8	
7	李鎬性 1891. 5 ~1893. 6		朴世煥 1894. 8 ~1895. 5	鄭寅燮	金夏英 1894. 8 ~1895. 1 (순직)	尹忠求
8	閔泳敦 1893. 6 ~1894. 8				金益昇 1895. 1~5	
9	秦尙彦 1894. 8 ~1895. 5	閔泳敦 1894. 8~11 鄭寅學 1894. 11 ~1895. 5				

이 도표에서 보면,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리와 부사가 겸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894년 하반기부터 감리와 부사가 별도로 임명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은 갑오개혁으로 인한 과도기적 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日記』, 『八道四都三港口日記』(奎18083) 등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단, 본 표 중 제2대 부산감리의 성명 부분에 ?가 있는 것은, 1884년 6월에 이헌영이 신병을 이유로 감리직에서 물러난 뒤 통서의 인력을 署理로 파견한다고 하였는데(『八道四都三港口日記』, 甲申六月十六日, 「關萊伯」 및 『統署日記』, 高宗 21년 6월 17일), 그 이름이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보이며, 그 이외에 감리와 부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던 것은 엄밀히 말하자면 초대 감리였던 이헌영과 조병직의 경우에 한하고 있다.[53] 따라서 초대 감리 2명의 경우는 일종의 '특별 케이스'로 봐야 할 것이다. 이 둘은 모두 1881년에 개화정책을 위하여 문물 시찰의 밀명을 띠고 일본에 파견되었던 '朝士視察團(紳士遊覽團)'의 일원으로서, 특히 둘 다 세관 관련 부문에 대한 조사를 맡았던 공통점이 있다.[54] 따라서 이 둘의 부산과 인천 감리 임명은 조선 정부가 해관의 창설 당시 나름대로 매우 의욕적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배치한 특수한 경우에 해당된다.[55] 이들은 당시 고종의 신임을 받던 엘리트였기에(이헌영은 심지어 종친이었다) 감리로 부임해서도 인근 지방행정조직의 수장들, 곧 동래부사 · 인천부사들에 대하여 우위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56]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관들과의 관계가 애매해질 소지가 많았던 것이다. 따라서 당시 조선 정부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애당초 설치사목에서 지방관과의 겸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이들이 교체된 이후로는 그러한 조치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다.[5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3) 원산의 경우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하다고 판단되어 처음부터 시종일관 지방관 겸임 체제였던 것으로 보인다.

54) 이헌영은 조사시찰단 파견 및 복명을 전후하여 日本 長崎縣에 있는 稅關의 업무 및 절차에 대해 기록한 『長崎縣稅關規式抄(奎7679)』 및 「各港稅關職制」, 「稅關慣行方法目錄」, 「上屋規則」, 「海關總論」, 「稅關事務目錄」, 「日本國稅關各國貿易章程」 등으로 구성된 『稅關事務』(奎2451-2 · 6888-2 · 6889-2) 등의 보고서와 『朝鮮國輸出入半年表』(奎3182)를 위시한 수많은 세관 사무 관련 문헌을 집필했고, 이를 취합하여 일본 시찰단 파견을 총괄하는 집략류 기록인 『日槎集畧』(古朝63)을 남긴 바 있다. 조병직의 경우 딱히 보고서 등 문건을 남긴 것은 확인되지 않으나, 이헌영, 閔種默과 더불어서 시찰단 파견 당시 세관 시찰의 임무를 띠고 있었던 점은 분명하다[『日槎集畧』, 人, 「同行錄」, "…… 封書承命 各有所掌事務 而趙準永掌文部省 朴定陽掌外務省 嚴世永掌司法省 姜文馨掌工部省 **趙秉稷掌海關 閔種默掌海關** 沈相學掌外務省 洪英植掌陸軍省 魚允中掌大藏省 李元會掌陸軍操鍊(미주: **獨海關則三人同掌**)"].

55) 아울러 앞서 언급한 민건호의 경우 역시 조사시찰단에서 세관을 조사한 이헌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의 발탁 역시 세무 전문가 기용의 성격이 없지 않다고 하겠다.

56) 실제로 『釜署集略』을 보면 감리 부임 이후 이헌영은 동래부사와의 관계에서 상급자적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대목이 더러 있다.

이렇게 지방관의 위상을 지니고 감리가 수행한 업무들의 일단은 실제 문서들로도 확인된다. 이헌영은 부산 감리로 부임 뒤 商民과 客主들을 대상으로 한 지방관의 告示와 성격이 흡사한 글을 해관에 내걸었으며,[58] 인천 감리로 부임한 조병직 역시 마찬가지였다. 조병직의 포고문을 보면,[59] 향후 인천 商民들에 대한 치안 권한을 행사할 예정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지방관이 백성들에게 내리는 훈시와 비슷한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개항 이후 인천에 도둑이 많아지고 상거래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조병직이 부임 이후 巡捕를 두고 완전 소탕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등[60] 감리가 치안권력을 총괄하는 지방관과 동일한 위상을 가지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61]

마지막으로 감리가 보유한 중요한 위상이 바로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이 모여 있는 개항장에서 조선을 대표하는 입장, 곧 '지방외교대표'로서의 위상이다. 당시 개항장에는 일본 측 외교기관으로 領事館이 설치되었고 그 대표로 領事가, 중국의 경우 商務署 설치 후 分辦이 대표로 있었는데,[62] 조선의 감리는 조선 정부 및 중앙외교관서인 통서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이들을 상대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위상의 연장선상에서 중앙의 통서 및 각국 공사관들과의 연락과 더불어 외교 사절에 대한 접대 업무 또한 중요한 감리의 임무 중 하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7) 이헌영 · 조병직 이후의 감리 임명 기사를 보면, 대부분 먼저 부사로 임명된 이후에 감리직을 겸임 발령내는 형태로 인사가 이루어지는 상황, 곧 부사가 주이고 감리가 종인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58)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正月初九日 乙酉 · 二月二十一日 丁卯. 고시문의 내용은 『釜署集略』(下), 「告示文」, 商民輩處 · 客主輩處 · 商賈及行旅等處 등 참조.

59) 《漢城旬報》, 1883년 11월 30일, '監理告示'

60) 《漢城旬報》, 1883년 10월 31일

61) 설치사목에 규정된 공문 왕복의 위계 서열은 이를테면 '札飭**三口監理及地方官**'이라는 표현 등 감리와 지방관이 동등하게 위상지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사료들을 통해 실례로 입증된다(『統署日記』, 高宗 21년 5월 17일). 또한 『仁川府史』에도 감리는 기본적으로 '인민을 통치하는 목민관이면서 동시에 약간의 외교사무를 처리하는 영사의 직능을 부여받은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仁川府史』, 147쪽).

62) 일본 · 중국의 영사관 · 상무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연구 참조.
하원호, 2009, 「개항기 재조선 일본공관 연구」,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은자, 2009, 「개항기 주한 중국공관 연구 – 청일전쟁 이전 시기(1833~1894)를 중심으로」,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이 외교대표로서의 위상과 연관된 또 다른 중요한 고유 권한이 바로 租界 관련 업무이다. 租界 관련 조약은 1876년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일본과 맺은 '釜山口租界條約'(1876. 12. 17)이 그 효시이다. 이후 1883년 3개 항구의 해관 설치에 즈음하여 '仁川(口)日本租界條約'(1883. 8. 30)이 체결되었고, 청국과도 1882년의 조 · 청상민수륙무역장정 체결의 후속 조치로 1884년 3월 7일자로 '仁川口華商地界章程'이 발효되었으며, 동년 8월 15일에는 미국 · 영국 · 일본 · 청국 등 4개국의 인천 제물포 조계 관련 규정인 '仁川濟物浦各國租界章程'이 공포되는 등, 1883~1884년에 걸쳐 잇달아 개항장 중 인천의 조계 관련 규정들이 제정되었다.

상기한 조약들 중 租界地의 사무와 관련한 감리의 역할이 가장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는 것은 '仁川(口)日本租界條約'으로, 그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항목에 걸쳐서 조계 내의 각종 공사에 대한 관리 · 감독 및 地稅와 기타 각종 경비에 대한 수납 및 관리 등에 대한 관할을 일본 영사관과 협동 및 분담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63] 이러한 조약상의 규정 등을 근거로 하여 감리는 조계 구역의 제정에 관한 협상 관련 작업은 물론,[64] 실제 조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업무들을 수행했던 것이다.

2_ 關稅管理權의 이관과 海關 · 監理署 양립체제의 형성

1) 해관 總稅務司의 稅務司 통제권 강화와 관세관리권의 감리 귀속

조선 해관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은 1885년에 묄렌도르

63) 『仁川口租界約條』(奎23005) 및 『高宗實錄』, 20년 8월 30일 참조.
64) 이헌영의 경우 당시 조선 측 대표자의 입장에서 釜山 商務署 分辦이었던 陳爲焜과 조계 획정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협상을 벌였음이 기록으로 확인된다[『釜署集略』(下), 「照會」, 大淸奏派辦理釜山通商事務官陳爲焜照會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프의 후임 총세무사로 메릴(Henry Ferdinand Merrill, 墨賢理)이 부임하면서부터였다. 묄렌도르프는 이른바 '조 · 러밀약사건'의 여파로 1885년 6월 16일에는 통서 협판에서, 그리고 7월 26일에는 총세무사 자리에서조차 해임되었으며, 당시 청국의 총세무사였던 하트(Sir. Robert Hart, 赫德)에 의해 그 후임자로 인선된 것이 하트가 매우 신임하던 심복으로 당시 청국 總稅務司署의 漢文文案 副稅務司(Acting Assistant Chinese Secretary)로 재직 중이던 메릴이었다.[65]

주지하다시피 부임 직전에 메릴은 北洋大臣 李鴻章으로부터 5개조의 훈령을 받는데,[66] 그중 '조선 해관의 사무 처리에서 중국 해관의 방식에 따를 것', '모든 사무의 처리에서 오로지 북양대신과 조선 통리아문의 지시에만 따를 것', '중국이 조선 屬藩을 보호하는 취지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말 것', '메릴은 중국 해관원이므로 그 봉급 등은 북양대신이 정해 조선에 통보할 것', '중국의 총세무사는 북양대신과의 합의 하에 언제든지 메릴을 소환할 수 있음' 등의 조항을 토대로 볼 때, 메릴의 조선해관 총세무사 부임은 청이 조선에 대한 종주권 확보 수단으로서 조선 해관을 청국 해관에 통합하고자 꾸민 음모의 일환임이 이미 연구를 통해 상세히 밝혀진 바 있다.[67]

메릴은 묄렌도르프가 해임된 1885년 7월 말부터 이미 부임 준비를 시작했으며, 8월 25일에는 인천항에 도착하였고, 9월 13일에는 총세무사에 정식으로 취임하였다. 그가 가장 먼저 행한 작업은 각항 세무사들의 교체였다. 즉, 조선 해관 장악 작업의 일환으로서 전임자 묄렌도르프의 측근이 중심이었던 세무사들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트의 측근들을 대거 임명하고자 한 것인데, 이 문

65) 高柄翊, 1965a, 앞의 글, 5쪽 및 崔泰鎬, 1991, 앞의 책, 92쪽
66) 『淸季中日韓關係史料』, 문서번호 1063, 附件, 1944~1945쪽 참조.
67) 高柄翊, 1965a, 앞의 글 및 崔泰鎬, 1991, 앞의 책, 89~97쪽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메릴이 취한 정책의 일례를 살펴보면, 조선 해관의 무역 현황을 담은 연감을 청국 해관의 그것과 合刊하여 부록으로 내도록 조치하였는데(『總關來申』(奎17829), 제1책, 「H. F. Merrill(1885. 11. 7.) → 統署(申呈 제13호)」), 이는 마치 조선 해관이 청국 해관의 부록인 것과 같은 인상을 대외적으로 주고자 하는 의도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에 대하여 당시 통서 독판으로 재직 중이던 金允植과 1885년 10월 초순 정도에 만나 상의했던 것으로 보인다.[68] 메릴은 이때 합의된 사항을 한 달여 뒤인 11월에 통서에 정식 공문으로 보내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세무사 교체 외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겨 있다.

> 이전까지 해관 각 항구에서 징수하는 稅銀은 모두 세무사 소관이었는데, 1개월 전에 총세무사가 귀 독판을 면회하여, 필요 이상으로 많은 司事人을 정리해고한 뒤 응분의 보상비용의 정산이 모두 완료됨을 기다려, 이전의 법규가 폐단이 많은 관계로 새로 특별히 제정한 辦法에 따라, **각 항구의 稅項은 조선 감독이 처리하고**, 각 항구의 (해관) 소요비용 등은 감독을 경유하여 매월 세무사에게 일정 액수의 銀을 발급하는 방안을 세웠음. 현재 숫자만 많고 쓸모없는 司事人들은 반 수 이상 정리해고하였고, 상응하는 수고비 발급은 연말까지 청산할 수 있음. 이에 총세무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각 항구에서 징수하는 進口·出口 稅銀을 모두 統理衙門에서 위임한 감독에게 귀속시켜** 세무사가 발급한 驗單을 收納하고, 각 항구 해관의 매월 경비는 감독이 稅款 중에서 각 항구 세무사에게 발급하도록 할 예정임. […] 이상에서 기초된 바를 잘 살펴서 **각 항구에서 걷은 進口·出口稅는 모두 조선 감독이 통괄하여 수납하고**, 船鈔와 罰款은 모두 각 항구 稅務司가 수납하며, 각 항구 감독이 매월 稅務司에게 발급해야 할 경비는 원산 1,000元, 부산 1,500元, 인천 2,500元, 總稅務司署 1,200元임 […][69]

68) 『總關來申』, 제1책, 「H. F. Merrill(1885. 10. 13.) → 統署(申呈 제7호)」

69) 『總關來申』, 제1책, 「H. F. Merrill(1885. 11. 3.) → 統署(申呈 제12호)」, "通政大夫戶曹參議衙管理海關事務總稅務司墨賢理爲申呈事 竊向來海關各口所徵之稅銀 俱歸於稅務司經手徵收 一月前 總稅務司面會貴督辦 擬俟多出之司事人裁撤後 應賞之酬費 俱已發完 再將以前之規矩作罷 從新另立辦法 以各口稅項 由朝鮮監督經手 各口薪水等費 由監督 按月發給稅務司一定之銀數 現在多出無用之司事人 多半裁撤 應發之酬資 到年底卽可以淸結 所以總稅務司擬 自明年正月初一日起 各口所徵之進口出口稅銀 俱歸於統理衙門所委之監督 按稅務司所發之驗單收納 至各口海關上按月之經費 擬由監督 於稅款項下 發給各口稅務司 …… 按照以上所擬 各口所徵之進口出口稅 統由於朝鮮監督收納 所徵之船鈔罰款 統由於各口稅務司收納 各口監督按月發給稅務司經費 在元山一千元 在釜山一千五百元(미주: 在仁川海關之經費二千五百元 總署之經費一千二百元)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개항장의 감리가 실제 收稅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했거니와, 수세는 물론 거두어들인 관세의 예치[70]에서도 감리는 철저한 부외자였고 모든 업무는 세무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따라서 당시 재정 문제가 절실했던 조선으로서는 이러한 상황, 곧 정부가 새로운 財源이라고 할 수 있는 海關稅를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에 불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메릴은 이같이 조선 정부가 아쉬워할 만한 대목에 대해 조선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다시 말해 해관에서 징수하는 관세의 관할권을 조선의 감리가 갖도록 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71] 그가 조선에 부임한 근본 목적은 조선 해관의 청국으로의 예속화로, 결코 조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그렇다면 위의 합의사항은 메릴의 목표 달성을 위한 특정한 조치를 조선 정부가 양해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여기서 의문사항이 두 가지 생기는데, 첫째는 그 메릴이 제시한 조건은 대체 무엇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해관세의 98% 정도를 차지하는 수출입 관세[72]에 대한 관리권과 맞바꿀 정도의 가치가 있었느냐는 점이다.

메릴과 김윤식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기록된 사료가 전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히기는 어렵다. 그런데 위의 공문에 첨부 문서 형식으로 되어 있는 총 12개 조항의 '稅司章程'[73]을 통해 그 내용을 추정

70) 해관에서 거둔 관세수입은 1884년 2월에 묄렌도르프와 日本國立第一銀行 사이에 '海關稅取扱條約'이 체결된 이래 세무사 명의로 동 은행에 예치되고 있었다(金順德, 1986, 위의 글, 313쪽).

71) 그간의 해관 및 감리서 관련 연구에서 이 사료를 언급한 경우는 더러 있으나, 본 연구에서 주안점을 두는 대목, 곧 메릴의 제안에 의해 조선의 감리가 관세관할권을 갖는다는 내용을 언급한 경우는 없었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 중에서 감리의 관세 관리권 획득을 지적한 경우는 金順德이 유일한데(金順德, 1986, 앞의 글, 313~316쪽), 여기서는 그 시발점을 메릴과 일본국립제일은행 사이에 관세 관련 정식 계약에 체결된 1886년 12월 이후, 곧 1887년부터로 파악하고 있고, 그 동인 역시 조선과 일본의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 사료, 곧 '메릴의 제안 혹은 메릴과 조선의 합의'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언급이 빠져 있다는 한계가 있다.

72) 인용 사료 중 세무사가 담당한다는 '船鈔'는 입항하는 선박에 한해서 종량법에 따라 부과되는 톤세(噸稅)를 의미하는데, 이는 약간의 수수료 징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罰款 수입은 더욱 미미했을 것으로 보인다(金順德, 1986, 앞의 글, 3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해 볼 수 있다. 이 중 해당 '조건'의 추론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일부 항목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4]

稅司章程

1. 각 항구에 세무사를 둔 취지는, 해당 항구의 감독을 바르게 보좌하여 총세무사 관할에 속하는 通商 稅鈔를 대신 거두어들이고, 또한 총세무사가 수시로 申飭하여 내려보내는 할당 사무를 받들어 처리하게 하는 것임. (세무사는) 각종 공공의 사무에 대해서 총세무사의 示諭를 들어야 하고, 만약 조선 감독과 어떤 일에 대하여 상의함에 있어 혹시 의견이 다르거나 다소 상호 거슬리는 대목이 나타날 경우에는 급히 申文을 갖추어 총세무사에게 문의를 요청하고, 회답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해당 감독의 의견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아울러 자신의 소견을 건별로 기록하여 제출함은 물론, 불가피하게 따라야 했던 (조선 감독의) 처리 방법이 자신의 의견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일일이 명백하고 상세히 기록해야 함.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73) 사실 해당 첨부문서에 제목이 없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그간 연구자들 사이에서 '세무사 근무규정' 등으로 편의상 명명되어 왔는데, 당시 기록들을 보면 위의 규정이 여러 종류의 명칭으로 언급되고 있다. 즉 '稅司章程'[『總關公文』(奎17830), 제1책, 「金允植(1885. 11. 25.) → H. F. Merrill」], '總稅務司章程'[『咸鏡道關草冊』(奎18073), 제1책, 「統署(1885. 11. 18.) → 三港口」], '墨總稅務司章程'(『海隱日錄』 I 471쪽), '海關新章程'[『咸鏡道關草冊』, 제1책, 「統署(1885. 12. 23.) → 釜山監理」] 등이 그것인데, 본고에서는 세무사의 근무규정으로 구성된 내용의 성격상 '稅司章程'으로 통일해 표기하고자 한다.

74) 『總關來申』, 제1책, 「H. F. Merrill(1885. 11. 3.) → 統署(申呈 제12호)」, "…… 一 各口立稅務司之意 卽欲匡輔該口監督 代收屬於總稅務司分應經理之通商稅鈔亦爲承辦總稅務司隨時所飭派應辦之事 各種公事務 以總稅務司之示諭是聽 倘與朝鮮監督會商事件 或有意見不同 稍形拒抵處 宜急備申文 請質總稅務司 於候回文時 應暫由該監督意見辦理 並宜將已所見之各件錄出 兼將已所俯從之辦法緣何與已意不同之理 一一明白詳錄 …… 一 爾職司一口稅務 責任綦重 除有總稅務司飭派允準外 非遇萬不得已之事 不可離所司稅口 果屬出於萬難推諉 須一面備文會知 理本口稅務之監督 一面將署中分所應司之事務 托委妥員代署 復一面將事之備細情由 申呈於總稅務司 …… 一 凡各口岸所徵之稅款並一切出入帳目應由各口稅務司 以漢英文 按三月之期 申報於總稅務司署 漢文一件 由總稅務司申送於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 ……."

1. 한 항구의 세무를 담당하는 직책은 그 책임이 막중하니 총세무사가 申飭을 내려 허가한 경우 이외에는 정말 부득이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담당 稅口를 떠나서는 안 됨. 정말로 곤란하여 타인에게 책임을 맡겨야 할 때는 우선 문서를 갖추어 본 항구의 세무 감독에게 알리고, 다음으로 담당 사무는 적임자에게 위임하여 대리하게 하며, 또한 일의 사유를 세세히 적어 총세무사에게 올려야 함.
[…]
1. 각 항구에서 거둔 모든 稅款의 출입 帳目은 각 항구 세무사가 漢文과 英文으로 3개월마다 總稅務司署에 보고하며, 漢文 1건은 총세무사를 경유하여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에 보냄.
[…]

이 장정은 세무사의 근무 규정을 최초로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상기의 첫째 항목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匡輔該口監督(해당 항구 감독을 바르게 보필하여)'이라는 구절에 주목하여 감리가 세무사보다 상위에 있다는 위상 관계를 명문화했다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다만 그러한 규정과 실제는 전혀 달랐다는 식으로 해석하고 있다.[75]

그러나 첫 항의 전체 내용을 읽어보면 오히려 이는 각 개항장 세무사들의 지휘권을 총세무사로 확실하게 귀속시키고 감리의 간섭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지닌 조항임을 알 수 있다. 일단 세무사의 존재 의의 자체를 '총세무사 관할에 속하는 관세를 대신 징수하고, 총세무사가 수시로 지시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다. '해당 항구의 감독을 바르게 보좌'한다는 것은, 해관 설치 장소가 조선 영토이므로 조선인 감리가 명목상으로 서열이 높다는 예우에 불과하며, 일종의 수식어 정도 비중밖에는 없는 대목이다. 또한 세무사는 각종 사무에 대해서 총세무사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함은 물론이다.

조선 감리와 의견차가 있을 경우, 앞서 말한 '예우 차원의 위상'을 생각한다면 조선 감독의 견해에 따를 수밖에 없으나, 그 경우에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항에 대해 총세무사에게 문의한 뒤 그 회답이 도착할 때까지'로 한정하

75) 崔泰鎬, 1991, 앞의 책, 114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고 있으며, 그렇게 자신의 그것과는 다른 감리의 의견에 따랐을 경우, 세무사 자신의 의견은 어떤지, 그리고 양자 간 차이점은 무엇인지 등을 상세히 적어 제출하라는 것은 감리가 위상이 높다는 이유로 세무사의 업무에 간섭하거나 지휘권을 행사하려는 시도에 순순히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시사한다.

그 밖의 항목들을 보면, 세무사는 근무지의 외출도 총세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세 징수 장부 중 영어본은 당연히 총세무사에게, 그리고 한문본조차 총세무사를 경유하여 통서에 제출토록 하는 등 세무사에 대한 총세무사의 철저한 지휘통제권을 명문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이 규정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메릴이 의도한 것은, 조선 해관을 청국에 부속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각 해관의 장악을 위하여 실무담당인 세무사를 조선 감리에게서 완전히 분리시키고 자신의 휘하 통솔권을 명백히 하는 것, 다시 말해 형식과 실제가 달랐던 당시 조선 해관 조직구도의 이중성을 타파하고, 명실상부하게 청국 해관과 같이 監理－統署/稅務司－總稅務司의 이원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었으며,[76] 반대급부로 그간 조선 측이 행사하지 못했던 수출입 관세의 징수 및 관리권은 감리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상기 문서는 시사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세무사에 대한 통제권 강화가 각 개항장 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 관세의 관리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이루어야 할 가치가 있는 목표였는가? 이에 대하여 우선 메릴 파견 당시 해관 운영의 실상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조선 해관이 창설 작업부터 청의 깊숙한 입김 하에 놓여 있었음은 익히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런데 청이 일본의 해관 침투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의 경제적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임무를 부여하여 파견한 묄렌도르프

76) 여기서 메릴과 묄렌도르프의 입장 차이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외교 관서인 통서의 협판을 겸직하고 있었던 묄렌도르프로서는 형식적으로 감리가 세무사를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도 해관에 영향력을 행사함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겠지만, 그렇지 못했던 메릴로서는 구조 자체를 이원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소한 문제이긴 하나, 메릴이 김윤식에게 보낸 공문 및 그 부속문서 등에 이미 조선에서 사용 중인 명칭인 '監理'가 아닌 중국 해관의 명칭인 '監督'으로 표기된 것도 청국의 영향을 일정부분 느끼게 해 주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는 청국 상인의 무역 활동에 하등의 혜택을 주지 못하는 등 청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77] 더구나 청의 招商局 등이 경합했음에도 1884년 2월의 '海關稅取扱條約' 체결을 통해 관세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일본국립제일은행이 선정되는 등[78] 묄렌도르프 재임기의 조선 해관은 그의 '專制的인' 운영으로 인해 청국 해관과의 관계는 사실상 단절되어 있다시피 하였다.[79] 따라서 묄렌도르프의 해임은 이러한 현상의 타파에 있어서 좋은 기회였을 것이나, 묄렌도르프가 임명한 각 개항장의 세무사가 건재한 상황에서 조선 해관의 장악은 요원한 것이니만큼 이들을 정리하고 각항 세무사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는 것이 조선 해관 예속화에서 당시 제일 시급한 과제였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당시 조선 해관의 세관 수입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1886년 기준으로 해관 총수입은 160,278元이었는데, 그중 수입세가 132,797元, 수출세가 24,812元, 그리고 톤세가 2,709元이었다.[80] 그런데 이러한 해관 수입이 우선 용도로 사용되는 지출 출처는 바로 해관 자체의 유지 비용이었다. 앞서의 문서에서 메릴은 收稅 관할 권한을 감리에게 넘기는 대신 각 항구 해관의 유지 비용을 매월 정기적으로 세무사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액수는 원산항 1,000元, 부산항 1,500元, 인천항 2,500元, 그리고 總稅務司署 1,200元 등 도합 매월 6,200元이며, 1년으로 환산하면 74,400元에 달하여, 동년도 전체 해관 수입의 절반에 가까운 약 46%에 육박한다. 따라서 지급이 보장된 해관 유지비의 두 배 정도 되는 금액에 대한 관할권을 해관 지배력 확보를 포기하면서까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으리라고는 믿기

77) 金順德, 1986, 앞의 글, 313쪽
78) 그 이유로는 우선 1882년 해관 창설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招商局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올 때 청이 관세수입을 비롯하여 담보를 지나치게 까다롭게 설정하는 등 조선 입장에서 굴욕적인 조건을 제시하였던 점(金正起, 1976, 「朝鮮政府의 淸借款 導入(1882~1894)」, 『韓國史論』 3, 431~435쪽)과 더불어, 당시 조선 재정이 극도로 궁핍한 상황에서 일본국립제일은행과 계약할 경우 24,000元의 차관이 제공된다는 점도 고려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金順德, 1986, 앞의 글, 313쪽).
79) 高柄翊, 1965a, 앞의 글, 9쪽
80) 崔泰鎬, 1991, 앞의 책, 259쪽 〈表 I-40〉「海關別收入構造」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렵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면, 외국으로부터 들여오는 차관과 해관 관세수입과의 관계이다. 조선에서 해관 관세수입은 가장 중요하고도 확실한 재원으로서 정부가 대외차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었으며, 따라서 청 · 일 및 구미 열강 각국은 조선에 차관 대여시 거의 예외없이 관세수입을 담보로 요구했다.[81] 그 결과 관세 수입의 상당 부분이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쓰임으로써 그 자유로운 운용이 제약을 받게 되었으며,[82] 특히 1892년에 성립된 이른바 '제1 · 2차 同順泰 차관'의 결과 관세 수입 중 청에서 제공한 차관의 원리금 우선 상환의 원칙을 명문화시킴으로써, 청은 관세수입의 先取權을 보장받기에 이르렀다.[83]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차관을 통해 관세 수입에 대한 통제력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 청의 조선 해관에 대한 정책이 그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으로서, 관세의 관리에 대한 통제력은 차관 도입을 통해 얼마든지 손에 넣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메릴이 해관 지배력 강화의 대가로 해관 관세의 수세권을 양도한 것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전략의 일환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메릴이 1889년 4월에 하트에게 보낸 서한으로, 그는 '조선 정부의 외채를 해관수입을 담보로 하고 청이 모두 인수함으로써 사실상 조선 해관을 완전히 장악하고, 결국 조선 정부가 이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므로 청국이 조선 해관을 인수하는 형식을 취하면 대단히 자연스럽게 해관

81) 金順德, 1986, 앞의 글, 321쪽. 이미 해관 창설 자금의 확보를 위한 제1차 招商局 차관(1882)부터 관세가 담보로 설정되고 있다(金正起, 1976, 앞의 글, 430쪽).

82) 일례를 들자면, 1893년 부산항의 관세수입에서 제2차 同順泰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최고 44%에서 최저 18%, 평균 31%에 달하였다(金順德, 1986, 앞의 글, 323~324쪽). 이처럼 관세 수입은 차관의 원리금 상환에 그 상당부분이 우선적으로 사용되었기에, 애초에 의도하였던 이른바 '개화자금', 즉 유학생파견비, 고용외국인 급료, 정부기관경비 보조, 병원 등 각종 근대적 기관 운영 등에 충당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 조직적인 개화자금화는 불가능했다(金順德, 1986, 앞의 글, 327~328쪽).

83) 金正起, 1976, 앞의 글, 472~473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병합함은 물론 그 과정에서도 청국이 종주국으로서 조선에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84] 그리고 그에 덧붙여 관세 징수를 감리가 아닌 세무사가 하도록 명시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데,[85] 이는 결국 자신의 부임시 행한 관세관리권의 감리 부여 조치를 이전으로 되돌림을 뜻하는 것이다.

결국 그들은 모든 과정을 언젠가 해관의 권한을 모두 장악하기 위한 수순의 차원에서 보고 있던 것이었고, 실제로 이후 청 차관을 볼모로 한 조선 해관의 장악은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86] 메릴의 입장에서 관세수입의 관할권과 해관 지배력 강화의 맞교환은 당시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의문시되는 점은, 과연 이것을 메릴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것인지, 아니면 조선 정부에서 반대급부를 요구해서 그렇게 된 것인지의 여부 문제이다. 이 역시 정확한 대화기록이 없는 이상 몇 가지 증거에 입각하여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자료가 바로 조 · 영수호통상조약 체결 이후 조선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 영국 측에서 참조하라고 보내준 청국 해관 관련 규정이다.[87]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4) Merrill Letter Book, Vol.1, Merrill to Hart, 1887, 15 March 1887(朴奉植, 1969, 「'메릴' 書翰」,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6쪽 및 金順德, 1986, 위의 글, 296쪽의 내용에서 인용). 참고로 메릴과 하트의 서한집은 현재 미국 하버드대학교 허프턴도서관(Houghton Library)에 각각 "Merill Letter Book", "Sir Robert Hart, Transcript of Letters"라는 타이틀로 소장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는 高柄翊 · 朴奉植 · 金順德 등의 연구에 인용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이 문서들에 대한 간략한 해제는 高柄翊, 1965, 「海外所在 近代韓國關係史料 몇 가지」, 『歷史學報』 26 참조.

85) 朴奉植, 1969, 앞의 글, 6쪽

86) 同順泰 차관 도입을 계기로 관세의 관리도 우선 세무사 명의로 日本國立第一銀行에 입금되어 청의 차관을 상환한 뒤 다시 감리 명의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일정부분 세무사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金順德, 1986, 앞의 글, 314쪽).

87)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68, 『舊韓國外交文書』 13(英案 1), #252, 152쪽, "…… 中國海關條程節略; 大中國海關官員書役 分作兩班 一爲稅務司與以下以西人充書爲役者等 一爲監督官員及書與役等 其稅務司及以下諸西人 職在查驗貨物 核對英文帳目 其中國官員及書吏等 職在核對漢文帳目 一 凡爲稅務司者 皆通韓言漢文 以便利於公務 一 客商之貨納稅一切單票 概以漢英文合書之

中國海關條程節略

大中國 海關의 官員과 書役은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세무사와 그 이하로, 서양인으로 충원되는 문서 담당 요원들이고, 하나는 감독 관원과 문서 및 각종 役事 담당 요원 등으로, 세무사 및 그 이하 모든 서양인들은 화물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영문 장부를 대조 · 검토하며, 중국 관원 및 서리 이하 등은 한문 장부를 대조 · 검토하는 업무를 맡는다.

1. 무릇 세무사는 모두 漢語와 漢文에 능통하여 공무에 편리하도록 한다.
1. 客商의 화물에 대한 납세의 일체 單票는 대개 한문과 영어로 함께 기록하고 세무사와 중국 관원 등이 회동하고 대조 · 검토하여 폐단을 방지한다.
1. 거두어들이는 일체의 **稅款 및 銀錢의 출입은 대체로 감독의 관원 파견을 통해 은행이 관장**하며, **세무사 및 모든 서양인들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
1. 매월 俸祿 및 薪水 · 工食 등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모두 감독을 경유하여 세무사에게 지불하며 발급받은 모든 이들은 각기 영수증에 서명한다. […]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는 중국 해관의 이원적 지배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서로서, 이를 건네받은 조선은 늦어도 1885년 하반기에는 그러한 이중체계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88] 그런데 상기 항목 중 세 번째를 보면, 해관의 관세 수입에 대해서 세무사는 관여하지 않고 중국 측 감독이 은행에 예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으로서는 관세수입에 전혀 감리가 손을 대지 못하던 당시의 상황이 중국 해관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사실 역시 인지했을 것이며, 그

由稅務司與中國官員等會同核驗 以杜弊端 一切所納稅款及銀錢出入 概由監督派官銀行擧行 其稅務司及諸西人均不經手 …… 一 每月俸祿及薪水工食等項 悉由監督撥發稅務司處 當堂發給諸人 各行畫領簽字 ……”

88) 이와 관련하여, 조선이 이렇게 청의 이중적 해관지배구조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조선 해관의 이러한 이중구조로의 개편이 메릴 재임기간 중의 어느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金順德의 연구에서 각주의 내용으로 간략하게 제시된 바 있다(金順德, 1986, 앞의 글, 287쪽의 註) 70 참조).

렇기에 메릴이 조선 해관을 청국 해관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세무사-총세무사 보고 라인에서 감리를 배제시키려고 할 경우 당연히 '그렇다면 청국 해관 식으로 관세수입을 조선 감리가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을 것이다.

한편 메릴의 입장에서도 청국 해관식으로의 개편을 명분으로 삼는 이상, 관세관할권만 다르게 하자고 주장할 명분이 없었을 것이다. 위의 항목 중 해관 소요 비용이 감독을 통해 매월 세무사에 발급된다는 사실 역시 앞서 살펴본 메릴의 공문에서 합의된 사항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볼 때, 결과적으로 메릴과 김윤식 사이에 합의된 내용은 조선 해관의 정확히 청국 해관 형식으로의 개편이었던 것이다.

또한 하트가 메릴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주의를 준 사항이 '조선 측에서 해관 체제의 개편을 통한 청국의 속방화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게 신중하고 은밀하게 일을 진행시켜 나가라'는 대목이었다는 사실[89]에서 볼 때, 메릴이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선 정부를 압박하는 형태로 일을 추진해 나갔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따라서 이상으로 미루어 볼 때 양측의 의도가 맞아 떨어져서, 해관의 체제를 개편하면서 한편으로는 세무사에 대한 총세무사의 지휘를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감리에게 수세관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큰 충돌 없이 모양새 있게 타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90]

2) '監理署 新章程'의 제정과 감리서의 독립기구화

이렇게 감리가 관세 관할권을 갖게 되는 한편, 세무사에 대한 총세무사의 지휘

89) Hart Letters, Hart to Merrill, 29. May 1888(高柄翊, 1965a, 앞의 글, 17쪽의 내용에서 인용)

90) 김윤식의 분명한 親淸 성향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메릴이 압박을 가하거나 김윤식이 그에 저항하여 조선의 권리를 강변하는 형태로 양자 간 협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권이 강화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감리와 세무사가 사실상 각 개항장에서 병렬적인 지위에 놓이는 구조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구조적 변화와 따로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조직의 확대, 곧 직원의 증가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문제이다. 먼저 직원의 증가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다음의 기사에서 감리가 처음 임명된 지 한 달여 뒤에 감리의 보좌진을 인선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 또 해당 항구의 설치 사목 중에서 감리에 보좌가 없을 수 없으니, 본 衙門(통서)의 주사 중 1명을 파견하고, 書記 · 掌簿 중 入仕하지 않은 이들을 該曹로 하여금 口傳하여 軍職에 붙여 籤入시키도록 啓할 것. […][91]

즉, 통서의 주사 중 1인을 감리 보좌역으로 임명하고, 기타 실무진들은 書記 · 掌簿 중 보직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게 했던 것이다. 설치사목에서 규정된 '賬房의 掌簿 및 書記, 胥史' 중 실제 기록에서 확인되는 것은 掌簿와 書記이다. 감리 임명 초기에 부산에서는 해관의 掌簿로 韓百永을, 書記로 閔建鎬 · 徐相元 · 權在衡을 임명했음은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인천의 경우 해관의 掌簿가 彭翰周 · 金相五 · 邊燧의 3인(모두 조선인)이었다는 기록이 있으며,[92] 1884년 인천을 시작으로 조계지 순찰을 담당하는 '警察官'이라는 직함이 생기기도 하였다.[93] 전체적인 직원 인원의 변동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그 대략적인 추이를 보면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1885년 하반기부터 1886년 초에 이르는 기간 동안 각 항구

91) 『統署日記』, 高宗 20년 9월 20일, "…… 又以該港設賓事目中 監理不可無幇副 以本衙門主事中一員派送 及書記掌簿未入仕者 令該曹口傳 付軍職 付籤入啓事 ……."

92) 『釜署集略』(上), 「日記」, 甲申 四月十八日 壬戌

93) 『八道四都三港口日記』, 甲申四月二十二日, 「關花島鎭別將」. 이 '警察官'은 갑오개혁 이후에 등장한 근대적인 치안유지조직으로서의 경찰과는 다른 존재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이 개항장의 경찰관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필자는 이에 대하여 향후 별도의 논고를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2〉 1883~1886년 1월간 3개 항구 감리 보좌 요원의 임면 현황[94]

		1883년	1884년	1885년	1886년
釜山	掌 簿	韓百永	1884~1885년 중 어느 시점에서 韓百永이 書記官으로 직책 변경	韓百永이 병환으로 사임, 후임에 俞公煥 임명(7월)	金益昇 (1월 추가 임명)
	書記官	閔建鎬 徐相元 權在衡			
	警察官			崔錫弘 (10월 추가 임명, 釜山僉使 겸직)	
仁川	掌 簿	彭翰周 金相五 邊 燧	어느 시점에서 彭翰周가 書記官으로 직책 변경		
	書記官		邊錫運 (7월 추가 임명) 彭翰周이 병환으로 사임, 후임에 俞箕煥 임명(12월)	金嘉鎭 (7월 추가 임명) 張在斗 (8월 추가 임명)	申載永 (1월 추가 임명)
	警察官		金宏臣 (4월 추가 임명, 花島津 別將 겸직)		
元山	掌務官	李鳴善	李鳴善이 병환으로 사임, 후임으로 尹秉秀 임명	어느 시점에서 尹秉秀가 書記官으로 직책 변경	
	書記官			朴義秉 (10월 추가 임명) 鄭顯哲 (12월 추가 임명)	安寧洙 (1월 추가 임명)
	警察官			朴義秉 (10월 추가 임명, 書記官 겸직)	

94) 『高宗實錄』·『承政院日記』·『日省錄』 등 연대기 기록 및 『釜署集略』, 『統署日記』, 『八道四都三港口日記』 등을 토대로 작성. 원산의 경우 자료에 掌簿가 아니라 '掌務官'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그에 따랐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의 서기관 신규 임명이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시기가 이미 살펴본 메릴의 해관구조 개편 기도와 일치한다는 사실은, 결국 감리서의 구조 변화에 따른 조직 확대의 일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인원의 충원과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공간', 곧 감리와 직원이 근무하는 公署의 신축이나 확장 등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 감리 공서는 경우에 따라 '監理所',[95] '監理公所'[96] 등으로 호칭되기도 하였으며, 단순히 근무 공간 이외에도 경우에 따라 해관 소요 물자의 보관에 이용되기도 하였다. 설치사목에 따라 처음에 부산 감리 공서는 초량진사[97]를, 인천 공서는 화도진사[98]를 사용했는데, 그중 인천의 경우 1884년 7월에 公署 건축에 관한 기사[99]가 발견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화도진사에서 독립하여 별도의 건물에서 집무를 보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10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5) 『統署日記』, 高宗 20년 11월 19일, "…… 釜山監理下往後 辦察官所屬條 自明年爲始 付**監理所**事 ……" 및 11월 20일, "…… 東萊府留賓海關所需錢零條 沒數劃送于釜山**監理所**事 發關該府(미주; 釜山關防及米突尺紙樣印札板并付送于**監理所**)"

96) 《漢城旬報》, 1883년 12월 20일, '仁川口租界約條追錄' 중 제4조 참조.

97) 초량진은 부산 왜관이 있던 곳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감리 공서로 쓰인 건물은 辦察所였다. 판찰소는 辦察官(倭館 訓導가 개칭된 명칭)이 집무했던 곳으로, 이곳에서 1886년까지 감리 업무가 수행되었다[『東萊統案』(奎18116), 제3책, 「東萊監理(1891. 1. 12.) → 統署」].

98) 화도진은 현재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878년(고종 16) 8월 27일 御營大將 申正熙에게 명하여 인천과 부평에 진지와 포대를 축조하도록 하였고(『高宗實錄』, 15년 8월 27일), 이듬해 7월 1일 완공하여 인천에 축조된 것을 花島鎭, 부평에 축조된 것을 延喜鎭으로 지칭한 것이 그 효시이다(『高宗實錄』, 16년 7월 1일). 이후 화도진은 1882년에 들어와 5월에는 韓美修好通商條約, 6월에는 영국, 독일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결 장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같은 해에 延喜鎭은 혁파되고 花島鎭은 訓練都監으로 移屬되었으며(『高宗實錄』, 19년 6월 28일), 이후 禁衛營으로(『高宗實錄』, 19년 10월 8일), 다시 摠戎廳으로(『高宗實錄』, 19년 10월 22일) 소속이 변경되었다.

99) 『統署日記』, 高宗 21년 7월 16일

100) 그 위치는 바로 현재 '인천감리서 터'로 알려져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내동 83-5의 스카이타워아파트가 자리한 곳으로, 기존에 감리공서로 사용하던 화도진과는 약 1km 떨어져 있다.

이상과 같이 인원의 확충[101] 및 공간의 확장 등을 배경으로 하고, 거기에 감리-세무사 간 관계 및 감리의 관할 업무에 구조적 변화가 생긴 것을 계기로 감리서는 '감리의 근무 公署'에서 관제상의 정식 관서로 독립하게 되었다. 그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監理署' 명칭이 명기된 새로운 章程의 제정이다. 이 '監理署 新章程'은 통서에서 제정 후 1885년 11월 18일자로 3개 항구에 내려보냈으며,[102] 부산의 경우 12월 1일에 수령하였고[103] 원산은 2일자로 수령 확인 보고가 올라왔다.[104] 총 14관으로 구성된 이 장정은 전문이 관련 사료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그 정확한 내용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지만, 그 일단을 추측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다.

우선 이 장정이 감리서의 월급 규정 및 앞서 나온 '세사장정'과 더불어 3개 항구에 하달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세사장정'의 주 내용이 총세무사의 세무사 통제에 기반한 해관·감리 2원체제로의 개편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감리에게 관세관리권을 부여하는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이 '감리서 신장정'은 그러한 개편의 결과 해관과 2원체제를 이루며 정식 관서로 독립하게 된 감리서의 관제를 규정하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정식 관서로서 감리서가 거듭나게 되면서 관할 업무의 성격도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정황 역시 확인되며,[105] 그 '업무 변화' 및 章程 내용의 핵심이 바

101) 참고로 『增補文獻備考』에 감리서의 조직과 관련하여 "(고종) 27년(1890)에는 각 항구에 書記官을 두었는데 인천에 5인, 부산·원산에 각각 4인, 경흥·회령에 각각 2인이며, 세 항구에는 또 幇辦 1員을 두었다"(『增補文獻備考』, 권216, 「職官考」, 相府-統理機務衙門)는 언급이 있다. 이는 각 항 감리서에 두는 서기관의 인원이 확정된 것이 1890년이라는 의미일 뿐, 1890년에 한꺼번에 이들을 임명했다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김현석, 2004, 앞의 글, 184쪽).

102) 『咸鏡道關草冊』, 제1책, 「統署(1885. 11. 18.) → 三港口」. 이 장정 역시 '港口章程'(『海隱日錄』 I, 471쪽), '各港口向來應行章程'[『咸鏡道關草冊』, 제1책, 「統署(1885. 11. 18.) → 三港口」], '監理署 新章程'(『統署日記』, 高宗 22년 12월 22일) 등 사료마다 명칭이 다르게 표현되는데, 역시 그 성격을 가장 압축적으로 나타내주는 '監理署 新章程' 명칭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103) 『海隱日錄』 I, 471쪽

104) 『統署日記』, 高宗 22년 12월 초2일

105) 12월 6일에 부산항 서기관 민건호가 휴가를 얻으려고 했으나 '(감리서의) 사무가

로 관세관리권의 행사였음은 '해관의 관세를 올해 1월부터 감리서에서 관할한다는 취지로 장정을 내려보냈다'는 언급[106]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장정의 제정과 더불어 감리서의 월급 지급 규정 역시 상세하게 규정되었는데,[107] 이 또한 1883년의 설치사목에서 '세금 수입에서 적정한 수준만큼 지급한다'고 막연하게 정한 것과 비교해 볼 때 감리서가 관제상 정식 관서로 탈바꿈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렇게 감리서가 관세관리권의 획득을 계기로 감리서 명칭이 명시된 장정을 제정하고 해관과 병렬적인 관제상 정식 관서로 독립하게 된 시점은 수세관할권 획득 기점인 1886년 1월 1일(음력)로 추정된다. 여러 가지 간접적인 정황들이 있지만,[108] 무엇보다 신장정 및 월급 지급 규정 제정을 계기로 『통서일기』 등 공적 기록에서 보이기 시작하는 '감리서' 명칭이 1886년부터 관찬 연대기류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감리서 관원들의 임명과 관련된 1885년과 1886년의 기사들을 이하와 같이 비교해 보면, '감리서' 명칭의 유무에서 양자가 뚜렷이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885년 기사

① 7월 9일: 交涉衙門의 主事로 安宗洙와 金永完을, 仁川港 **監理書記官**에 金嘉鎭을 임명함; 모두 해당 衙門에서 요청하는 계를 올려 差下한 것이다.[109]

변경되어' 실패했으며, 이튿날 재차 간청하여 얻어냈다고 한다(『海隱日錄』 I, 475쪽).

106) 『三港口關草』(奎18082), 「統署(1886. 1. 8.) → 三港口」, "爲相考事 海關稅錢 自今年正月爲始 自監理署照管之意 已有章程下送者是在果 ……."

107) 구체적인 내용은 『咸鏡道關草册』, 제1책, 「統署(1885. 10. 22.) → 三港口」의 부속문서 참조.

108) 우선 부산 · 인천 · 원산 3개 항구의 감리서와 통서의 왕복문서 모음집으로, 개항장의 공문만을 취합한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문헌인 『三港口關草』가 1886년 1월 1일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인 시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민건호가 거절된 휴가를 재차 신청하면서 감리서 업무의 변경이 '1월부터'임을 상기시키고 있다(『海隱日錄』 I, 475쪽).

109) 『日省錄』, 高宗 22년 7월 9일, "差下交涉衙門主事 安宗洙金永完 仁川港監理書

② 8월 7일: 交涉衙門 主事로 金益昇 등을, 仁川港 書記官으로 張在斗를 임명함; 해당 아문에서 啓하여 이르기를, 幼學 金益昇 · 安寧洙 · 申載永을 모두 본 아문의 主事로 추가 임명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허락하였다. 또 啓하여 이르기를, 전 判官 張在斗를 **監理仁川港書記官**으로 임명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허락하였다.[110]

1886년 기사

① 1월 27일: 交涉衙門의 主事로 李時濂 등을 임명함; 해당 아문에서 啓하여 이르기를, 본 아문의 司官 李時濂 · 康載倫 · 鄭秉夏 · 鄭秉歧 · 朴永疏와 司勇 彭翰周를 모두 본 아문의 主事로 추가 임명하도록 요청하였고 이를 허락하였다. 또 啓하여 이르기를, 전 主事 金益昇과 幼學 禹慶善을 仁川海關의 **監理署 書記官**으로, 전 主事 申載永을 釜山海關의 **監理署 書記官**으로, 그리고 전 主事 安寧洙를 元山海關의 **監理署 書記官**으로 추가 임명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허락하였다.[111]

② 1월 28일: 吏曹가 口傳 政事를 하여, 仁川海關의 **監理署 書記官**에 金益昇을 단부하고, 釜山海關의 **監理署 書記官**에 申載永을 단부하고, 元山海關의 **監理署 書記官**에 安寧洙를 단부하였다.[112]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렇게 해서 '형식과 실제의 괴리'로 대표되는 감리와 해관의 이중적 관계가 1886년부터 감리서라는 독립 관서를 매개로 해관-감리서의 양립체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이러한 양립체제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사건들이 발생하자

記官 金嘉鎭; 該衙門竝啓請差下也"; 『承政院日記』, 같은 날.

110) 『日省錄』, 高宗 22년 8월 7일, "差下交涉衙門主事 金益昇等 仁川港書記官 張在斗; 該衙門啓言 幼學金益昇安寧洙申載永 竝本衙門主事 請加差下 允之 又啓言 前判官張在斗 監理仁川港書記官 請加差下 允之."(『承政院日記』, 같은 날)

111) 『日省錄』, 高宗 23년 1월 27일, "差下交涉衙門主事李時濂等; 該衙門啓言 本衙門司官李時濂康載倫 鄭秉夏鄭秉歧朴永疏 司勇彭翰周 竝主事加差下 允之 又啓言 前主事金益昇 幼學禹慶善 仁川海關 監理署書記官 前主事申載永 釜山海關 監理署書記官 前主事安寧洙 元山海關 監理署書記官 請竝加差下 允之."(『承政院日記』, 같은 날)

112) 『承政院日記』, 高宗 23년 1월 28일 "…… 吏曹口傳政事 仁川海關 監理署書記官 單金益昇 釜山海關 監理署書記官 單申載永 元山海關 監理署書記官 單安寧洙 ……."

메릴은 단호하게 대응하였다. 일례로 1885년 겨울에 있었던 인천 해관에서의 淸商의 해관 巡監 폭행사건은 그 기원이 巡監의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사에 청국 상인들이 응하지 않으면서 시비가 붙게 된 것이었고, 청국인들이 스스로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문제를 삼았으며, 이에 대해 이홍장은 통서 독판 김윤식에게 인천 감리를 신칙하여 청국 상인을 폭행한 巡監을 엄히 다스리라고 조선 정부에 통보하는데, 이에 대해 메릴은 그 부당성을 강변하면서 처벌 불가를 강력하게 역설하였다.[113] 정당한 법집행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비판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분명히 세무사의 지시에 따른 해관 관원에 대한 감리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메릴의 해관 장악을 위한 기존 외국인 해관원 해임조치에 대하여, 원산항 감리가 해고대상 중 1인이 일을 잘하고 조선인 직원들에게 세무를 가르치고 있는 관계로 꼭 필요하기에 그를 해고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라 통서에서 유임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1885년 12월 26~27일), 메릴은 역시 이에 대하여, 그 해고 사유는 세무사의 지시 불복종이며, 세무사 관련 사항은 총세무사 소관이므로 관여하지 말도록 감리를 신칙하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으며,[114] 결국 김윤식은 그 요청을 수락한다. 메릴은 이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동시에 감리의 세무사 관할 영역 간섭에 대하여 재차 불만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115]

113) 『總關來申』, 제1책, 「H. F. Merrill(1885. 12. 26.) → 統署(申呈 제26호)」
114) 『總關來申』, 제1책, 「H. F. Merrill(1885. 12. 28.) → 統署(申呈 제27호)」. 참고로 본문에는 11월로 되어 있으나, 12월의 오기로 보인다.
115) 『總函拾遺』(奎17833), 乾, 「H. F. Merrill(1885. 12. 28.) → 金允植」(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72,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2(海關案 2), #1960, 885~886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Ⅱ. 맺음말

이상에서 부족하나마 여러 사료들의 편린을 통해 해관 창설 초기 감리서의 운영 실태와 독립 관서화 과정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3년 근대적인 관세 징수 기관인 海關의 창설과 더불어 부산, 인천, 원산의 3개 항구에 監理가 임명되었는데, 초창기에는 정식 관서로서의 감리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감리는 해관의 총책임자로서 외국인 稅務司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해관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으며, 감리가 처리한 업무는 주로 해관의 편의를 봐주는 문제들이었고, 실제 세무행정에는 관련 지식의 부족 등의 이유로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따라서 형식상 편제와는 달리, 초기 감리-해관 관계에는 실질적으로는 감리가 세무사를 통제하는 관계로 보기 어려운 '형식과 실제와의 괴리'라는 모호한 이중성이 존재하였다.

감리의 위상 및 그에 따른 관할 업무를 살펴보면, 우선 감리는 기본적으로 해관 감독자로서 收稅 상황의 중앙 보고 및 각종 면세조치 등 제한적인 관세행정을 수행했다. 다음으로 지방관으로서의 위상이 있는데, 일본의 세관 사무 시찰 경력자를 부산·인천의 감리로 기용한 초기의 예외 이후 기본적으로 감리는 지방관이 겸직하는 체제가 정착되었고, 따라서 치안 유지 등 지방관의 업무 역시 관할하였다. 마지막으로 감리는 지방관 및 개항장 외국인들에 대해 조선을 대표하는 지방외교대표로서 중앙의 통서 및 각국 외교기관들과의 연락과 더불어 외교 사절에 대한 접대 업무는 물론, 개항장의 租界와 관련하여 그 구역의 제정에 관한 협상 및 조계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한 처리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업무들을 수행하였다.

해관과 감리의 모호한 이중체계는 메릴이 묄렌도르프의 뒤를 이어 해관 총세무사로 부임하면서 변화했다. 그는 청의 속방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조선 해관을 청국 해관에 예속시키고자 기도하였는데, 이를 위한 조선 해관 장악의 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단으로 청국 해관처럼 監理－統署/稅務司－總稅務司의 분명한 이원화 구조로의 개편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총세무사가 세무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감리의 간섭을 배제하도록 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역시 청국 해관과 마찬가지로 관세관리권을 감리가 갖도록 하는 구조상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감리－해관 관계의 구조적 개편이 인력의 확충 및 건물 부지의 분립 등으로 대표되는 조직의 확장과 맞물린 결과, 1885년 말에 감리의 관세관리권 행사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감리서 신장정' 및 감리서의 봉급 관련 세부 규정이 마련되었고, 1886년부터 감리서의 관세관할권 행사가 실현되고 감리서 명칭이 공식 기록에 사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개항장 감리서가 직제상 독립 관서화되고 해관－감리서의 2원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결국 어찌 보면 감리서의 독립기관화는 청의 조선 속방화 정책과 궤를 맞추어 이루어진 셈이다. 따라서 일단 악화된 재정 상황의 타개라는 관점에서 관세수입의 자율재량권 획득은 조선 정부로서 당장에 반가운 일이었겠지만,[116] 보다 긴 호흡으로 보면 이는 청의 강제 차관 도입으로 마무리되는 조선 해관 지배의 전단계 수순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그 한계 또한 명백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형식상으로 감리가 해관의 총책임자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감리가 그를 통제하지 못하던 상황에서 관세관리권을 획득하고 독립기관으로 서게 된 점은 개항장 행정의 발전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비록 관세수입을 담보로 차관을 빌리는 악순환에 시달리면서 감리의 조세수입 관할은 빛이 바랜 감이 없지 않지만, 일정한 한계 속에서도 각 개항장의 감리가 분명히 제국주의 세력의 경제적 침투를 견제하고 조선 상민의 이권 보호 역할을 실현한 지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향후 1886년 이후 감리서의 운영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16) 실제로 1886년 이후로 해관에서 징수한 세금이 감리의 관할 하에 統理衙門, 育英公院, 經理廳, 織造局, 濟衆院, 轉運局 등 여러 기관으로 이동되었다(金順德, 1986, 앞의 글, 320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1차 사료〉

『高宗實錄』

『釜署集略』(李鑢永, 한古朝51-나3)(2009, 『한국사료총서 제53집: 敬窩集略』, 국사편찬위원회)

『三港口關草』(奎18082)

『三港設置事目』(奎18013)

『承政院日記』

『日省錄』

『增補文獻備考』

『總關去函』(奎17832)

『總關公文』(奎17830)

『總關來申』(奎17829)

『總函拾遺』(奎17833)

『八道四都三港口日記』(奎18083)

『漢城旬報』

『咸鏡道關草冊』(奎18073)

『海隱日錄』(閔建鎬) I(2008, 부산근대역사관사료총서 3)

『(國譯)海行摠載』(민족문화추진회, 1977)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68, 『舊韓國外交文書』 13(英案 1)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72, 『舊韓國外交關係附屬文書』 3(統署日記 1)

臺北 中央研究院 近代史研究所, 1972, 『清季中日韓關係史料』 1~11

〈연구서〉

김용구, 2002, 『외교사란 무엇인가』, 도서출판 원

裵鍾茂, 1994, 『木浦開港史 研究』, 느티나무

尹光云 · 金在勝, 2007, 『近代朝鮮海關研究』, 부경대학교출판부

하원호 · 나혜심 · 손정숙 · 이은자 · 이헌주 · 홍웅호, 2009, 『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李鉉淙, 1975, 『韓國開港場研究』, 一潮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崔泰鎬, 1976,『開港前期의 韓國關稅制度: 1880年代를 中心으로』, 韓國研究院
崔泰鎬, 1991,『近代韓國經濟史 研究序說: 開港期의 韓國關稅制度와 民族經濟』, 國民大學校出版部

岡本隆司, 1999,『近代中國と海關』, 名古屋大學出版會
高柳松一郎, 1920,『支那關稅制度論』, 內外出版株式會社
仁川府廳 編, 1933,『仁川府史』
陳時啓, 2002,『中國近代海關史』, 人民出版社

〈연구논문〉

金容旭, 1962,〈釜山租界考－特히 日本租界의 性格 및 土地所有關係를 中心으로－〉,〈韓日文化〉1집 1권.
高柄翊, 1964,「穆麟德의 雇聘과 그 背景」,『震檀學報』25 · 26 · 27 합집
高柄翊, 1965a,「朝鮮 海關과 淸國 海關과의 關係－「메릴」과「하트」를 中心으로」,『東亞文化』4
高柄翊, 1965b,「海外所在 近代韓國關係史料 몇 가지」,『歷史學報』26
金敬泰, 1972,「開港直後의 關稅權 回復問題－'釜山海關 租稅事件'을 中心으로」,『韓國史研究』8
金順德, 1986,「1876~1905년 關稅政策과 關稅의 운용」,『韓國史論』15
김재승, 2003,「부산해관 개청과 초대해관장 W. N. Lovatt」,『國際貿易研究』Vol. 9 No. 2
金正起, 1976,「朝鮮政府의 淸借款 導入(1882~1894)」,『韓國史論』3
金鍾先, 1982,「暗使日商民 務安監理署 攔入 占據에 關한 考察」,『木浦大學 論文集』4
김현석, 2004,「인천항 감리서에 대한 기초적 연구」,『인천역사』1
박기수, 2010,「근대 중국의 해관과 중국구해관사료(中國舊海關史料)(1859-1948)」,『成大史林』37
朴奉植, 1969,「'메릴' 書翰」,『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박철우, 1996,「群山港의 開港에 關한 研究: 1897~1910年을 中心으로」,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학과 석사학위논문
夫貞愛, 1973,「朝鮮海關의 創設經緯」,『韓國史論』1
尹光云, 2006,「근대 부산해관 운영에 관한 사적 고찰」,『國際地域研究』Vol. 10, No. 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尹光云 · 金在勝, 2004,「舊韓末 開港期 朝鮮海關에 관한 硏究－雇聘 外國人 海關員의 任免과 勤務狀況을 中心으로」,『國際貿易硏究』Vol. 10, No. 2
尹光云 · 金在勝, 2006,「부산해관(1883~1905)에 관한 무역사적 연구」,『貿易學會誌(Korea trade review)』Vol. 31, No. 1
윤광운 등, 2006,「1883-1905년 조선해관의 고빙 해관원에 관한 연구」,『國際商學』Vol. 21, No. 2
李允熙, 2011,「淸 前期 海關 設置와 그 意味」, 慶北大學校 敎育學碩士學位論文
이은자, 2009,「개항기 주한 중국공관 연구－청일전쟁 이전 시기(1833~1894)를 중심으로」,『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李鉉淙, 1968,「監理署 硏究」,『亞細亞硏究』11-3
鄭光燮, 1998,「開港期における地方制度－監理署を中心に」,『上智法學論集』42－2
하원호, 2009,「개항기 재조선 일본공관 연구」,『개항기의 재한 외국공관 연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intendent Office(*Gamriseo*) at the Treaty Ports in Korea, 1883~1886

Min Hoisoo

The Gamriseo, or Superintendent Office(監理署), at the treaty ports was the office established to manage and supervise the Maritime Customs(海關) of Korea after 1883. Unlike the common view that the command lines of the *Gamri*, or Superintendent(監理),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and the Commissioner(稅務司) of the Customs were separated, the Superintendent seems to have supervised the Commissioner as a general manager of the Customs, with the institution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not existing in the first years of the Customs. But the influence that the Superintendent exercised on the Customs was limited, and he could not participate in the actual tax administration due to a lack of the knowledge about it. Therefore, there existed some ambiguous duplicity, in other words, the discrepancy between form and substa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perintendent and the Commissioner in the early period, which means that the Superintendent could not actually control the Commissioner as his senior officer.

The Superintendent had several different statuses and performed many kinds of duties. First, he conducted restrictive tax administration, such as reporting the imposing of tariffs both on imports and exports or tariff exemption as the supervisor for the Customs. He also took charg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of maintaining public order and security over the treaty port as a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 as the system in which the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 also holds the position of Superintendent was established after the exceptional early period when those who had inspected the Japanese Customs system were promoted as Superintendent. Lastly, he was in charge of the liaison between the Foreign Ministry of Korea and foreign diplomatic envoys in Korea, the reception for the foreign envoys, and the duties on concessions as the Korean diplomatic representative to the foreigners at the treaty ports.

In 1885, Henry F. Merrill was appointed as the Inspector General of Customs(總稅務司) of Korea, and the system of the Korean Customs began to change fundamentally. His accession to office was a part of the plan of merging the Korean Customs into that of China, as a means of securing Chinese suzerainty over Korea. But he agreed to hand over to the Superintendent the right to control the imposing of tariffs on imports and exports, which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rights and had been fully exercised by the Commissioners. It seems to have been some type of benefit in return for meeting Merrill's demand. The demand was to make all the Commissioners at the treaty ports of Korea firmly subordinate to the Inspector General of Customs and exclude the Superintendent's interference. That meant the reform of the Korean Customs system structure into adual structure similar to that of China.

As such reform progressed along with the enlargement of the organization containing the expansion of human resource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office buildings, the Superintendent Office also became separated from the Customs to becoe an independent public office. This can be ascertained from the enactment of the "New Rules for the Superintendent Office"(監理署新章程, *Gamriseo Shinjanjeong*)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nd the salary regulations for the Superintendent Office,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ntrol the imposing of tariffs on imports and exports and the use of the name "*Gamriseo*" in public records from 1886. Consequently, the independence of the Superintendent Office had limits and also significance, the former being the same manner of Chinese suzerainty policy on Korea, the latter meaning the development of the administration at the treaty ports in Korea.

Keywords

Gamri(Superintendent), *Gamriseo*(Superintendent Office), the (Maritime) Customs, tariff, Commissioner, treaty port, local government administrator, the right to control imposing tariffs on imports and exports, Chinese suzerainty policy toward Korea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채무소송으로 본 華商의 商慣行 (1906~1910)

– 移住空間 漢城을 중심으로 –

손승희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K연구교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Ⅰ. 머리말

근래의 역사 연구 경향으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삼아 보다 확대된 지역이나 공간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무역 네트워크를 밝히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고, 그 속에서 삶을 영위했던 사람들의 이주와 물질의 유통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화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화교가 바로 이러한 초국가적 역사와 공간을 만들어 내는 한 주체이기 때문일 것이다.

화교의 이주와 이들을 매개로 이동된 물질은 각국에 이미 형성된 시장과 지역을 하나로 연결시켜 주었다. 때문에 화교 관련 기존의 연구는 일본 학자를 중심으로 이러한 동아시아 네트워크를 밝혀내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주로 거시적인 관점에서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형성은 華商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이를 논증하고자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 투고일: 2012년 2월 23일, 심사일: 2012년 5월 24일, 게재 확정일: 2012년 5월 25일

주로 동아시아의 주요도시로 연결되는 華商의 취급품목, 화폐유통의 흐름, 동아시아의 시장구조 등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유통과 교역네트워크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는 시도이다.[1] 최근 한국에서도 한말 대표적인 華商 同順泰의 교역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광동 네트워크의 실체를 파악하는 등 개별적인 한국 화상의 특징을 밝힌 연구가 나오고 있다. 자료의 활용에서도 수출입 상품 및 취급총액, 발송계산서, 매상계산서 등을 분석하는 등 다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2] 이러한 연구는 국민국가의 틀을 넘어 동아시아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시켜 주었던 화상의 역할이나 작용을 밝히는 데 기여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개별 화상들의 상업 활동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행위 자체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를 보완하고 실제적인 화상 활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앞으로 개별 화상의 구체적인 상업행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화교 관련 또 하나의 연구 경향은 정치, 외교 분야로 주로 치외법권에 관한 연구이다. 특히 한중 근대적 의미의 외교관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이나 韓淸通商條約을 통한 치외법권 연구는 한중관계 연구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이에 대한 논의는 서평 하세봉, 2000, 「동아시아 교역권론의 지평 확대」, 『中國近現代史硏究』 10 참고. 濱下武志, 1999, 「19世紀後半の朝鮮をめぐる華僑の金融ネットワーク」, 杉山伸也, リンダ・グローブ 編, 『近代アジアの流通ネットワーク』, 創文社; 石川亮太, 2009, 「19世紀末の朝鮮をめぐる中國人商業ネットワーク」, 籠谷直人, 脇村孝平 編, 『帝國とアジア・ネットワーク－長期の19世紀』, 世界思想史; 石川亮太, 2004, 「ソウル大學所藏『同泰來信』の性格と成立過程－近代朝鮮華僑硏究の端緖として」, 『九州大學東洋史論集』 32; 石川亮太, 2004, 「開港後朝鮮における華商の貿易活動－1894年の淸國米中繼貿易を通じて」, 『中國近代化の動態構造』; 石川亮太, 2005, 「朝鮮開港後における華商の對上海貿易－同順泰資料を通じて」, 『東洋史硏究』 63-4

2) 강진아, 2008, 「廣東네트워크와 朝鮮華商 同順泰」, 『史學硏究』 88; 강진아, 2007,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평』 여름호; 강진아, 2007, 「동아시아경제사 연구의 미답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朝鮮華商 同順泰號關係文書」, 『東洋史學硏究』 100. 인천의 운송망을 분석함으로써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존재했던 인천과 한성을 부각시킨 연구도 있다. 김승욱, 2011, 「19세기 말~20세기 초 인천의 운송망과 화교 거류양상의 변화」, 『中國近現代史硏究』 50

한 주류이다.[3] 특히 한중 간의 구체적인 소송사례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개항장에서 한중 민간인 사이에 발생했던 살인, 강도, 밀수 등 형사상의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사례를 들어 그 처리과정을 집중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를 통해 화교사회의 생활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치외법권으로 접근하다 보니 주로 한국인에 대한 중국인의 범죄를 다루는 경우가 많고 그 반대의 경우나[4] 한국 거주 화상과 日商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형사상의 범죄는 한중 민간인의 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실제로 대다수의 일반 화상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전체 화상의 상업현실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또 하나 최근의 화교 관련 연구 경향으로 한국의 화상조직과 거류지 운영체계와 같은 화교들의 공적인 기구와 조직에 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어서[5]

3) 정태섭 · 한성민, 2008, 「乙巳條約 이후 韓 · 淸간 治外法權 연구(1906~1910)」, 『韓國近現代史硏究』 46; 이은자, 2005, 「한국 개항기(1876~1910) 중국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韓中間 조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92; 이은자, 2006, 「韓淸通商條約 시기(1900~1905) 중국의 在韓 치외법권 연구」, 『明淸史硏究』 26; 이은자, 2009, 「淸日戰爭 이전과 이후 在韓 韓中間 '訴訟' 안건 비교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17; 이은자, 2007,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訟의 實例－'彭姜案'(1898~1900)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100; 이영옥, 2007, 「한중 민간소송연구, 1906~1910－張導之案 · 姚貴春案 · 劉金有案 등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硏究』 35; 서영희, 2006, 「한청통상조약 이후 한중 외교의 실제와 상호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13; 구범진, 2006, 「'韓淸通商條約' 일부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한 · 청 외교 분쟁」, 『대구사학』 83 등

4) 譚永生, 1976, 「朝鮮末期의 淸國商人에 關한 硏究－1882年부터 1885年까지」, 단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논문, 67~69쪽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5) 이은자, 2008, 「淸末 駐韓 商務署 조직과 그 위상」, 『明淸史硏究』 30; 이은자, 2011, 「청말 駐韓 中國 公館의 조직과 그 위상－駐韓公使 許台身과 曾廣銓 재직시기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硏究』 51; 김희신, 2010, 「淸末(1882~1894) 漢城 華商組織과 그 位相」, 『中國近現代史硏究』 46; 김희신, 2010, 「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 『明淸史硏究』 34; 김희신, 2010, 「漢城 開設行棧 개정 조항 교섭과 중국의 대응」, 『東洋史學硏究』 113; 박정현, 2010, 「19세기 말 仁川과 漢城의 중국인 居留地 운영체제」, 『東洋史學硏究』 113; 박정현, 2010, 「19세기 末(1882~1894) 朝鮮 華商의 조직과 상업 활동」, 『中國史硏究』 6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화교사회의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개별 화상의 상업 활동의 역동성이나 실제 생활상을 드러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고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화교사회의 역동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漢城'이라는 동아시아의 한 이주공간에 존재했던 화상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상업 활동상에서 발생했던 채무소송을 분석함으로써 화상들의 구체적인 상업 생활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특히 한성은 다른 개항장과는 달리 한중일 상인이 잡거했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한중일 상업경쟁이 가장 치열했던 곳이다. 따라서 한성에 거주했던 한중일 상인에 대한 화상의 갈등양상을 분석함으로써 한중일 상업경쟁의 실태를 드러내고자 한다. 또한 이주와 유통네트워크의 통로로서의 도시가 아니라 '漢城'이라는 장소성에 착목하여 그 속에서 정착했던 사람들의 행위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성의 한중일 상인의 관계망 속에서 삶을 영위했던 화상들의 상업 활동 공간에 대한 해명을 하고자 한다.[6]

화상에 대한 기존연구가 개항기에 집중되어 있다면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시기는 1906년부터 1910년까지이다. 이 시기는 한국이 일제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된 통감부 시기이고, 중국에게는 청일전쟁 패배 후 한국에 대한 기득권이 사라지고 주한총영사 마정량이 부임하여 화상의 관리와 보호를 책임지던 시기였다. 대체로 기존의 연구가 개항 후 청일전쟁까지, 혹은 일제 식민시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연구의 공백기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주로 「駐韓使館保存檔案」(이하 「駐韓使館檔」)에 수록된 채무 관련 소송안건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이제까지의 화교에 대한 연구, 특히 소송문제는 『舊韓末外交文書』의 8, 9권에 해당하는 『淸案』과 『淸季中日韓關係

6) 이제 막 시작되기는 했지만 초국적 관점에서 이주자의 사회적 공간을 염두에 둔 연구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도 주로 당시 신문, 잡지 등 언론상에 나타난 화교의 모습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 개별 華商의 구체적인 생활을 토대로 한 접근방식은 아니다. 김승욱, 2010, 「20세기 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 『中國近現代史硏究』 47; 정혜중, 2007, 「開港期 仁川 華商 네트워크와 華僑 정착의 특징」, 『中國近現代史硏究』 3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史料』 등이 주로 이용되었다. 그러나 『淸案』의 기록은 1905년까지로 끝나고 있다. 『淸季中日韓關係史料』는 1911년까지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주로 한중일 정부 간에 왕래했던 공식문서들로 개별 화교의 문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1905년 이후의 한성 화교의 구체적인 문제를 알려주고 있는 자료는 현재로서는 「駐韓使館檔」이 유일하다.

「駐韓使館檔」은 19세기 말 한성에 주재했던 청국공사관의 공문서로 1882년부터 1943년까지의 交涉, 邊界, 商務, 訴訟, 學務, 租界, 調查報告, 僑務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駐韓使館檔」에는 한중일 거류민과 관련된 訴訟, 商務, 調查報告, 僑務 등의 안건이 전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화상의 실태파악과 연구에서 중요한 사료이다. 그러나 현재 대만 중앙연구원 근대사연구소에 소장되어 있는 이 당안은 근래에서야 공개되었기 때문에 「駐韓使館檔」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외를 통틀어 몇 편에 불과하고,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었을 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한중 간의 갈등양상이나 처리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우선 시대적인 배경과 移住空間 漢城에서의 한중일 상인의 상권경쟁 상황을 개괄한 다음, 소송안건의 처리과정을 통해 한중 상업분쟁 및 화상의 상업 활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한중 상인 간 소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상거래로 인한 채무소송을 통해 화상의 상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한성의 한중일 상권경쟁과 시대배경

17, 18세기의 한국은 생산력의 발달로 상품거래와 유통량이 증가하면서 상업은 유례없이 활기를 띠었다. 이에 따라 국가상업체제에 편입되어 있던 市廛 이

외에 상품유통을 중개하는 객주와 여각 등 亂廛세력이 크게 성장했다. 시전상인들은 都賈로 성장한 亂廛 私商과의 경쟁이 불가피했고 경쟁은 치열했다. 여기에 개항 후 외국상인들의 한국 국내시장 잠식이 더해져 한국의 상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외국상인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은 華商과 日商이었다. 특히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조정되는 격변기로 일본과 청의 정치적 · 군사적 역학관계에 따라 이들의 한국 진출은 크게 영향을 받았다.

화상의 한국 진출은 1882년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로 漢城開棧權이 인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청은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이용하여 한국 화상을 적극 지지했다. 청정부는 이들을 위해 한국과 중국 상해를 연결하는 정기항로를 개설하고 상업 활동에 필수적인 수출입 물자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청국인 내지행상에 대해 護照를 발급하고 한중 양국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등 청국인 거류민에 대한 보호와 권익 옹호에 진력했다.

특히 화상들은 1883년 이미 한성 도성 안의 남대문 일대와 水標橋 부근에 자리를 잡았고 일부는 광교 부근까지 진출했다. 한국의 전통적 시전상인의 주 활동무대는 종로였기 때문에 화상들이 진출한 남대문 일대(明禮房)는 종로와 연결되는 각종 화물의 주요 거래지역이었다. 명례방 인근지역인 會賢坊의 駱洞에는 청국공관이 자리하고 있었고, 1884년 5월에는 이 지역에 중화회관이 설립되어 화상들의 상업 활동의 근거지 역할을 했다. 또한 당시 화상에 대한 절도와 강도가 빈발했기 때문에 1889년 5월 화상의 보호와 안전을 위해 巡查廳을 설치하고 華商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담당했다.[7]

한편, 일본은 1880년 12월 한성 서부 도성 밖 盤松坊 京畿中軍營(淸水館)에 일본공사관을 설치했지만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으로 공사관은 소실되었다. 이후 일본인들은 한국인의 배일감정 때문에 항상 신변의 위협을 느껴야 했

7) 순사청 설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정현, 2010, 「19세기 말 인천과 한성의 중국인 거류지 운영체제」, 『東洋史學研究』 112 참조.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다.[8] 1885년에 한성 남부 진고개(泥峴)에 다시 일본공사관이 설립되자 日商들은 일본공사관을 중심으로 鑄洞, 羅洞, 扈衛洞, 南山洞 등에 일본인 거주지 겸 상권을 형성해 나갔다.[9] 日商들이 자리 잡은 이 일대는 명례방, 회현방의 상권과 연결되는 지역이긴 했지만 한국 시전상인의 활동지역인 종로와는 거리가 있었다.

화상은 적극적으로 내지통상도 확대시켜 나갔다. 화상들은 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내지통상에서 日商에 비해 우세했고, 내지통상을 위한 판로확보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10] 이를 통해 화상은 수출입 상품유통의 지배권을 장악할 수 있었고 시장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게 되었다.[11] 따라서 화상은 '한성에서 기선을 제압하고 인천을 누르고 원산을 강습하여 일본의 철옹성이라고 자랑하는 부산을 육박해 왔다'고 할 정도로 일상을 크게 위협했다.[12]

그러나 이러한 청일 간의 경쟁구도를 일시에 바꾸어 놓았던 것이 청일전쟁이었다. 청일전쟁의 패배로 청은 한국에서의 기득권을 잃게 되었고 청과 한국의 모든 외교관계는 단절되었다. 청국공관이 철수했고 화상들도 대거 귀국했다. 화상의 수가 감소하는 대신 日商이 대거 한성에 진출했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경기의 특수를 얻고자 하는 일상이 한성에 몰려들어 한성 거류 일본인의 수가 격증했다.[13] 이에 따라 거류지도 팽창하여 일상들은 진고개, 충무로 일대는 물론, 화상이 물러간 남대문통으로 진출하여 한성의 중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8) 韓沽劤, 1982, 『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 一潮閣, 55쪽
9) 원재연, 2000, 「1880년대 門戶開放과 漢城府 南門內 明禮坊 일대의 사회, 경제적 변화」, 『서울학연구』 14, 65~68쪽; 박찬승, 2002,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과정－1880년대~1903년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62, 79쪽
10) 崔墉, 1993, 「開化期 私商의 變貌－客主를 中心으로」, 『實學思想硏究』 4, 196쪽
11) 李炳天, 1985, 「開港期 外國商人의 內地商權 侵入－淸商·日商을 중심으로」, 『經濟史學』 9-1, 299쪽
12) 盧相潤, 1987, 「開港期의 韓國市場을 둘러싼 淸日의 貿易競爭」, 『社會科學論集』 5, 19쪽
13) 통계에 따르면 한성에 들어온 일본인 수가 1906년에는 1만 명을 돌파했고 1910년경에는 3만 명을 넘었다. 1910년 당시 한국 거류 일본인 수는 17만 명을 넘었다. 박찬승, 2002, 「러일전쟁 이후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확장 과정」,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132~133쪽

심 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청일전쟁 후 일상 수의 증가와는 달리 한성의 華商 수는 1906년 통감부의 통계에 따르면 1,363명이었고[14] 1910년에도 2천 명을 넘지 않았다. 이 숫자는 청일전쟁 후의 화상 이주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이었지만, 이후에도 화상의 수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중국 내부의 전란을 피해 산동성 출신의 영세 상인들이 지속적으로 한국에 입국했기 때문이다. 다만 청국공관이 철수한 후 청정부의 요청에 의해 한국 거주 화상의 보호는 당분간 주한영국공사관이 담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화상은 본국정부로부터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韓商, 日商과 상권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한편, 한상은 조선 후기 私商과 都賈의 발달로 자유경쟁에 내몰렸을 뿐 아니라 화상과 일상의 한국 진출로 인해 국내시장의 상권을 잃어가고 있었다. 韓商은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성 안 외국인의 거주와 통상에 반대하며 이들을 용산지역에 집단 거주하게 하자는 漢城撤棧運動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한성철잔과 용산이전이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한성 거주 외상 수는 매년 급증하여 1889년 말경에는 1,200~1,300명이 한성에서 상업 활동을 했다.[15] 따라서 한중일 상인의 상권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졌고 청일 양국 상인들에 대한 감정도 나빠져 이들에 대한 한국인의 절도와 강도도 극심했다.[16]

그러나 무엇보다도 1900년대 들어와서 한국은 동아시아 국제경쟁 속에서

14) 전국의 화상 수는 3,661명에 불과했다. 統監府 官房文書科, 1907, 『第1次統監府統計年報』, 39~40쪽, 정태섭 · 한성민, 앞의 글, 60쪽에서 재인용.

15) 『日本外交文書』 23권, 문서번호 63호, 손정목, 1980, 「開港期의 漢城內 外國人 居留 經緯」, 『韓國史硏究』 28, 127쪽에서 재인용.

16) 「한성지역 중국상인 피습」(1888. 2. 28; 1888. 3. 20); 「중국상인 돈을 가지고 도망친 전경윤 등을 체포할 것」(1888. 3. 26); 「남문의 중국 상인을 피습한 범인을 속히 잡아들이도록 함」(1888. 9. 27); 「중국상인들이 도적들로부터 상처를 입음」(1890. 2. 26); 「강화진무영의 도적배에게 탈취당한 중국상인의 돈을 환수할 것」(1893. 3. 17); 「외부에서 이천군에서 발생한 청국인 치사사건에 대해 법부에 회답」(1899. 9. 4); 「도적이 외국상인에게 피해를 입히니 조처하라는 외부대신의 요청」(1903. 5. 2); 「경무사가 외국상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도적에 대한 대책수립을 외부대신에게 알림」(1903. 5. 7) 등 모두 『各司謄錄』에 수록되어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강력한 정치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한국에서 청의 세력을 제거한 일본은 러일전쟁에서도 승리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던 것이다. 을사조약 체결 후 조선 외교 사무를 위해 통감부를 설치한 일제는 해외 주재 일본공관에 주한 외국 공사관의 철수와 재외 한국공관의 폐지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은 1906년 2월, 1899년 한청통상조약을 계기로 설치했던 주한청국공사관을[17] 공식적으로 폐쇄하고, 대신 화교의 보호를 위해 한국에 총영사관을 설치할 것을 결정했다. 당시 주일청국공사관 參贊官이었던 馬廷亮이 총영사로 발탁되어 1906년 3월에 한국에 부임했다. 다만 총영사는 공사급 외교사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총영사 및 각 지역의 영사는 주일청국공사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조정되었다. 이로써 한청 사이는 공사급 외교관계에서 영사급 외교관계로 격하되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국 측의 교섭권은 통감부가 행사했기 때문에 청과의 직접교섭에 의한 외교관계는 아니었다.

당시 한청 사이를 규정했던 조약은 1899년에 체결된 한청통상조약이었다. 이는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이 규정한 청과의 불평등한 관계를 제거하고 쌍무적 영사재판권을 인정한 조약이었다.[18] 이 조약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1910년까지 유효하게 작용했다. 따라서 한국 내에서 청국인 원고가 한국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을 경우 한국인 피고는 한국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았다. 반대로 청국인이 피고라면 청의 법률이 적용되었고 화상 간의 분쟁에서도 청의 법률에 의해 처리되었다.

개항 이래 한국 내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처리를 담당했던 기관은 한국 측은 監理署였고 청국 측은 각 개항장의 상무위원이었다. 한성에서는 한국 측은 한성부판윤이, 청국 측은 총영사가 담당했다. 그러나 을사조약 체결 후 감리서는 폐지되었고 을사조약에 따라 日帝는 감리대신 이사관을 개항장이나 開市場에 두고 이사청을 설치했다. 이사관은 이사

17) 1899년 대한제국의 외무대신 朴齊純과 청의 徐壽朋 사이에 한청통상조약이 체결되어 공사급 외교관계가 성립되었다. 그 후 청의 주한공사로 徐壽朋, 許台身, 曾廣銓 등이 차례로 임명되었다.

18)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1965, 『舊韓末條約彙纂』(下卷), 369~37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의 책임자로, 통감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래의 영사업무와 조약 및 법령에 기초하여 업무를 관장했다. 이사청은 기존의 일본영사관 또는 분관이 설치되어 있었던 경성, 인천, 부산 등 7개소와 군산, 평양, 성진 등 6개가 추가되어 모두 13개가 설치되었다.[19] 이로써 한국 내에서 한중 상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정부나 지방정부가 청국영사관과 직접 교섭할 수 없고 통감부 및 이사청을 통해 양국민의 분쟁을 해결하는 구조가 되었다.

Ⅲ. 소송안건별 상업 분쟁과 처리

「駐韓使館檔」에 수록되어 있는 마정량 시기의 문서에는 살인, 구타, 강도, 채무 관련 등을 포함한 소송안건이 상당히 많다. 그중 '錢債案卷'은 한성의 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했던 화상의 금전손해 관련 소송으로, 마정량 시기 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20] 이는 당시의 상업 활동이 상당히 활발했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9) 朴慶龍, 1994, 「統監府 理事廳 연구－京城理事廳을 중심으로」, 『韓國史硏究』 85; 강창석, 1987, 「통감부 연구－이사청의 조직과 성격을 중심으로」, 『釜山史學』 13 참조.

20) 주한사관당안의 소송 안건은 청일전쟁 이전시기(1883~1984) 陳樹堂이 28冊, 袁世凱가 41冊, 당소의가 72冊으로 총 141冊이다. 청일전쟁 후부터 마정량이 부임해 오기 전(1985~1905)까지 徐壽朋 12冊, 吳廣霈 24冊, 許台身 10冊, 傅良弼 9冊, 陳本仁 6冊, 曾廣銓 5冊, 吳其藻 5冊, 錢明訓 3冊으로 총 74冊이다. 마정량 시기(1906~1910)의 소송안건은 29冊으로 책 수만 보면 다른 시기보다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마정량 시기의 안건은 동일한 유형의 개별 안건을 1冊으로 묶어 분류해 놓았기 때문에 29冊 속에 포함된 안건 수는 훨씬 많다. 예를 들어 마정량 시기 錢債案卷은 6冊이지만 그 속에 수록되어 있는 개별 안건은 75건에 달한다. 불과 4~5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다른 시기에 비해 소송안건의 분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정량은 1912년까지 한국에 주재했던 듯한데 마정량 전채안의 소송안건의 발생은 1910년까지로 끝나 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며 많은 華商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채무소송은 '錢債案卷'이라는 이름 하에 총 6冊으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수록된 개별 소송안건은 총 75건이다.[21]「駐韓使館檔」의 소송안건은 주로 華商이 주한총영사 마정량에게 제기한 것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거의 화상이고 피고는 韓商, 華商, 日商으로 나눌 수 있다. 그중 화상 · 한상 간 소송이 총 32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 다음이 화상 간 소송으로 28건이고, 화상 · 일상 간 소송이 15건으로 가장 적었다. 그런데 이 세 경우에서 발생했던 사건의 유형이 각각 다르고 처리과정도 달랐으므로 각각의 경우를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22] 이를 통해 한성의 상업 활동공간에서 발생한 한중일 상인 간의 관계와 갈등양상을 드러내고자 한다.

1_ 華商 · 韓商 간 소송

소송은 우선 피해를 입은 華商이 그 소속 幇을 통해 총영사 마정량에게 稟을 올리면서 시작된다. 한청통상조약 제5조에는 양국 간에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 廳審을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3] 따라서 화상 · 한상 간 분쟁은 필요에 따라 한국과 청의 관리나 순사에 의해 공동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당시 청 측은 한성에 이미 총순경청을 설치하여[24] 자체 방

21) 錢債案卷 6冊의 안건은 총 76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제6권 52번 안건은 목록에는 있지만 실제 안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안건의 수는 총 75건이다.

22) 華商 · 韓商 간 소송은 1번, 華商 간 소송은 2번, 華商 · 日商 간 소송은 3번으로 표시하고 각 개별 안건에 일련번호를 붙여 1-1, 2-1, 3-1로 표기했다.

23) 廳審이란 외국인이 원고가 되고 한국인이 피고가 되는 각종 민형사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외국의 영사 등이 참관할 수 있는 권리이며, 會審은 한국인 피고 사건의 경우 외국 관원이 한국 재판관과 회동하여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이 각국과 맺은 조약은 영사재판권과 함께 청심권을 인정했다. 한청통상조약에는 청심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청심과 회심이 혼용되어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은자, 2005, 앞의 글, 190~191쪽; 정구선, 2007,「통감부기(1906~1910) 일본의 치외법권 행사와 한국의 대응」,『東學硏究』23집, 135쪽

24) 1889년 巡査廳이 설치되어 청국인에 대한 범죄의 예방과 보호에 힘썼는데 그 명칭이 총순경청으로 바뀐 듯하다. 이는 청 본국정부가 1901년부터 근대적 경찰제도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분쟁의 조사와 심문도 총순경청이 담당했다. 총영사 마정량은 화상의 소송 제기에 따라 자체 조사를 한 다음, 한국의 외교권을 가진 일본이사청 이사관 三浦彌五郎과 조회문건을 주고받으며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 측 피고를 조사하고 심문하는 과정은 漢城府尹이 담당 처리했다. 한성부윤이 피고를 심문 조사한 사항을 일본이사관 三浦彌五郎에게 보고하면 三浦彌五郎은 이 내용을 청 측 마정량에게 조회하는 형식이었다. 다만 양국 간의 교섭이나 사건의 해결이 어려운 사안, 혹은 다른 지역과 연계되어 있어 경성이사청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본 통감부 총무장관 石塚英藏에게 직접 조회하여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기도 했다.[25]

우선 화상 · 한상 간 소송을 유형별로 정리해 보면 32건 중 16건이 외상거래 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않거나 도피로 발생한 사건이다. 그 외에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 가옥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사건 5건, 임대료 체납이나 착복 등 임대료 관련 사건 3건, 임금체불로 인한 사건 1건, 채무자를 불법으로 감금하여 발생한 사건 2건, 공동출자 손해금 발생사건 1건, 환전 사건 1건, 인삼매매 사기사건 1건, 휴가로 인한 薪金 미지급 사건 1건, 계약 파기 및 위약 분쟁 1건이다.

그런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를 불법 감금함으로써 발생한 안건이나 담보 가옥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안건 중 처음 발단이 외상거래 후 채무 불이행이었던 경우를 포함하면 외상거래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도입하여 1905년 북경에 巡警部를 설치했던 것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순경청으로 바뀐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범인을 심문 조사한 결과를 총영사에게 보고할 때 '總巡警廳呈' 혹은 '大淸總巡警廳呈'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전용 용지가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1908년(광서 34) 1월에는 '총순경청정'이 인쇄된 용지가 사용되었으며 1908년 10월부터는 '대청총순경청정'이 인쇄된 용지가 사용되었다.

25) 총무장관은 통감을 보좌하여 통감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統監府官制及理事廳官制」, 『舊韓末條約彙纂』(下卷), 501~504쪽. 마정량 시기 실제로 통감부 총무장관에게 조회나 서신을 보낸 적이 있는 안건은 다른 지역과의 연계 안건(錢債案卷(二), 15號), 한국 궁궐 내부 수리 관련 안건(錢債案卷(四), 16號), 압록강변 삼림벌채권 문제 안건(錢債案卷(五), 1號) 등이 있다.

발생한 안건이 총 32건 중 18건이나 된다. 또한 채무 이유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안건도 그 발단이 외상거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감안한다면 그 비율은 더 높아진다. 그 유형별 소송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상거래 후 채무 불이행 도주사건은 표 1에 보이는 1-1번부터 1-16번까지의 16건이다. 외상거래는 곧 신용거래를 의미하고 신용거래는 화상 경영의 기본이었다. 이러한 신용거래 방식은 화상이 빠른 시간 내에 한국에 정착할 수 있게 했던 원동력으로 꼽히고 있다.[26] 그러나 신용거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었다. 외상거래 후 채무자의 도주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소송이 제기된다.

채무변제를 해야 할 상인이 도주한 상태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고 해결되었던 것일까? 한청통상조약 제7조에 따르면 어느 일방의 신민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소속국 관리가 피고를 체포하고 엄격한 수단을 동원하여 채무를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7] 따라서 한국인 피고가 채무 불이행으로 도주한 상태에서 화상들이 소송을 제기할 때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우선 화상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사건의 해결은 한성부윤에게 알려 한국인 피고를 체포하고 채무변제가 액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도주한 피고의 점포에 남아 있는 貨物을 환금하여 일부라도 우선 상환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피고를 색출하여 엄히 추궁하고 화물대금을 모두 회수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예는 1-11번 안건이 대표적이다. 이 안건은 피고인 韓商 金明哉가 채무를 분할 상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소송이 종결된 경우이다.[28]

그러나 도주한 자를 체포하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물리적 인적 동원과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체포할 가능성은 낮았다. 설사 피고를 체포

26) 陳裕光, "華僑" 第10話, 《中央日報》(1979. 9. 28, 5면), 제4328호
27) 그러나 정부가 부채를 대신 상환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韓 · 淸通商條約」, 『舊韓末條約彙纂』(下卷), 371쪽
28) 總理各國事務衙門(02)－駐韓使館保存檔案(35)－馬廷亮:訴訟案件(062)－錢債案卷:四(10)－第23號. 이하 錢債案卷(卷號), 號로 약칭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다고 해도 단시일 내에 사건이 해결되어 채무변제를 받게 될 가능성은 희박했다. 실제로 필자가 살펴본 채무변제 불이행 도주의 16건 중에 피고를 색출하여 문제를 처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피고가 도주한 경우는 피고의 점포에 남아 있는 貨物을 계산하여 환금하고 이를 부채비율에 따라 각 화상에게 분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처리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1-1번, 1-2번, 1-4번, 1-8번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점포의 화물도 은닉하여 남아 있는 貨物이 없거나 점포가 일정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받을 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피고의 도피로 채무변제를 받을 길이 막막해져 버린 화상들은 피고의 근친이나 남아 있는 經紀에게서 대신 변제받고자 했다. 피고와 해당 근친 혹은 經紀가 공모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이들의 책임소재가 분명해지면 승소하여 채무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원고인 화상은 해당 피고와 근친 혹은 經紀가 어떤 자본관계에 있었는지, 점포의 경영구조가 어떠했는지, 이들이 해당 점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 자체 조사에 진력했다. 그런 연후에 이를 토대로 양자의 공모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설득력 있게 稟을 작성하여 기소했던 것이다. 근친에게 채무변제를 하게 한 예는 1-3번, 1-10번이고 經紀에게 책임을 물은 경우는 1-5번의 예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건이 화상의 요구대로 잘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피고의 친척이나 경기를 사사로이 감금하고 심지어 구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1-6번, 1-10번, 1-12번의 예이다. 1-6번의 경우, 원고 杜丕松은 피고 金公善이 외상을 상환하지 않고 도주하자 金公善의 부친을 감금 구타했다. 어떤 연유에서든 사적으로 감금, 구타하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杜丕松은 총영사 마정량의 명으로 구류되었다가 보증인을 세우고서야 석방되었다.[29] 1-10번의 경우는 피고 林聖潤 대신 형 林宅潤을 감금한 사례이다.[30] 1-12번의 경우도 미성년자인 朴範九가 화상이 경영하는 청요릿집 同順樓에서 115원의 외상을 졌는데, 그의

29) 錢債案卷(三), 7號
30) 錢債案卷(四), 21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아버지 朴遇用이 상환하기로 했으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자 동순루의 회계가 그를 감금했다. 동순루의 회계는 감금에 대한 벌금으로 15원을 납부하고 다시는 불법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풀려날 수 있었다.[31]

소송 처리과정에서 친척이나 경기를 보증인으로 세워 사건을 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1–3번, 1–13번의 예이다. 1–3번의 경우는 친척을 보증인으로 세웠고[32] 1–13번의 경우는 經紀를 보증인으로 세웠다.[33] 보증인의 역할은 도주한 피고를 대신하여 채무의 일부 혹은 전부를 변제하는 것이었다. 이때 세워진 보증인은 채무변제 불능에 처해진 피고를 대신하여 채무의 부담을 떠맡게 되는데, 친척이나 해당 점포의 經理, 經紀 등이 강제 혹은 어쩔 수 없이 떠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인은 채무관계에서 습관적으로 무한책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채무자가 변제 불능에 놓인 경우 친척이나 혹은 피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이는 사람들에게 지우는 일종의 族徵이었던 것이다.[34] 그러나 近親뿐이 아니라 遠親에게까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성부 소윤 李建昌이 항의했다는 것으로[35] 보아 한국의 상관행은 이를 정당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 가옥 처분과정에서 발생한 안건이다. 채무변제를 하지 못했을 경우 저당 잡힌 가옥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기도 했다. 1–17번, 1–18번, 1–19번, 1–20번의 경우이다. 채권 채무 발생 시 중개한 거간이 책임을 지기도 했다. 1–21번의 경우처럼 이때 만일 채무자가 도주한 상태라면 거간의 담보 가옥이 채권자에게 넘어가기도 했다.[36] 특히 1–17번 안건은

31) 錢債案卷(四), 24號
32) 錢債案卷(三), 3號
33) 錢債案卷(五), 5號
34) 「外商結托作奸輩의 防弊와 族徵惡習禁防의 件」,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編, 1970, 『舊韓末外交文書』 第8卷(淸案1), 139~140쪽; 「王景周의 趙元一債錢을 黃海監營에 勒淸한 事件에 관한 回答」, 『舊韓末外交文書』 第8卷(淸案1), 223~224쪽은 이러한 사례를 보여준다.
35) 石川亮太, 2007, 「開港期漢城における朝鮮人・中國人間の商取引と紛爭–『駐韓使館檔案』を通じて」, 『年報朝鮮學』 10, 112쪽
36) 錢債案卷(六), 48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담보로 잡힌 가옥이 처분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거상 同順泰와 관련된 안건이기도 하다.[37]

셋째는, 임대료 미납이나 착복 등 임대료 관련 안건이다. 1-22번, 1-23번, 1-24번의 경우이다. 넷째는 임금 체불로 인한 안건인데 1-25번의 경우이다. 임대료 관련이나 임금 체불로 인한 사건의 판결은 비교적 간단하다. 사건은 미납금 혹은 체불임금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22번 안건을 예로 들어보자. 화교는 언어문제로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한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대신하여 통역해 줄 대변인이 필요했다. 이 안건은 청국 농민 孫培華 등이 토지임대료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한국말에 능통한 화교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말을 잘한다고 속인 화교가 있었고, 임대료를 부풀려 일부를 착복한 韓商과 韓官 등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었다. 결국 중간 착복한 자가 실제 임대료 외에 착복한 것을 청국 농민에게 상환하도록 판결이 났다.[38] 이 사건은 1909년 3월에 발생했는데 동일 인물 孫培華가 같은 해 12월 다시 토지 임대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7) 廣東상인 同順泰는 1885년 인천에서 점포를 열고 무역을 하다가 다음 해 한국인 孫景文과 그의 동생 孫允弼 등의 客棧에 한성지점을 내고 영업을 했다. 이 객잔은 집세는 받지 않고 상품이 들어오고 나갈 때 수수료를 지불했기 때문에 화물대금은 객잔의 장부에 달아서 한꺼번에 계산하여 지불했다. 그러니까 동순태의 화물도 객잔의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손경문의 객잔은 도매업, 위탁판매, 창고업, 여숙업을 겸하는 전형적인 한국의 旅閣이었던 듯하다. 그런데 1889년 孫允弼 등이 도주하고 동순태의 화물도 모두 은닉한 상태였다. 그러므로 수수료를 모두 계산하고도 당시 화물대금으로 동순태가 받아야 하는 것이 1萬2千6百77吊90文이었다. 그 후 손윤필이 돌아와 자신의 부채를 정리하고자 5천조의 가치가 있는 저축통장과 가옥을 내놓았지만 이것으로 동순태의 채무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7천6백77조90문의 빚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 뒤 손윤필이 다시 도주하자 동순태는 손윤필이 내놓은 가옥에 대한 官契를 발급받아 해당 가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안건은 17년이 지나 손윤필과 손경문의 아들 손승재가 일본인 변호사를 대동하여 舊契를 가지고 담보를 찾으려고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순태도 1890년 용산상무서에서 발급받은 官契를 가지고 손승재를 고소하여 맞소송이 되었다. 이 안건은 1906년에 기소되었지만 계속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12년에 가서 한국 총독부 京城控訴院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錢債案卷(一), 4號

38) 錢債案卷(五), 13號

를 중간에서 착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23번 안건).[39] 이러한 정황으로 보아 언어 장벽 때문에 화농들은 한성 정착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채무자를 불법으로 감금하여 발생한 사건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1-6번, 1-10번, 1-12번은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로 채무자의 부친이나 경기를 감금 혹은 구타한 경우이다. 1-26번과 1-27번도[40]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를 감금한 사건이다.

이상의 채무소송은 일반적으로 당시의 상관습이나 상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제기되는 것으로 공권력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화상들은 韓官과 韓民이 사건처리를 미루고 협조해 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화상들은 한국인 피고가 도주하여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하루속히 점포에 남아 있는 貨物을 환금하여 손해의 일부라도 보상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이러한 화상의 급한 마음과는 달리 韓官의 처리과정이 신속하지 않고 한관이 피고인 한민을 옹호한다는 불만을 품기도 했다. 이런 경우 화상은 다시 품을 올려 속히 사건이 해결되어 화상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여달라는 호소를 하게 된다. 그러면 마정량은 일본이사관 三浦彌五郎에게 조회하여 한성부윤에게 알리고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게 된다. 그런 과정에서 마정량은 화상들의 손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41]

또한 마정량은 한상의 불법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며 엄히 다스려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1-27번의 예를 들면, 화상 丁寶田이 한상 徐度相에게 부채

39) 錢債案卷(六), 46號

40) 이 두 안건은 채무 불이행을 발단으로 채무자를 감금하는 사태로 발전하여 기소된 것이었다. 따라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경우이다. 錢債案卷(五), 3號; 錢債案卷(二), 14號

41) 예를 들면, 1-1번 안건의 경우 林育成 등이 마정량에 품을 올려 도주한 韓商 高源臣의 점포를 봉쇄한 지 9, 10개월이 지났는데도 한관이 날짜를 미루고 처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화물이 오랜 보관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금전회수에 문제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마정량은 三浦彌五郎에게 조회하여 조속히 처리하지 않으면 청국 총영사가 사람을 파견하여 직접 처리할 것이라고 통보하고 있다. 錢債案卷(二), 14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상환을 요구해도 상환하지 않자 서도상을 불법으로 감금했다. 그러자 서도상의 친구 조씨가 銅峴分署에 정보전을 고발하여 정보전은 한국 포졸에 소환되어 마정량에게 인도되었고, 마정량은 정보전에게 2주일 감금이라는 징벌을 내렸다. 마정량은 이 사실을 일본이사관에 조회문을 보내 알렸다. 조회문에서 마정량은 정보전의 불법을 인정하면서도 한인의 태도에 불만을 표했다. 韓商들은 화상의 점포에서 갖은 말로 유혹하여 화물을 외상으로 가져가고서 계속 연기하다가, 화상이 상환을 추궁하면 도주해버리기 일쑤라는 것이다. 화상은 私的으로 감금하는 것이 죄가 됨을 알지 못하고 실수로 한인을 감금하여 죄를 짓게 되지만, 한상에게는 오히려 죄를 피하는 핑계를 만들어주는 꼴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42] 이는 화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불법으로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화상을 대변하고 韓商의 잘못에 대해 엄히 다스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정량은 화상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화상을 대변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화상이 한상에 대해 제기한 소송안건의 유형별 분류와 소송내용을 작성하면 표 1과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표 1〉 화상이 한상에 대해 제기한 소송안건의 유형별 분류와 소송내용

번호	안건 유형	소송 발생 연월일	가해자 (韓)	피해자 (中)	소송 내용	錢債案 (권/호)
1-1	1	광서 32년(1906) 8월	高源臣	廣和順, 瑞盛春, 洪順福, 大成義, 裕泰春, 林育成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	2/14
1-2	1	광서 34년(1908) 1월 6일	朴大植	元春興, 洪順福, 德順福, 元春茂, 義順興, 大成義, 義聚興, 德增祥	외상거래 후 파산, 도주	3/1
1-3	1	광서 34년 3월 20일	李鐘臺	同順興, 成興永, 元春興, 元春茂, 德順福, 永茂盛, 天合東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	3/3

42) 錢債案卷(五), 14號

1-4	1	광서 34년 5월 1일	高聖煥	元春興, 德增祥, 廣和順, 同聚恒, 天合東, 義和東	부채 미상환 도주	3/5
1-5	1	광서 34년 5월	朴柄祐, 林炳圭	聚成, 洪順福, 元增同, 公源利, 陸順, 同聚恒, 怡成, 同合東, 永盛合, 元春興, 榮大, 元春茂, 瑞盛春, 同生東, 德增祥, 東興隆, 德順福, 東來, 大成義, 元增盛, 義順興	외상거래 미상환 도주	3/6
1-6	1	광서 34년 5월	金公善	德生泰(杜丕松)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로 인해 가해자 부친 감금 구타	3/7
1-7	1	광서 34년 6월	李漢英	戴益三	양복대금 미지불	3/13
1-8	1	광서 34년 10월 4일	金鳳鎭	同和東, 聚成, 義盛恒, 洪順福, 德增祥, 瑞盛春, 裕豊德, 元增同, 義順興, 同聚恒, 源成公	외상대금 미상환 도피 및 화물 은닉	4/17
1-9	1	광서 34년 10월 19일	潘斗煥	瑞盛春, 洪順福, 元春盛, 大成義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	4/18
1-10	1	광서 34년 12월	林聖潤	義盛恒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	4/21
1-11	1	광서 34년 12월 27일	金明哉	西公順	외상대금 미상환	4/23
1-12	1	광서 34년 11월 28일	朴遇用	同順樓	외상 음식대금 미지불	4/24
1-13	1	선통원년(1909) 윤2월 10일	鄭鍾源	大成義, 洪順福, 永茂盛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 후 화물 처리	5/5
1-14	1	선통2년(1910) 6월	李殷五	王明軒	물품 구입대금 미상환	6/51
1-15	1	광서 34년 3월	孫壽永	德生泰	외상대금 미상환	3/4
1-16	1	선통원년 12월 12일	孫墨林	和聚公, 公源利, 洪順福, 大成義, 德源順, 廣和順, 義盛恒, 東盛德, 東興館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 후 남은 화물 처리 및 분할상환	6/44
1-17	2	광서 32년 윤4월 13일	孫允弼, 玄聖一, 孫承在	同順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 가옥 처분 및 맞소송	1/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18	2	광서 32년 10월 19일	金漢俊	西公順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 가옥 처분	2/15
1-19	2	선통원년 3월	尹龍植 (尹秀映)	張劉氏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담보 가옥 처분	5/10
1-20	2	선통원년 4월	王秀山	袁敬之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 가옥 처분	5/16
1-21	2	선통2년 6월 20일	李弘基	元春茂	외상대금 미상환으로 인한 거간의 담보 가옥 처분	6/48
1-22	3	선통원년 3월	劉漢亭	孫培華, 姚培龍, 姜品蘭	임대료 착복	5/13
1-23	3	선통원년 12월	張世憲	孫培華	토지 임대료 중간 착복	6/46
1-24	3	선통원년 9월 9일	李圭恒	許午	가옥 임대료 체납	6/37
1-25	4	광서 34년 8월 29일	孫氏 부인	廣昇號	임금 체불	4/16
1-26	5	선통원년 4월 18일	元增盛 (中)	羅光善 (韓)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채무자 감금 사건	5/3
1-27	5	선통원년 4월	丁寶田 (中)	徐度相 (韓)	부채 미상환으로 인해 불법 감금한 사건	5/14
1-28	6	선통원년 윤2월 1일	尹秀映	徐存海	공동출자 실패 후 손해금 발생 맞소송	5/4
1-29	6	광서 32년 8월 27일	禹致公	高鳴岐	환전으로 인한 채무 미상환	2/11
1-30	6	광서 26년(1900)	李裕健	同豊號	인삼 매매를 둘러싼 사기사건	1/2
1-31	6	광서 34년 10월 8일	稅關長	甘華峰	휴가로 인해 薪金 미지급	4/22
1-32	6	선통원년	閔永雨	鍾成玉	계약 파기와 위약 분쟁 맞소송	5/6

유형: 1) 외상대금 미상환, 2)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담보 가옥 처분, 3) 임대료 관련 안건, 4) 임금 체불, 5) 채무자 불법 감금, 6) 기타. 소송발생 연월일은 각 안건의 상황마다 다르기 때문에 문건의 처음 생성날짜를 택했다. 錢債案의 권/호는 고유번호를 따랐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_ 華商 간 소송

화상 간 소송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원고가 총영사 마정량에게 품을 올리면서 시작된다. 그러나 그 처리과정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화상이었기 때문에 중국 법률에 의해 총영사 마정량이 판결했다. 소송의 처리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송이 시작되면 마정량은 소송을 제기한 華商에게 조사하고 결정을 내리기까지 기다리라는 批文을 내리는 한편, 총순경청에 피고를 철저히 조사하고 심문하라고 지시한다. 소송인이 제기한 사실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단 총순경청에서 순사를 파견하여 초동수사를 한다. 이에 따라 피고와 원고에게 각각 某月 某日 某時에 총영사부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낸다. 피고가 도주했을 경우 피고와 관련 있는 자를 소환하여 조사하고 공술을 받는다. 총순경청에서 원고와 피고를 소환하여 각각 공술을 하게 하고 원고와 피고가 엇갈린 진술을 할 경우 대질심문을 하거나 관련 증인을 세워 공술하게 한다. 이상의 심문과 공술을 거친 다음 총순경청은 소송인이 제기한 사실과 총순경청이 조사하고 파악한 사실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총영사 마정량에게 보고한다. 마정량은 보고된 각종 조사와 심문 보고서, 첨부된 부채 목록, 각종 영수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批文을 내려 판결한다.

특이한 것은 이전 시기 주한 공사들의 批文에 비해 마정량의 비문은 상당히 긴 것이 특징이다. 이전 시기의 주한 공사들은 간단하게 판결내용만을 서술한 批文을 내렸지만, 마정량의 비문은 우선 이제까지의 소송 진행상황을 서술하고 이와 더불어 판결 근거를 조목조목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는 분쟁을 공평, 타당하게 판결함으로써 국가의 권위와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마정량의 판결문은 상당히 성실하고 분명한 원칙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화상 간 분쟁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총 28건 중 經紀의 횡령이나 동업자 간 채무분쟁 등 동업과정에서 발생한 안건 6건, 임대료 체납 4건, 부채 미상환 4건, 공사대금 미지급 3건, 외상거래 분쟁 2건, 부채승계 2건, 형제 간 가산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쟁 1건, 부채 미상환 날조 1건, 채무 분할 상환 1건, 白契 담보처리 1건, 영업중지 후 세입자 점포정리 1건, 홍삼 매매 중개 사기 1건, 토지권리 분쟁 1건이다.

화상 · 한상 간 분쟁에서 외상대금 미상환 도주가 가장 많았던 것에 비하면, 華商 간 분쟁은 주로 동업자 사이의 회계 문제, 경리의 업무 태만, 채무분쟁 등 동업자 간의 불화로 인한 소송이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화상은 모두 화상조직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상 간 분쟁의 처리에서 各幇 董事의 역할과 기능이 커진다.[43] 화상 간 채무소송은 마정량의 명에 의해 각방 동사에게 맡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채무분쟁은 화상의 영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세한 회계장부와 같은 것을 분석하는 일은 전문성이 결여된 순경청에서 조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던 듯하다. 이는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동업자 간의 분쟁을 상세히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번 안건은 동업자 간에 점포를 공동 운영하다가 한 사람이 고향에 귀국한 틈을 타서 나머지 동업자가 점포를 임의로 닫아버려 발생된 소송이다.[44] 2-2번은 經理에게 영업을 맡기고 잠시 귀국했는데 경리가 점포의 돈을 횡령했다고 하여 제기된 소송이다.[45] 2-3번은 주변 점포의 추천으로 고용한 경리에게 영업을 일임하고 고향에 다녀왔는데, 경리가 경영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도주했다며 그를 추천한 사람과 연루시켜 제기한 소송이다.[46] 이는 경리가 도주한 상황에서 추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상의 3건은 모두 동업과정에서 동업자 일방이 귀국한 것을 계기로 발생한 사건이다. 화상의 귀국 동기는 대부분 부모님의 병환 등으로 갑작스럽게 귀국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오랜만에 귀국하게 되면 다시 한성으로 돌아오기까지 최소한 한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남아 있는 동업자 혹은 경리에게 전적으

43) 1884년 처음으로 화상조직인 중화회관이 설립되었는데 한성의 화상은 모두 여기에 등록되어 各幇 속에 소속되어 있었다.
44) 錢債案卷(一), 9號
45) 錢債案卷(六), 38號
46) 錢債案卷(六), 45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영업을 일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돌아와서 보면 떠나기 전 상황과는 영업상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남아 있는 동업자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면 의심이 들게 마련이다. 그럴 때 소송이 제기된다.

2-5번과 2-6번은 동업한 두 사람 간에 회계장부 처리의 불분명이 원인이 되어 제기된 소송이다. 화상 중에는 그 교육정도가 낮아 문맹인 경우도 있었다. 이럴 때 2-5번의 경우처럼 장부의 금전출납을 한 사람이 전담하게 되면 회계장부를 속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상대방을 의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2-6번처럼 동업자 간 서로 말이 다르고 회계가 불명확한 경우도 있었다.[47] 2-4번 안건은 대표적인 동업자 간 출자금 분쟁이다. 이 안건은 사건의 발생에서부터 안건 종결까지 온전하게 문건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세히 분석해 보면 동업자 간 출자금 분쟁상황과 그 처리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

京幇商人 陳兆祥은 1905년 산동상인 綦耀秀와 한성에 간장 점포를 개설했는데 진조상이 2천 440원을 출자하고 기요수는 집사(경리)로 경영을 담당했다. 즉, 진조상은 股東이고 기요수는 노동력을 제공한 身股로 合夥형태였다. 진조상은 경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기요수는 자신의 아들들을 고용하여 경영했다. 이는 출자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기요수가 영업을 하다 손해가 나자 진조상이 기요수에게 출자금 상환을 요구하며 기소했다. 이는 진조상이 기요수에게 경영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기요수는 이에 대해 어음 2장을 써주고 6명의 보증인을 세웠다. 그 후 기요수와 그의 아들들은 도주하고 보증인의 상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정량은 한국에 남아 있는 기요수의 재산으로는 진조상에게 진 부채를 상환할 길이 없기 때문에 본국에 남아 있는 재산이라도 있으면 상환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기요수의 원적지에도 기요수의 친속이라고는 기요수의 처밖에 없고 그 소유도 초가집 방 세 칸과 2畝 2分의 땅이 전부였다. 더 이상 추궁해 봐야 돈이 나올 곳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이를 환금한 庫平銀 125원을 각 상호에

47) 錢債案卷(一), 1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게 공평하게 분배하고 나서 안이 종결되었다.[48]

이 안건은 화상의 채무에 대한 여러 가지 관행을 말해 주고 있다. 즉, 출자와 경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전형적인 합과기업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출자자는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대신 身股인 經理에게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채무에서 무한책임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일차적으로 경영을 담당한 자가 경영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채무자가 채무상환 능력이 없고 도주한 상황에서는 보증인이 대신 상환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마저 실현 가능성이 없으면 본적지의 친속에게까지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 구조였던 것이다.

부채가 승계되는 경우는 이 안건뿐이 아니었다. 2-20번은 남편의 미상환 부채를 미망인이 승계한 경우이고[49] 2-21번 안건 역시 보증인이 채무를 승계한 경우이다.[50] 2-24번의 경우에도 채무자를 대신하여 형수가 일부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해당 점포의 각 股東이 대신 지불한 경우이다.[51]

채권자와 채무자의 갈등은 극한상황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2-19번 안건은 부채 상환 요구를 받아오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칼을 들이대고 위협하다 칼로 자해한 사건이다.[52] 2-14번의 경우는 채권자가 부채 상환을 추궁하자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몸싸움이 붙었는데, 채무자가 채권자를 한강 물 속으로 끌고 들어가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사건이다. 그 후속처리로 기소되었다.[53]

이상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한성 화상 간의 네트워크이다. 화상은 총영사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공권력에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편, 화상들 자신이 상인들 간의 정보망을 통해 해당 피고인이나 그의 친척(아버지 혹은 형제)들의 자금 사정이나 상업동태를 파악하고 있다는 사

48) 錢債案卷(六), 53號
49) 錢債案卷(一), 6號
50) 錢債案卷(六), 50號
51) 錢債案卷(三), 12號
52) 錢債案卷(二), 18號
53) 錢債案卷(五), 17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실이다. 소송을 제기한 후 사건의 해결이 시간적으로 지연이 되거나 사건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면 화상들은 여러 차례 계속해서 품을 올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사건의 해결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2-13번의 毛永順 사건이 대표적인 예이다. 산동출신 화상 모영순이 成興永 주인 孫緖義에게 1천여 원의 빚을 졌는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상환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나 손서의가 다른 화상들의 정보망을 통해, 모영순이 실제 상환할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손서의의 호소로 북방동사도 품을 올려, 손서의가 파악한 것이 사실이라며 해결을 촉구했다. 이에 마정량은 그들의 말에 따라 모영순을 다시 소환하여 심문하고, 청주에 있는 모영순의 부동산을 모두 봉해버리고 점포의 화물로 강제 상환하게 했다. 또한 모영순을 본국으로 압송하여 다시는 한국에 오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이러한 사실은 한성의 화상네트워크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화상들 간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던 상관행이 있었을 것이고 화상들 간의 활발한 정보교환을 통해 한성의 상업계는 일정한 상질서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비단 한성뿐 아니라 지방까지 연계되었던 듯하고, 화상들뿐이 아니라 韓商, 日商도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연계망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만일 이러한 질서를 파괴하고 도주를 한다는 것은 곧 한성의 상업계에서 퇴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시 한성의 상업계는 일정정도의 신용을 담보로 하는 사회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모영순을 본국으로 압송하고 한국에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명령한 것은 당시로서는 화상에게 내려진 가장 엄한 처벌이었다. 모영순 사건 이외에도 2-22번이 그러한 예이다. 마정량은 피고의 죄질이 나쁘거나 官의 명령에 불복할 경우, 엄히 다스리고 한국에 다시 오지 못하도록 명령함으로써 한성의 화교사회에 경계를 보였다. 죄인을 본적지로 압송할 때도 철저히 감시하여 본적지의 관청에 인도하는 등 그 후속조치도 철저하게 지시했다. 그러나 한편 마정량은 상질서 확립이나 중국 전통 윤리를 견지하고자 노력한 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예를 들어 2-22번의 경우는 형제 간의 재산분쟁인데, 마정량은 북방동사에게 안건의 처리를 위임한 바 있다. 이때 마정량은 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결의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형제의 우의를 상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도록 지시했고, 이를 따른 동생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다.[54]

이상으로 미루어 보아 마정량은 한국 화교사회의 도덕적 기강 확립과 건전한 상관행을 통해 상업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상 간 소송의 유형별 분류와 소송내용을 작성하면 표 2와 같다.

〈표 2〉 화상 간 소송의 유형별 분류와 소송내용

번호	안건 유형	소송 발생 연월일	가해자 (中)	피해자 (中)	소송 내용	錢債案 (권/호)
2-1	1	광서 32년(1906) 8월	李茂功	孫維庚	동업자 간 불화 및 영업정리	1/9
2-2	1	선통원년(1909) 9월 24일	張瑾廷	賴文藻	經紀의 돈 횡령 사건	6/38
2-3	1	선통원년 12월 10일	王香山, 王靖軒 王德新	楊錫光	경리의 영업 태만 도주	6/45
2-4	1	선통 2년(1910) 7월 5일	綦耀秀	陳兆祥	동업자 간 출자금 분쟁	6/53
2-5	1	광서 32년 윤4월	陳信	曲隨宜	동업자 간 회계처리 불분명	1/3
2-6	1	광서 32년 4월 28일	姜日文	畢仁然	동업자 간 회계 불분명	1/1
2-7	2	선통원년 3월	王定欽	黃月亭	가옥 임대료 미지불	5/11
2-8	2	광서 32년 8월 26일	姜培桂	怡泰	점포 임대료 미지불	2/12
2-9	2	광서 34년(1908) 5월	周端夫	田渭安	가옥 전세 임대료 미상환	3/8
2-10	2	광서 34년 6월 29일	劉貴臣	同順泰	대출금 및 가옥 임대료 미상환	3/14
2-11	3	광서 32년 7월 22일	陳兆麟	劉乾元	부채 미상환	1/8
2-12	3	광서 32년 9월	苑景春	香泉居	부채 미상환	2/13
2-13	3	광서 32년 8월	毛永順	成興永, 員春盛, 永盛利	채무 미상환	2/10

54) 특히 이 안건은 집안의 재산분쟁으로, 북방동사가 처리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중국의 본적지로 돌려보내져 친족에게 판결해 줄 것을 요청하여 해결했던 안건이다. 錢債案卷(一), 5號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14	3	선통원년 4월 13일	董志鎬	田由申	대출금 미상환	5/17
2-15	4	광서 32년 9월	閻廣善	裕豊德, 天成德	공사대금 미지불	2/17
2-16	4	광서 34년 12월 16일	徐坤生	叢文炳	가옥 수리금 미지급	4/20
2-17	4	선통원년 윤2월	天利號	王文淸	공사대금 미지급	5/8
2-18	5	광서 32년 6월 28일	劉金銘	東昌恒 등	외상거래 후 미상환 도주	1/7
2-19	5	광서 32년 12월 24일	耿玉安	陳老鐵	외상대금 미상환을 원인으로 칼로 위협하고 자해	2/18
2-20	6	광서 32년 5월 11일	張德福, 張劉氏	袁敬之	남편 미상환 부채 미망인이 승계	1/6
2-21	6	선통 2년	譚德龍	劉華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보증인이 대신 상환하게 한 사건	6/50
2-22	7	광서 32년윤4월 25일	王開順	王開潤, 王開仁	형제 간의 家産 분쟁	1/5
2-23	7	광서 34년 6월 1일	雷珣	劉瑾臣	부채 미상환 날조 사건	3/9
2-24	7	광서 34년 6월 13일	鄭元輝	德興號 各 股東	채무 분할 상환	3/12
2-25	7	선통원년 2월 19일	劉貴臣	楊吉貞	백계 담보에 대한 처리	5/7
2-26	7	선통 2년 3월 20일	申文鐸	譚占魁	영업 중지로 인한 세입자의 점포 정리	5/12
2-27	7	선통원년 4월	蘇子海	王瑞亭	홍삼 매매 중개 사기	5/15
2-28	7	선통원년 11월 24일	張有三, 耿全發	王仁升	토지에 대한 권리 분쟁	6/43

유형: 1) 동업자 간 분쟁, 2) 임대료 체납, 3) 부채 미상환, 4) 공사대금 미지급, 5) 외상 거래문제, 6) 부채 승계, 7) 기타

화상 · 일상 간 분쟁에서는 15건 중 임대료 체납이나 임금체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화상 · 일상 간 분쟁은 주석으로 처리하기로 한다.[55]

55) 華商 · 日商 간 분쟁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이 각 개항장 등 지방의 주요지역에 이사청을 설치하면서 그 관할지 거류 일본인의 재판권도 소유하도록 했고, 각 이사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청의 부이사관이 이를 전담했다. 화상 · 일상 간 분쟁을 유형별로 분석하면, 총 15건 중 임금 체불 6건, 임대료 체납 4건, 목재대금 분쟁 2건, 외상대금 미상환 1건, 압록강변 삼림벌채권 분쟁 1건, 채무자의 貨物 분할 처리 1건이다. 화상 · 일상 간의 소송은 대체로 임금체불이나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안건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화상 · 일상 간 소송은 국제분쟁임에도 華商 · 韓商 간 소송에서처럼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日商을 대하는 화상의 태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화상 · 한상 간 분쟁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華商이 한국인 피고를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결방법에서도 피고의 중개인이나 친인척을 감금하거나 구타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자주 보이고 있고, 해결이 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화상이 여러 차례 稟을 올려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총영사 마정량도 한국인 가해자에 대해서는 일본 이사관에게 여러 차례 조회를 보내 사건의 해결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거나 한성부윤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보인 바 있다. 그러나 채무소송 안건이라는 문건의 한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일본인과의 분쟁처리에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日商에 대한 華商의 기소장에는 체불임금이나 임대료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청하는 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만 남아 있을 뿐, 처리 과정이나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문서가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화상 · 일상 간 소송은 주로 1909년과 1910년에 집중되어 있다. 총 15건 중 9건이 1909년과 1910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6건이 1906년부터 1908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는 일상의 수가 급증한 것이 원인이었겠지만 한국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커져 한일강점이 임박한 시기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화상 · 일상 간 소송의 유형별 분류와 소송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안건 유형	소송 발생 년 월 일	가해자(日)	피해자(中)	소송 내용	錢債案 (권/호)
3-1	1	광서 32년 10월	藤勝組	孫培滿, 樂春盛, 袁木堂 등	임금 체불	2/16
3-2	1	광서 34년 8월	渡邊章	王成金, 于遵海	임금 체불	3/11
3-3	1	선통원년 9월	早川組, 川口芳三	董界信, 孫仁江, 宋芝遠	임금 체불	6/39
3-4	1	선통원년 10월 30일	大東洋行	張炳長	임금 체불	6/41
3-5	1	선통2년 3월	遠山金三郎	鄭福卿	임금 체불	6/49
3-6	1	선통원년 10월	福井龜太郎, 井上作藏	劉書仁	공사대금 미지급	6/40
3-7	2	광서 34년 8월 19일	山下英爾	王新川	건물 임대료 체납	4/15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Ⅳ. 화상의 상관행

1_ 한성의 유통구조 속 화상

이상 馬廷亮 시기 錢債案卷에 수록되어 있는 총 75건의 안건을 유형별로 모두 분석해 보면 외상거래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사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외상거래로 인한 소송은 대부분 韓商과 華商 사이의 소송이었다. 외상거래로 인한 분쟁이 華商 간, 혹은 華商 · 日商 간에서는 극히 적은 반면, 한상 · 화상 간 분쟁에서는 최소 5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들의 외상거래가 한성 내 상품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렇다면 소송안건에 등장하는 한상과 화상은 한성의 유통구조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것일까? 이들의 거래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것일까?

본고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錢債案은 모두 소송장과 그 처리과정상에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8	2	광서 34년 12월 3일	佐佐木兆治	鄭福卿	가옥 임대료 체납	4/19
3-9	2	선통원년 2월 13일	辻源吉	林澤成	임대료 체납	5/2
3-10	2	광서 34년 5월	相川彦市	黃月亭	토지 임대료 미납	3/10
3-11	3	선통원년 3월 5일	李德植, 安敎庠, 閔炳學	辛瑞山	목재 이중 판매 분쟁	5/9
3-12	3	선통 2년 1월	服部時次	殷鳴岡	목재대금 지불 지연	6/47
3-13	4	광서 34년 2월 24일	仁科三也	鄧其芬	외상 거래 후 부채 미상환	3/2
3-14	4	선통원년 2월	志崎信太郎	張時英	압록강변의 삼림 벌채권 분쟁	5/1
3-15	4	선통원년 11월 3일	龐孝序, 宋展楓(中)	森分龜吉(日)	도주 채무자의 화물 처리	6/42

유형: 1) 임금 체불, 2) 임대료 체납, 3) 목재대금 분쟁, 4) 기타

서 발생한 문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한상과 화상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소송을 제기하게 된 이유, 한상 점포의 소재지, 해당 한상과 화상 간의 외상거래 내역, 해당 한상의 채무금액과 한상의 현재 소재파악 유무 등 소송에서 필요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해당 한상이 객주인지 여각인지 도매상인지 소매상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고 심지어는 취급 품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소송안건이 갖는 사료 성격상의 한계로 인해 한성의 유통구조 속 화상이 차지하는 위치나 그들의 거래방식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소송안건에 드러나 있는 명백한 사실을 바탕으로 화상의 상업 활동 실상을 추적해 볼 수는 있을 것이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상 16건의 외상거래 채무소송 가운데 화상은 주로 개인의 이름이 아닌 점포 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화상이 어떤 형태로든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에 비해 소송을 당한 한상은 보통 한 사람 혹은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한두 명인 경우가 많다. 이는 한국인은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상호를 쓰지 않고 주로 성명을 사용하거나 布木廛, 乾材局, 典當局 등 취급 품목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하는 습관이 있는 것과도[56]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화상이 연명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상이 여러 화상과 동시에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유형의 채무 안건과 비교해 보아도 외상거래로 인한 분쟁은 원고가 여러 상호인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외상거래 채무소송은 한상이 개인적으로 외상거래를 하다가 채무를 졌다기보다는 한성 내 貨物의 유통구조 속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액수도 상당한 것이었다.[57] 도주한 한상의 점포가 소재하고 있던 곳은 주로 한성의 惠橋, 小廣橋, 南大門 水橋, 東大街 등 한성의 상권이 형성되어 있던 곳이었다.

56) 정긍식, 1992, 『國譯 習慣照査報告書』, 韓國法制研究院, 407쪽
57) 16건 중 부채규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2건을 제외하면 1만 원 이상이 1건, 1천 원 이상이 5건, 1백 원 이상이 8건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에서는 상품 거래 시 대개 客主(혹은 旅閣)의 손을 거친다. 객주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일단 생산자 혹은 다른 상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물건을 한데 모아서 이를 모든 상인에게 유통시키는 위치에 있었다.[58] 객주는 국내 유통구조의 모든 거래에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였다. 특히 개항 후 개항장을 기반으로 객주가 출현했는데, 이는 華商이나 日商 등 외국상인을 상대로 수출입 상품유통을 담당하는 한국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외국상인들은 언어나 지리에 익숙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는다면 유통구조나 한국의 상거래 관습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정부 측에서도 국내 유통과정에서 객주나 거간을 통하지 않는 거래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금지해 왔다.[59]

따라서 수출품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객주를 통해 화물을 수집하고 방매했지만, 특히 수입품의 경우 외국상인과 韓商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국인 객주의 알선을 통해 거래하는 관습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60] 화상과 일상은 한성에 점포를 열고 직접 한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도 한편으로는 한국 객주를 통해 화물을 분배하여 판매했다. 수입상과 소비자 중간에는 여전히 객주업을 하는 소상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송 안건에서 화상과 거래했던 한상은 한국인 客主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의 객주는 아니었을지라도 한성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중간매매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안건 속 한상의 채무는 한성의 유통구조 속에서 화상이 한상에게 화물을 외상으로 도매하거나 위탁판매하고 나중에 화물대

58) 朴元善, 1982,『客主』, 연세대학교출판부, 46~50쪽; 朴元善, 1981,「韓國固有의 商事制度－韓國商法史的考察」,『東方學誌』27, 98~101쪽; 朴元善, 1981,「坐商」,『법사학연구』6, 117쪽

59) 일찍이 1884년 4월 26일, 식물 등 출국에 제한이 없는 모든 화물은 반드시 상회나 객주를 통해 등록한 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다는 인천감리의 고시가 있었다.『舊韓國外交文書』第2卷(日案), 1884. 5. 8, 김영신, 1998,「개항기 객주에 관한 일고찰－개항장 객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31쪽에서 재인용.

60)『日省錄』21, 正祖 19年(1875) 9月 9日, 崔塘, 앞의 글, 188쪽에서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개항장 객주나 한성의 화상들이 한상에게 판매한 상품은 주로 수입품이었다. 화상은 개항 이후 중국의 비단이나 삼베를 수입하여 한상을 통해 한성에 유통시키거나 영국산 면제품을 수입하여 유통시켰다. 특히 당시 동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영국제 면직물의 대부분은 일단 상해로 수입되어 거기서 다시 화상을 통해 동아시아의 각 개항장으로 수출되었다. 나가사키나 인천 역시 상해를 중심으로 한 화상의 유통네트워크 속에 편입되어 있었다.[61] 이후 수입물품은 점차 다양해졌지만 섬유제품의 비중은 여전히 높았고 잡화나 洋貨 등도 비교적 많았다.[62] 16건의 외상거래 소송안건 중 채무자의 점포는 포목점 5개, 잡화점 3개였고, 나머지 취급품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포도 포목점이나 잡화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과 거래했던 화상의 취급품목도 포목이나 잡화였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소송을 제기한 화상의 상호는 여러 안건에서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16건의 안건 중 洪順福처럼 많게는 7건에 관련되는 상호도 있었다. 그 밖에도 大成義는 6건, 瑞盛春은 4건, 元春興은 4건, 德增祥은 4건, 元春茂는 3건, 德順福은 3건, 廣和順은 3건, 義盛恒은 3건, 同聚恒은 3건, 永茂盛은 2건 등에서 채권자였다. 이는 화상이 여러 점포의 한상과 거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상이 연명으로 한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한상이 여러 화상과 동시에 거래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화상의 입장에서도 한두 명의 한상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한상과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7건의 소송제기와 관련되어 있는 홍순복의 경우, 거래하는 모든 점포와 소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일곱 개 이상의 한상 점포와 거래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들 간의 거래방식은 대개 외상거래였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

61) 石川亮太, 2008,「조선 개항후 중국인 상인의 무역활동과 네트워크」,『역사문제연구』20, 11쪽

62) 石川亮太, 2007,「開港期漢城における朝鮮人・中國人間の商取引と紛爭－『駐韓使館檔案』を通じて」,『年報朝鮮學』10, 10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 증거 자료 중에 채무목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의 목록이다. 이를 돈으로 환산한 것이 부채금액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상물품에 대해 어음을 발행하는 경우는 있지만 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마정량 시기 전채안 중 어떤 안건도 채무목록 이외에 계약서를 그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외상거래 대금을 청구하고 결산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잘 알려진 한국 華商 陳裕光의 말에 따르면 화상은 1년에 한 번 혹은 2, 3번 정도 결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63] 따라서 물품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결산할 때까지는 외상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2_ 채무변제의 책임범위

상인 간에 외상거래가 지속되려면 일정기간 내에 물품대금의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암묵적인 상관행이 무너지고 채무자(한상)가 도주하게 되면 Ⅲ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채권자(화상)가 해당 점포의 '同夥'나 '經紀'를 추궁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동과'는 주인과 어떤 관계이며 '경기'란 어떤 존재이기에 주인이 도주하면 채무변제를 추궁당했던 것일까? 訴狀은 중국인이 작성한 것이므로 '동과'나 '경기'는 중국식 표현이다. 우선 이들의 동업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전통 중국의 기업형태와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화상은 한국 점포의 운영구조와 사용인을 중국 기업의 기본구조에 투영하여 이해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통기업은 合夥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즉, 대개 혈연이나 지연 등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인 이상이 공동출자하여 합작하는 전통 기업형태를 合夥 혹은 合股라고 한다. 합과에서는 股東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經理를 두어 전문경영을 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점포의 경우 출자자가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출자자 중의 한 명이

63) 陳裕光, "華僑" 第10話, 《中央日報》(1979. 9. 28, 5면), 제4328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경영에 참여하기도 하는 등 여러 형태가 존재했다. 즉 합과는 법률적으로 정비된 제도에 따라 규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 업종, 자본력, 경영능력 등 다양한 개별적 상황에 따라 조직되었기 때문에 그 경영형태는 상당히 다양했다.[64]

그런데 화상과 한상의 거래방식은 중국 본토에서의 화상의 상관행과는 다른 형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화상 간의 거래는 중국 본토에서 통용되는 상습관에 따라 거래가 성사되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화상 · 한상 간 거래에서는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장소가 한국의 한성이었기 때문에 화상 · 한상 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관행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한성의 화상 · 한상 간 외상거래에서 '동과'와 '경기'의 책임소재를 살펴보기 위해 1-5번 안건을 예로 들어 보자.[65] 이 안건은 16건의 소송안건 중에서 부채액이 가장 많고 관련된 화상 수도 가장 많은 안건이다. 韓商 林炳圭는 洪順福 등 화상으로부터 비단, 포목, 모피 등을 어음을 주고 구입했는데 그 금액은 1萬1千8百35圓7角5分이었다. 그런데 임병규가 외상대금을 상환하지 않고 도주하자 화상들은 남아 있는 동과 朴柄祐와 경기 羅俊哲이 임병규와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화상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당시 박병우는 실제로 임병규와 공동으로 영업을 했고, 화상으로부터 외상으로 가져간 貨物의 어음은 대부분 박병우가 친필로 쓰고 임병규는 도장만 찍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중국식으로 말하면 임병규와 박병우가 함께 경영에 참여한 합과관계라는 의미이다. 중국의 전통 상관행에서 채무변제의 의무는 股東 전체에게 있었다.[66] 그러므로 임병규를 대신하여 박병우가 화상의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화상들은 박병우의 夏布 8疋을 탈취해 갔다. 그런데 이런 화상들의 주장과는

64) 鄭址鎬, 2001, 「明淸時代 合夥의 經營形態 및 그 特質－中國의 傳統的 企業經營에 관한 一考察」, 『明淸史硏究』 15 참조; 鄭址鎬, 2002, 「傳統中國 合夥의 債務負擔에 관한 商事慣行－近代法律과의 충돌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79, 125쪽

65) 錢債案卷(三), 6號

66) 田寅甲, 2004, 「중국 근대기업의 지배구조와 合夥 慣行－지연망의 '사회자본'化」, 『歷史敎育』 89, 211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달리 박병우는 자신은 결코 임병규와 동업한 것이 아니고 임병규에게 6천 원을 빌려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화상이 탈취해간 夏布 8필을 돌려달라고 한성부윤에게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렇다면 박병우는 화상들의 주장처럼 임병규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박병우의 말처럼 임병규에게 단순히 자금을 빌려준 것에 불과했던 것인가? 합과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按股分利의 원칙하에 출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채무손실에 대해서는 합과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다. 합과의 형태와 운영이 반드시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되었다기보다는 각각의 경우가 다양했기 때문에 합과 성립 시 체결하는 계약문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67] 다만 합과 체결 시 손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서도 많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출자금에 비례하여 이익을 분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손실에 대해서도 출자금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임병규와 박병우가 동업관계에 있었다면 박병우는 고동으로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박병우가 고동이라고 할지라도 출자금의 비율에 따라 자신의 몫에 대한 책임이 있을 뿐 임병규의 몫까지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주로 채무변제를 받을 길이 막막해진 채권자들은 왕왕 다른 고동이나 도주한 고동의 근친에게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었고, Ⅲ장에서 보았듯이 실제로 채무자의 근친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다만, 당시 아직 여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68] 채무변제는 민간의 상관습에 따라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중국의 민사습관

67) 鄭址鎬, 2002, 「傳統中國 合夥의 債務負擔에 관한 商事慣行－近代法律과의 충돌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79, 125~126쪽

68) 당시 중국은 서구 법률개념과 이론을 바탕으로 전통 법을 근대 법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전면적인 상법을 다룬 『大清商律草案』은 1910년에서야 반포되었다. 또한 포괄적인 민사법을 규정하고 있는 『大清民律草案』은 1911년에 제정되었지만 청의 붕괴로 실시되지 못했다. 중화민국 북경정부에 의해 1925년 『民國民律草案』 債編이 제정되었지만 정권의 붕괴로 역시 정식으로 실시되지 못했고, 정식 民法은 1930년 남경국민정부에 의해 공포되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알기 위해서는 민국초기의 民商事 습관조사를 통해 간행된『中國民事習慣大全』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조사는 민국초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당시의 민상사 관행의 예를 보여주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중 直隸 淸苑縣의 습관을 보면, 채무상환의 의무는 합과인이 분담하여 동일하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湖北省의 채무상환 습관도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竹谿, 興山, 漢陽, 麻城, 潛江, 巴東 등 현에서는 합과인 중에 상환 능력이 없는 자의 몫은 기타 능력이 있는 합과인이 평균하여 분담한다고 되어 있다. 다만 鄖縣에서는 이를 긍정하면서도 분명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고, 穀城縣은 대신 분담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五峯縣에서는 능력이 있는 합과인이 능력이 없는 합과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도와주는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절대 대신 상환하지는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69] 京山縣은 만일 합과인이 모두 도의적이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竹山縣은 상환 능력이 없는 합과인은 능력 있는 합과인에게 잠시 상환해 줄 것을 청하고 나중에 상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이상, 같은 호북성에서도 현마다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그 처리가 간단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고동이 자신의 지분만큼만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은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관행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에서 자금을 출자한 고동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관습이 사회적으로 여전히 당연시되었다는 것을[70] 말해 준다. 그러므로 도주한 한상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화상이 나머지 한상을 상대

69) 法政學社 編纂, 1924,『民事習慣大全』, 廣益書局印行, 第1編 債權, 第6類 關於淸償之習慣, 施沛生 編, 2002,『中國民事習慣大全』, 상해서점출판사

70) 田寅甲, 2005,「中國 近代企業과 傳統的 商慣行－合股慣行, 地緣網 그리고 社會資本」,『東洋史學研究』90, 77쪽. 채무상환에 있어서 채무자가 興隆票를 작성하여 나중에 기업이 흥하면 채무 일체를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江蘇省 江寧縣, 湖北省 竹谿縣, 麻城縣, 漢陽縣, 鄖縣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施沛生 編, 2002, 앞의 책, 第1編 債權, 第1類 賃貸借之習慣, 第6類 關於淸償之習慣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무한책임을 요구했던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71]

그런데 이 안건에서 화상의 주장과 거간의 증언에 따르면, 박병우가 임병규의 점포에서 貨物과 돈을 관리하고 어음발행에 관여했던 것만은 확실하다. 박병우는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든 점포의 경영과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박병우는 임병규의 공동 출자자이거나 최소한 임병규에게 고용된 점포의 經理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박병우가 단순히 임병규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경리로 고용되었던 것인지, 아니면 출자자의 하나로 노동력을 제공한 身股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박병우가 점포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따라 그 책임의 유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소송안건의 핵심은 박병우와 임병규가 동업관계인지 아닌지의 여부였다. 따라서 화상이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병규와 박병우가 확실한 동업자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급선무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經紀는 어떤 존재일까? 화상이 한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經紀'라는 용어이다. 대개 한상이 화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화상은 자신의 점포에 고용되어 있는 한국인 경기를 대동하여 해당 점포에 쫓아가거나 한국인 경기를 해당 점포에 보내어 전후 사정을 살피게 한다. 언어가 불통한 한상과의 소통을 위해 한국인 경기를 활용하고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것은 대부분의 화상이 이러한 한국인 경기를 고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여러 상호에서 중복하여 동일 경기 이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인 경기 한 사람이 한 점포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었던 듯하다. 이들 한국인 경기는 여러 상호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한상과 화상 간의 매매를 중개했던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한

71)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합과를 처음으로 법률로 규정한 『대청민률초안』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각 합과인은 반드시 손실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부족액을 부담해야 하는데, 만일 합과인 중 그 부담액을 지불할 수 없는 자가 있을 경우는 다른 합과인이 평균하여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했던 것이다. 그 이후 『민국민률초안』에서는 채무부담 능력이 없는 합과인의 부담은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다른 합과인이 고분에 비례하여 분담한다고 수정하였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역할을 하는 사람을 조선에서는 '거간'이라고 불렀다. 이 안건에서 화상의 訴狀에는 나준철의 직책이 '經紀'로 표기되어 있는데, 일본어로 작성된 일본이사관의 심문서에서는 '居間'으로 표기되어 있다. 중국의 경기와 한국의 거간이 완전한 동의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는 경기의 임무가 거간의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당시 한국은 상업 활동뿐만이 아니라 민사 중개에 이르기까지 각종 교섭에 반드시 중개인을 필요로 했다. 그 수요와 범위도 상당히 광범위하여 중개인을 통해 상거래하는 것이 마치 '國風'처럼 되었다고 평할 정도였다. 당시 화상이 한국 내에서 원활하게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필요했다. 화상이 한국에 오면 가져온 수입품을 객주를 통해 매매하기를 원하지만 누가 유능하고 신뢰할 만한지 알 수가 없을 경우, 거간에게 문의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거간의 임무는 거래 상대방을 물색하고 거래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간은 거래 상대방을 발견하고 다른 일방에게 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쌍방의 자금력이나 신용상태를 조사하고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 쌍방의 거래가 원만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보조역할을 했다.[72]

이미 언급한 객주도 도매업이나 위탁판매를 하는 중간상인이지만 거간도 중간상인이다. 그러나 객주는 주선의 의미가 강하고 자신이 직접 거래의 당사자가 되는 반면, 거간은 중개의 의미가 강하여 언제나 제3자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르다. 그런데 점포주인이 도주한 상황에서 '경기'에게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우는 일은 드물지 않았다. 이는 경기의 성격과 그 책임소재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되는 문제이다.

이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한국 측에서는 박병우의 대리인과 나준철을 포함한 한국인 경기 4명을 증인으로 심문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사관은 임병규와 박병우 사이는 동업관계가 아니라고 하며 화상이 탈취해간 박병우의 하포 8필

72) 大濱信泉, 「商業爲法要領」, 251쪽, 박원선, 1973, 「居間」, 『延世論叢』 10-1, 209쪽에서 재인용.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을 반환하도록 마정량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마정량은 임병규와 박병우가 동업한 것이 틀림없고 그것은 한국인 경기가 모두 아는 바라고 하면서 한국인 경기의 명단을 제출하여 증거로 삼고자 했다. 명단에는 이 사건과 관련된 화상의 상호와 한국인 경기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를 표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73]

〈표 3〉 1–5번 안건과 관련된 화상의 상호와 한국인 경기의 이름

번호	商號	韓人經紀 姓名	번호	商號	韓人經紀 姓名
1	榮大號	金應台	15	瑞盛春	李學煥
2	隆順號	田致明	16	義順興	金應台
3	永盛和	田致明	17	大成義	李學煥, 朴淳在
4	德順福	尹化錫, 金忠鉉	18	怡成號	孫興模
5	東興隆	朴鎭英	19	元增同	崔相俊
6	同和東	尹相琪	20	公源利	朴潤秉, 朴淳在
7	元春興	宋景弼	21	聚成號	崔相濂
8	元春茂	宋景弼	22	車聖桓	
9	東來號	宋景弼	23	朱陽燮	
10	同生東	車聖桓	24	金應台	
11	元增盛	金相悅	25	宋禹泰	
12	同聚恒	朴潤秉	26	金得珠	金相悅
13	德增祥	朴台秉	27	田致明	
14	洪順福	李學煥			

여기에는 21개의 상호와 상인 6명의 이름이 있고 각 상호는 거의 한국인 경기가 한 명 혹은 두 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화상의 점포에 고용되어 있는 거간이었던 듯하다. 예를 들어 田致明은 隆順號 · 永盛和의 거간이었고, 宋景弼은 元春興 · 元春茂 · 東來號의 거간이었으며 李學煥은 洪順福 · 瑞盛春 ·

73) 화상이 제기한 소장에는 同合東, 永盛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同和東, 永盛和로 표기되어 있다. 동일한 점포인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大成義의 거간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車聖桓 등 상호가 없는 경우는 점포 없이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田致明은 隆順號 · 永盛和의 거간으로 활동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거간과 객주는 영업상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거간은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내거간과 외거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외거간은 主家와 따로 살며 主家로 출근하여 客商과 貨物의 出入을 지시하거나 매일 화물의 시세를 보고하고 화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구전을 받는 자이다. 내거간은 主家에 함께 살며 일체의 업무를 담당 처리하고 주인한테서 이익을 배당받아 생활을 하는 자이다.[74] 따라서 앞의 표에 보이는 거간들은 화상과 연결되어 한상과의 일처리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한 상호에만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다른 상호의 경기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거간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내거간은 다시 同事居間과 努力居間으로 나눌 수가 있다.[75] 동사거간은 주인과 공동으로 출자하여 동업한 자를 말한다. 중국식으로 말하면 합과 관계이다. 노력거간은 자금의 출자자는 아니지만 노동력을 제공하여 점포의 경영을 담당하는 자이다. 그러나 소송안건만 가지고는 나준철이 외거간이었는지 내거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나준철을 내거간으로 볼 경우도 주인과 동업한 동사거간인지 단순히 노동력을 제공했던 노력거간이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중국 상관행에 적용시킨다면 전자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을 것이고 후자라면 채무변제의 의무는 없게 될 것이다.

한국에서는 거간이 거래를 중개할 때 매매 당사자의 일방이 어떤 사람인가를 상대방에게 알려 주는 것이 통례였다. 다만 중개는 매매 상대방을 확실하게 보증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순히 소개만 하는 경우라면 거간은 매매상에서 발생하는 어느 일방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 일방이 묵비를 원하는 경우 거간은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을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 거간이 당사

74) 朴元善, 1973, 「居間」, 211쪽
75) 朴元善, 1973, 위의 글, 212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자가 된 것처럼 그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76]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거간이 실제로 거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당사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 객주와 다르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거간은 단순한 중개인으로서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의 거간과 주인의 관계는 委任이냐, 都給이냐, 雇傭이냐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이다. 한국 고유의 거간은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내거간일 경우 거간과 객주와의 관계는 고용계약을 겸하기도 했기 때문이다.[77]

중국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經紀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상황을 증명할 뿐이지 보증의 책임은 지지 않았다는 것이 전술한 민상사습관조사에 보고되어 있다. 그러나 중간에 '경기'가 있어 중재하는 경우, 채권자는 '경기'를 통해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채무자는 '경기'를 통해 채무상환을 완료하는 구조였다.[78] 매매의 경우에도 '경기'는 매수인과의 가격교섭이나 대금지급 등을 대행하는 것은 물론 자신이 사실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서기도 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주한 상황에서 채권자인 화상이 조선인 경기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중간 역할의 '경기'는 화상의 상업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존재였지만 상거래에 따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단하는 것을 모호하게 만들고 분쟁을 야기하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지적도[79] 일리가 있다. 더구나 화상과 한상이 각각 자국의 商事제도를 통해 상대방 국가의 상사제도를 이해하거나 양자를 획일적으로 대비시킨다면 분쟁의 소지가 더 커진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상사관행의 차이가 화상 · 한상 간 분쟁을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였을 것이라는 점이다.

주인이 도주한 상태에서 동업자나 거간의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각 상

76) 정긍식, 1992, 앞의 책, 416쪽
77) 朴元善, 1973, 앞의 글, 218쪽
78) 施沛生 編, 2002, 앞의 책, 第1編 債權, 第3類 契約之習慣, 第4類 關於居間之習慣
79) 石川亮太, 2007, 「開港期漢城における朝鮮人 · 中國人間の商取引と紛爭－『駐韓使館檔案』を通じて」, 『年報朝鮮學』 10, 109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호마다 경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리는 상당히 곤란했던 듯하다. 특히 화상 · 한상 간 분쟁은 한청통상조약에 의거하고 있기는 하지만 조약상에는 상세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역시 세부적인 사항은 양국이 납득할 만한 상관습이나 상도덕에 의해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안건은 마정량의 묵묵부답으로 1년이 넘도록 해결이 되지 않았다.[80] 최종 결과를 알 수 있게 하는 문건이 없어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처리는 유야무야가 된 듯하다. 한중 간의 상사제도 및 상업사용인의 차이가 존재했고, 외상거래 시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이를 둘러싸고 양국 상인 간에 이와 비슷한 소송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Ⅴ. 맺음말

개항 이후 청은 전통적인 조공관계를 이용하여 한국 화상을 적극 지지함으로써 화상은 한성의 남대문 일대와 수표교 부근을 근거로 한성의 외국인 상권을 장악했다. 그러나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화상은 물러나고 일상이 화상이 물러간 남대문통으로 진출하여 한성의 중심상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반면 한상은 한성의 주요상권을 잃고 치열한 상업경쟁에 내몰리게 되었다. 특히 1906년에서 1910년 시기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변혁이 극심한 시기였다. 을사조약 이후 일제는 이사청을 설치하여 각 지역 영사관의 영사업무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한국인과 외국인, 일본인과 외국인 사이의 국제 소송분쟁도 처리하게 되었다.

「駐韓使館檔」 마정량 시기 '錢債案卷'에 수록되어 있는 75건의 채무소송 안건을 모두 분석해 보면, 화상 · 한상 간 소송, 화상 간 소송, 화상 · 일상 간

80) 錢債案卷(三), 6號

소송의 유형이 각각 다르고 처리과정도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화상 · 한상 간 소송 32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안건 유형은 외상거래 후 채무불이행 도주였다. 화상 간 소송 28건 중에서는 동업자 간 분쟁이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화상 · 일상 간 분쟁에서는 15건 중 임대료 체납이나 임금 체불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처리과정에서 화상 · 한상 간 소송과 화상 · 일상 간 소송은 필요시에는 양국이 합동 조사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韓中, 中日 양국이 각각 조사 · 심문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중국 총영사 마정량과 일본 이사관 사이에 조회문이 오가며 처리되었다. 화상 간 소송은 마정량의 명에 의해 총순경청이 심문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各幇 董事에게 일임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게 했으며 최종적으로는 마정량이 판결했다.

특히 안건의 처리과정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화상 간 네트워크의 존재이다. 화상은 총영사관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한편, 화상들 자신이 상인들 간의 정보망을 통해 해당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자금사정이나 상업동태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보를 총영사에 제공하여 사건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것은 화상이 각방 조직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화상 네트워크가 상당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는 의미이며 한성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연계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화상들 간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던 상관행이 있었을 것이고 이들 간의 활발한 정보활동을 통해 한성의 화교사회는 일정한 상질서가 유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화상의 상관행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화상 · 한상 간 분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외상거래 후 미상환 도주의 실례를 들어 별도로 분석했다. 외상거래 후 미상환 도주의 유형이 화상 간, 혹은 화상 · 일상 간에서는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데 비해 유독 화상 · 한상 간 소송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은, 이것이 한성의 상품 유통과정 속에서 발생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성의 화상들이 한상에게 판매한 상품은 주로 수입품으로 특히 洋布, 洋沙, 夏布 등 각종 섬유제품과 잡화나 洋貨 등이었다. 화상은 이러한 중국산 혹은 유럽에서 수입해 온 貨物을 한상을 통해 한성에 유통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수출입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품은 외국상인과 한상이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한국인 객주의 알선을 통해 거래하는 관습이 널리 통용되고 있었다. 안건에 나타난 이들의 거래 방식은 외상거래였다. 따라서 안건 속 한상의 채무는 한국의 유통구조 속에서 화상이 여러 한상에게 화물을 외상으로 도매하거나 위탁매매하고 나중에 화물 대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곳이 한성이었기 때문에 화상 · 한상 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관행을 따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채무변제 과정에서 채무상환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한상이 도주한 경우 화상은 도주한 한상을 대신하여 점포의 '同夥'나 '經紀'를 추궁하여 채무변제를 받고자 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 전통의 合夥기업이 채무상환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합과기업은 이익이 발생하면 출자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고 손실에 대해서도 출자금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다만 채무손실에 대해서는 합과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가 없고 합과 성립 시 체결하는 계약문서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도주로 채무변제를 받을 길이 막막해진 채권자들은 왕왕 다른 고동이나 도주한 고동의 가족들에게까지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아직 여기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채무변제는 민간의 상관습에 의해 처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로 분쟁의 해결은 중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에서 보편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되었다. 민국 초기에 간행된『中國民事習慣大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금을 출자한 고동이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중국의 관습이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 고동이 자신의 지분만큼만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원칙은 상해 등 대도시에서는 관행으로 정착되어가고 있었지만 전국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므로 도주한 한상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지 못한 화상이 나머지 한상을 상대로 무한책임을 요구했던 것이다.

또한 중국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經紀는 단순한 중개인으로서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채권자는 경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기를 통해 채무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채무자는 경기를 통해 채권자에게 채무상환을 완료하는 구조였다. 매매의 경우에도 경기는 매수인과의 가격교섭이나 대금지급 등을 대행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이 사실상의 매수인의 지위에 서기도 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도주한 상황에서 채권자인 화상이 조선인 경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게 되었던 것이다.

다만 안건에서 본 것처럼 한국과 중국의 동업자 관계, 주인과 사용인 관계가 각각 복잡하고 용어나 의미도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러한 관계는 한국 내에서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고 다양했다. 따라서 중국의 상사제도를 통해 한국의 상사제도를 이해했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다분했다. 더욱이 동업자 간, 주인과 사용인 사이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의 소재와 범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상인 사이에서 그 처리는 상당히 곤란했던 듯하다. 이러한 중국과 한국의 상습관의 차이가 한중 상인 간 분쟁 발생의 원인 중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둘러싸고 양국 상인 간의 비슷한 소송이 자주 발생했던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各司謄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근대한일외교자료』(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駐韓日本公使館記錄』(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統監府文書』(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高麗大學校亞細亞問題研究所 編, 1970, 『舊韓末外交文書』 第8卷(淸案1)
國會圖書館立法調査局, 1965, 『舊韓末條約彙纂』(上, 中, 下卷)
臺灣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所藏 總理各國事務衙門(02)－『駐韓使館保存檔案』(35)－馬廷亮: 訴訟案件(062)－錢債案卷(一~六)(07-12)
文海出版社印行, 1963, 『淸光緖朝中日交涉史料』(上, 下)
施沛生 編, 2002, 『中國民事習慣大全』, 上海書店出版社
楊昭全, 孫玉梅, 1991, 『朝鮮華僑史』, 中國華僑出版公司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編, 1972, 『淸季中日韓關係史料』
韓沽劤, 1982, 『韓國開港期의 商業研究』, 一潮閣
허영환, 1994, 『定都 600年 서울 地圖』, 범우사
강진아, 2007,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현대 동아시아 경제사」, 『역사비평』 여름호
강진아, 2007, 「동아시아경제사 연구의 미답지 :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 소장 朝鮮華商 同順泰號關係文書」, 『東洋史學研究』 100
강진아, 2008, 「廣東네트워크와 朝鮮華商 同順泰」, 『史學研究』 88
강창석, 1987, 「통감부 연구－이사청의 조직과 성격을 중심으로」, 『釜山史學』 13
구범진, 2006, 「'韓淸通商條約' 일부 조문의 해석을 둘러싼 한 · 청 외교 분쟁」, 『大邱史學』 83
김승욱, 2010, 「20세기 초(1910~1931) 인천화교의 이주 네트워크와 사회적 공간」, 『中國近現代史研究』 47
김승욱, 2011, 「19세기 말~20세기 초 인천의 운송망과 화교 거류양상의 변화」, 『中國近現代史研究』 50
김영신, 1998, 「개항기 객주에 관한 일고찰－개항장 객주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김호범, 1993, 「開港期 商業構造와 植民地商業體制의 形成에 관한 研究」, 『경제학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집』 2-1
김희신, 2010,「淸末(1882~1894) 漢城 華商組織과 그 位相」,『中國近現代史硏究』 46
김희신, 2010,「駐朝鮮使館의 화교 실태조사와 관리」,『明淸史硏究』 34
김희신, 2010,「漢城 開設行棧 개정 조항 교섭과 중국의 대응」,『東洋史學硏究』 113
盧相潤, 1987,「開港期의 韓國市場을 둘러싼 淸日의 貿易競爭」,『社會科學論集』 5
譚永生, 1976,「朝鮮末期의 淸國商人에 關한 硏究－1882年부터 1885年까지」, 단국대학교 사학과 석사논문
도면회, 1999,「일제 식민통치기구의 초기 형성과정－1905~1910년을 중심으로」,『일제식민통치연구』 1-1906~1910, 백산서당
朴慶龍, 1994,「統監府 理事廳 연구－京城理事廳을 중심으로」,『韓國史硏究』 85
박정현, 2010,「19세기 말 仁川과 漢城의 중국인 居留地 운영체제」,『東洋史學硏究』 113
박정현, 2010,「19세기 末(1882~1894) 朝鮮 華商의 조직과 상업 활동」,『中國史硏究』 66
박찬승, 2002,「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형성과정－1880년대~1903년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62
박찬승, 2002,「러일전쟁 이후 서울의 일본인 거류지 확장 과정」,『지방사와 지방문화』 5-2
서영희, 2006,「한청통상조약 이후 한중 외교의 실제와 상호 인식」,『동북아역사논총』 13
손정목, 1980,「開港期의 漢城內 外國人居留 經緯」,『韓國史硏究』 28
왕종현, 1998,「대한제국기 한성부의 토지 가옥조사와 외국인 토지침탈 대책」,『서울학연구』 10
원재연, 2000,「1880년대 門戶開放과 漢城府 南門內 明禮坊 일대의 사회, 경제적 변화」,『서울학연구』 14
李炳天, 1985,「開港期 外國商人의 內地商權 侵入－淸商 · 日商을 중심으로」,『經濟史學』 9-1
이영옥, 2007,「한중 민간소송연구, 1906~1910－張導之案 · 姚貴春案 · 劉金有案 등 살인사건을 중심으로」,『中國近現代史硏究』 35
이은자, 2005,「한국 개항기(1876~1910) 중국의 치외법권 적용 논리와 한국의 대응－韓中間 조약 체결 과정을 중심으로」,『東洋史學硏究』 92
이은자, 2006,「韓淸通商條約 시기(1900~1905) 중국의 在韓 치외법권 연구」,『明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史硏究』 26
이은자, 2007, 「大韓帝國時期 韓中間 民事訴訟의 實例－'彭姜案'(1898~1900)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100
이은자, 2008, 「淸末 駐韓 商務署 조직과 그 위상」, 『明淸史硏究』 30
이은자, 2009, 「淸日戰爭 이전과 이후 在韓 韓中間 '訴訟' 안건 비교 분석」, 『아시아문화연구』 17
이은자, 2011, 「청말 駐韓 中國 公館의 조직과 그 위상－駐韓公使 許台身과 曾廣銓 재직 시기를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硏究』 51
전우용, 2003, 「한국 근대의 화교문제」, 『韓國史學報』 15
田寅甲, 2004, 「중국 근대기업의 지배구조와 合夥 慣行－지연망의 '사회자본'化」, 『歷史敎育』 89
田寅甲, 2005, 「中國 近代企業과 傳統的 商慣行－合股慣行, 地緣網 그리고 社會資本」, 『東洋史學硏究』 90
鄭求先, 2007, 「통감부기(1906~1910) 일본의 치외법권 행사와 한국의 대응」, 『東學硏究』 23
鄭台燮 · 韓成敏, 2008, 「乙巳條約 이후 韓 · 淸간 治外法權 연구(1906~1910)」, 『한국근현대사연구』 46
鄭址鎬, 2001, 「明淸時代 合夥의 經營形態 및 그 特質－中國의 傳統的 企業經營에 관한 一考察」, 『明淸史硏究』 15
鄭址鎬, 2002, 「傳統中國 合夥의 債務負擔에 관한 商事慣行－近代法律과의 충돌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硏究』 79
정혜중, 2007, 「開港期 仁川 華商 네트워크와 華僑 정착의 특징」, 『中國近現代史硏究』 36
陳裕光, "華僑", 《中央日報》(1979. 9. 17~1979. 12. 17)
崔塘, 1993, 「開化期 私商의 變貌－客主를 中心으로」, 『實學思想연구』 4
하세봉, 2000, 「동아시아 교역권론의 지평 확대」, 『中國近現代史硏究』 10
石川亮太, 2005, 「朝鮮開港後における華商の對上海貿易－同順泰資料を通じて」, 『東洋史硏究』 63-4
石川亮太, 2007, 「開港期漢城における朝鮮人 · 中國人間の商取引と紛爭－『駐韓使館檔案』を通じて」, 『年報朝鮮學』 10
石川亮太, 2008, 「조선 개항후 중국인 상인의 무역활동과 네트워크」, 『역사문제연구』 20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

The Commercial Practices of Chinese Merchants through Debt Suits from 1906 to 1910: Focusing on the Immigrant Area in Hanseong

Son Seunghee

This study analyzed debt liability suits in the "Documents of the Chinese Diplomatic Office in Korea" (「駐韓使館檔」) of the Chinese Consul Ma Tingliang(馬廷亮). I examined not only the aspects of competition among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erchants at Hanseong as an immigrant area, but also activities and commercial practices of Chinese merchants.

A review of 75 cases of debt liability suits in the "Documents of the Chinese Diplomatic Office in Korea" during Ma Tingliang's time in office show that the process and the shape of suits differed according to the nationality of the complainant and the nationality of the defendant.

In order to know commercial practices at Hanseong, this article mainly analyzed suits regarding a Korean merchant's payment default. In many cases, payment default and debtor's runaway happened in business between a Chinese merchant and a Korean merchant. This should be connected with the commodity distribution channels in Hanseong. It was common that the imported/exported goods were dealt through brokers, who did business as a broker or a wholesaler who repaid the value of the commodity later. Naturally, these types of credit-type business of indirect long-term connection between the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buyer and the seller may have led to frequent disputes over payment.

Chinese merchants who had not been repaid and, moreover, could not chase the escaped debtor tried to get compensation through a colleague(同夥) or a shop manager, or through a broker(經紀), and even through a relative of the debtor. In order to explain these situations, I reviewed how the Hapgua Company(合夥企業), a Chinese company, settled debt. In the Hapgua Company, it was the principle that the profits and the losses of the company shall be shared according to the ratio of shareholding.

But when a debtor ran away, the creditor tried to ask the shareholder(s) or their relatives to return instead. At that time there was no concrete rule in the law, and the debt return might be ruled by general practice. In China, the shareholder(s) normally was also responsible for the debt. Thus, naturally, the Chinese merchant tried to get unlimited responsibility for the return of the debt from the business partner or from relativ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lso, in China a *jingji*, or broker, only performed brokering duties and had no responsibility for debt return. But in Korea, Chinese merchants sometimes requested the *jingji* to be responsible for the debt owing to the fact that the *jingji* did the urging of the return of debt and the debt return had been done by the *jingji*.

As briefly described above, the relationship and meaning of the business partner, the employee, the employer, and others were considerably different between Korea and Chinese merchants. It seems that this difference was a major reason for the complexity and difficulties of resolving disputes.

Keywords

Debt liability suits in the “Documents of the Chinese Diplomatic Office in Korea,” Hanseong, Chinese merchants, commercial practice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 평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국가사를 횡단할 때의 득과 실

유장근 | 경남대학교 역사학과 교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1.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로부터 유용태 · 박진우 · 박태균 지음,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에 대한 서평을 의뢰받아 놓고는 내심 후회를 하였다. 이 책은 발간 직후 사 두었으나 결국 앞의 일부만 읽다가 중도에 포기한 내력이 몇 차례 있기 때문이다. 왜 그랬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답하기는 어렵다. 우선 10개의 장으로 짜여진 목차 구성에서 앞의 두 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20세기의 이야기인 데다, 그 제목들조차도 대부분 국가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던 까닭이 클 터이다. 동아시아의 근현대사 개설서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정치와 국가 중심으로 일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처럼 20세기의 동아시아 국가라는 것에 별다른 매력을 갖지 못하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구성과 서술은 분명히 책읽기의 인내력을 요하는 셈이었다. 고백하건대 나는 20세기에 동아시아의 국가가 휘두른 폭력이나 억압에 지쳐 있다. 더군다나 중앙권력의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바라보는 근대 국가란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을 내부식민화하면서 오히려 국민국가로부터 점차 소외시켜간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 부쩍 하

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선입관은 꼼꼼히 책을 읽어가면서 서서히 이완되어 갔다. 저자들의 의도는 머리말과 서장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지역, 국가, 민중'을 키워드로 삼아 주로 20세기의 동아시아 역사를 주요 주제별로 서술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벽을 해체하여 이들을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좀 더 넓은 범주 내에 밀어 넣고, 국가와 민중 사이의 상호 관계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 내에서 펴 올린 주요 주제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그 특징들을 집어내고 있다. 새로운 시도라 할 만하다.

먼저 우리를 낯설게 했던 장절의 구성부터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다. '제1장 해금시기의 국가와 사회, 제2장 세계 시장의 확대와 지역 질서의 변화'. 제1장은 대략 명말부터 19세기 중후반까지의 동아시아사이며, 제2장은 청영전쟁과 일본의 개항 이후에 해당한다. 두 장은 대체로 해금시기와 세계 시장을 대비시키려는 의도가 짙은 주제 설정이라고 생각된다. 오인하는 경우, 폐쇄적인 동아시아 세계를 구미에서 강제로 열어젖혔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제3장 국민국가를 향한 개혁, 제4장 제국주의의 침략과 반제 민족운동'에서는 20세기 전후에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새로운 국가체제의 설립 시도와 이 시기에 밀어닥친 구미제국주의와 그 대응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그 아류인 일본제국주의의 특성과 그 양상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하였다. 제4장에서 독특한 부분은 제3절의 '이중의 억압, 소수민족의 운명'이다.

제5장은 '사회주의와 민중운동'이며, 모두 3절과 9항으로 구성된 제6장의 주제는 '총력전의 충격과 대중동원의 체계화'다. 제5장 2절의 제목은 '새로운 국민국가를 향한 모색'인 바, 이는 20세기 초의 국민국가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양자의 차이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제6장까지의 서술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부분이라면, 제7장 '냉전체제의 형성과 탈식민의 지연'과 제8장 '자본주의 진영의 산업화와 민주화'는 세계대전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냉전과 그 체제화 과정, 그리고 식민지 체제의 아픈 후유증이 지속되는 상황과 한국, 일본, 타이완 등에서 진전된 산업화를 비교하면서 서술하고 있다. 결국 일본은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천황제도도 그대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로 유지되었고, 식민지배의 책임도 매우 가벼웠다는 점에서 오히려 동아시아의 3개국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다. 식민지배와 전쟁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것은 오히려 한국이었다.

제9장 '사회주의 진영의 실험과 궤도수정'은 전후 출발한 중국, 북한, 몽골의 현대사에 해당한다. 이들 국가의 사회주의를 농민사회주의로 규정하고, 그 출발이 자본주의의 극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계와 좌절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고 전제하고 있다. 제10장 '탈냉전 시대의 갈등과 시민운동'은 자본주의의 전 지구적 확산과 동시에 탈냉전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여전히 냉전체제가 유지되면서 오히려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군비경쟁에 돌입하게 된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역사인식을 둘러싼 갈등, 사회 양극화, 냉전체제와 국가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연대 활동에 힘을 쏟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요컨대 이 책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종장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평화와 민주주의를 성취하기 위해 동아시아 역사집단이 해야 할 구체적인 작업들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세기 초부터 발전시킨 반전 평화사상이나, 그 구체적인 양상인 1955년의 반둥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가로막힌 역사 대화나, 국가권력을 통해 저질러진 폭력에 대한 내부적 성찰 등도 지역 내 평화를 위한 주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도 지역 내에서 해야 할 주요한 의제이긴 마찬가지다.

2.

먼저 이 책에서 시도한 10개 장의 시기 구분과 그에 따른 제목들은 적절한가를 보도록 한다. 장의 제목과 그 아래에 각각 5개씩 배치한 30개의 절, 그리고 다시 각 절장 2~3개씩 배치한 총 88개의 항목에서 우리는 저자들의 고심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심은 각 항목 속에서 서술한 내용을 통해 상당한 정도 타당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장 · 절의 제목이나 시기 구분은 그 나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름대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그만큼 고심과 논의의 결과이겠지만, 동아시아의 3~4개국이 공통적으로 경험한 바의 역사를 관통하는 나름대로의 시대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만하다. 특히 냉전체제를 독립적으로 다룬 것이나, 식민지 시대가 종결되었음에도 그 유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지속된 것을 '탈식민의 지연'으로 처리한 것은 의미 있는 구획이라고 생각한다.

반면 17~18세기의 동아시아 세계를 '해금시기'라고 규정한 것이나 그 아래의 절을 '문인사대부의 국가와 무사의 국가'라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저자들은 동아시아의 지역을 중시하였고, 또한 해금 시기에도 역내 교역이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음을 기술하였기 때문에 이 200여 년의 시기를 해금시기라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이 시기에는 역내에서 활발하게 교류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저 먼 내륙의 변경에서도 러시아와 정식 교류를 진행시켰기 때문에 굳이 '해금'이란 용어로 200여 년을 규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제한적 개방성으로 보는 편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일본을 무사 국가로, 조선을 문인 사대부 국가로 보는 것은 일견 수긍할 만하지만, 청조는 역사상 유례없는 군사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8기가 청조 내내 지배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였으며, 황제들 역시 그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군사 지배에 능한 황제들은 중화적 문인이기도 하였지만 그보다는 유라시아적 무인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魏源의 『聖武記』에서 보듯이 무에 대한 한인 사대부들의 평가 역시 매우 양호하였으며, 그 전통을 현대 중국이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대 사회를 문인 사대부 사회로 규정하는 것은 중국의 역사와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 시기 동안에 전개된 역내의 국가 관계를 '조공-책봉'으로 규정한 것도 역시 문제일 것이다. 명청 왕조에서 설정한 책봉-조공 의례를 비교적 '철저하게' 수용한 곳은 조선 정도였고, 유구나 베트남 등에서는 사실상 그 예제를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았고, 또 책봉국도 조공국이 위기에 빠질 경우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조공국을 보호하는 임무와 망국 시에 그것을 다시 부흥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시키는 이른바 '흥멸계절'의 책무가 책봉국의 가장 중요한 존재가치라고 한다면, 실상 근대기 동아시아의 책봉－조공은 예제만 존재할 뿐 실존하지 않는 허구인 셈이다.

더구나 역내의 주요국인 일본은 이 예제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며, 한국 · 일본 · 유구 · 베트남 등의 상호 관계는 책봉－조공 체계로 설명할 수 없는 평등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역내의 지역질서를 책봉－조공제도라고 하기보다는 대방과 소방의 관계를 의미하는 '방교(邦交)'로 개념화하는 편이 훨씬 유용할 것이다. 이 용어는 평자가 이미 18세기 말 월중관계의 갈등 시에 서산당의 월남 정부가 사용한 적이 있었음을 밝혔고, 일본에서도 외교사가인 시이노 세이자부로가 일본과 유구, 조선 관계는 일종의 정상적 방교관계라고 언명한 점, 그리고 현대 중국의 청사공정팀이 청대의 대외관계를 '邦交志'라는 틀 속에서 서술하기로 한 점을 참조하였으면 좋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3.

이 책의 강점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필자들이 전면에 내세운 바와 같이 하나의 국가 내에서 전개된 사건이나 흐름을 이웃 국가와 연계시키는 한편으로 그것들을 비교한 점에 있을 것이다. 그 예들은 수없이 많지만, 예컨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쟁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미친 영향, 혹은 제2차 세계대전이 한중일 삼국뿐만 아니라 동남아, 미국, 소련 등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는가를 이 책을 통해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주의 문제, 디아스포라의 문제, 전쟁 중에 나타난 민간인 학살과 난민 문제, 그리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출발한 중국, 북한, 베트남, 몽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왜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농민 사회주의라는 큰 틀에서 설명하면서도 각국 사이에 존재하는 미묘한 차이를 놓치지 않는다. 그들과 대립하였던 남한, 일본, 타이완 등 자본주의 세계에 미친 사회주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이 토지 개혁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였는지를 볼 수 있다.

또한 이 책은 기왕에 소홀히 했던 주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3장 2절 '국민국가를 향한 제도개혁'에서', '근대 학제, 신분에서 능력으로'를 독립항목으로 분리시켜 중시한 것이나, 3절의 '국수주의와 민중종교 현상'도 그간 근대사 서술에서 매주 홀시하였던 주제이다. 다만, 중국의 민중 종교가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기는 하지만, 근대기 종교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좀 더 중요한 시도는 제4장의 제3절, '이중의 억압, 소수민족의 운명'을 세 개의 항목으로 나누어 일본의 경우 홋카이도와 오키나와, 중국의 경우 만주, 몽골, 회, 티베트, 묘족의 소수민족화 과정을 세세하게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특히 베트남의 응우엔 왕조 치하에서 전개된 참파, 크메르족에 대한 차별정책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근현대기 동아시아 국가에서 전개된 전반적인 '소수민족화'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들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소수민족을 제국적 질서 속으로 포섭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민족의 순수성을 내세우면서 그들을 배제하면서 차별을 일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저자들의 지적처럼 중국의 한족문화도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민족의 문화가 혼합된 결과임을 깨닫는다면, 특정 민족의 '소수화'는 이제 걷어치울 때가 된 셈이다.

그러나 아쉬움도 있다. '근현대사'의 시작은 어디이며,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분석적인 기술은 없다. 대략 이 책의 시작은 17세기 초부터 시작되지만, 왜 이 시기가 근현대사 서술의 시작점인지에 대한 나름의 기준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평자의 판단으로는 저자들 역시 19세기 중엽 전후에 진전된 조약과 개항을 근대의 출발로 보면서 그 이전 시기 200여 년은 배경 정도로 간주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면 결국 저자들이 비판하였던 '침략과 저항'이라는 종래의 동아시아 근현대사 패러다임을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동아시아라는 지역의 정의 역시 분명치는 않으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며, 분명한 일원인 몽골은 거의 소외된 편이다. 또 사실의 일부 오류도 보인다. 일본에 강제 합병되기 전에 '류큐 왕국은 별도의 독립왕국으로 오키나와 제도와 아마미 제도를 영역으로 삼았다'고 기술하였지만, 그중 아마미 제도는 이미 1609년에 사쓰마번에게 빼앗긴 곳에 해당한다.

또한 정치사 중심의 국가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해체하여 재구성할 경우, 국가사가 드러내는 특징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한계도 있다. 이 때문에 탈국가적 역사 서술은 사회문화 부분이나 문명의 이동과 교류, 질병과 환경 등을 다루는 데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취약하다. 여하튼 저자들의 희망과는 달리 국가 사이의 경쟁과 갈등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고, 이에 비해 연대를 통한 공동 대응은 힘이 빠져 보인다.

구미나 일본, 그리고 중국의 관련서보다 뒤늦게 출간된 이 책은 국내의 동아시아 근현대사 연구수준을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기 구분과 주제 설정, 주제들 간의 상호 연계와 비교 등을 통해 조금은 낯설지만 의미 있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는 이 시점에서 이 책이 제값을 하면 좋겠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 ·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 · 서면 · 전화 ·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 · 제척 · 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2.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 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 ·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 · 의결 · 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 · 중세 · 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 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림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림,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중 B · 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3) 논리성 및 독창성
   4) 학술적 가치
   5) 인용자료의 적절성
   6) 분량의 적절성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림,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Ⅰ〉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예) 동북인, 2006,「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동북아역사논총』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사과문

저는 본 학술지『동북아역사논총』제22호(2008.12)에 발표한 논문「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한일관계: '관대한 평화'와 냉전의 상관성」의 일부분에서 박진희의 논문『제1공화국의 대일정책과 한일회담 연구』(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를 부분적으로 인용하면서 몇 군데에 걸쳐 직접적인 인용표시 없이 사용함으로써 박진희 논문의 독창성을 훼손한 데 대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사과드립니다.

또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의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를 엄숙히 받아들이고, 향후 다른 형태로 출판 기회가 주어질 경우 이를 명기하여 정정할 것과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2년 3월 남 기 정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36호(2012. 6)

초판 1쇄 인쇄 2012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2년 6월 30일

펴낸이 정재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미근동 267)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